

UNCITRAL 전자계약협약 비준 필요성 및 동 협약 비준시 국내법의 개정방향 연구

- 목 차 -

I. 서

II.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와 전자계약

1. 전자적 방식의 정의
2. 전자적 방식의 특징
 - (1) 거래관습의 변화
 - (2) 거래당사자의 다양화
 - (3) 거래객체와 거래방식의 전자화
 - (4) 해외시장의 개척수단의 변화
 - (5) 무역업무처리방식의 자동화
3. 전자계약
4. 전자계약에 관한 법적인 문제
 - (1) 서

- (2) 전자계약의 성립요건
- (3) 전자계약의 성립시기
- (4) 전자계약상의 준거법
- (5) 전자서명
- (6) 전자인증

5. 관련 법규

-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2)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 (3)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
- (4) UNCITRAL 전자계약협약

Ⅲ.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주요내용

1. 전자계약협약 제정의 목적

2. 전자계약협약의 심의과정

- (1) 검토단계
- (2) 잠정초안
- (3) 1차 수정안
- (4) 2차 수정안
- (5) 3차 수정안
- (6) 4차 수정안
- (7) 최종 수정안

3. 전자계약협약 수정안 비교

- (1) 1차 수정안의 변화
- (2) 2차 및 3차 수정안의 변화
- (3) 4차 수정안 및 작업반의 공식적인 협약초안

(4) 위원회의 공식적인 협약초안

4. 전자계약협약의 주요논점

- (1) 전자계약의 범위
- (2) 당사자의 위치
- (3) 청약과 승낙
- (4) 전자통신의 송·수신 시기
- (5) 청약과 청약의 유인
- (6)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
- (7) 전자통신상의 실수 및 오류

5. 전자계약협약의 주요 내용

- (1) 전문
- (2) 협약의 적용범위 (제1조)
- (3) 예외 (제2조)
- (4) 당사자의 자치권 (제3조)
- (5) 정의 (제4조)
- (6) 해석 (제5조)
- (7) 당사자의 위치 (제6조)
- (8) 정보요건 (제7조)
- (9)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 (제8조)
- (10) 형식요건 (제9조)
- (11)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수신시기 및 장소 (제10조)
- (12) 청약의 유인 (제11조)
- (13) 계약체결시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의 이용 (제12조)
- (14)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 (제13조)
- (15)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 (제14조)

- (16) 기탁처 (제15조)
- (17) 서명, 비준, 승낙 또는 승인 (제16조)
- (18)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참여 (제17조)
- (19) 국내영역단위에서의 효력 (제18조)
- (20) 적용범위의 선언 (제19조)
- (21) 다른 국제협약상의 의사표시의 교환 (제20조)
- (22) 선언의 절차와 효과 (제21조)
- (23) 유보 (제22조)
- (24) 발효 (제23조)
- (25) 적용시기 (제24조)
- (26) 폐기 (제25조)
- (27) 서명조항

IV.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비준 필요성

- 1. 전자계약협약의 적정성
 - (1) 적용범위
 - (2) 주권침해의 우려 가능성
 - (3) 당사자 자치의 한계
 - (4) 영업장소의 인정
 - (5) 신분확인 요건 및 신뢰성 기준
 - (6) 수신시기의 원칙
 - (7) 표현의 오류
 - (8) 기존 국제협약과의 관계
- 2. 전자계약협약의 향후 과제
 - (1) 국제상사규범과의 조화
 - (2) 국제상거래의 법적 안정성 보장

(3) 국제상거래의 전자화에 따른 실효성 확보

3. 주요국의 입장

(1) 독일

(2) 캐나다

(3) 프랑스

(4) 중국

4. 우리나라의 비준 필요성

(1) 서

(2) 전자계약협약의 역할적인 측면

(3) 전자계약협약의 내용적인 측면

(4) 국내 관련법들과의 관계

(5) 소결

5. 전자계약협약 비준시 국내 관련법 개정방향

(1) 기본방향

(2) 전자거래기본법

(3) 전자서명법

(4)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6) 전자적 유가증권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7) 계약의 성립에 서면을 요하는 법률

(8) 민사소송규칙

(9)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10) 기타 사항

V. 국내 관련법 현황

1. 전자거래기본법

- (1) 개요
- (2) 주요내용

2. 전자서명법

- (1) 개요
- (2) 주요내용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1) 의의
- (2) 주요내용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 목적
- (2) 주요내용

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1) 의의
- (2) 구성

VI. 관련 국제규범 및 국제지침

1. ICC eTerms 2004와 ICC Guide to electronic contracting

- (1) 제정동기와 필요성
- (2) eTerms 2004의 개요

2. 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 (1) 서
- (2) 적용범위
- (3) UCP와의 관계

- (4) eUCP의 주요내용
- 3.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CITA)
 - (1) 개요
 - (2) 성립과정
 - (3) UCITA의 구성
 - (4) UCITA의 적용범위
 - (5) 대량실시계약 (Mass Market Lience)
- 4. 통일전자거래법 (UETA)
 - (1) 입법의 필요성 및 목적
 - (2) 주요내용
- 5. 연방전자서명법 (E-Sing Act)
 - (1) 의의
 - (2) 유타주의 디지털서명법
 - (3) E-Sing Act의 제정배경 : UETA와의 관계
 - (4) E-Sing Act의 주요내용

VII. 결론

□ 참고문헌

□ 부 록

1. 국내 관련법

- (1) 전자거래기본법
- (2) 전자서명법
-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2. 국제 관련법규

- (1) UNCITRAL 전자계약협약
- (2)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 (3)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
- (4) eTerms 2004
- (5) ICC Guide to electronic contracting
- (6) 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I. 서

인터넷을 이용한 개방형 네트워크의 구축은 전통적인 무역거래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 이용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국제간 거래에서도 전자상거래가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이미 거래선 발굴 및 시장조사 등 계약체결 이전의 단계에서는 개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청약하고 이를 승낙하는 추세가 국내거래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거래이기 때문에 전통적 상거래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고 전자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계약도 서면계약과는 다르다. 전자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과 유사하게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특성이 있으며 시간 및 공간상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지만 계약의 성립시기와 준거법의 결정문제 등 법리적인 측면과 보안상상의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다.

1966년 국제간에 거래되는 무역과 거래에 관한 법제의 통일을 위하여 설립된 UN의 산하기구인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이하 "UNCITRAL")¹⁾은 1996년에는 전자상거래모델법과 2001년 전자서명모델법 등 전자상거

1) 국제연합(UN) 총회의 보조기관으로 1966년 UN 제21차 총회의 결의에 의해 국제상거래법의 전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UN 총회의 선거에 의하여 아프리카 7개국, 아시아 5개국, 동유럽 4개국, 라틴아메리카 5개국, 서유럽 및 기타 8개국 등 29개국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제1차 총회를 1968년 뉴욕에서, 제2차 총회를 1969년 제네바에서 개최한 후, 뉴욕과 제네바에서 교대로 해마다 총회를 열고 있으나, 그 보고서는 그 해의 UN 총회에서 심의된다. 1996년 6월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고 국제간 거래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사용을 합법화할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 현재 UN 총회에서 선출된 3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래 관련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의 제정을 통하여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모델법을 수용하였고, 2004년초에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이하 "국제물품매매협약")²⁾을 비준함으로써 국제매매거래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거래관련 협약이 전자적 환경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거래협약을 전자적 환경에서 적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UNCITRAL은 전자적 환경하에서 국제거래 협약상의 법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자계약협약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전자계약에 대한 통일규칙의 제정을 UNCITRAL 산하 전자상거래 작업반(Working Group)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작업반은 2001년부터 전자계약협약의 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2004년 10월에 개최된 UNCITRAL 제44차 전자상거래작업반 회의에서는 2001년부터 시작하여 지난 3년 반동안 논의되어 온 전자계약 국제협약 초안의 실질적 내용을 타결시켰고, 이 협약 초안은 2005년 7월 제38차 본회의에서 국제전자계약협약안을 채택하였고, 이는 2005

2) 국제적으로 물품의 매매방식을 통일시키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물품매매에 관해서는 대개 자국의 법률과 관습을 적용해 무역거래에서 혼란이 초래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간략히 CISG라고도 한다. 또한 조약에 채택된 곳이 비엔나이므로 비엔나협약이라고도 한다.

1964년 이탈리아 로마의 사업통일국제협회가 채택한 헤이그조약에 반발한 개발도상국들이 주도하고 국제연합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초안을 만들었으며, 1980년 3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연합외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후 1988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미국·프랑스·스웨덴·중국·독일 등 30여 개국이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비준하여 2005년 3월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국제적인 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법체제로 구성하였으며, 가능한 많은 국가의 가입을 위해 통일법의 적용대상을 국제매매로 한정하였다. 또한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합의를 우선시하는 특징이 있다.

년 11월 23일 제60차 UN총회에서 정식 협약으로 채택되었다.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서 전자계약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협약의 비준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하고 가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법적 검토를 걸쳐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전자계약협약의 비준과 전자거래 관련 국내법제의 정비를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글에서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전자계약협약 비준 필요성과 비준시 검토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국내법 현황과 관련 국제규범과 지침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II.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와 전자계약

1. 전자적 방식의 정의

기업간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지정한 데이터와 문서의 표준화하여 컴퓨터 통신망으로 거래 당사자가 직접 송신 및 수신하는 정보전달시스템인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³⁾는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되던 서면문서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변경하여 이를 컴퓨터간 전자적 교환에 활용하는 업무처리방식이다.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거래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의 성립과 이행의 면에서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3) 이메일·팩스와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이며, 기업간 거래에 관한 데이터와 문서를 표준화하여 시스템이다. 주문서·납품서·청구서 등 무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표준화된 상거래서식 또는 공공서식을 통해 서로 합의된 전자신호로 바꾸어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전송한다. 그러므로 국내 기업간 거래는 물론 국제무역에서 각종 서류의 작성과 발송, 서류정리절차 등의 번거로운 사무처리가 없어서 처리시간의 단축, 비용의 절감 등으로 제품의 주문·생산·납품·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단, 전자문서교환의 대상은 컴퓨터가 직접 읽어서 해독가능하고 인간의 개입없이 다음의 업무처리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문서·영수증 등과 같은 정형화된 자료가 대상이다.

EDI는 미국의 운송업계에서 문서의 전송 지연 및 중복처리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1975년에 처음 도입하였고, 1978년 운송업계의 전자문서교환 표준을 제정하였다. 국제연합에서는 1960년부터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아래 대외무역서류 간소화 및 표준화 작업팀을 구성하여 무역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를 추진하고, 1963년에 무역서류상 반복해서 나타나는 기재항목의 배열에 대한 표준서식 설계도를 제정하였다. 1987년 3월 유인·행정·무역 및 운송에 관한 EDI 국제표준이 제정되었다. 한국은 1987년에 처음 도입하였다.

UNCITRAL은 무역거래관련 법률을 통일함으로써 무역거래를 활성화 하고 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법모델법과 전자서명모델법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거래방식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모델법은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기록’(data messag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자기록이란 EDI나 전자우편, 텔레그램, 텔렉스, 텔레카피 등을 포함하여, 전자적·자기적·광학적 기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의 정보시스템은 해석상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전화, 전신, 팩스, 자동응답기나 오디오에 의하여 녹음된 테이프는 전자문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⁴⁾

그러나 EDI나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하는 최근의 전자적 방식에서 텔레그램이나 텔렉스와 같은 자기적 매체(magnetic medium)를 사용한 전통적 전자수단의 포함여부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EDI나 인터넷 등이 전자적 방식의 주된 요소이기는 하나,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전자적 수단인 이들에 대하여서도 전자적 방식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 최근의 지배적 의견이다.⁵⁾

가장 최근의 전자적 거래환경을 반영하는 전자계약협약은 제4조 정의규정에서 전자기록으로 행하여지는 의사표시 또는 통지의 개념으로 기존의 전자기록이라는 용어 이외에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⁶⁾ 여기서 “의사표시”는 청약

4) 최민식, 「인터넷 전자거래에서의 전자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경희대학교 국제법무 연구 제7호, 2003), 202면

5) 송수련, 「전자적 방식에 의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4면

6) 【전자계약협약 제4조(정의)】

(a) “의사표시”라 함은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청약과 청약의 승낙을 비

과 승낙을 포함하여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요구되거나 당사자의 선택에 따른 모든 진술, 발표, 요구, 통지 또는 요청을 의미한다.

“전자적 의사표시”는 결국 텔레그램이나 텔렉스와 같이 전통적 전자 수단을 포함한 전자적·자기적·광학적 기타 그와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생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전자기록을 사용하여 청약과 승낙을 포함하여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요구되거나 당사자 선택에 따른 진술, 발표, 요구, 통지 또는 요청을 말한다.

2. 전자적 방식의 특징⁷⁾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는 기존의 전통적 방식과 비교하여 다양한 특징을 갖는다. 첫째,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대면접촉이 없이 인터넷 또는 EDI 등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함으로써 비대면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둘째, 무역거래에 필요한 많은 서면문서를 단순화하고 표준화하여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켰다. 셋째, 무역거래에의 참여방법이 단순화되고 보편화되어 누구나 무역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뜻한 당사자에게 요구되거나 당사자의 선택에 따른 모든 진술, 발표, 요구, 통지 또는 요청을 의미한다.

(b) “전자적 의사표시”라 함은 당사자가 데이터 메시지의 방법으로 행한 모든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

(c) “데이터 메시지”라 함은 전자, 자기, 광학적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작성, 전송,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의미하며, 이는 전자데이터교환, 전자우편, 전보, 전신 또는 모사전송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d)~(h) (생략)

7) 송수련, 「전계논문」, 5~10면

(1) 거래관습의 변화

전통적 방식의 교섭에서는 우편이나 팩스 혹은 전화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주요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간의 대면적 교섭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비대면적 교섭만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거래의 당사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세정보와 세부사항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는 구매자와 별도의 협상이 없어도 원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즉, 거래당사자가 정보시스템에 제품과 관련한 정보를 축적·분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하여 보관하고, 물품 구매자와의 상담은 사전에 프로그램된 정보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체결된 계약은 정보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절차에 따라 물품배송 등을 포함한 그 이행이 행하여진다.

즉,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등을 사용하여 거래상당과 계약체결을 하고, 전자신용장을 사용하여 신용장의 개설과 통지 그리고 수령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트레이드 카드(Trade Card)나 볼레로(Bolero: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⁸⁾를 활용한 대금결제 까지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물론 물품의 운송과 관련한 서면문서들도 EDI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배부됨에 따라, 당사자간의 대면적 기회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8) 국제물품매매, 운송, 보험 및 결제 등 무역거래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서면서류를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상업적 시스템이다. 1999년 출범하였으며, SWIFT와 TT Club의 합작회사인 Bolero International Ltd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2) 거래당사자의 다양화

인터넷의 확산으로 기업들은 물론 일반소비자들도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용이성은 구매활동에 적극성을 유발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일반 소비자들조차 수많은 거래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환언하면, 정보와 지식이 한정적으로 공유되어 거래에 참여할 기회조차 제한적이었던 기존의 거래와는 달리, EDI나 인터넷을 통한 폭넓은 정보공유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거래참여를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 일반소비자나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기관이나 정부 등은 누구나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간 거래인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개인간의 거래인 B2C(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 정부간 거래인 B2G(business to government) 등에 이르기까지 거래의 형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거래형태의 변화는 무역거래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시장이나 해외기업에 대한 정보획득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무역거래에 대한 참여가 더욱 용이하여졌음은 물론, 일반소비자들의 무역거래 참여 역시 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일반소비자가 해외의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이나, 해외의 음악사이트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것들이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거래객체와 거래방식의 전자화

전자적 방식의 거래가 전통적 거래와 차별화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전자적 무체물’과 ‘서비스거래’의 포용이다. 즉, 전자적 방식의 거래는 소프트웨어나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영상 등과 같은 전자적 무체물과 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프트웨어나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영상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사업이 시도됨은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대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법률이나 회계 서비스, 그리고 컨설팅사업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됨으로써,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는 기존의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외에도 전자적 무체물이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 거래대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즉, 전통적 무역거래가 물리적 재화의 무역거래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거래는 e-마켓플레이스나 무역자동화 그리고 전자거래지원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전통적 무역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은 물론, 동시에, 무역정보, 비즈니스모델,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나 디지털콘텐츠 등을 단독적인 무역거래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4) 해외시장 개척수단의 변화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전통적 방식은 해당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KOTRA⁹⁾나 무역협회¹⁰⁾ 내지는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관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도 한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에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하였으며, 2001년 KOTRA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외의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0)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무역진흥을 도모하고자 1946년에 설립되었다. 무역에 관한 행정관청과 회원간의 연락·알선·지도, 제외국과의 연락·선전, 조사·연구, 건의·자문에

리·감독하는 유관 정부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배포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자적 방식의 출현 이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해당국의 자료를 검색하거나 문의하는 것이 용이하여졌으며, 온라인 시장인 e-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여 판매자와 구매자의 탐색은 물론, 제품과 관련된 정보공유도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e-마켓플레이스는 무역업체는 물론 생산이나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들도 국제시장으로 나아가는 손쉬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대규모의 자금집행을 통한 광고나 홍보활동 대신에 저렴한 비용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자사제품의 광고나 홍보를 수행하고 e-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국제거래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홈페이지 개설이나 e-마켓플레이스의 참여만으로는 무역거래의 원만한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의 구체적인 정보수집과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자체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판매로 연결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마케팅과 홍보 수단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5) 무역업무처리방식의 자동화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서면문서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서면문서의 작성에는 반복기재나 재작성 등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재상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또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역시 적지 않다.

대한 답신 등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문서들의 양식을 표준화하고, 각기 다른 서류마다 반복되어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한번만 입력하면 나머지 기입사항은 자동적으로 입력되게 하며,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폐쇄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제출하도록 만든 무역업무자동화시스템이 "무역EDI"¹¹⁾이다.

무역서류와 관련한 무역EDI의 도입은 무역절차를 간소화 시켜 서류의 작성이나 발행에 있어 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비용절감의 효과까지 달성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전자계약

계약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된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라면, 전자계약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즉, 전자계약은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무역계약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청약의 의사표시와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된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간의 상호합의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계약의 청약 및 승낙의 내용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당사자간의 상호합의가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객관적 계약이론이 적용된다.¹²⁾ 이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 의도하였던 주관적인 내부의사는 상호합의의 형성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11) 2005년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문서처리건수는 1억5천만건을 돌파하여 2002년 1억건을 돌파한 이후 3년만에 50%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2005. 12. 15. 전자신문】

12) 박종석·이정민·정재우, 「UNCITRAL 전자계약협약 초안의 주요내용과 개정방향」 (e-biz Expo 발표자료, 2003), 6면

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당사자의 주관적 내부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관적 내부의사를 따르게 된다.¹³⁾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계약의 성립시기를 정하고 계약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 소멸,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청약에 대한 승낙 여부의 통지의무,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련된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계약에서 전통적으로 적용되어온 일반적인 사항들로 대화자 사이의 승낙의 효력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계약은 대화자 사이의 계약으로 볼 것인지, 격지자 사이의 계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전자계약이 과거의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전자적 매체를 통해 거래시간을 단축시켜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법률적인 논란을 발생시킨 것이다.

기존의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방식에서는 청약과 승낙에 있어서 일정기간을 두고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발생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제 상거래에서 일반화되어 적용되었다. 하지만,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이라는 제약이 사라지면서 기존의 국제상거래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시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졌다. 그리고 전자계약에서는 그 전자적 의사표시가 컴퓨터 이용자에게 귀속되어 의사전달은 컴퓨터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정한 컴퓨터 언어의 전자적 신호로 전달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계약체결을 위해 제3자(시스템 운영자)의 개입이 수반하게 되어 중첩적 계약관계로 구성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일반적인 계약관계는 안전성에 관련된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계약 당사자 간의 상대방에 대한 신분확인, 계약문서에 대한 인증(문서인증), 계약도장의 인증(인감증명), 동시성(동일 장소에서의 동시에 계

13) 이상운, 「영미법」 (박영사, 2007), 281~282면

약서에 인감을 날인)의 4가지 특성이다.

전자계약도 위에서 언급되어진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즉, 계약 당사자 간의 상대방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는 개인식별 문제, 계약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인증 문제, 인감도장을 전자적으로 실현하는 전자서명 문제이다.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의 절감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국제무역 등 상거래 환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므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에게 인터넷은 비대면 거래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는다. 특히 신뢰성과 보안성 등의 문제들이 전자상거래의 보급 및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계약의 이용이다.

전자문서는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성되어 저장되거나 전달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이므로, 종이문서와는 달리 쉽게 위조 또는 변조될 수 있고, 이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다. 따라서 종이문서의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경우에 본인확인 및 위·변조 확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으로서 전자서명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1996)"(이하 "전자상거래모델법")은 수기서명의 기능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서명요건을 규정하고 있다.¹⁴⁾ 첫째 서명자의 신원확인 기능, 둘째 서명자가 서명한 내용을 승

14)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7조 서명

(1) 법률이 특정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데이터 메시지는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a) 특정인을 확인하고,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을 그 특정인이 승인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b) 그러한 방법은 관련된 약정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데이터 메시지의 생성·통신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

(2) 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법규정이 의무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단순히 서명이 없는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거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인하는 기능, 셋째 서명한 내용이 서명자에게 속한 것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이외에도 서명자가 서명한 계약문서의 내용에 구속을 받는다는 의사가 표시되는 기능 등 서명된 문서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 UNCITRAL은 전자상거래모델법(1996)에서 채택한 기술 중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디지털 서명과 다른 전자서명기술의 이용을 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에서 2001년 6월 전자서명모델법(2001)을 채택하였다. 이 전자서명모델법은 전자상거래모델법 제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명요건에서 정한 유연한 기준에 따른 운영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이 수기서명의 기능적인 등가물로서 인정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UNCITRAL은 두 모델법을 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통일의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전자서명모델법은 특정한 전자서명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개방환경에서 당사자가 사전합의 없이 전자적으로 통신하는 경우 최소한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으로 통신할 때 달라야 하는 사전의 계약 및 절차에 구속되는 폐쇄적 환경의 경우 모델법인 참조할 수 있는 계약규정 또는 임의규정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자서명모델법에 의하면 전자서명이라 함은 데이터메시지와 관련하여 서명자를 확인하고 당해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서명자의 승인을 나타내는데 이용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첨부 혹은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를 말한다. 이는 수기서명 또는 날인의 전자적인 대체물로서 펜대신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생성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서명은 디지털서명과 동의어가 아니다. 디지털 서명이란 공개키 암호방식을 이용한 전자서명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전자서명이라는 개념은 디지털서명을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서명에 디지

(3) 이 조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털서명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자서명은 송신자가 작성한 전자문서 자체를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 3자가 문서내용을 열람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전자서명은 다만 작성자로 기재된 자가 그 전자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작성내용이 송수신과정에서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작성자가 그 전자문서 작성사실을 나중에 부인할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문서내용 자체를 암호문화하여 제3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전자서명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전자적으로 서명된 전자문서는 암호화하여 송신할 수도 있고 암호화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송신할 수도 있다. 15)

4. 전자계약의 법적인 문제¹⁶⁾

(1) 서

국제적인 상거래는 전자상거래의 출현과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해외시장 조사, 신규 거래처 발굴, 수출상담 및 계약의 체결, 그리고 대금의 결제관행이 변화되고 있다.

무역계약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체결을 위한 청약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성립하며, 이러한 행위는 거래당사자의 법률적 관계를 구성하는 기본요인이 된다. 따라서 무역계약은 쌍방의 법률적 관계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계약은 전통적인 무역계약과는 달리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15) 김영재, 「전자서명의 법률적 정당성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4면

16) 이용근·박종석, 「전자계약의 체결에 따른 법리적인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물류연구논집 제9권, 2002)

발생시킬 목적으로 거래 당사자간에 전자적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게 된다. 전자계약은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과 동일하다. 그러나 서면 계약과는 달리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계약의 성립시기와 준거법의 결정문제와 같은 법리적인 측면과 전자계약의 보안과 관련하여 전자서명, 전자인증 등의 법적·기술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2) 전자계약의 성립요건

전통적인 무역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이 되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양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약인이 있어야 하며, 거래의 목적물이나 거래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청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자의 체결의사가 존재해야 하고, 청약의 내용이 확정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승낙의 경우에는 청약의 상대방이 승낙의 주체이어야 하고, 승낙의 용어는 다의적이어서는 아니되며,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성립이 된다. 그러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간의 상호합의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객관적 계약이론이 적용된다. 객관적 계약이론은 계약의 청약 및 승낙의 내용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당사자간의 상호합의가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이론이다. 이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 의도하였던 주관적인 내부의사는 상호합의의

형성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의 주관적 내부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관적 내부의사를 따르게 된다.

전자계약이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표시가 전자적 방식으로 행해짐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전자상거래약정과 교환약정을 통해 체결이 된다. 전통적인 무역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자계약도 유효하게 성립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된 네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거래당사자간의 전자적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하며, 약인이 존재해야 하고, 거래의 합법성과 당사자의 계약체결 능력이 존재해야만 한다.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인간의 의사표시와 법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미국통일상법전에 의하면 지능형 에이전트에 대하여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계약의 성립이 인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였다면,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인적참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하여 사기가 있는 경우 및 전자적 의사표시의 포괄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 제1항17)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3) 전자계약의 성립시기

17)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8) 윤광운, 「전자상거래론」 (삼영사, 2000), 318면

무역계약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이 된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거래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된다.

국제물품매매협약 제14조는 1인 이상의 특정한 자를 상대로 하는 계약체결의 제의는 그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이 있는 경우에 구속된다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명된 경우에는 청약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물품매매협약 제18조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청약에 부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는 청약수령자의 의사표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해서는 도달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영미법에서도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전달되는 시점에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도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민법에서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에 관해서는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전자계약의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과 수신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 기존의 계약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계약의 성립시기와 유형이 다양하여 일괄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1조는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청약과 이에 대한 승낙은 데이터 메시지를 통해 표현될 수 있으며,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데이터 메시지가 사용된 경우에 그러한 계약은 데이터 메시지가 계약성립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과 구속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제12조는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가 작성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에서는 대화자간의 계약과 격지자간의 계약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계약을 대화자간의 계약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민법에서는 대화자간의 거래인지 또는 격지자간의 거래인지에 따라 도달주의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전자계약에 있어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과 수신은 동시에 일어나므로 전자계약의 성립시기는 도달주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계약의 성립시기는 그 특성상 격지자간의 거래가 아닌 대화자간의 거래로 보아, 도달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4) 전자계약상의 준거법

계약은 거래당사자가 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에 의해 지배되는데, 이러한 법을 계약의 준거법(governing law)이라고 한다.

무역계약에서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유로이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저촉법적 당사자 자치와 계약조건이나 내용을 규율하는 준거법을 당사자가 결정하는 실질법적 당사자 자치가 있다. 로마협약¹⁹⁾에서도 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19) 저작권적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저작물을 실연하고 그 배포에 기여하는 저작권접권자에 대한 국제적 보호방안으로 1961년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

의해서 규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涉外사법 제9조도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涉外사법 제9조에서 언급하는 당사자의 의사에는 명시적 의사는 물론이고 묵시적인 의사도 포함되는데, 당해 계약이 특정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받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거나, 특정국을 재판 관할지나 중재지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는 묵시적 의사를 추정해 낼 수 있다.

무역계약에 있어서 준거법의 결정문제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지만,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래당사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涉外사법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해서 그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을 행위지로 보며, 그 청약을 받은 자가 승낙을 한 때에 그 청약의 발신지를 알지 못한 때에는 청약자의 주소지를 행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인 경우에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정한 법인 준거법이 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지법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전자계약에

자의 보호를위한 국제협약”(일명 ‘로마협약’)이 체결되었다. 내국민 대우를 원칙으로 하며 실연자의 녹음·녹화권, 방송권, 2차사용료청구권, 공연권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배포권 및 2차사용료 청구권 방송사업자의 녹음·녹화권, 동시방송중계권, 공중전달권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기준 설정에 관한 것이다.

보호기간은 음반 및 음반에 수록된 실연은 고정된 해의 연도말로부터 20년이며, 음반에 수록되지 않은 실연에 대해서는 실연이 행하여진 해의 연도말로부터 20년이다.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이 이루어진 해 연도말로부터 20년이다.

2002.1월 현재 68개국이 가입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있어서도 이러한 섭외사법의 규정된 행위지법에 따라 매도인의 주소지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전자서명

서명은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형식성 또는 사후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증거법상 필요에 따라 요구된다. 미국법상 계약체결시 서명을 필요로 한다는 법적 근거는 미국통일상법전의 사기방지법(ststute of frauds)의 규정이다.²⁰⁾ 이는 1677년에 제정된 영국의 사기방지법에서 연원한 것으로, 영국은 1950년에 이미 사기방지법을 폐지하였으나, 미국의 통일상법전에서는 여전히 계약의 방식으로 당사자의 서명을 규정하고 있다.

서명이라는 목적의 측면에서 보면 전자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의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을 채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전자서명법 제2조는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20) 【미국 통일상법전 제2-201조(형식의 요건 : 사기방지법)】

(1) 본조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이 없는 한, 가격이 500달러 이상인 물품의 매매계약은 당사자간에 체결될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하고, 강제가 요구된 상대방 또는 그 자가 수권한 대리인 또는 매개자에 의하여 서명된 서면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 또는 항변의 수단에 의하여 강제할 수 없다. 합의된 조항을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것만으로 서면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해당 서면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을 넘어 그 계약이 본조에 의하여 강제되지 않는다.

(2)~(3) (생략)

고유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서명의 법률적인 효력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존의 서명과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전자서명법 제3조는 공인인증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된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키로 생성하는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도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다른 법률에 그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라고 법적 유효성을 간주하고 있다.

UNCITRAL은 전자서명모델법을 마련하여 전자서명의 효력에 대한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며, 이는 미국, EU 및 아시아 등 각국의 전자서명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 전자계약에 관한 기술적인 요건이란 전자문서의 활용과 관계가 있다. 전자문서가 제3자에 의하여 위조나 변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전자문서의 보안문제는 암호 방법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전자서명과 본인 여부를 재확인하는 전자인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자서명은 서명한 메시지의 송신자 인증 및 서명된 문서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공개키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식이 사용되며 비밀키로 암호화를 함으로써 서명을 하고 이를 확인할 때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확인하게 된다.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전자서명을 한 문서를 송신하면 수신자는 전자서명에 사용된 작성자의 전자서명 생성기에 합치하는 전자서명 검증키를 이용하여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서명키는 전자서명 생성키와 이에 합치하는 전자서명 검증키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서명 생성키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이며, 전자서명 검증키는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의미한다. 특히 공개키인 전자서명 검증키에 비하여 전자서명 생성키의 안전한 관리는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인증을 위한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 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키를 보관해서는 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 생성키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가입자의 승낙없이 이를 운용하거나 유출해서도 안된다. 또한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생성키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센터에 지체없이 통보하여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6) 전자인증

전자서명을 통해 문서의 형식요건을 갖추었어도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전자인증이 필요하다. 국내 전자서명법은 인증에 관하여 전자서명 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 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무역에서의 거래당사자는 직접 대면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전자서명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것이다.

전자인증이 가지는 기능은 먼저 당사자 및 거래내용에 대한 확인기능이다. 즉, 거래의 중개 및 알선, 상대방의 신용, 기술력, 시스템 운용능력의 구비여부의 확인, 부정한 거래를 한 당사자에 대한 거래제한, 기업의 신용평가 등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다. 둘째, 기업업무의 전자적 처리 및 전자문서의 증거력 제고기능으로, 기업업무의 전자적 처리, 전자신청, 전자조달 또는 전자적 보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데이터의 송신이 지나는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셋째, 네트워크 감시기능으로 거래감시가 있다.

전자서명키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전자문서 이용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서 인증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인증기관에 관해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전자거래기본법은 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증기관은 신청에 따라 전자서명 사용자의 신원확인 기타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인증기관은 동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그리고 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공인인증기관은 전자문서 작성자의 신원 및 기타 거래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 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 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 및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부여받은 인증기관인 베리사인(VeriSign)에서는 전자인증서를 발급하기에 앞서 신청자의 신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다. 단순인증서에서는 등록자의 성명과 공개키를 연결하여 공개키를 통하여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며, 승인인증서에서는 등록자의 이름과 공개키뿐만 아니라 등록자의 주소, 나이, 가입단체에 대해서도 입증을 시켜준다. 이외에도 특정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거래인증서와 전자문서의 특정 작성시점을 입증시켜주는 위조 자체가 불가능한 디지털타임 스탬프가 첨부된 인증서가 있다.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는 가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가입자의 인증서 등을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10년동안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인인증기관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전자서명법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이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배상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고 있다.

한편 인증기관과 관련하여 국가간 상호인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국내에서도 인증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의 인증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간 상호인증에 관하여 독일의 전자서명법은 동일한 보안수준 또는 국제협약을 조건으로 EU회원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기관의 인증행위를 중심으로 규정된 절차적 규정이 대부분으로 전자서명의 효력이나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UNCITRAL에서도 전자인증에 대한 규제방식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증체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가간 상호인증의 문제는 개별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제적인 전자인증제의 구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관련 법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적 통일법으로 국제물품매매협약이 1980년 UN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1988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대한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6년에 전자상거래모델법이, 2001년에 전자서명모델법이 각각 공표되었으나, 이들은 단지 모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계가 있었다. 이에 UNCITRAL은 각국의 요청에 따라 전자거래를 규율할 전자계약협약을 성안하였고, UN은 이를 2005년 11월에 채택하였다.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각국의 법률은 그 나라의 관습과 전통을 반영하고 있어 각기 상이하다. 이에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은 익숙한 자국의 법규가

적용되기를 원하고, 결국 계약 체결시 당사자들은 당해 계약에서 적용되는 법규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또한 적용되는 법은 일국의 국내법이므로 국제거래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고, 그것이 외국법인 경우 동 외국법을 발견·확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적인 통일법인 국제물품매매협약 제정되었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전문의 수는 101개이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은 서두에 전문을 두고, 제1편(제1조~13조)에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며, 그 외 의사표시와 계약 및 협약의 해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편(제14조~24조)은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3편(제25~ 88조)은 당사자의 권리·의무(구제권 포함)와 위험부담, 면책, 물품의 보관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4편(제89조~101조)은 기본적으로 절차적 문제를 규정하나 그 외에도 각종의 유보선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은 그 적용대상을 국제매매로 한정하여 가급적 많은 나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수 있도록 하였다. 소유권 등의 물권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맡김으로써 각국 법률의 다양성을 존중하였다. 일단 성립된 계약은 그 효력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계약유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손해배상문제와 관련하여 불이행 당사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제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이 현대적 상인법(*lex mercatoria*)의 초석이 되며,

불확실한 국제사법규칙을 찾거나 재판관할권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국내법을 적용함에 따르는 어려움의 해소에도 적지 않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거래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적용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의 규정에는 그 제정 당시의 상황만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거래형태나 거래방식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에 의한 국제거래가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예상되는 법적 장애와 분쟁발생을 극복하기 위하여, UNCITRAL 산하에 작업반(working group)이 구성되었다.

1995년 제28차 UNCITRAL 총회에서 'EDI 및 관련 통신수단의 법적 측면에 관한 모델법 초안'이 작업반에 의해 마련되었고, 그 후 1996년 5월 제29차 UNCITRAL 총회에서 이 법안의 공식명칭을 「UNCITRAL 전자상거래법모델법」으로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명칭의 변경은 전자거래에 관한 포괄적 입법으로 오해받을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나, 본 모델법은 전자거래의 구성요소 중 EDI 및 그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다.²¹⁾

이 모델법은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문의 수는 모두 17개이다. 전자거래의 일반을 다루는 제1편은 총칙과 전자기록(data message)에 대한 법률요건의 적용 및 전자기록의 통신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

21) 남광, 「UNCITRAL과 전자상거래」(통상법률 제16호, 1997), 83면.

으며, 제2장은 특수한 부문의 전자거래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제2장은 현재 물품운송에 관한 하나의 장만을 두고 있으나, 이 법의 기초가 된 기술적·법적·상업적 발달에 따라 새로운 표준규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모델법의 제정은 기능적 동가력을 기초로 전통적 개념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을 취하더라도, 전자거래당사자들이 서면문서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의 기준이나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되므로, 이 모델법은 탄력성 있는 기준을 채용하여 전자문서가 그 요건을 충족하면 서면문서에 갈음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모델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은 모범법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각국에서 입법시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을 제시한 것으로, 그 자체로 국제거래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전자거래와 관련한 법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은 이 틀 속에서 자국의 기술적·경제적·문화적 환경에 맞는 상세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둘째, 이 모델법의 적용범위는 국제거래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각국은 입법단계에서 적용범위를 국제거래로 한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셋째, 이 모델법은 소비자의 보호나 정부기관이 관여되지 않은 순수한 상거래에만 적용되나, 전자거래의 특성상,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소비자인지 여부의 판별이나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부기관의 변별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넷째, 정보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없다. 즉, 그 요건이 충족되는 한 전자문서는 서면문서에 갈

음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다섯째, 전자문서가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모델법은 전통적인 서류방식의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섯째, 이 모델법의 적용대상은기본적으로 전자거래이나, 그 개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표준화된 형식의 EDI 외에도 전자우편을 통한 통신문의 전송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자유로운 형식의 전자문서 교환까지 포괄하는 광범한 용어를 채택하였다.

요컨대,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국제거래에서 종종 발생되고 있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고자 하는 본 모델법의 제정으로 그에 관한 효과적인 분쟁해결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

전자계약에서는 메시지의 원본과 사본을 구별할 수 없고, 수기(手記)의 서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데이터의 추적을 당하지 않고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기가 쉬워 사기(fraud)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거래에서 서면에 수기로 서명하던 방법을 대체할 대안으로 전자서명이 도입되었다.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이란 전자문서에 부착되거나(affixed) 논리적으로 결합된(logically associated)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한 그 사람의 승인을 나타낼 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1997년 제31차 UNCITRAL 작업반회의에 제출된 전자서명모델법 초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서명을 협약내에 모두 포괄할 수 없음에 따라 전자서명을 ‘디지털서

명'(digital signature)으로 규정하여 비대칭 암호체계만을 전제로 전자서명을 정의하였다. 전자서명은 비대칭 암호체제로 이루어진 공개키 암호화방식을 사용하는 '디지털서명'(digital signature)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자서명상 작성자로 기재된 자가 그 전자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작성내용이 송·수신과정에서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또한 작성자가 그 작성사실을 나중에 부인할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한다.

UNCITRAL은 1996년에 전술한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제정한 이후, 전자 거래에서 전자서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각국 법률간의 충돌을 막고자 전자서명에 관한 국제적 통일법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UNCITRAL 작업반은 1998년 1월에 제32차 회의부터 전자서명에 관한 통일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여, 1998년 6월에 UNCITRAL 작업반 제33차 회의에서 '전자서명통일규칙 초안(Draft Uniform Rules on Electronic Signatures)을 공포하였고, 2000년 9월에 UNCITRAL 작업반 제37차 회의에서 총 12조로 구성된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 초안 (Draft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2001년 7월에 UNCITRAL 제34차 회의에서 「전자서명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이 채택되었다.

전자서명모델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모델법의 전자서명은 모범전자상거래법 제7조의 서명요건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전자서명모델법의 형식은 단순한 지침으로서가 아니라 해설이 추가된 법률규정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모델법으로 채택되었다.²²⁾

둘째, 전자서명모델법은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중립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이 원칙에 따라 전자서명의 개념을 넓게 정하였다.

셋째, 전자서명은 그 개념이 넓게 정의됨에 따라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상의 객관적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넷째, 인증기관(인증서비스제공자: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가입자(서명자: signatory), 이용자(신뢰하는 자: relying party)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

다섯째, 외국에서 생성되거나 사용되는 전자서명 또는 외국에서 발행된 인증서라도 그것이 국내에서 생성 혹은 사용되는 전자서명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인증서와 실질적으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률효과를 동등한 것으로 한다.

이러한 모델법의 제정으로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자서명이 실제 국제거래에서 법적으로 통용되기 위하여는 앞으로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인증기관과 관련한 문제로, 인증서를 믿고 거래한 당사자가 인증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유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가 하는 인증기관의 책임문제,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당해 국가에서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국내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인증기관이 정부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인(허가)을 받아야만 설립·활동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기업도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수많은 법률적 논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예컨대, 수수료의 막대한 이익)도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2) 정완용, 「개정 전자서명의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제10권 4호, 2003), 3면.

둘째, 국제간·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의 문제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적인 표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물론, 이러한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02년 3월에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정보통신부로부터 무역유관분야의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 국내의 전자무역, 전자통관, 전자물류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또한 국제거래를 위해 PAA(Pan Asian e-commerce Alliance: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 연동), e-트레이드 허브 프로젝트(한일 무역망 연동), e-AMP(e-Asia Market Place) 등의 국제간 상호연동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PAA는 한국과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동아시아 지역의 전자무역사업자들이 무역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정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여 서류 없는 무역의 실현을 목표로 창설한 협의체로, 2002년 4월부터 전자서명공인인증서가 상호 인정되어,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중국을 제외한 6국의 회원사간 공인인증서를 상호연동하고 있다.²³⁾

(4) UNCITRAL 전자계약협약

1) 제정배경

국제거래에 있어 EDI나 인터넷을 비롯한 전자적 정보통신수단의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제물품매매협약 등 기존의 국제거래관련 협약들만으로는 그 규율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3) 이영수·권순국, 「전자무역실무」 (문영사, 2005), 415~428면.

전자적 환경하에서 적용이 가능한 법규범이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전술한 1996년의 전자상거래모델법과 2001년의 전자서명모델법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델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국제적인 통일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UNCITRAL에서는 전자계약협약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0년에 제정된 국제물품매매협약을 근간으로 하되 1996년 전자상거래모델법과 2001년의 전자서명모델법을 반영하고,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EU Directive for Electronic Commerce) 및 전자서명지침(EU Directive for Electronic Signature),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과 캐나다의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등의 관련규정을 일부 참고하였다.

2) 제정 과정²⁴⁾

2001년 UNCITRAL 제34차 회의에서 전자계약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UNCITRAL 산하 전자상거래작업반 (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이하 ‘작업반’이라 한다) 제38차 회의에서 ‘전자기록에 의해 체결되거나 입증되는 국제계약에 관한 협약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ntract Concluded or Evidenced by Data Messages: 이하 ‘예비초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2002년 3월에 뉴욕에서 개최된 작업반 제39차 회

24) 오세창, 「전자계약 예비협약초안에 대한 개정방향의 문제점과 대안」 (국제상학 제 18권 제2호, 2003) ; 정재우,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 상의 계약 법리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4권 제2호, 2003);

의에서 예비초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국제거래에서 전자통신의 사용에 관한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을 채택 하였으며, 2004년 10월에 개최된 UNCITRAL 제44차 작업반회의에서 협약초안의 실질적 내용을 타결지었다. 그리고 2005년 7월에 개최된 UNCITRAL 제38차 회의에서 협약으로 채택되었고, 결국 제60차 UN총회에 상정되어 「국제계약에서 전자통신의 사용에 관한 협약」이 탄생하였다. 이로써 전자적 방식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전자계약협약이 마련된 것이다.

3) 특징

전자계약협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계약협약은 전통적으로 대별되는 물품계약과 서비스계약을 모두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국제계약은 전통적인 물품매매계약에서 취급하는 유형재인 물품을 포함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재, 나아가 금융거래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포괄적이다. 이렇게 그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있는 것은 국제물품매매협약과의 큰 차이점이다.

둘째, 전자계약협약은 계약의 형식을 가리지 않는다. 전자계약협약은 당해 계약이 매매계약인지 리스계약인지 채권양도계약인지, 보증계약인지 또는 신용장계약인지 등을 묻지 않고 그것이 국제계약인 한 적용된다.

셋째, 전자계약협약은 기존의 계약법을 지원·보완하며, 병존하는 규범

이다. 즉, 전자계약협약은 기존의 계약법제를 기초로 그 위에서 신생하여 병존하는 규범이다. 전자계약협약은 계약의 새로운 성립규칙이나 권리의무규칙 자체를 신설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당해 계약의 성립여부와 또는 당해 계약하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관계 문제는 전자계약협약이 제정·발효된 후에도 여전히 동 계약에 적용될 기존의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 전자계약협약은 전자통신을 사용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실이나 관념을 통지 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범인 것이다.

넷째, 전자계약협약은 계약의 전과정에 두루 적용되며, 당해 전자통신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혹은 계약의 어느 단계에서 사용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전자기록은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단계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계약체결을 위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 즉 청약이나 승낙을 행하는 단계에서 사용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의사표시를 행하거나, 상대방이 계약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구제권의 행사를 위한 전단계의 조치로도 사용될 수 있고, 구제권 행사의 일환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4) 적용범위

국제협약이 당해 계약에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적용요건과 지리적 적용요건 및 시간적 적용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실질적 적용요건은 양당사자의 영업소가 소재하는 국가가 체약국인지 여부, 계약의 성격과 형태, 거래의 대상 등에 관한 문제이고, 지리적 적용요건은 계약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²⁵⁾ 시간적 적용요건은 협약이 당해 거래에 적용가능해지는 시점에 관한 문제이다.

① 실질적 요건

전자계약(electronic contracting)이란 전술하였듯이 계약체결의 전과정 또는 일부가 정보통신과 같은 각종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도 적용되는 전자계약협약은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에 의한 당사자간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자계약협약은 물품의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서비스 계약이나 지적재산권계약 등과 같은 무체물에 관한 계약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거래를 규율하는 국제적 통일법을 제정하고자 의도하였으나, 그 효용성과 적용상의 이유로 일부 거래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첫째, "개인, 가족 또는 가사의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이른바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제외는 국제물품매매협약과 전자상거래모델법의 취지에 따라 상업적 목적에 한한 거래에만 본 협약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는 소비자거래는 배제하면서도 "매도인이 계약체결전이나 계약체결시에 물품이 이러한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알았어야 하지도 않았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두어 소비자거래에도 적용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것은 국제물품매매협약 제정 당시의 국제거래상 소비자거래는 극히 드

25) 오원석, 「국제전자계약 준비초안의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 연구」(통상정보연구 제4권 제2호, 2002), 4면.

물었기 때문에, 이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나, 전자계약협약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그 편리성 때문에 개인 소비자들도 국제거래에 개입하는 기회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적 거래의 특성으로 인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의 구매목적에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다. 따라서 이들의 거래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조에서 상업적 목적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본 협약은 모범전자상거래법의 적용범위를 그대로 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관련 거래를 제한적으로 적용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통제된 환거래, 외환거래, 은행간 지급결제계약, 중개자를 통한 담보권 이전계약에 대해서는 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적용배제의 초기의도는 "규제를 받는 환거래"(transaction on a regulated exchange)의 경우 별도의 표준약관과 관행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증권거래나 은행거래 등의 금융거래가 국제적으로 널리 활성화됨에 따라, 이들 전체를 협약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적정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제44차 작업반회의에서 배제범위를 한정하게 되었다.

셋째, 환어음이나 약속어음, 운송증권, 선하증권, 창고증권 기타 소지인이나 수익자에게 물품인도나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가능한 증권은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였다.

이 규정은 제정과정에서 이들 유가증권과 운송증권의 무결성 담보 및 현출가능성과 관련하여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으나 UNCITRAL 운송법작업반에서 현재 논의중인 이른바 '新해상물품운송 협약'에서 양도가

능전자기록 (negotiable electronic record)의 유가증권대체기능을 규정하는 등 국제적인 추세와 일부 거래에서 전자선하증권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제외범위를 축소시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상당부분이 디지털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등의 무체물 사용계약은 물론 법률이나 회계 컨설팅과 같은 분야의 서비스계약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상당부분이 지적재산권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임에 따라, 전자계약협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존치되던 지적재산권 제외 조항은 삭제되었다. 2004년 제43차 작업반회의까지 본 조항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2005년 제44차 작업반회의에서 본 조항은 최종 배제하도록 결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치되던 부동산 관련 권리이전 계약이나 친족·상속관련 계약 역시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실제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제조항이 삭제되었다.

② 지리적 요건

"서로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당사자간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하여 전자통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는 전자계약협약 제1조에서는 당사자가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당사자간의 교섭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당시나 그 이전에 당사자에 의해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본 협약은 '국제거래'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계약협약 제1조는 당사자가 영업소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업소(place of business)란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일시적 제공을 하는 활동 이외의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일시적이지 않은 시설을 두어 운영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당사자의 영업소와 관련하여서는 전자계약협약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데, 당사자의 영업소는 당사자가 표시한 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래의 예비초안은 당사자에게 영업소의 지리적 위치표시를 ‘의무’로서 규정하였으나, 이를 확인하거나 규제할 방법이 적절하지 않고 또한 국제거래는 당사자 상호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추정주의원칙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추정주의는 당해 계약의 국제성 여부의 판단에 확정적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적용될 법률의 확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자계약협약 제6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영업소를 표시하지 않았고 또한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소는 계약체결 당시나 그 이전에 당사자들에게 알려졌거나 그들에 의하여 예기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곳이 당사자의 영업소임을 밝히고 있다.

전자계약협약 제6조 제3항에서는 자연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habitual residence)²⁶⁾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업소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영업소와 관계없는 장소에 영업에 필요한 장비를 비치하거나, 관련 업체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대부분의 가상기업(virtual company)들이 영업소를 굳이

26) 거소(居所)란 거주하는 처소나 거처를 뜻하는 것으로, 생활의 본거지가 아닌 다만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상거소(常居所)는 상시 머물러 있는 곳을 뜻한다.

취할 필요가 없고, 또한 이들이 수적으로 급증하면서 이를 전자계약협약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동조 제4항에서는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사용된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장비와 기술이 소재하는 장소 또는 정보시스템이 상대방에 의해 접속될 수 있는 장소는 영업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종래의 예비초안은 "다만, 법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예외적으로 가상기업들의 정보시스템이나 기술장치의 위치로 영업소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상기업들은 그들의 상거소와 정보시스템의 위치가 동일한 국가 내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국가에서 당사자 없이 전자계약협약의 규제를 이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제44차 작업반회의에서는 이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다.

동조 제5항은 당사자가 특정 국가와 연결된 도메인이름이나 전자우편주소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영업소가 그 국가에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메인이름과 그 기업의 영업소 소재지가 항상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전자계약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영업소 혹은 그들의 상거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때 그 소재지를 확정함에 있어 가상기업의 정보시스템 위치나 도메인이름 등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시간적 요건

이 협약은 해당 체약국에서 전자계약협약이 발효한 일자 이후에 행하여지는 전자통신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즉, 본 협약은 소급하여 적용

되지 않는 것이다.

전자통신은 계약의 체결단계에서는 물론 이행(혹은 종료) 단계에서도 행하여질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계약에서도 일부의 전자통신에 대해서는 전자계약협약이 적용되고, 다른 일부의 전자통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당 계약국에서 전자계약협약이 발효하기 전에 전자통신으로 청약·승낙을 하여 계약이 성립되었고 그 후 이 협약이 발효한 후에 매수인이 전자통신으로 물품의 하자통지를 하는 경우, 청약·승낙은 본 협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나, 하자통지는 본 협약의 혜택을 받는다.

Ⅲ.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주요내용

1. 전자계약협약의 제정 목적

국제적인 무역거래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국제물품 매매협약과 같은 국제거래에 관련된 협약을 전자계약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전자적 환경에 알맞게 법적인 장애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²⁷⁾ 그리고 UNCITRAL에서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한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모델법은 모델법의 한계로 인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협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거나,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채택한 국가들에서도 전자상거래를 반영하지 않은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의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협약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유용한 수단으로 판단하게 되었다.²⁸⁾ 따라서 UNCITRAL은 전자적 환경하에 있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계약협약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는 전자계약은 전통적인 서면계약과 기본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대부분의 문제는 기존의 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전자거래 관련 경험 및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협약 제정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우선 지침, 모델 계약조항, 표준화된 계약관행 등의 형태로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

27) 최석범,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예비초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중재 제308호, 2003), 2면

28) Gregory, J. D., 「The Proposed UNCITRAL Convention on Electronic Contracts」(The Business Lawyer; Vol.59, 2003), p.317

람직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ICC는 "2004 전자계약약관 (E-Terms 2004)"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계약체결,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된 모델조항을 제시하였다.²⁹⁾ 그리고 기존의 국제물품매매협약과 전자계약협약간의 이중규범의 문제로 인한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용의 혼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ICC의 노력과 UNCITRAL의 전자계약협약의 제정 작업은 동시에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국제상거래의 전자적인 환경하에서 국제협약에 존재하는 법적 장애를 제거하고, 서면계약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협약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전자계약협약의 제정작업이 유용하다는 입장에서 UNCITRAL은 전자계약협약의 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 전자계약협약의 심의과정³⁰⁾

(1) 검토단계

2000년 6월 7일에서 7월 17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제33차 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앞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로써 첫째, 국제연합 동산매매협약과 관련한 전자계약, 둘째, 온라인 분쟁해결제도, 셋째, 운송분야에 있어서 전자식 유가증권문제 및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양도의 문제를 설정하였다.³¹⁾

위원회는 이러한 제의를 환영하고, 진행 중이던 전자서명모델법이 작

29)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6), 419~420면

30) 오세창, 「유엔전자협약의제정과정과 이해」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6), 37~54면

31) 정완용,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초안의 법적 고찰」 (제3회 법률가대회, 2002), 554면

업반에 의해 완성되면, 3가지 의제의 전부 또는 일부와 기타 추가 제의들을 2001년 6월 24일에서 7월 13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될 34차 위원회에서 장래 제정 작업을 위한 보다 특수한 제의들을 할 수 있도록 2001년 3월 12일에서 23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작업반 38차 회의에서 작업반이 검토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작업반은 전자계약의 체결, 온라인 분쟁해결, 특히 운송산업에 있어 권리증권의 전자화 등 3가지 의제들에 대한 통일법 제정 가능성과 해당 내용들에 대한 예비토의와 관련 의제들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작업반은 2001년 3월 12일에서 23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38차 회의에서 기존의 국제협약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협약 제정의 가능성, 권리증권의 전자화에 따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협약 제정의 가능성, 전자계약 체결에 따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협약제정의 가능성 등에 관한 일련의 문건에 근거하여 의제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작업반은 전자계약 체결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광범위한 토의를 하고 작업반의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 전자계약 체결에 따르는 특수한 문제점들을 취급하는 국제협약의 준비를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함을 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작업반에 의해 검토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타 의제들에 관해 필요한 연구의 준비를 사무국에 위임할 것을 위원회에 권고하였다.

첫째,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기존의 국제협약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의 포괄적 조사, 둘째로 유형재의 담보권 이전이나 창출의 행위기록을 공고 및 보관하기 위해 전자수단과 기구의 권리(특히 유형재의 권리) 이전과 관련한 문제들의 심도 있는 연구, 셋째로 온라인 중재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이들 규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l Conventional Arbitration : MLICA)과 UNCITRAL 중재규칙을 검토하는 연구이다.

2001년 6월 25일에서 7월 13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34차 위원회에서는 전자계약 체결상의 문제들을 취급할 새로운 국제협약의 준비와 기존의 통일법과 무역협정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장애 제거를 위한 적절한 방법의 모색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기존 국제협약하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의 제거를 목적으로 전자계약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의 제정을 위한 준비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것을 결정하였다.

(2) 잠정초안

2002년 3월 11일에서 15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39차 작업반 회의에서 작업반은 전자계약 체결에 관해 주요한 문제들을 검토한 사무국의 문건³²⁾을 처음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 문건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ICC에 설치된 특별전문위원회에 의해 2001년 12월 5일자로 작성된 논평을 전달받아 사무국이 작성한 문건을 작업반은 검토하였다.

이러한 양 문건의 검토를 통해 예비협약초안의 형식과 적용영역, 그리고 기본원칙들을 중심으로 제1조(적용영역)를 제일 먼저 검토한 후 당사자들의 위치에 관한 규정인 제7조(당사자들의 위치)와 제3장(계약성립)을 검토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협약초안 규정 가운데 협약초안의

32) “데이터 메시지를 통해 체결되거나 입증되는 [국제]계약에 관한 예비협약 초안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Int'l] Contracts Concluded or Evidenced by Data Messages)”로 이름이 붙여진 잠정예비협약초안과 함께 초안배경을 설명한 문건이다.

적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제외규정들인 제2조(적용의 제외)와 제3조(협약이 관여하지 아니하는 문제), 제4조(당사자 자치의 원칙)를 위시하여, 총칙에 해당하는 제5조(정의)와 제6조(해석원칙)의 토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작업반은 당사자들의 위치에 관한 문제들을 취급하고 있는 제7조(당사자들의 위치)와 제14조(당사자들의 제공해야 할 일반정보)를 먼저 취급하므로 심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조, 제7조 제14조의 예비검토가 끝난 후 제8조(계약 성립시기), 제9조(청약의 유인), 제10조(계약서어렵에 있어 데이터 메시지의 사용), 제11조(데이터 메시지의발신과 수신)의 시기와 장소), 제12조(자동화거래), 제13조(형식요건)와 같은 계약 성립과 관련이 있는 규정들을 계속해서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계약 성립과 관련 있는 제15조(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의 토의를 함으로 예비협약초안의 1차 심의를 종결하였다.

1차 심의 종결 후 작업반을 예비협약초안의 적용범위를 취급하고 있는 제2조, 제3조, 제4조 그리고 총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와 제6조를 다음 회의인 40차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한 후, 제39차 회의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들을 근거로 사무국에 예비협약초안의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요청하였다.

40차 회의에서 작업반은 기존 무역과 관련한 협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와 관련한 조사와 관련하여 사무국이 준비한 경과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특히 작업반은 사무총장에게 위임한 수많은 다국적 조약들 가운데 사무국이 조사대상이 되는 무역관련 협약을 확인하고 검토를 통해 그러한 작업을 시작한 것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경과보고서에 의하면 사무국의 다국적 조약들 가

운데 33개 조약들이 조사대상이 됨을 확인하고, 이러한 협약들 하에서 전자통신수단의 사용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33개 협약들과 관련하여 사무국에 의해 이루어진 예비적 결론은 사무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문건에 설명되어 있다.

작업반은 조사와 관련하여 사무국이 작성한 경과보고서를 주목하였으나, 동 보고서상의 예비적 결론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작업반은 조사에 응한 회원국 및 옵저버 국가들의 의견과 경과보고서상에서 지적하고 있는 예비적 결론을 검토하고, 다음 회의 때에 작업반에 의한 검토를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작업반은 국제기구들이 사무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사대상에 포함되길 원할 정도로 국제기구들이나 이들의 회원국이 이들과 관련하여 수탁자로서 행동하고 있는 국제무역협약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유엔의 기구들과 기타 정부간 기구들을 포함한 기타 국제기구들의 의견들을 모색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하였다.

상기와 같은 작업반의 회의결과 보고서에 따라 2002년 6월 17일 내에서 28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제35차 위원회에서 작업반의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전자계약 체결에 따르는 특수한 문제들을 다루는 국제협약이 국제상거래에 사용되는 현대 통신수단의 사용을 촉진하는 데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재확인하였다. 39차 작업반 회의와 35차 위원회에 제시된 보고서는 전자협약 제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제전자협약의 제정작업을 작업반에게 위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새로이 제정될 전자협약의 형식과 적용영역, 기본원칙 그리고 특징 등에 관해 작업반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하여 역시 주목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금후 작업반의 검토가 전자계약에 한

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상거래 계약협상에 사용되는 통신수단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상거래계약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의에 특히 주목하였다. 이에 반해 작업반의 예비초안에 대한 ICC내의 특별위원회 보고서는 전자통신을 통해 체결되는 계약은 기타통신수단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과는 되도록 다르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설문응답자의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따라서 작업반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과 옵저버 국가들이 이러한 협약의 제정방향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협의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이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작업반으로 하여금 2003년 5월 5일에서 9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될 41차 회의까지 전자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국제전자협약의 제정가능성에 대한 토의를 연기할 것을 제시하였다.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40차 작업반회의는 39차 회의의 합의에 따라 잠정초안 가운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만을 토의하였다. 39차, 40차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과 사무국이 개정한 1차 수정안을 중심으로 41차 회의에서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본격적인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1차 수정안의 토의를 재개하였다.

35차 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국제무역과 관련한 국제협약들의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법적 장애 가능성에 관한 작업반과 사무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2002년 10월 14일에서 18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40차 회의에서 사무국의 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다양한 문제들의 실질적인 토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것을 작업반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40차 회의 때 작업반은 국제무역과 관련이 있는 국제협약 하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에 대한 사무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범주 안에 기존의 무역법규가 해당한다는 예비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동 보고서 가운데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동 거래와 관련이 있어 법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국제물품매매의 소멸시효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l Sale of Goods), 국제물품매매협약에 대해 집중 토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기존무역법규의 대부분은 전자상거래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전자상거래에 따른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

둘째, 전자와 동등이라는 단순한 원칙에 의해 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제기한다.

셋째, 위원회 작업영역 밖인 거래정책 성격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특히 40차 회의 때 작업반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사무국이 제출한 문건 가운데 하나인 국제무역과 관련이 있는 기존국제협약 하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에 대한 사무국의 조사보고서를 재검토하고, 사무국에 의해 이루어진 분석에 대하여 동의하고 권고안을 승인하였다.³³⁾ 동 회의에서 작업반은 현재 사무국에 주어진 업무에 대한 부담 가능성을 고려한 후 기타 국제기구들이 국제무역과 관련이 있는 기존 국제협약 하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에 대한 사무국의 조사 보고서에 포함되길 원하는 추가 국제협약 하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를 검토한 후, 이러한 기타 국제기구들과 함께 필요한 연구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조사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제안들을 사무국이 다룰 것을 권고

33)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40차 회의 심의내용이자 2003년 6월 30일에서 7월 18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36차 위원회의 보고서인 문건상의 “국제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장애”라는 제목 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작업반은 무역관련 기타 국제협약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특수 취급분야에 관하여 적절한 전문가나 정보를 확인하는 등 회원국이 사무국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작업반은 예비협약초안 가운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 관한 심의를 하였다.

(3) 1차 수정안

35차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전자협약초안의 제정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를 연기해 오던 중 2003년 5월 5일에서 9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41차 회의에서 작업반은 1차수정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에 대한 본격적인 토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동 회의에서 작업반은 ICC 내에 설치된 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작업반이 추진해오고 있는 협약초안의 적용영역과 목적에 대한 의견을 담은 문건을 주목하였다. 동 논평들은 기업경영에 초점을 둔 자유규정을 제공하고 있는 ICC의 역할, 전자계약체결협약의 적용범위와 형식, 전자계약 체결에 관해 ICC가 할 수 있는 일, ICC가 제정예정인 전자협약초안과 관련이 있는 자율규정 제정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내용들은 주로 작업반이 하고 있는 전자협약초안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작업반에 의한 전자협약초안 작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ICC의 논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잠정협약초안에 대한 논평은 다음과 같다.

"계약자유와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협약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협약에 대한 기업의 신뢰확인을 위해, 협약 상에 매우 강조되어야 한다.

협약은 전자계약 전용인가 아니면 일반상거래 전용인가를 분명히 해

야 한다.

전자계약 규정의 제정시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제정해야 한다.

국제물품매매협약과 전자계약을 위한 협약과의 상호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새로운 협약은 물품매매영역 밖의 거래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적절하나 국제물품매매협약과 같이 소비자 거래의 제외는 바람직하며, 지적소유권거래에의 적용여부는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협약의 국내외거래의 적용여부는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위치(장소)의 확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법적원칙의 채용이 필요하다.

계약성립에 관한 실질적인 법적 문제에 관해 계약 체결, 조건 삽입, 착각 그리고 입력오류 분야에 상호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새로운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초안의 진척에 따라 새로운 협약초안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평을 제공할 것을 희망한다."

1차 수정안에 대한 논평은 다음과 같다.

전자계약협약의 적용범위와 형식과 관련하여 제정방향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 주의 깊은 접근을 하라.
- 2) 기존의 계약체결체계와 전자계약체결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상을 기업계에 주지 않도록 하라.
- 3) 모든 기업에 유용하고,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협약제정이 되도록 하라.

4) 다양한 고객과 시시로 변하는 전자환경하에서도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간격매우기법(gap-filler)의 역할을 하는 협약이어야 한다.

5) 무역법위원회의 전통적인 통일국제사법제정취지 방향과 일치하도록 제정하다.

예비협약초안에 대하여 실현 불가능 사유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는 실질적이면서 특수한 문제의 해결차원의 규정은 취급하지 아니하고 논의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에 얽매이고 있다.

둘째, 제정에서 효력발생시까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였던 기존의 국제협약과 달리 초안단계에 충분한 시간 없이 초안했다. 이는 주의 깊은 접근을 방해할 수 있는 졸속초안이 되기 쉬우며, 비준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셋째, 협약내의 특수규정들이 경우에 따라선 전자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예상치 못하나 얼마든지 금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전자환경을 감안할 때 완벽한 규정을 만들 수 없지만 그래도 기업이 당면한 또는 당면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약이 되기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국제기업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초안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정하되 기존의 물품매매협약의 전자화에 대비하여 제정된 전자상거래모델법과 국제물품매매협약을 근간으로 제정된 것이 전자계약을 위한 예비협약초안이다. 그렇다면 양

법에서도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러면서 현상거래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off”거래를 “on”거래로의 전환에 대비한 규정을 제정하되 가능하다면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 : UCP)과 함께 사용하도록 제정된 e-UCP와 같이 국제물품매매협약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시대에 대비하면서도, 국제물품매매협약을 보완하는 e-CISG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³⁴⁾

끝으로 ICC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전자계약체결과 관련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자율규정 제정의사를 밝히고, 제정방향과 현재의 진행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시급한 전자계약의 당면 문제의 예로 다음 사실을 들고 있다.

전자계약의 경우 정확한 협약의 수신시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자환경 하에선 메시지가 수신인에게 도착하는 시기가 항상 정확하게 분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비협약초안의 경우 제11조를 통해 수신 시기 또는 발신 시기는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뿐만 아니라 승낙 등을 포함하여 정확한 수신시점과 발신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전자계약의 경우 정확한 수신 및 발신시점이 전자상거래에 고유한 오류나 변경 등과 같은 문제들이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신된 시기 또는 송신된 시기에 관한 원칙의 규정이 매우 중요하다.³⁵⁾

그리고 통지의 형식요건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면거래시와 달리 전자계약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신방법의 다양성으로 인

34) 오세창, 「전자계약 성립에 관한 연구」(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2002), 12~18면

35) 오세창, 「전자계약에 관한 예비협약초안상의 문제점과 대안」(무역학회지 제28권 제1호, 2003), 182면

하여 송신, 수신 등의 확인여부를 두고 논란의 소지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거래의 착각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착각에 대한 수정 내지 정정의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로서는 이상에서 당면하고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들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³⁶⁾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기술의 사용에 따라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실질문제에 관해 국제상거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청취, 규정의 형식에 관한 의견청취, 기업인들과 회의, 회의결론을 작업반에 보고한다.

자율규정의 제정내용은 전자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안내내용, 통일전자계약의 관습과 관행, 모델계약 등으로 초안할 수 있다.³⁷⁾

셋째로, ICC의 전자에 관한 자율규정을 제정할 경우 장점으로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보다 신속하게 완성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에 보다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다.³⁸⁾

자율규정은 보다 융통성 있게 사용될 수 있다.³⁹⁾

자율규정들은 특정문제들이 특정규정과 관련해서 발생된다면 보다 신속하게 수정될 수 있다.⁴⁰⁾

36) 예컨대 ICC 모델 국제매매계약(The ICC Model Int'l Sales Contracts : MISC)에 대칭되는 e-MISC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한다.

37) 예컨대 “off”거래에 대비한 MISC의 내용을 물품매매 이외의 영역을 포함할 수 있게 약간 수정하고 이러한 모델의 사용과 함께 전자화에 대비한 e-MISC가 바람직할 수 있다.

38) 보통 협약과 달리 ICC의 자율규정은 길어도 10년 짧으면 몇 년 내에 제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는 이미 기업들이 당면한 요구를 각국의 여론수렴을 통해 수렴하고, 이를 기업관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규정하는 것이 그 이유일 수 있다.

39) 예컨대 규정자체가 협약과 달리 자율규정에 따른 당사자 자치의 원칙의 적용이 그 이유일 수 있다.

40) 상인들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규정이고, 근본적으로 자율규정이기에 채용여부는

넷째, ICC는 규정과정에서 작업반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자율규정 공표 후에 작업반이 협약이나 이와 다른 형태의 법적장치가 추가적인 문제들을 규정하기 위해 바람직함을 느낀다면, ICC 주도의 자율규정에 관해 이루어진 평가가 협약의 적절한 적용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⁴¹⁾

다섯째, ICC는 1차 협약초안 때의 소견과는 달리 예비협약초안 실패의 원인제시와 구체적인 자율규정의 제정의사를 밝히고 있는 바, 이는 구체적으로 별 호응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견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 1차 예비협약초안에 대한 1차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별 반응이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자율규정의 신속한 제정의 필요성의 대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

작업반은 동 문건에 대하여 국제협약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반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ICC와 같은 사적 영역의 대표적인 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후 1차 수정안에 제1조에서 제11조까지의 규정에 관해 심의결정이 이루어졌는바, 그 심의 결정의 내용이 41차 작업회의 보고서에 반영되었다.

특히 동 회의에서 작업반 40차 회의 시 때 잠정초안 적용제외에 관한 제2조 제b호와 관련하여 동 규정상에 초안되어 있는 지적소유권 제외와 이와 관련한 국제지적소유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와 비정부조직으로 일종의 시민권리기구인 NGO와 같은 다양한 기구와의 의견교환 필요성 결정에 따라 작업반은 본회

당사자들에게 전적으로 좌우되기에 신속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

41) 작업반과 관계없이 ICC가 자체적으로 전자계약과 관련해서 자율규정의 제정의 천명과 이 경우 자율규정과 작업반 제정의 협약과의 관계는 마치 상호보완관계이나 상호 특이한 역할을 하는 Incoterms와 국제물품매매협약의 관계처럼 양자의 관계가 성립될길 희망하고 있다.

의에서 “라이싱 계약”에 관한 협약초안으로부터의 제외문제를 두고 예비적 토의를 하였다. 작업반은 국제기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적소유권 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데이터 메시지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협약초안의 적용영역에서 지적소유권인 라이싱 계약과 관련한 계약을 포함하는 것이 지적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간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WIPO와 WTO와 같은 전자협약초안규정과 관련이 있는 국제기구들의 특별한 조언을 모색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작업반은 협약초안에서 이러한 계약에의 적용제외 필요성의 여부가 협약초안의 실질적인 적용영역에 궁극적으로 좌우되어야 함에 합의하였다.

작업반 41차 회의 심의 내용이자 36차 위원회 보고서인 문건에 근거하여 2003년 6월 30일에서 7월 11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36차 위원회는 국제무역관련 국제협약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법적 장애에 관한 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사무국에 의해 그간에 이루어진 경과보고서를 주목하고 이러한 작업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한 작업반과 사무국의 노력에 대한 지원의 중용성에 대하여 확신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동 회의에서 위원회는 현재의 사무국에 주어진 부담의 가능성을 고려한 후, 이미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기타 국제기구들이 국제무역과 관련이 있는 기존 국제협약하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에 대한 사무국의 조사보고서에 포함되길 원하는 추가 국제협약 하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타 국제기구들과 함께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조사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을 권고한 작업반의 권고를 주목하고 위원회는

무역관련 기타 국제협약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특수취급분야에 관하여 적절한 전문가나 정보를 확인하여 주므로 사무국이 수행하는 업무에 사무국을 지원하도록 모든 회원국에게 작업반과 마찬가지로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전자계약체결과 관련한 주요한 문제점을 취급하는 예비협약초안의 지속적인 검토가 작업반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면서 국경을 넘은 상거래에 있어 현대 통신수단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용하게 기여할 것이라는 자체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작업의 전제로서 지금까지 작업반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급하였으나, 작업반의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새로 제정될 협약을 위한 또 다른 형식의 선택가능성을 작업반이 배제하지 아니한 사실, 즉 협약의 형식과 적용범위, 협약의 주요한 원칙, 그리고 협약의 주요한 특징에 관해 작업반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사실을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작업반 41차 회의시 작업반이 예비협약초안과 국제무역에 관한 기존의 국제협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장애를 제거하려는 작업반의 노력 간의 상호관계, 즉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기존국제무역법규의 전자상거래의 적용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방식의 문제가 전자협약의 적용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면 동일한 거래의 이중법적용의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러한 작업반의 상호연계와 관련한 의견교환에 따라 전자통신의 사용에 따른 법적 인정에 초점을 두고 광범위한 국제거래에 적용할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당장 급증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뒷받침하고, 기존 국제무역법규 하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

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라는 두 개의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전자계약 체결에 관한 독자적인 협약초안과 기존 국제협약 하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를 제거하는 포괄적 협약(omnibus)을 각각 제정하려던 두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한 협약, 즉 새로 제정하는 협약초안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지에 관한 작업반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동 회의 시 때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미 위에서 언급한대로 지적 소유권이 협약초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지 여부의 문제에 관해 예비토의를 작업반이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41차 작업반 회의시 작업반이 국제물품매매협약과 같은 기존의 협약을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경우 있을 수 있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정도에 따라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시의 있을 수 있는 모순의 원인이 되는 문제, 즉 그러한 기반을 구축하는 정도에 따라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소위 가상물품이나 디지털물품과 관련한 거래에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설명하기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보고서 가운데 가상물품과 관련한 내용을 통해 작업반의 작업이 가상물품(virtual goods)과 관련한 거래에 대비한 실체법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가상물품이 국제물품매매협약에 의해 취급되어지고 있는지 여부 또는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취급되어지고 있거나, 취급되어야 할 경우, 어느 정도 취급되고 있거나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서도 아니된다는 작업반의 생각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가상물품들과 관련해서 작업반이 해야 하는 일은 국제물품매매협약과 같은 기존의 협약을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경우 있을 수 있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정도에 따라 예비협약 초안과 관련해서 검토되어야 할 전자계약체결에 대한

규정들이 지적소유권의 라이싱과 관련한 거래와 이와 유사한 거래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적용될 수 있을 경우 적용정도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예비협약초안상에 지적소유권의 라이싱과 관련한 계약도 포함하는 것이 지적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기존재하고 있는 규정들을 부정적으로 간섭하는지에 관해서 기타국제기구 특히 WIPO의 의견을 모색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하였다.

(4) 2차 수정안

2003년 11월 17일에서 21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작업반 42차 회의에서 작업반은 예비협약초안의 적용범위, 즉 사무국이 준비한 2차 수정안 문건상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2차 수정안 가운데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인정 규정인 제8조에서 계약조건의 접속 가능성 규정인 제15조까지의 심의를 시작하였다. 동 회의에서 작업반은 특별히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에 관해 잠정적으로 “eTerms 2004”라 불리는 계약규정과 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ICC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사실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작업반은 국제협약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반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안 작업을 유용하게 보완할 것으로 생각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적문제들에 관해 계약규정과 안내서의 역할을 할 규정의 제정을 ICC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환영하였다.

특히 작업반은 작업반이 수행하고 있는 협약초안 작업과 ICC내의 특별위원회가 제정하려는 eTerms 2004와 같은 계약규정이나 자율적 표준에 의해 극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업반은 위원회와 협력

하여 보완적인 작업을 수행하려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ICC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ICC가 준비하려 하고 있는 eTerms 2004초안에 관해 논평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실 ICC 내의 특별작업반에 의해 1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적문제에 관해 계약규정과 지침서의 역할을 하게 될 문건이 “ICC eTerms 2004, ICC Guide to electronic contracting”이라는 문건으로 2004년 7월 30일자로 제정 발표되어 44차 작업반 회의에 제출되었다.

사무국은 동 회의를 위해 특별히 42차 작업반회의 때 당사자들의 영업장소와 관련한 규정인 제7조를 검토하면서 당사자들의 위치를 취급하는 규정을 보다 더 검토해야함을 느끼고 제시하는 개정안을 제시하도록 한 작업반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 2차 수정안 제시할 뿐만 아니라 동 규정 토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계약 체결에 관한 협약제정을 위한 지원정보”라는 당사자들의 위치와 관련하여 조사한 별도의 보고서도 함께 제시하였다. 작업반은 2차 수정안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를 영업장소와 관련한 다른 문건들과 함께 검토하였다.

검토과정에서 작업반은 몇몇 규정을 수정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회의 때 검토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사무국에 지시하였다.

(5) 3차 수정안

2004년 3월 15일에서 19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43차 작업반회의에서 작업반은 사무국이 준비한 3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동 회의에서의 작업반은 42차 회의 때 심의하지 못한 전자통신의 오류에 관한 규정인 제16조를 먼저 토의하고, 주로 적용범위와 관련한

제1장 적용범위의 규정 가운데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와 제4장을 최종규정인 제X조와 제Y조를 중심으로 심의한 후 작업반은 2005년 7월 4일에서 15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될 38차 위원회에서 협약초안의 검토와 검토에 따른 승인을 득하므로 전자협약초안을 위한 자신들의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합의하였다.

2004년 6월 14일에서 25일까지 개최된 37차 위원회는 42차, 43차 작업반회의의 내용문건을 수령하고, 42차 회의에서 적용범위와 관련한 제1조에서 제4조와 제X조, 제Y조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당사자들의 위치와 관련이 있는 정의 규정인 제5조와 제7조 보완규정인 정보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토의내용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동 문건에 대한 작업반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는 기존 국제무역관련 법규 하에서 전자통신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자통신의 법적 장애를 제거할 목적으로 협약초안규정 가운데 기존 국제협약과 전자계약협약을 연계시키려는 작업반의 노력에 대하여 지지를 표하였다.

사실 40차 작업반 회의시 기존 국제협약 가운데 전자상거래에 따른 법적 장애의 제거와 전자협약초안 간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작업반이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2005년 개최될 38차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검토와 승인을 득하므로 전자협약초안에 대한 작업반의 임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작업반의 합의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작업반에 의해 이루어질 전자협약초안에 대한 심의의 적절한 시기의 완성은 시기적으로 보아 이러한 완성작업이 2004년 10월 11일에서 22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될 44차 회의에서 통과를 정당화할 수 있게끔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6) 4차 수정안

전자협약초안과 관련한 마지막 회의인 2004년 10월 11일에서 22일 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44차 작업반 회의에서 작업반은 사무국이 제출한 문건에 있는 4차 수정안에 근거하여 토의를 심의하였다.

마침내 4년간 7차에 걸친 회의결과 작업반은 제1조에서 제10조, 그리고 제18조와 제19조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최종확정하여 초안 작업반에 넘겼다.

동 회의에서 이루어진 작업반의 심의결의된 사항들은 44차 작업반 심의 내용이자 38차 위원회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동 회의에서 작업반은 협약초안 가운데 최종규정에 추가할 규정, 즉 지역경제기구의 참여와 관련한 규정, 제19조 1항의 수정절차와 관련한 규정 등을 포함하여 협약초안의 전문과 협약의 적용범위와 관련이 있는 제18조와 제19조를 제외한 기타 최종규정에 대해 처음으로 의견교환을 가졌다.

이러한 의견 교환 후, 4차 수정안 제1장, 제2장, 제3장 그리고 제4장 가운데 협약의 적용범위와 관련이 있는 제18조와 제19조에 대한 심의에 비추어 작업반은 사무국으로 하여금 제4장 최종규정을 심의내용이 잘 반영된 규정들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역시 작업반은 4차 수정안의 검토과정에서 추가토록 제의된 초안규정에 대하여는 38차 위원회에 제출할 실질적인 최종초안 상에 []로 하여 관련 규정을 삽입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하였는데, 그 규정들은 4차 수정안 제9조의 제6항, 제16조의 보완규정, 제19조 제1항의 수정절차와 관련한 규정, 제22조의 수정과 관련한 규정, 제23조 경과

규정 등이다.

끝으로 회의 말미에 작업반은 205년 7월 4일에서 15일까지 비엔나 국제센터에서 개최될 38차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의해 협약초안이 검토되어 채택될 목적으로 각국의 논평을 접하기 위해 사무국이 최종 마련한 실질적인 협약초안을 각국에 회람시키도록 요청하였다.

(7) 최종수정안

44차 작업반회의의 결과에 따라 초안 작업반에 의해 정리된 유엔전자협약초안과 시간관계상 사무국에 최종 마무리를 위임한 전문과 최종규정을 토대로 종합하여 사무국이 확정된 작업반의 최종적인 유엔전자협약을 규정별로 심의한 무역법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작업반의 작업상황에 대한 개괄적 논평을 떠나 각 규정별로 진정한 제정 취지와 그 의미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형식요건의 규정인 제9조 제3항의 경우 전자통신에 전자서명이 되어야 하는 경우와 전자서명이 없는 경우에 제시된 전자서명을 확인하거나 전자서명을 갈음할 수 있는 기능적 동질성 원칙의 정확한 해석을 위한 규정인 제a호와 기능적 동질성을 보증하는 신뢰성 기존 규정인 제b호의 문제를 들어 수정하였다. 그리고 권리증권이나 유통증권들과 관련하여서는 복본이 발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이들 서류의 전자통신화를 인정하기엔 법적·기술적·기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이들과 관련한 전자통신의 경우 제2조 제2항에서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전자계약협약의 적용제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무역법위원회의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던 추가서명요건에 대한 규정인 제6항의 삭제하였다. 그리고 제19조 제1항의 수정절차 규정인 제19조의 보완규정, 제22조의 수정규정들을 삭제하

고, 기타 전자계약협약초안규정에 대하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자구 수정, 부분삭제를 한 것 외의 중요한 규정에 대하여는 작업반에 의한 최종적인 전자계약협약초안을 확정하여 유엔총회에 공식적인 전자계약협약초안으로 제출하였다.

3. 전자계약협약의 수정안 비교⁴²⁾

(1) 1차 수정안의 변화

□ 잠정초안과 1차 수정안의 비교

잠정 초안 (95)	1차 수정안 (100)
제1장 : 적용범위 1조 : 적용영역(추가검토, 수정) 2조 : 적용제외(전반적인 개정) 3조 : 협약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문제(수정) 4조 : 당사자 자치의 원칙 (수정가능성)	제1장 : 적용범위 1조 : 적용범위(통합, 부분수정) 2조 : 적용제외(대안A 부분수정, 대안B 전면 수정) 3조 : 협약이 관여하지 못하는 문제 (부분수정, 검토연기) 4조 : 당사자 자치의 원칙 (재초안)(최종 확정 보류)
제2장 : 총칙	제2장 : 총칙

42) 윤영립, 「전자계약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1~41면 : 오세창, 「유엔전자협약의 제정과정과 이해」(계명대학교 출판부, 2006), 37~54면

<p>5조: 정의</p> <p>6조: 해석원칙(부분수정)</p> <p>7조:당사자들의 위치(장소) (추가검토, 수정)</p>	<p>5조 : 정의(부분재초안)(토의연기)</p> <p>6조 : 해석원칙(변경없음)(토의연기)</p> <p>7조 :당사자들의 위치(장소) (부분 재초안 및 부분 수정) (부분수정)</p>
<p>제3장 : 계약성립</p> <p>8조 : 계약성립시기(추가검토, 삽입 포함)</p> <p>9조 : 청약의 유인(재초안)</p> <p>10조 : 계약성립에 있어 데이터 메시지의 사용 (재초안, 부분적으로 8조포함)</p> <p>11조 : 데이터메시지의 발송과 수신 의 시기와 장소 (수정, 확대)</p> <p>12조 : 자동화 거래(수정, 신설포함)</p> <p>13조 : 형식요건(개정안)</p>	<p>제3장 : 데이터메시지의 사용</p> <p>8조 : 계약의 성립에 있어 데이터 메시지의 사용 (종전 10조, 8조의 규정부분 수정후 통합: 초안) (추후논의)</p> <p>9조 : 협약의 유인(재초안)</p> <p>10조 : 기타 데이터메시지의 사용 (신설)(부분수정)</p> <p>11조 : 데이터메시지의 발송과 수신 의 시기와 장소 (대안A 동일, 대안B 신설)</p> <p>12조 : 자동거래(종전 12조 1항의 자구수정)</p> <p>13조 : 전자통신의 오류 (대안A종전 2(1)(2)의 내용부분수정,대안B종전</p>

<p>14조 : 당사자들이 제공해야할 일반정보(개정안)</p> <p>15조 : 계약조건의 이용 가능성 (개정안)</p>	<p>12(3)수정)</p> <p>14 조: 형식요건(내용수정)</p> <p>15조 : 당사자들이 제공해야할 일반 정보(수정)</p> <p>16조 :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 (수정)</p> <p>X조 : 적용제외에 관한 선언(신설)</p> <p>X조 : 기타협약과의 관계(신설)</p>
--	--

1) 협약의 적용범위

협약의 적용범위를 국제계약으로 제한할 것인가 혹은 당사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어떠한 계약에든지 다 적용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대부분은 “국제적” 거래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로써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은 그 적용범위를 국제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모델법은 국제거래와 국내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게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범위를 국제거래에 한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협약의 적용범위에 간하여 1차수정안 제1조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대안을 규정하고 있었다.

즉 첫째 안(Variant A)은 협약 초안이 그 적용범위를 “국제계약

(International contracts)”에만 적용되도록 한정하지 않는다. 즉 “이 협약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적용한다”고 규정한다.(제1조 1항) 이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영업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전자문서에 의하여 체결되는 어떠한 계약에도 협약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체결국에서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순전히 국내적인 거래를 체결한 때라 하더라도 국제협약상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안은 체결국이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에 관한 이중적인 제도를 유지할 수 있고, 체결국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국제적인 것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 제3항)

둘째 안(Variant B)은 협약의 적용범위를 국제계약에 한정된 규정이다.(제1조 제1항) 그리고 국제계약이 되기 위하여서는 계약 시에 당사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그들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동조 제2항). 또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조건으로 하여 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동조 제3항)

이상과 같은 두가지 대안에 대하여 체코, 멕시코, 스웨덴 등 일부 국가들은 전자문서에 의한 국내계약까지 적용범위에 넣고 있는 첫 번째 안(Variant A)을 지지하였다.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은 협약의 적용범위를 국제계약으로 한정된 대안 B를 지지하였다.⁴³⁾

2) 당사자의 위치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전자계약의 당사

43) 정완용,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의 검토」 (한국해법학회지, 제24권 제1호, 2002), 249~289면

자가 영업소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약 총단 제 14조는 당사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지리적 위치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제7조 제1항)

거래 당사자는 본 협약 초안 제14조에 따라서 지리적 장소가 표시된 곳에 당사자의 영업소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초안 제7조 제1항 본문) 이는 당사자의 영업소의 위치 표시가 있는 경우에 그곳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다는 법적 효과를 규정한 것이다. 제14조와 제7조의 적용에 의하여 전자계약이 체결되는 때에 전자상거래의 당사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법적 확실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3) 당사자가 제공하여야 할 일반정보

수정안 제14조는 유럽연합 전자상거래지침 제5조를 수용한 규정이다. 유럽연합 전자상거래지침 제5조는 당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약초안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본 규정을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무 규정으로 할 것인가 혹은 당사자 자치원칙에 맡겨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39차 전자상거래작업반회의에서 논의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강제수단이 없는 의무 규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다수 국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차기 회의에서 그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4) 계약의 성립시기

본조는 전자계약의 체결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국제물품매매협약 제 15조, 제18조, 제23조 등의 내용을 수용한 조항이다. 이 규정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작업반회의에서 국제물품매매협약과의 충돌문제 즉 매매계약에 관한 이중규범이 존재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나라 대표들에 의하여 제기된 바 있다. 그렇지만 다수의견은 본 조항은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즉 전자계약에 국한시킴으로써 국제물품매매협약과의 충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와 함께 협약초안 제10조(전자문서를 사용한 계약체결)의 규정을 제8조에 통합하여 제8조를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이 수용되어서 차후 회의에서는 제10조와 제8조를 통합하는 안을 만들어서 토의하기로 하였다.

5) 청약의 유인

이 조항은 국제물품매매협약 제14조 제2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서면서면을 사용하는 환경하에 있어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카탈로그, 브로슈어, 가격표시리스트 등을 이용한 광고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구속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약의 유인으로써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전자적 환경에 있어서 전자거래사업자가 쇼핑몰 웹사이트에 재화 또는 영역을 게시한 것이 청약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쇼핑목록 상품을 게시하여 놓은 것은 서면서류 환경에 있어서처럼 대부분 전자거래사업자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규정

하였다.

6) 계약체결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사용

본 조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는 청약과 승낙의 표시를 유효하게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다. 이 규정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1조 제1항을 수용한 것이며 괄호안의 내용은 캐나다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Commerce Act) 제20조 1항 b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써 전자상거래모델법의 내용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본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data message’의 개념은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모델법 제2조는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란 전자문서교환(EDI), 전자메일, 텔레그램, 텔레카피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b호)고 규정하였다.

7)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점 및 장소

본 조는 제4항을 제외하고는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5조를 기초로 하여 국제물품매매협약의 형식에 맞게 수정한 조항이다.

국제물품매매협약 제24조는 청약, 승낙 기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한 때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상대방 자신, 상대방의 영업소 또는 우편주소, 상대방의 영업소와 우편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일상거소에 전달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reaches)한 것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적 환경에서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바, 전자문서의 '수령(receipt)'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5조는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 및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이 규정은 전통적인 우편의 교환을 전자문서의 교환에 의하여 반영할 수 있고, 또한 전자적 통신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반영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융통성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협약초안에서 수용한 것이다.

8) 자동화된 거래

본 조는 전자상거래에서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에 의한 거래 소위 전자적 대리인(Electronic agents)에 관한 규정이다.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3조는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작성자의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동화된 시스템에 관하여 그 이상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인간의 개입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자동화시스템에 의한 행위가 시스템 사용자를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를 규정한 것이다.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수용하고 있는 캐나다 통일전자거래법 제22조 및 미국통일전자거래법 제10는 자연인이 입력실수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체결시에 있어서 실수(착오)의 문제는 각 국의 법제의 의하여 잘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국제협약 초안에서는 이를 괄호로 묶어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2) 2차 및 3차 수정안의 변화

1차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현불가능하다 보았는데 첫째, 전자계약체결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는 실질적이면서 특수한 문제의 해결 차원의 규정은 취급하지 아니하고 논의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에 얽매이고 있다. 둘째, 제정에서 효력의 발생시까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였던 기존의 국제협약과 달리 초안단계에 충분한 시간 없이 초안했다. 이는 주의 깊은 접근을 방해할 수 있는 졸속초안이 되기 쉬우며, 비준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셋째, 협약내의 특수규정들이 경우에 따라서 전자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정적인 문제들에 대비한 규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2차 협약초안에서 변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차 수정안과 3차 수정안의 비교

2차 수정안 (103)	3차 수정안
제1장 : 적용범위 1조 : 적용영역(부분수정) 1항: 내용수정 : a호 : 확정, b호 : 존속여부 검토 c호 : 존속여부 검토,	제1장 적용범위 1조 : 적용영역 1항: 대안A: a,b,c호: 2차수정안과 동일 대안 B:

<p>2항 : 확정보류, 3항 : 확정)</p> <p>2조 : 적용제외영역 문두: 내용변경, a호 : 대안A(a)선택과 단서 규정[]로 함, b호 : 대안B(1)(a)선택, 그러나 제외여부와 제 외에 따른 조정가능성, c호 : 대안A(c)=B(1)b 존속</p> <p>3조 : 협약이 관여하지 아니하는 문제 a호 : 신설 b호 : 검토, c호 : 검토, d호 : 검토</p> <p>4조 : 당사자 자치의 원칙 (확정여부결정 : 1항 존속 2항: 삭제 가능성)</p>	<p>새로운 안 2항, 3항은 2차 수정안과 동일</p> <p>2조 : 적용제외 영역 (2차 수정안과 동일)</p> <p>3조 : 협약이 관여하지 못하는 문제 (2차 수정안과 동일)</p> <p>4조 : 당사자 자치의 원칙 (2차 수정안과 동일)</p>
<p>제2장 총칙</p> <p>5조 : 정의 (전반적인 토의대상, 부분적인 삭제, 신설)</p> <p>6조 : 해석원칙 (토의대상)</p> <p>7조 : 당사자들의 위치(부분수정)</p>	<p>제2장 : 총칙</p> <p>5조 : 정의 (2차 수정안과 동일)</p> <p>6조 : 해석원칙 (2차 수정안과 동일)</p> <p>7조 : 정보요건(7조의 대안규정으로</p>

<p>1항 : 개정, 2항 : 수정 3항: 자구수정, 4항과 5항 : 추후 검토, 통합, 존속</p>	<p>2차수정안 11조에 근거함)</p>
<p>제3장 : 국제계약에 있어 데이터메시지의 사용 8조[개정안 10조] : 데이터메시지의 법적 인정(재구성) 1항 : 통합개정 2항 : 신설 3항 : 추가논의 9조[개정안 14조] : 형식요건 1항 : 내용수정 2항 : 내용수정 3항 : 내용수정 4항 : 잠정존속 5항 : 잠정존속 10조[개정안 11조] : 데이터메시지의 발신과 수신시기와 장소</p>	<p>제3장 : 국제계약에 있어 데이터메시지의 사용 8조: 데이터메시지의 법적인정 1항 : 2차수정안 8조 1항 재구성 2항: 2차 수정안 8조 2항의 표현조정 9조 : 형식요건 1항 : 2차수정안 9조 1항의 선택과 규정의 단순화 2항 : 변경없음 3항 : 2차 수정안 9조 3항 대안 A 선택 10조 : 데이터메시지의 발신과 수신의 시기와 장소</p>

<p>1항 : 재초안 2항 : 재초안 3항 : 조정 4항 : 조정 5항 : 조정</p>	<p>1항과 2항 : 2차 수정안 10조 1항과 2항 토의 중 제시된 대안규정의 내용 가운데 자구 수정 후 2차 수정안 10조 1항과 2항을 현규 정으로 대체 3항과 5항 : 2차 수정안 10조 3항과 5항의 위치변경뿐 내용동일 4항 : 삭제</p>
<p>11조[개정안 15조] : 당사자들이 제 공해야 할 일반정보(수정)</p>	<p>11조[2차 수정안 12조] : 청약의 유인:2차 수정안 12조 대안B 선택</p>
<p>12조[개정안 9조] : 청약의 유인 1항 : 수정 2항 : 대안A, 대안B 신설</p>	<p>12조[2차 수정안 14조] : 계약성립에 있어 자동정보시스템의 사용 (2차 수정안 14조 토의중 제 시된 수정대체안 채용)</p>
<p>13조[개정안 8조] : 계약성립에 있어 데이터메시지의 사용 대안B : 신설, 1항, 2항 : 재구성</p>	<p>13조[2차 수정안 15조] : 계약조건 의 접속가능성 (2차수정안 15조 토의중 제시된 대안 중심으로 재초안된 대안 A와 2차수정안 15조의 내용을 수정한 대안B)</p>
<p>14조[개정안 12조] : 계약성립을 위한 자동정보시스템의 사용</p>	<p>14조[2차 수정안 16조] : 전자통신의 오류</p>

<p>(부분수정)</p> <p>15조[개정안 16조] : 계약조건의 접속(이용)가능성</p> <p>16조[개정안 13조] : 전자통신의 오류 대안 A : 재구성 대안 B : 부분수정후 존속</p> <p>X조[개정안 X조] : 제외에 관한 선언 (개정안 수정)</p> <p>Y조[개정안 Y조] : 기타 국제협약 하에서 교환되는 통신 (개정안 수정)</p>	<p>(대안A, B: 2차 수정안 16조 와 동일)</p> <p>제4장 최종규칙</p> <p>X조 : 적용제외에 관한 선언 (2차 수정안 x조와 동일)</p> <p>Y조 : 기타 국제협약하에서 교환되는 통신 대안A 1항 : 2차 수정안 1항 대안A 수정 2항 : 신설 3항 : 2차수정안 2항과 동일, 대안 B 1항 : 신설 2항 : 2차 수정안 3항과 동일 대안 C 1항 : 신설, 2항 : 2차 수정안 3항과 동일</p>
---	---

1) 적용범위

2차수정안 제1조 제1항은 1차 수정안의 대안B를 채택하여 B안의 제1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였다. 작업반은 40차 회의에서 새로운 협약의 적용영역의 기본을 구성하는 제1조와 제3조의 “데이터 메시지에 의해 체결되거나 입증되는 계약 또는 계약성립”과 같은 표현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하여 표현을 조정하였다.

제2항과 제3항은 일종의 부수규정으로 사정의 의식과 당사자들의 국적과 민사적 또는 상사적 성격의 거래를 의미하는 규정의 1차 수정안의 제4항, 제5항과 동일하다.

2) 당사자 자치의 원칙

제4조 제1항은 무역법위원회가 제정한 몇몇 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당사자 자치의 일반원칙을 반영한 규정으로 1차 때와는 달리 제1항 말미에 추가되었다. 이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어떠한 제한이 특히 형식요건에 관한 규정인 제14제 제2항과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규정인 제16조와 같은 규정과 관련하여 초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거나 바람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제2항은 특히 40차 작업반 회의의 의견에 따라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아니한다면 당사자들의 전자수단에 의한 계약을 위한 청약이나 승낙행위를 수용하도록 강요받아서서는 아니된다는 사고의 반영이다.

3) 총칙

2차 수정안에서는 12개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1차 (e)호상의 명칭인 “자동컴퓨터시스템”을 “자동화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하여 (f)호로 하고, 종전의 정보 시스템 정의규정인 (f)호를 (e)호로 변경하였다.

특히 (g)호에 정의된 청약자와 (h)호에 정의된 피청약자의 용어를 (c)호에 정의된 데이터메시지 작성자와 (d)호 규정에선 데이터메시지의 수신인의 정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안과 대체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제8조, 제9조가 유지되는 한 이들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중되었다.

전자서명에 관한 정의 규정인 (i)호는 전자서명모델법 제2조의 전자서명의 정의를 인용한 규정이다. 1차 초안규정에 의하면 (i)호 대안과 대안 A와 B로 나누어 “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의 대안으로 “서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었다. 작업반은 40차 회의를 통해서 서명과 전자서명의 구분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두 정의 간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성에 합의하고 잠정적으로 두 정의를 유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사무국은 초안협약의 제한된 적용범위를 작업반 40차 회의에서 제의한대로 기타 준거법에 “서명”의 정의를 일임하고 “전자서명”만을 정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하에 “서명”의 정의를 삭제하였다.

영업장소의 정의규정인 (i)호의 경우 무역법위원회가 제정한 다양한 협약들이 “영업장소”의 개념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동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 바 없다는 취지에서 1차 때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

영업장소의 정의에 대해서는 대안A와 대안B가 있다. A는 국제상관례에서 이해되고 있는 “영업장소”와 전자상거래모델법의 제2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치”라는 두 핵심요소를 영업장소에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 대안B 는 유럽연합내에서 이러한 표현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대안B의 “무기한” 이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무한정 설립되어야 함을 요구하지 않고 특정한 위치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의 일시적 제공만을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4) 기타

1차 수정안의 데이터메시지의 사용규정인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던 초안규정이 작업반 39차 회의시 작업반의 요청에 따라 1차 수정안 계약성립시기 규정인 제8조와 완전히 대체되었으며, 1차 수정안의 제8조 제2항과 제3항은 2차 수정안의 제8조 제2항에 통합되어 규정되었다. 1차 수정안의 제8조 1항이 계약성립에 관한 규정이라면, 1차 수정안의 제10조는 계약성립에 있어 데이터 메시지를 사용한 경우의 청약과 승낙의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되었다.

청약의 유인에 관하여 39차 회의시에 기존 협약상의 계약성립에 관한 일반원칙을 포함하고 있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재초안되어야 한다는 작업반의 의견에 따라 1차 수정안은 제9조 초두에 ‘a data message containing’이 추가되었다. 작업반 39차 회의에서 자동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청약을 받고 승낙에 해당하는 주문을 하는 당사자는 동 주문이 진행되는 방법과 주문이 1차 수정안 상의 “자동적으로 계약체결을 허용하는 자동컴퓨터시스템”에 따라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또는 기타장비의 사용이나 사람개입을 통한 기타 조치들이 계약을 효과적으로 체결하거나 주문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39차 회의시의 청약의 유인과 관련된 도의에 따른 3가지

의 안, 즉 제1항과 제2항의 대안A, 제1항과 제2항 대안B, 그리고 1차 수정안 제9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한 대안이 존재하였다.

(3) 4차 수정안 및 작업반의 공식적인 협약초안

2002년 3월 뉴욕에서 개최된 39차 회의에서 전자계약협약에 관한 잠정초안을 토의하기 시작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의 토의내용에 근거하여 작업반이 심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 4차 수정안이다. 작업반은 4차 수정안 가운데 전문과 최종규정에 대한 의견교환 후 최종규정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요청하는 안을 제시하고, 최종규정에 추가내용도 제시하였다. 최종규정상에 추가조항은 위원회에 제출할 작업반의 최종 초안상에 별도로 표시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작업반의 공식적인 협약초안인 것이다.

4차 수정안과 공식적인 협약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차 수정안

4차 수정안
제1장 : 적용범위
1조 : 적용영역 (수정)
1항: 부분수정 (a, b, c호 : 대안A의 a, b, c호와 동일)
2항, 3항 : 동일
4항 : 신설 (대안 A, B)
2조 : 적용제외 (수정)

<p>1항 : 신설 (2조 서문과 a호 수정 통합)</p> <p>2항 : 신설 (2조 c호 두 선택 가운데 첫 번째안을 선택)</p> <p>3조 : 당사자 자치의 원칙 (수정)</p> <p>4조의 규정보완지시에 따른 보완내용</p>
<p>제2장 총칙</p> <p>4조 : 정의 (일부 신설 및 수정)</p> <p> a, b호 : 신설</p> <p> c호 : 동일</p> <p> d호 : 수정</p> <p> e호, f호, g호, h호 : 동일</p> <p> i호 : 수정</p> <p>5조 : 해석원칙 (동일)</p> <p>6조 : 당사자들의 위치(자구 수정)</p> <p> 1항, 2항 : 자구 수정, 내용 동일</p> <p> 3항 : 동일</p> <p> 4항과 5항 : 자구수정, 내용동일</p> <p>7조 : 정보요건 (보완규정이 독자규정으로 변경, 내용 동일)</p>
<p>제3장 :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통신의 사용</p> <p>8조 : 전자통신의 법적 인정 (자구 수정)</p> <p> 1항, 2항 : 자구 수정, 내용 동일</p> <p>9조 : 형식요건 (수정)</p> <p> 1항, 2항, 3항 : 표현 수정, 내용 동일</p>

4항, 5항 : 신설

10조 : 전자통신의 발신과 수신시기와 장소 (부분 수정)

1항 : 자구 수정, 내용 동일

2항 : 부분 수정

3항, 4항 : 자구 수정, 내용 동일

11조 : 청약의 유인 (자구 및 표현 수정, 내용 동일)

12조 : 계약 성립을 위한 자동정보시스템의 사용

(자구 수정, 내용 동일)

13조 : 계약조건의 접속가능성 (자구 및 표현 수정, 내용 동일)

대안 A : 자구 및 표현 수정, 내용 동일

대안 B : 자구 수정, 내용 동일

14조 : 전자통신의 오류 (수정)

대안 A 선택: 효과의 무효중심 규정에서 오류의 정정

내지 기회제공 중심

제4장 최종규정

15조 : 기탁서 (신설)

16조 : 서명, 비준, 승낙 또는 승인 (신설)

17조 : 연방국가의 효력 (신설)

18조 : 유보와 선언 (X조 수정)

1항, 2항 : 신설

3항 : 위치 변경, 내용 동일

4항 : 신설

<p>5항 : 위치 변경, 내용 수정</p> <p>6항 : 신설</p> <p>19조 : 기타 국제협약 하에서 교환되는 통신 (Y조 수정)</p> <p>1항, 2항, 3항 : 내용 수정</p> <p>20조 : 유보와 선언절차와 효과 (신설)</p> <p>21조 : 수정 (신설)</p> <p>22조 : 효력발생 (신설)</p> <p>23조 : 경과조치 (신설)</p> <p>24조 : 폐기공고 (신설)</p>

□ 작업반의 공식적인 협약 초안

작업반의 공식적인 협약 초안
<p>제1장 : 적용범위</p> <p>1조 : 적용영역 (부분수정)</p> <p>1항: 자구 추가하여 선택사항으로 수정</p> <p>2항, 3항 : 확정</p> <p>2조 : 적용제외 (확정)</p> <p>3조 : 당사자 자치의 원칙 (확정)</p>
<p>제2장 총칙</p> <p>4조 : 정의 (확정)</p>

<p>5조 : 해석원칙 (확정)</p> <p>6조 : 당사자들의 위치 (일부 변경)</p> <p> 1항 : 확정</p> <p> 2항 : 기존표현 선택사항으로 변경</p> <p> 3항, 4항, 5항 : 확정</p> <p>7조 : 정보요건 (표현 추가)</p>
<p>제3장 :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통신의 사용</p> <p>8조 : 전자통신의 법적 인정 (확정)</p> <p>9조 : 형식요건 (확정)</p> <p>10조 : 전자통신의 발신과 수신시기와 장소 (확정)</p> <p>11조 : 청약의 유인 (확정)</p> <p>12조 : 계약 성립을 위한 자동정보시스템의 사용 (확정)</p> <p>13조 : 계약조건의 접속가능성 (확정)</p> <p>14조 : 전자통신의 오류 (확정)</p>
<p>제4장 최종규정</p> <p>15조 : 기탁서 (확정)</p> <p>16조 : 서명, 비준, 승낙 또는 승인 (확정)</p> <p>16조의 보완규정 : 지역경제 통합기구의 참여 (신설)</p> <p>17조 : 연방국가의 효력 (확정)</p> <p>18조 : 협약적용영역에 관한 선언 (확정)</p> <p>19조 : 기타 국제협약 하에서 교환되는 통신 (확정)</p> <p>19조의 보완규정 : 19조 1항의 수정절차 (신설)</p>

20조 : 선언의 절차와 효과 (수정)
명칭 변경(유보와 선언절차의 효과→선언의 절차와 효과) 및 내용 수정
21조 : 유보 (신설)
20조 내용중 유보에 관한 내용을 선언과 분리하여 규정 신설
22조 : 수정
21조를 대안 A호로 하고, 대안 B호를 신설하여 선택사항으로 하여 22조로 함
23조 : 효력발생 (기존 22조 내용으로 확정)
24조 : 경과조치 (기존 23조 내용으로 확정)
25조 : 협약의 폐지 (기존 24조 내용으로 확정)

(4) 위원회의 공식적인 협약 초안

위원회는 먼저 전자계약협약이 서면과 전자통신의 기능적 동질성의 원칙과 같은 이미 확립된 원칙들에 근거하여 기존 국제협약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를 포함하여 전자통신에 따른 법적장애를 제거할 목적으로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전자계약협약의 규정들이 규범적 내용이 되기 위해선 전자통신의 사용에 확신을 제고하고, 남용의 가능성과 상업적 사기의 가능성을 억제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전자계약협약은 규범으로서 경제개발의 정도가 다양한 전 세계 전

지역에서의 경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일련의 법 규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전자계약협약을 채택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전자상거래이 사용을 넓혀 기업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계약협약은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다양한 국내규정을 전자계약협약과 같이 단순화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위원회에서 채택한 공식적인 협약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의 공식적인 협약 초안

위원회의 공식적인 협약 초안
제1장 : 적용범위 1조 : 적용범위 (부분수정) 1항: 자구 추가하여 선택사항으로 표현된 부분을 삭제한 후 확정 2항, 3항 : 확정 2조 : 예외 (확정) 3조 : 당사자 자치권 (확정)
제2장 총칙 4조 : 정의 (g호 자구 수정후 확정) 5조 : 해석 (확정)

<p>6조 : 당사자의 위치 (일부 변경후 확정)</p> <p>1항 : 확정</p> <p>2항 : 기존표현 선택사항으로 변경기로 한 내용 삭제후 확정</p> <p>3항, 4항, 5항 : 확정</p> <p>7조 : 정보요건 (확정)</p>
<p>제3장 :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통신의 사용</p> <p>8조 :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 (확정)</p> <p>9조 : 형식요건 (일부 변경후 확정)</p> <p>1항, 2항 : 확정</p> <p>3항 : 수정후 확정</p> <p>4항, 5항 : 확정</p> <p>6항 : 삭제</p> <p>10조 :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수신시기 및 장소 (확정)</p> <p>11조 : 청약의 유인 (확정)</p> <p>12조 : 계약체결시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의 이용 (자구 수정후확정)</p> <p>13조 :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 (확정)</p> <p>14조 :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 (일부 변경후 확정)</p> <p>1항 : b호 삭제후 확정</p> <p>2항 : 수정후 확정</p>
<p>제4장 최종규정</p> <p>15조 : 기탁처 (확정)</p>

16조 : 서명, 비준, 수락 또는 승인 (확정)
16조의 보완규정 :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참여 (4항을 신설한 후 17조로 변경하여 확정)
17조 : 국내영역단위에서의 효력 (18조로 변경후 확정)
18조 : 적용범위의 선언 (19조로 변경후 확정)
19조 : 다른 국제협약상의 의사표시의 교환 (20조로 변경하여 확정) 1항에서 4항까지 일부 표현 삭제
19조의 보완규정 : 19조 1항의 수정절차 (삭제)
20조 : 선언의 절차와 효력 (21조로 변경후 확정)
21조 : 유보 (22조로 변경후 확정)
22조 : 수정 (삭제)
23조 : 발효 (확정)
24조 : 경과규정 (내용 변경과 “적용시기”로 명칭 변경후 확정)
25조 : 폐기 (확정)

4. 전자계약협약의 주요논점⁴⁴⁾

(1) 전자계약의 범위

1) 적용범위

44) 윤영림, 「전계논문」, 47~54면

본 협약은 영업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과 관련한 전자통신의 사용에 적용된다. 제2항은 당사자가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이나 객관적인 정보로부터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는 당사자 간의 거래에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⁴⁵⁾

제3항은 협약을 적용하기 위한 국제성 판단에 관하여 당사자의 국적을 묻지 않고, 또한 계약의 성격이 민사계약인지 상사계약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규정이다. 다만, 이 협약은 국제물품매매협약과는 달리 매매계약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의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가 넓다.

2) 적용배제

본 협약은 다음과 관련된 전자통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첫째,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정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소비자계약에 관한 내용으로써 소비자계약은 각국의 정책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법규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본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환어음이나 약속어음, 운송증권, 선하증권, 창고증권 기타 소지인이나 수익자에게 물품인도나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가능한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신해상물품협약에서 양도가능 전자기록을 다루고 있고 전자선화증권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시켰다.

(2) 당사자의 위치

45) 국내 당사자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제간 거래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전자계약협약 제1조 제1항은 당사자간의 위치에 대하여 서로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당사자간 계약의 체결, 이행엔 관하여 전자통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당사자간의 교섭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당시나 그 이전에 당사자에 의해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본 협약은 국제거래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전자계약협약 제1조 제2항은 당사자가 영업소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업소(place of business)란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일시적 제공을 하는 활동 이외의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일시적이지 않은 시설을 두어 운영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당사자의 영업소와 관련하여서는 전자계약협약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데 당사자의 영업소는 당사자가 표시한 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래의 예비초안은 제11조 제1항 제b호에서 당사자에게 영업소의 지리적 위치표시를 의무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확인하거나 규제할 방법이 적당하지 않고 국제거래는 당사자 상호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추정주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동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영업소를 표시하지 않았고 또한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소는 계약체결 당시나 그 이전에 당사자들에게 알려졌거나 그들에 한하여 예기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곳이 당사자의 영업소임을 밝히고 있다.

동조 제3항에서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연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habitual residence) 거소란 거주하는 처소나 거처를 뜻하는 것으로, 생활의 본거지가 아닌 다만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상거소는 ‘상시 머물러 있는 곳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업소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영업소와 관계없는 장소에 영업에 필요한 장비를 비치하거나, 관련 업체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대부분의 가상기업들이 영업소를 굳이 취할 필요가 없고, 또한 이들이 수적으로 급증하면서 이를 본 협약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동조 제4항에서는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사용된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장비와 기술이 소재하는 장소 또는 정보시스템이 상대방에 의해 접속될 수 있는 장소는 영업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종래의 예비초안은 제4항에서 ‘다만 법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예외적으로 가상기업들은 그들의 상거소와 정보시스템의 위치가 동일한 국가 내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국가에서 당사자 없이 본 협약의 규제를 이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제44차 작업반회의에서는 이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다.

(3) 청약과 승낙

전자계약협약은 전자통신이 청약과 승낙으로 되기 위한 기준을 규제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계약협약의 제정목적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매매계약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법적 사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함에 있을 뿐이지, 계약법 자체를 규정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 국제물품매매협약을 반복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기

도 하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에서는 청약과 승낙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 형식요건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그에 관한 송·수신 시기와 장소 그리고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만 규정한다.

(4) 전자통신의 송·수신 시기

전자계약협약은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사표시의 효력 및 그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일반원칙을 따르게 된다.

전자계약협약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전자통신의 송신시기는 당해 전자통신이 송신인의 지배하에 있는 혹은 송신인을 위하여 전자기록(data message)을 송신하는 자의 지배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난 때이고, 전자통신이 송신인의 지배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이나 송신인을 위하여 송신하는 자의 지배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나지 않는 사안의 경우에는 전자통신의 수신시기가 곧 송신시기가 된다.

이는 송신인 혹은 송신인을 위하여 전자기록을 송신하는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진입한 전자통신이 그러한 당사자의 모뎀이나 메일 서버를 벗어나는 시기, 즉 그러한 당사자의 지배영역에서 전자통신 벗어나는 시점을 발송시기로 인정한 간주한 규정이다.

전자계약협약 제10조 제2항은 당해 통신이 수인이 지정한 전자주소로 발송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통신의 수신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 전자통신의 수신시기는 수신인이 지정한 전자주소에서 수신인이 전자통신을 출력할 수 있게 된 때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수신인의 다른 전자주소는 수신인이 지정하지 않은 전자주소를 말한다. 송신된 전자통신이 그 주소에서 수신인에 의하여

출력될 수 있고 또한 수신인이 전자통신이 그 주소로 송신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때이다. 전자통신은 이것이 수신인의 전자주소에 도달한 때 수신인에 의하여 출력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자통신은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때에 도달한 것으로 된다.

지정되지 않은 주소로 송신된 전자통신의 수신시기의 결정에 관하여는 그 수령가능성과 인식이라는 요소가 요구되는데, 이는 수신인이 둘 이상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신인으로서 지정되지 않은 장소로의 수신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나, 혹은 수신인이 그 수신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신인이 지정하지 않은 정보시스템 내에 메시지가 접수되는 경우에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송신인이 수신인의 다수의 정보시스템 중 잘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중단한 시스템으로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송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국제물품매매협약의 도달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송신인과 수신인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전자거래에서는 전자통신의 도달주의와 관련하여 전자통신의 송신시기보다 수신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을 실행하거나 실행을 유보하는 방화벽시스템(firewall system)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술적으로는 정보시스템에 진입하였다고 여겨지나 실질적으로는 수신인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와 관련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발신을 중시하는 법규 및 해석은 격지자간의 통신수단으로 우편 또는 전보를 사용하던 시대에 계약을 보다 조기에 성립시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전자거래의 경우 전

자기록은 발신과 거의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함에 따라, 전자거래상 발신주의의 합리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자기기록의 전송중의 변경이나 소멸 등의 도달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발신주의의 효용성을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발신자는 이러한 통신장애와 관련하여 'delivery failure' 등의 장애통보를 받게 되며 이러한 장애통보는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도달과 관련한 위험은 발신자가 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청약과 청약의 유인

전자계약협약은 제11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통신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제의로서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을 수신인으로 하지는 않되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의(그러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문을 하는 상호작용적 통신설비(interactive application)를 사용하는 제의를 포함한다)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구속되겠다는 당해 제의자의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지 않는 한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는 전자통신에 의한 일정한 제의가 과연 청약인지 아니면 단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으로서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기준을 유지하되 전자적 환경하에서 그러한 구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6)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

본 협약 제12조에서는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과 자연인간의 상호작

용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두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은 당해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에 의하여 수행되는 그 상호작용 각각이나 그로 인한 계약의 결과를 자연인이 실사하지 않았거나 그에 간여(intervene)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에 의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자연인이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한 행위의 결과는 당해 거래에 대한 자연인의 검토유무와 관계없이 그 시스템의 사용자를 구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7) 전자통신상의 실수 및 오류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자연인의 입력실수에 의하거나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 자체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실수 및 오류에 대해서 전자계약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자연인이 타인의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과 전자통신을 교환하면서 입력실수를 하였는데 동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이 그러한 실수를 보정할 기회를 그에게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그 자연인 혹은 그를 위하여 행위한 자는 자연인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한 자가 그러한 실수를 한 후에 가능한 한 빨리 상대방에게 그 실수를 통지하여 그가 전자통신상의 실수를 하였음을 표시하고, 또한 자연인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한 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령한 때에는 그러한 물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어떠한 실질적 이익이나 가치를 사용하거나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력실수된 전자통신의 해당부분을 철회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44차 작업반회의에서는 실수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에는 국제거래의 특성상 계약성립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실수는 입력실수(input error)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이러한 입력실수의 범위나 고의성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발생된 오류의 책임은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그러한 시스템의 정상적인 상태와 보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연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연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발견할 수 없는 문제나 실수에 대한 책임의 소재이다. 이러한 책임소재와 관련하여서는 주의의 정도에 관한 입증의 문제나 운용자의 책임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자계약협약의 규정에서는 배제하고 있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통신은 거래의 신속성과 대량거래 그리고 반복거래 등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거래활성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통신의 취소나 철회는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당사자는 전자통신에 있어 실수를 범한 자연인의 보호와 함께 이러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의 표준화에 기여하여 이들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⁴⁶⁾

46) 송수련, 「전계논문」, 39~64면

5. 전자계약협약의 주요 내용⁴⁷⁾

(1) 전문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affirming their belief that international trade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mutual benefit is an important element in promotion friendly relations among States,

Noting that the increased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mproves the efficiency of commercial activities^나 enhances trade connections and allows new access opportunities for previously remote parties and markets, thus playing a fundamental role in promotion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Considering that problems created by uncertainty as to the legal value of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constitute an obstacle to international trade,

Convinced that the adoption of uniform rules to remove

47) 정완용, 「전게서」, 420~441면 : 오세창, 「전게서」, 228~250면

obstacles to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including obstacles that might result from the operation of existing international trade law instruments, would enhance legal certainty and commercial predictability for international contracts and help States gain access to modern trade routes,

Being of the opinion that uniform rules should respect the freedom of parties to choose appropriate media and technologies, taking account of the principles of technological neutrality and functional equivalence, to the extent that the means chosen by the parties comply with the purpose of the relevant rules of law,

Desiring to provide a common solution to remove legal obstacles to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a manner acceptable to States with different legal, social and economic systems,

Have agreed as follows;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데 있어서 평등과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한 국제무역이 중요한 요소라는 믿음을 재확인하고,

증가하고 있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이 상업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무역연계를 강화하며 이전의 원거리 당사자와 시장에 새로운 접근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무역과 경제발전을 증진시키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며,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의 법적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이 국제무역에 장애를 형성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현존하는 국제무역법의 시행에서 기인하는 장애를 비롯한 국제계약상의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통일적 규정의 채택이 국제계약의 법적 확실성과 상업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당사국으로 하여금 현대 무역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기술적 중립성과 기능적 등가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통일적 규정은 당사국이 관련 법률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매체와 기술을 선택할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여기고,

각각 상이한 법률·사회·경제 제도를 가진 제 당사국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의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일반적 해결책을 제공하기를 희망하여,

다음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전자계약협약 전문은 동 협약의 제정 동기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가 다양해지고 활성화되면서, 전자계약에 있어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요구됨에 따라 전자계약협약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은 이러한 제정동기와 더불어 기존의 국제무역 법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통신의 장애를 제거하여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촉진한다는 제정목적은 전문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2) 협약의 적용범위 (제1조)

Article 1. Scope of application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2. The fact that the parties have their places of business in different States is to be disregarded whenever this fact does not appear either from the contract or from any dealings between the parties or from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3. Neither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nor the civil or commercial character of the parties or of the contract i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제1조 적용범위

1. 이 협약은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성립 또는 이행에 관련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적용된다.

2.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이나 당사자간의 거래로부터 또는 계약체결전 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 당사자가 공개한 정보로부터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국적이나 당사자 또는 계약서의 민사적 또는 상사적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

전자계약협약은 영업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전자계약 협약 제1조는 당사자의 위치에 관한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 협약 제18조로 옮겨간 구 초안 제1항(C)은 당사자가 이 협약의 적용을 합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한 점에서 국제물품매매협약상의 적용영역 조항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두 개 이상의 계약국에 있지 않고 국제사법상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이 적용되는

계약국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1조 제2항과 제3항은 국제물품매매협약 제1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다.

제2항은 당사자가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이나 객관적인 정보로부터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는 당사자간의 거래에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것이다.

제3항은 협약을 적용하기 위한 국제성 판단에 관하여 당사자의 국적을 묻지 않고, 또한 계약의 성격이 민사계약인지 상사계약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규정이다. 다만, 이 협약은 국제물품매매협약과는 달리 매매계약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의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3) 예외 (제2조)

Article 2. Exclusions

1.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relating to any of the following:

(a) Contracts concluded for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purposes;

(b) (i) Transactions on a regulated exchange; (ii)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iii) inter-bank payment systems,

inter-bank payment agreements or clearance and settlement systems relating to securities or other financial assets or instruments; (iv) the transfer of security rights in, sale, loan or holding of or agreement to repurchase securities or other financial assets or instruments held with an intermediary.

2.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bills of exchange, promissory notes, consignment notes, bills of lading, warehouse receipts or any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that entitles the bearer or beneficiary to claim the delivery of goods or the payment of a sum of money.

제2조 예외

1. 이 협약은 다음의 사항에 관련된 전자적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정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b) (i)등록된 거래소에서의 거래, (ii)외국환 거래, (iii)은행간 지급시스템, 은행간 지급약정 또는 담보나 기타 금융자산·증권에 관련된 결산시스템 (iv)매매, 대부 또는 점유에 관련된 담보권의 이전, 또는 담보성환매약정이나 기타 중개자를 통하여 간접 보유한 금융자산·증권

2. 이 협약은 환어음, 약속어음, 양도증서, 선하증권, 창고증권 기타 소지인이나 수익자에게 운송물의 인도 또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성 증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내용으로써 소비자계약은 각국의 정책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법규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본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b)는 대체로 금융거래에 해당하며 이는 국제거래에서 특수한 규율을 필요로 하고, 거래에 맞는 표준약관 및 관행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항의 경우는 소위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의 이전 즉, 유가증권의 전자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에 관하여는 전자계약협약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검토와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4) 당사자의 자치권 (제3조)

Article 3. Party autonomy

The parties ma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derogate from or vary the effect of any of its provisions.

제3조 당사자 자치권

계약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각 협약 조항의 효력을 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이 협약상의 규정과 다른 효력을 정하거나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당사자 자치원칙이 인정된다. 이는 국제물품매

매협약 제6조(당사자자치)의 규정에 대응하는 규정이다.⁴⁸⁾

따라서 당사자들은 전자계약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수 있고,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서는 협약에서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지를 먼저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 자치원칙은 위와 같이 국제물품매매협약에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법계에서 사법의 기본원칙이므로 협약에서 이를 규정한 것이다. 이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협약 제2조의 적용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제2조의 적용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거래들은 이미 전자적 환경에 적합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있거나 특별한 거래약관이 발달되어 있어서 당사자들이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본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는 당사자 자치원칙에 관하여 "전자문서의 작성자와 수신자는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송·수신의 시기 및 장소),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8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제9조(수신확인)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⁹⁾ 이는 유엔 전자상거래모델법 제4조(합의에 의한 변경)를 수용한 것이다.⁵⁰⁾

48) 국제물품매매협약 제6조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

49)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 (작성자와 수신자간 약정에 의한 변경)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50) 유엔 전자상거래모델법 제4조 (합의에 의한 변경)

(1) 데이터 메시지를 생성, 발신, 수령, 저장 또는 다르게 처리하는 데 관여한 당사자들 간에 있어서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제3장의 규정을 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법률을 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정의 (제4조)

Article 4.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Communication" means any statement, declaration, demand, notice or request, including an offer and the acceptance of an offer, that the parties are required to make or choose to make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b)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any communication that the parties make by means of data messages;

(c) "Data message" means information generated, sent,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magnetic, optical or similar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lectronic mail, telegram, telex or telecopy;

(d) "Originator"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a party by whom, or on whose behal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has been sent or generated prior to storage, if any, but it does not include a party acting as an intermediary with respect to that electronic communication;

(e) "Addressee"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a party who is intended by the originator to receive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but does not include a party acting as an intermediary with respect to that electronic communication;

(f) "Information system" means a system for generating, sending, receiving, storing or otherwise processing data messages;

(g) "Automated message system" means a computer program or an electronic or other automated means used to initiate an action or respond to data messages or performances in whole or in part, without review or intervention by a natural person each time an action is initiated or a response is generated by the system;

(h) "Place of business" means any place where a party maintains a nontransitory establishment to pursue an economic activity other than the temporary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out of a specific location.

제4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a) “의사표시”라 함은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청약과 청약의 승낙을 비롯한 당사자에게 요구되거나 당사자의 선택에 따른 모든 진술, 발표, 요구, 통지 또는 요청을 의미한다.

(b) “전자적 의사표시”라 함은 당사자가 데이터 메시지의 방법으로 행한 모든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c) “데이터 메시지”라 함은 전자, 자기, 광학적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작성, 전송,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의미하며, 이는 전자데이터교환, 전자우편, 전보, 전신 또는 모사전송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d)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자”라 함은 전자적 의사표시의 저장 이전에 이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작성한 당사자를 의미하나, 당해 전자적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e)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자”라 함은 송신자가 전자적 의사표시를 수신하도록 의도한 당사자를 의미하나, 당해 전자적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f)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데이터 메시지의 작성, 전송, 수신, 저장 기타 그 밖의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g)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이라 함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위를 개시하거나 데이터 메시지 또는 그 실행에 응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화 또는 그 밖의 자동화된 수단으로서, 시스템에 의하여 행위가 개시되거나 응답이 생성될 때 자연인에 의한 검토나 개입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h) “영업소”라 함은 당사자가 특정장소 밖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임시적인 제공을 하는 곳이 아닌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상설적인 설비를 가지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의 개념이 종래의 데

이더 메시지(Data Message)의 개념과 관련하여 전자계약협약에 새로 규정되었다.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라는 용어는 종래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본 협약의 여러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에서처럼 전자적 기록(Electronic Recor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입법례에 따라서 용어의 사용이 달라지거나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적합한 용어인 것으로 보여진다.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라는 용어와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라는 용어 모두 "Information"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그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상거래모델법 제2조 (a)⁵¹⁾를 수용하여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라는 용어를 "전자문서"로 정의규정을 두어 사용하고 있다.⁵²⁾ 이는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수용한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와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의 용어는 양자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1) 유엔 전자상거래모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데이터 메시지"란 전자문서교환, 전자우편, 전신, 텔렉스 또는 팩시밀리를 비롯한 전자적, 광학적 기타 유사한 수단으로 작성, 발신, 수령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b) ~ (f) (생략)

52)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 8. (생략)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에 전자적 수단외 하나로 telegram과 telex와 같은 전통적인 magnetic medium의 포함여부가 문제된다. 전자적 수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e-mail과 같은 것이 주된 것이므로 telegram과 telex와 같은 것이므로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반면에 telegram과 telex는 전통적인 전자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므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전통적인 telegram과 telex 등은 전자적 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것이고 전자적 수단은 기술발달을 고려하여 넓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자계약협약 제12조는 자동화정보시스템에 의한 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에서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과 자동화시스템(Automated Message System)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에 대하여는 그 개념이 너무 넓고, 대부분 자동화정보시스템에 해당하므로 명확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수용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 규정하고 있다.

양자의 용어정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동화정보시스템은 "Automated Information System"과 "Automated System"이라는 용어가 고려되었으나,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과 구별하기 위하여 최종안에서 "Automated Message System"으로 수정되었다.

자동화시스템(Automated Message System)은 "전자적 대리(Electronic Agent)⁵³⁾"의 개념에 해당한다. 이러한 개념은 미국 통

일전자거래법(UETA) 제2조 제6항, 캐나다 통일전자상거래법(UECA) 제19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관하여 실정법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개념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되고 있다.

영업소는 당사자가 특정장소 밖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임시적인 제공을 하는 곳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상설적인 설비를 가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영업소의 개념은 다른 국제거래관련 협약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협약에서는 협약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는 영업소의 의미에 대하여 개념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나,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도 영업소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해석은 전자계약협약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당사자가 여러 개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 및 이행과 가장 밀접한 장소가 협약상의 영업소가 된다. 영업소가 없는 자연인의 경우에는 상거소⁵⁴⁾가 기준이 된다.

(6) 해석 (제5조)

Article 5. Interpretation

53)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 제102조는 전자대리인(Electronic Agent)이라 함은 전자메시지나 전자적 이행에 대해 동작 또는 반응하는 시점에 자연인에 의한 검토나 행위가 없이도 그 자연인을 위하여 전자메시지나 전자적 이행에 독립적으로 반응하거나 동작을 개시하는데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전자적 또는 기타 자동화된 수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5), 425면)

54) 상거소란 일정기간 사실상 체류하는 곳을 말한다.

(최홍섭, 「유엔국제매매법」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7), 16면)

1.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2.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or,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제5조 해석

1.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협약의 국제적 특성 및 국제거래의 통일적 적용의 촉진과 국제거래에 있어 신뢰의 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적용을 받으나, 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된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해결하여야 하며, 그러한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하여 적용가능한 법률과 조화되게 해결되어야 한다.

본 조의 협약 해석원칙은 협약 제2조가 적용제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결과 흠결이 생기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써, 국제물품매매협약 제7조⁵⁵⁾를 반영한 규정이다.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협약의 국제적 특성, 협약 적용에 의한 국제거래의 통일성의 촉진 및 국제거래의 신뢰성의 확보라는 요소를 고려하여 협약을 해석, 적용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협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법률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에 적용될 법률 및 그에 따른 일반원칙과 조화롭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당사자의 위치 (제6조)

Article 6. Location of the parties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party's place of business is presumed to be the location indicated by that party, unless another party demonstrates that the party making the indication does not have a place of business at that location.

2. If a party has not indicated a place of business and has more than one place of business, then the place of busin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is that which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to the relevant contract,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known to or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55) 국제물품매매협약 제7조

(1) 이 협약의 해석에는 그 국제적 성격 및 적용상의 통일과 국제거래상의 신의 준수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3. If a natural person does not have a place of business, reference is to be made to the person's habitual residence.

4. A location is not a place of business merely because that is: (a)where equipment and technology supporting an information system used by a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f a contract are located; or (b)where the information system may be accessed by other parties.

5. The sole fact that a party makes use of a domain name or electronic mail address connected to a specific country does not create a presumption that its place of business is located in that country.

제6조 당사자의 위치

1. 이 협약의 목적상, 당사자의 영업소는 당사자가 표시한 장소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 영업소 표시를 한 당사자가 그 장소에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대방이 반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영업소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알려진 상황이나 계약 체결전 또는 체결시 당사자가 고려한 상황을 참조하여 관련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곳이 이 협약상의 영업소가 된다.

3. 자연인이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를 영업소로 본다.

4. 어느 장소가 단순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

만으로는 영업소가 되지 아니한다.

(a) 당사자가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장비 또는 기술이 위치한 곳

(b) 타방 당사자가 그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곳

5. 당사자가 단지 특정 국가와 연관된 도메인 이름이나 전자우편 주소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그 국가에 있다는 추정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전자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전자계약의 당사자가 영업소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래 전자계약 협약 초안에서는 당사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지리적 위치를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은 온라인상에서 별도로 영업소의 개념을 신설하려는 것은 아니다.

거래당사자는 협약에 따라서 지리적 장소가 표시된 곳에 당사자의 영업소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사자의 영업소의 위치표시가 있는 경우에 그곳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적 효과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조의 적용에 의하여 전자계약이 체결되는 때에 전자상거래의 당사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의 법적 확실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 전자계약이 국제적인 계약인지 여부, 어느 법률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 및 그 전자계약에 이 협약이 적용될 것이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당사자가 영업소의 지리적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단순히 전자거래협약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적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수정된 협약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

었다.

당사자가 한 개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소는 당사자들에게 알려진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된 계약 및 그 계약의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곳이 당사자의 영업소로 된다. 만약 자연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상거소로 한다.

계약체결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설비와 기술 장치의 위치 또는 다른 사람들 스스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있는 장소는 영업소가 아니다. 종래 초안은 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시스템 혹은 기술 장치의 위치만으로 영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만, 법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단서 규정은 가상기업에 예정하여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가상기업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기업과 똑같은 기준에 의하여 영업소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가상기업은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설비의 위치나 그러한 시스템의 위치가 가상기업의 영업소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서의 규정은 유럽연합 전자상거래지침 전문 제19항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최종 협약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판례법의 해석에 맡겨두게 되었다.

한 개인이 어떤 특정 국가에 연결된 도메인 이름이나 전자우편 주소를 사용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영업소가 그 국가에 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어느 기업의 영업소는 물리적으로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도메인 이름이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물리적 위치와 기능상 동일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추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수용하여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⁵⁶⁾에서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및 장소와 관련하여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둘 이상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주된 관리가 이루어지는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전자거래기본법 제17조⁵⁷⁾는 전자거래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써 상호 및 사업자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8) 정보요건 (제7조)

Article 7. Information requirements

Nothing in this Convention affects the application of any rule of law that may require the parties to disclose their identities, places of business or other information, or relieves a party from the legal consequences of making inaccurate,

56)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① ~ ② (생략)

③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영업소가 2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전자문서의 주된 관리가 이루어지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

57) 전자거래기본법 제17조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용역·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2. 소비자가 쉽게 접근·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
3.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4. 청약의 철회, 교환 및 반품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5.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
6. 거래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존

incomplete or false statements in that regard.

제7조 정보요건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에게 그들의 신원, 영업소 또는 다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는 이에 관한 부정확, 불완전 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에 따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종래의 초안과 같은 협약내용은 전자거래가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에게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함으로써 전자거래의 사기 방지와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협약은 당사자의 신원정보, 영업소 또는 다른 정보의 공개를 정한 국내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일반정보요건은 순전히 각국의 국내법원칙에 맡겨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⁵⁸⁾는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사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자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⑤ (생략)

(9)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 (제8조)

Article 8. 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1.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shall not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it is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2. Nothing in this Convention requires a party to use or accept electronic communications, but a party's agreement to do so may be inferred from the party's conduct.

제8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

1. 의사표시 또는 계약은 그것이 전자적 의사표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 및 집행력이 부인되어서는 아니된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로 하여금 전자적 의사표시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승낙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행위로부터 그 사용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유추할 수 있다.

계약이 전자적 의사표시의 형식으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 또는 집행력이 부인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에게 전자적 의사표시의 사용 또는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나, 당

사자의 행위로부터 당사자의 그러한 사용에 대한 합의를 유추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전자상거래모델법 제5조와 제11조⁵⁹⁾를 수용한 것으로 작엽부에서 논의된 합의사항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본조는 캐나다 통일전자거래법(UECA) 제20조⁶⁰⁾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⁶¹⁾는 전자문서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형식요건 (제9조)

Article 9. Form requirements

59) 전자상거래모델법 제5조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 승인)

정보는 그것이 데이터 메시지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률효과, 적법성 및 이행가능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1조 (계약의 성립과 효력)

(1)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청약과 승낙은 데이터 메시지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데이터 메시지가 계약의 성립에 이용된 경우에 당해 계약은 데이터 메시지가 그러한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 및 이행가능성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0) 캐나다 통일전자거래법 제20조는 당사자간의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은 전자적 문서 또는 컴퓨터 화면에 대한 터치 기타 전자적 통신행위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고, 계약은 전자적 문서형태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 또는 집행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완용, 전게서, 430면)

61)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Nothing in this Convention requires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to be made or evidenced in any particular form.

2.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should be in writing,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writing, that requirement is met by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f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

3.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should be signed by a party,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signature, that requirement is met in relation to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f:

(a) A method is used to identify the party and to indicate that party's intention in respect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b) The method used is either:

(i) As reliable 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was generated or communicated, in the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any relevant agreement; or

(ii) Proven in fact to have fulfilled the func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above, by itself or together with further evidence.

4.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should be made available or retained in its original

form,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n original, that requirement is met in relation to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f:

(a) There exists a reliable assurance as to the integrity of the information it contains from the time when it was first generated in its final form, as an electronic communication or otherwise; and

(b) Where it is required that the information it contains be made available, that information is capable of being displayed to the person to whom it is to be made available.

5.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4 (a):

(a) The criteria for assessing integrity shall be whether the information has remained complete and unaltered, apart from the addition of any endorsement and any change that arises in the normal course of communication, storage and display; and

(b) The standard of reliability required shall be assessed in the light of the purpose for which the information was generated and in the ligh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제9조 형식요건

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어떠한 특별한 형식으로 작성되거나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2.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서면 흠결의 효과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가 이후의 참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가능하다면 그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충족된 것으로 본다.

3.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명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서명 흠결의 효과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충족된 것으로 본다

(a) 당사자의 신원 확인 및 그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에 관한 당해 당사자의 의도를 표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사용된 경우, 그리고

(b) 그 사용된 수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i) 관련 합의내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비추어 전자적 의사표시가 생성 또는 유통되는 목적에 적합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

(ii) 위 (a)호에 적시된 기능을 충족하였다는 것이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증거와 함께 사실상 증명된 경우

4.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원본의 형태로 활용 가능하거나 보존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원본 흠결의 효과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충족된 것으로 본다.

(a)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그 밖의 것으로 최종적인 형태로 처음 생성된 때부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무결성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b) 전자적 의사표시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활용 가능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활용한 사람에게 현출될 수 있는 경우

5. 제4항 (a)호의 목적상,

(a) 무결성의 판단 기준은 의사표시, 저장 및 현출 등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적 기재나 변경을 제외하고 그 정보가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지 여부이다.

(b) 요구되는 신뢰성의 표준은 그 정보가 생성된 목적 및 모든 관련 상황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본조는 국제물품매매협약 제11조의 형식요건규정과 전자상거래법 제6조와 제7조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제1항은 국제물품매매협약 제11조⁶²⁾에 규정된 형식자유의 일반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계약체결에 관한 일반적인 형식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내법에 맡겨져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 규정이다.

제2항은 전자상거래모델법 제6조⁶³⁾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데이터 메시지와 서면문서와의 기능적 등가의 원칙을 정한 것이다.

제3항은 전자상거래모델법 제7조⁶⁴⁾에 규정된 수기서명과 전자적 동

62) 국제물품매매계약협약 제11조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가 없고, 방식에 관한 그 밖의 어떠한 요건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입증될 수 있다.

63) 전자상거래모델법 제6조 (서면)

(1) 법에서 정보가 서면으로 된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데이터 메시지 안의 정보가 계속적인 열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가능한 때에는 데이터 메시지는 그 요건을 충족한다.

(2) 제1항은 그 요건이 의무의 형식을 취하는지 또는 법에서 단지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정보의 효과를 규정하는 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3)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일성 방법간의 일반적인 기능적 등가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즉, 이는 전자서명의 사용에 관하여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규정이다. 본 조는 각국의 전자서명법제의 적용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것이다. 제38차 회의에서 제3항의 신뢰성 요건에 관하여 (b)호의 (ii)의 내용이 추가되어 전자서명의 신뢰성 요건이 다른 증거와 결합되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하였다.

제4항은 원본성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제38차 회의에서 (b)호의 내용에서 "제시(presented)"라는 용어가 너무 광의적이고 다의적이라는 이유로 "이용가능한(made available)"으로 수정되었다.

제5항은 제4항 (a)호의 무결성 요건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11)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수신시기 및 장소 (제10조)

Article 10.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1. The time of dispatch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s the time when it leaves an information system under the

64) 전자상거래모델법 제7조 (서명)

(1) 법에서 사람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데이터 메시지와 관련하여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a)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그 사람의 승인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사용되고,

(b) 그 방법이 관련 합의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비추어 데이터 메시지를 생성 또는 수수한 목적에 적합하였다고 믿을 수 있을 것

(2) 제1항은 그 요건이 의무의 형식을 취하는지 또는 법에서 단지 서명함결의 효과를 규정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3)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control of the originator or of the party who sent it on behalf of the originator or, i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has not left an information system under the control of the originator or of the party who sent it on behalf of the originator, the time whe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is received.

2. The time of receipt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s the time when it becomes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at an electronic address designated by the addressee. The time of receipt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at another electronic address of the addressee is the time when it becomes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at that address and the addressee becomes aware that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has been sent to that address.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s presumed to be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when it reaches the addressee's electronic address.

3.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s deemed to be dispatched at the place where the originator has its place of business and is deemed to be received at the place where the addressee has its place of business,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4.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pplies notwithstanding that the place where the information system supporting an electronic address is located may be different from the place where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is deemed to be received

under paragraph 3 of this article.

제10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수신시기 및 장소

1.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기는 그 전자적 의사표시가 송신 또는 송신자를 대리하여 송신하는 당사자의 통제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난 때이다.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가 송신자나 송신자를 대리하는 당사자의 통제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나지 않았다면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된 때이다.

2.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미리 지정한 전자주소에서 그 전자적 의사표시를 검색할 수 있게 된 때이다. 수신자의 다른 전자주소로 송신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그 주소에서 전자적 의사표시를 검색할 수 있고, 전자적 의사표시가 그 주소로 송신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때이다.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자의 전자주소에 도달한 때에 수신자는 그 전자적 의사표시를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전자적 의사표시는 제6조에 따라 송신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가 있는 것으로 결정된 장소에서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2항은 전자주소가 운용되는 정보시스템이 소재한 장소가 이조 제3항에 의하여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된 것으로 보는 장소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조는 동 협약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으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조항이다.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에 관한 종래의 협약초안 규정은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5조⁶⁵⁾를 기초로 하여 국제물품계약협약의 형식에 맞게 수정한 내용이다.

국제물품계약협약 제24조⁶⁶⁾는 청약, 승낙 기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한 때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상대방 자신, 상대방의 영업소 또는 우편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일상거소에 전달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reaches)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는 전자문서의 수령(receipt)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5조는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 및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전통적인 우편의 교환을 전자문서의 교환에 의하여 반영할 수 있고, 또한 전자적 의사표시(통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반영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융통성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협약초안에서 수용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⁶⁷⁾도 전자상거래모델법의 동 조

65)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5조 (데이터 메시지의 발신 및 수령의 시기와 장소)

(1)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데이터 메시지의 발신은 그것이 작성자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송신한 자의 감독밖에 있는 정보처리조직에 들어간 때에 이루어진다.

(2)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데이터 메시지의 수령시기는 다음과 같다.

(a) 수신자가 데이터 메시지의 수령을 위하여 정보처리조직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령이 다음에서 정하는 때에 이루어진다.

(i) 데이터 메시지가 지정된 정보처리조직에 도달한 때

(ii) 데이터 메시지가 지정된 정보처리조직이 아닌 수신자의 정보처리조직에 송신된 때에는 그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자가 회수한 때

(b) 수신자가 정보처리조직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자의 정보처리조직에 도달한 때에 수령한 것으로 한다.

(3) 제2항은 정보처리조직이 위치하는 장소가 그 데이터 메시지가 제4항에 의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는 장소와 다른 경우에도 적용한다.

(4) ~ (5) (생략)

66) 국제물품매매계약협약 제24조

이 협약 제2편의 적용상, 청약,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된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 본인,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에 전달된 때,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 전달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다.

67)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송신·수신의 시기와 장소)

항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협약의 논의과정에서 전자상거래모델법이 나온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전자거래의 환경이 변하였고, 전자상거래모델법의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시기에 관한 규정이 너무 복잡하여 현재의 전자상거래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의 수신시기에 관한 제2항에 대하여 현재의 규정과 같이 추정규정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있었다.

제1항은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기를 전자적 의사표시가 송신자의 지배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난 때로 정하고 있다. 만약 전자적 의사표시가 정보시스템을 떠난 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적 의사표시가 상대방 수신자에 의하여 수신된 때를 송신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2항은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를 정하고 있다. 실제 전자거래에서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와 관련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기보다 수신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전자적 주소를 지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수신자가 전자적 주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전자적 주

① 전자문서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③ (생략)

소에서 수신자가 전자적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게 된 때이다. 그리고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자의 전자적 주소에 도달한 때 전자적 의사표시는 수신자에 의하여 수령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는 전자적 주소에의 도달시기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는 형태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수신자가 전자적 의사표시가 지정한 전자적 주소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한 수령의 추정이 깨지게 되어 송신자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자에 의한 수신사실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수신자의 다른 주소로 송신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는 전자적 의사표시가 그 주소에서 수신자에 의하여 수령될 수 있고, 수신자가 전자적 의사표시가 그 주소로 송신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때이다. 이 경우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령가능성과 인식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12) 청약의 유인 (제11조)

Article 11. Invitations to make offers

A proposal to conclude a contract made through one or more electronic communications which is not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arties, but is generally accessible to parties making use of information systems, including proposals that make use of interactive applications for the placement of orders through such information systems, is to

be considered as an invitation to make offers, unless it clearly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e party making the proposal to be bound in case of acceptance.

제11조 청약의 유인

정보시스템을 통한 주문신청을 위하여 상호작용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한 제안을 포함하여,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특정 당사자에 대한 제안이 아니라 그 정보시스템 사용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안은 그 제안을 승낙에 기속시키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지 않았다면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청약을 하는 것과 같이 한 사람 이상의 특정인에게 제안이 이루어지는 청약의 형태가 아니라,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은 만약 승낙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한 단순한 청약의 유인으로 간주된다.

이는 상호작용시스템(Interactive Application)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제안의 경우에도 같다. 초안에서는 청약자에 의하여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인간의 개입 없이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청약을 하는 것은 승낙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경우 전자거래사업자가 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

를 쇼핑몰에 게시하는 것은 특별한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웹 시스템을 외부에서 접속하여 이용하는 자는 그 웹 시스템이 자동화시스템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화시스템을 포함하여 웹의 게시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자동화시스템이라는 용어도 상호작용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이를 포함한 일반적인 웹의 게시는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은 국제물품매매계약협약 제14조⁶⁸⁾의 영향을 받은 조항이다. 서면서면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카탈로그, 브로슈어, 가격표시리스트 등을 이용한 광고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구속하려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약의 유인으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전자적 환경에서 전자거래사업자가 쇼핑몰 웹 사이트를 통하여 승낙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구속된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웹 사이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게시한 것이 청약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쇼핑몰에 상품을 게시하여 놓은 것은 서면서류 환경의 경우처럼 대부분 전자거래사업자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13) 계약체결시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의 이용 (제12조)

68) 국제물품매매계약협약 제14조

(1)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된다. 제안이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

(2)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안은 제안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Article 12. Use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for contract formation

A contract formed by the interaction of an automated message system and a natural person, or by the interaction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shall not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no natural person reviewed or intervened in each of the individual actions carried out by the automated message systems or the resulting contract.

제12조 계약체결시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의 이용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과 자연인의 상호작용 또는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연인이 그 시스템에 의한 각 단계나 성립될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 및 집행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본조는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3조 제2항⁶⁹⁾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3조는 데이터 메시지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며, 제2

69)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3조 (데이터 메시지의 귀속)

- (1) (생략)
- (2)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있어서는 데이터 메시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의해 송신된 때에는 작성자의 데이터 메시지로 본다.
 - (a) 당해 데이터 메시지와 관련하여 작성자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
 - (b) 자동작동되도록 작성자에 의해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여 프로그램된 정보처리조직
- (3) ~ (6) (생략)

항 (b)호는 송신자가 프로그램한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혹은 송신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송신된 데이터 메시지는 송신자의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다. 본조는 전자상거래모델법의 내용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양 조문이 동일한 것은 아니고, 전자상거래모델법은 자동화시스템에 의하여 송신된 데이터 메시지의 귀속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계약협약은 전자적 의사표시의 차별금지원칙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조는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관한 규정으로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청약과 전통적인 수단에 의한 청약과의 유사성으로부터 추출된 개념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조는 자동화시스템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의 유효성에 관하여 가능한 의문을 제거하고, 많은 재판관할에서 전자거래에 관한 국내법제에서 유사한 규정을 법제화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14)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 (제13조)

Article 13. Availability of contract terms

Nothing in this Convention affects the application of any rule of law that may require a party that negotiates some or all of the terms of a contract through the exchang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to make available to the other party those electronic communications which contain the

contractual terms in a particular manner, or relieves a party from the legal consequences of its failure to do so.

제13조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전자적 의사표시의 교환을 통하여 계약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상하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의 계약조건이 포함된 전자적 의사표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는 위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지 못한 데에 따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본조는 전자계약협약이 특정한 계약조건을 포함한 전자적 의사표시를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법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소극적 형식의 규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는 전자계약협약에서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각 국의 적용법에 맡기는 형식으로 규정한 것이다.

당사자는 당해 계약에 적용되는 국내법이 계약조건을 포함하는 저낙적 의사표시가 일정 기간 동안 저장과 복원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즉 보존을 조건으로 하여 다른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당사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전자계약협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에 관한 국내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에 대하여는 이 국내법규정이 적용되고, 전자계약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의 이용에 관하여서는 국내법상의 적용원칙 규정과 전자계약협약상의 규정은 충돌되지 않는 것이다.

(15)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 (제14조)

Article 14. Error in electronic communications

1. Where a natural person makes an input error in an electronic communication exchanged with the automated message system of another party and the automated message system does not provide the person with an opportunity to correct the error, that person, or the party on whose behalf that person was acting, has the right to withdraw the portion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in which the input error was made if:

(a) The person, or the party on whose behalf that person was acting, notifies the other party of the error as soon as possible after having learned of the error and indicates that he or she made an error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b) The person, or the party on whose behalf that person was acting, has not used or received any material benefit or value from the goods or services, if any,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2. Nothing in this article affects the application of any rule of law that may govern the consequences of any error other than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제14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

1. 당사자가 상대방의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과 교환되는 전자적 의사표시에서 입력 오류를 범하였고, 그 시스템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오류를 범한 전자적 의사표시 부분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a)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오류 사실을 안 직후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자신이 전자적 의사표시에서 오류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한 경우, 그리고

(b)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이익 또는 가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1항에 규정된 오류 이외의 오류에 대한 효과를 정하는 법률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는 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한 전자거래에서 에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자상거래모델법에서는 에러의 직접적인 결과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본조는 캐나다 통일전자거래법 제22조와 미국 통일전자거래법 제10조를 수용하여 자동화시스템과 거래하는 자연인의 입력실수 혹은 실질

적 실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의 입법례에서는 실질적 실수를 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실수를 한 자연인은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시스템과 자연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에러에 관한 규정이 과연 기업대 기업(B2B) 거래구조에서도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고려가 필요하다. 상기 입법례에서는 자연인과 자동화시스템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실질적 실수의 위험이 높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동화시스템과 거래하는 자연인이 한번 실수를 하여 일단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에서는 에러의 결과를 계약의 효력문제로 다루고 있으나, 이러한 에러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계약법원칙에 개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협약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종래의 초안에서는 유럽연합 전자거래지침 제11조 제2항이 규정을 수용하여 에러의 결과를 계약의 효력문제로 규정하지 않고, 자동화시스템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에러를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했었다.

본조와 관련하여 자동화시스템 그 자체가 만들어 낸 에러에 대하여 전자계약협약에 규정을 둘 것이지의 문제가 있었다. 자동화시스템이 만든 에러는 이를 운용하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이 귀속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자동화시스템에 의한 에러는 그 시스템을 작동하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긴 에러라면 그 책임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전자계약협약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자동화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어느 범위에서 그 실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하였는지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제38차 회의에서는 ऐ러가 있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해당 부분만을 철회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였다.

(16) 기탁처 (제15조)

Article 15. Depositar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s hereby designated as the depositary for this Convention.

제15조 기탁처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기탁처로 지정된다.

(17) 서명, 비준, 승낙 또는 승인 (제16조)

Article 16.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1. This Convention is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from 16 January 2006 to 16 January 2008.

2. This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the signatory States.

3. This Convention is open for accession by all States that are not signatory States as from the date it is open for signature.

4.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nd accession are to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제16조 서명, 비준, 수락 또는 승인

1. 이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해 2006년 1월 16일부터 2008년 1월 16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된다.

3. 이 협약은 서명 개방일로부터 모든 미서명국의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4.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및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18)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참여 (제17조)

Article 17.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Participation by regional

1.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is constituted by sovereign States and has competence over certain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may similarly sign, ratify, accept, approve or accede to this Convention.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in that case hav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 Contracting State, to the extent that that organization has competence over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Where the number of Contracting States is relevant in this Convention,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not count as a Contracting State in addition to its member States that are Contracting States.

2.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make a declaration to the depositary specifying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which competence has been transferred to that organization by its member States.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promptly notify the depositary of any changes to the distribution of competence, including new transfers of competence, specified in the declaration under this paragraph.

3. Any reference to a "Contracting State" or "Contracting States" in this Convention applies equally to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where the context so

requires.

4. This Convention shall not prevail over any conflicting rules of an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as applicable to parties whose respective places of business are located in States members of any such organization, as set out by declar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제17조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참여

1. 주권국가로 구성되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특정 사안들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유사하게 이 협약에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 범위까지 가입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 협약상 가입국의 수와 관련하여,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이 협약의 가입국인 그 구성국에 추가하여 가입국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 그 구성국에 의하여 당해 기구로 이전된 권한중 이 협약을 적용받는 사항을 명시하여 기탁처에 선언하여야 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권한의 이전을 포함하여, 위 선언에 명시된 사항에 관련된 권한분배에 관한 변경사항을 즉시 기탁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의 '가입국' 또는 '가입국들'에 관한 사항은 문맥상 요구되는 경우 지역경제통합기구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4. 이 협약은 제21조에 따른 선언이 있을 경우 당사자들의 영업소가 어떤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구성국에 소재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그 기구의 준거법칙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19) 국내영역단위에서의 효력 (제18조)

Article 18. Effect in domestic territorial units

1. If a Contracting State has two or more territorial units in which different systems of law are applicable in relation to the matters dealt with in this Convention, it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declare that this Convention is to extend to all its territorial units or only to one or more of them, and may amend its declaration by submitting another declaration at any time.

2. These declarations are to be notified to the depositary and are to state expressly the territorial units to which the Convention extends.

3. If, by virtue of a declaration under this article, this Convention extends to one or more but not all of the territorial units of a Contracting State, and if the place of business of a party is located in that State, this place of busin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is considered not to be in a Contracting State, unless it is in a territorial unit to which the Convention extends.

4. If a Contracting State makes no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Convention is to extend to all territorial units of that State.

제18조 국내영역단위에서의 효력

1. 가입국이 이 협약에서 다루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체계가 적용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영역단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이 당해 영역단위 전체 또는 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선언을 제출하여 그 선언을 수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선언은 기탁처에 통지되어야 하며, 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해당 영역단위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3. 이 조에 의한 선언에 따라 이 협약이 가입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단위에 그 효력이 미칠 뿐 모든 영역단위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영업소가 그 가입국에 있다면, 이 협약의 목적상 그 영업소는 가입국 내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영업소가 협약이 적용되는 영역단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입국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선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모든 영역단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20) 적용범위의 선언 (제19조)

Article 19. Declarations on the scope of application

1. Any Contracting State may declar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that it will apply this Convention only:

(a) When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1, paragraph 1, are Contracting States to this Convention; or

(b) When the parties have agreed that it applies.

2. Any Contracting State may exclude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e matters it specifies in a declar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제19조 적용범위의 선언

1. 가입국은 제21조에 따라서 이 협약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a)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가 이 협약의 가입국인 경우, 또는

(b) 당사자가 이 협약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2. 가입국은 제21조에 따른 선언에 특정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이를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본조는 전자계약협약의 적용에 관련된 선언조항으로, 협약의 유보절차 및 선언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계약협약 제1조에 의하면 협

약은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전자계약에 적용되는데, 각국은 이 경우 영업소가 소재한 국가가 협약의 체결국인 경우에만 이 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간에 협약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 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그리고 각국은 제21조에 따른 선언으로 특정한 사항을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21) 다른 국제협약상의 의사표시의 교환 (제20조)

Article 20. Communications exchanged under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s

1.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pply to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to which any of the follow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which a Contracting State to this Convention is or may become a Contracting State, apply: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0 June 1958);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New York, 14 June 1974) and Protocol thereto (Vienna, 11 April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1 April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iability of Operators of Transport Terminals in International Trade (Vienna, 19 April 199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New York, 11 December 1995);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New York, 12 December 2001).

2.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pply further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to which an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 treaty or agreement not specifically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to which a Contracting State to this Convention is or may become a Contracting State, applies, unless the State has decl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that it will not be bound by this paragraph.

3. A State that makes a declaration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may also declare that it will nevertheless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o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r performance of any contract to which a specified international convention, treaty or agreement applies to which the State is or may become a Contracting State.

4. Any State may declare that it will not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o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to which any international convention, treaty or agreement specified in that State's declaration, to which the State is or may become a Contracting State, applies, including any of the conven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even if such State has not excluded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by a declar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제20조 다른 국제협약상의 의사표시의 교환

1. 이 협약의 가입국이 다음 국제협약의 가입국이거나 가입국이 될 경우, 그 국제협약상의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에 관련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 (1958년 6월 10일, 뉴욕)

◇ 국제동산매매에서의 제한기간에 관한 협약(1974년 6월 14일, 뉴욕) 및 그 의정서(1980년 4월 11일, 비엔나)

◇ 국제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980년 4월 11일, 비엔나)

◇ 국제거래에서의 터미널 운송업자의 책임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991년 4월 19일, 비엔나)

◇ 독립 보증장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995년 12월 11일, 뉴욕)

◇ 국제거래에서의 수취계정채무의 양도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001년 12월 12일, 뉴욕)

2. 이 협약의 규정은 이조 제1항에서 특정하여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협약 가입국이 가입국이거나 가입국이 될 다른 국제협약, 조약 또는 협정이 적용되는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과 관련된 전자적 의사표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그 국가가 제21조에 따라 이 항에 기속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조의 제2항에 따른 선언을 한 국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가 가입국이거나 가입국이 될 특정한 국제협약, 조약 또는 협정이 적용되는 계약이 성립이나 이행에 관련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또한 선언할 수 있다.

4. 제21조에 따른 선언으로 이 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 국가도,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협약들을 포함하여 그 국가가 가입국이거나 가입국이 될 국제협약, 조약 또는 협정이 적용되는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에 관련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본조는 전자거래를 위하여 국제협약상에 존재하는 법적 장애를 제거하려는 공통적인 해결방안으로서 규정된 것이다. 다수의 국제거래 관련 협약 가운데서도 제1항에 열거된 6개의 국제협약의 경우에 전자거래환경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므로, 이를 제1항에서 열거한 것이다. 본조는 전자계약협약상의 규정된 원칙들과 다른 국제협약상에 포함된 원칙들간에 전자거래와 관련된 의문점을 제

거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본조가 다른 국제협약을 개정할 목적을 갖는 것은 아니다. 본조는 각 체약국들이 국제거래 관련협약의 해석으로부터 발생될 전자거래와 관련된 가능한 법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조의 규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아울러 당사자들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들 협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22) 선언의 절차와 효과 (제21조)

Article 21. Procedure and effects of declarations

1. Declarations under article 17, paragraph 4, article 19, paragraphs 1 and 2, and article 20, paragraphs 2, 3 and 4, may be made at any time. Declarations made at the time of signature are subject to confirmation upon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2. Declarations and their confirmations are to be in writing and to be formally notified to the depositary.

3. A declaration takes effect simultaneously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State concerned. However, a declaration of which the depositary receives formal notification after such entry into force takes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by the depositary.

4. Any State that makes a declaration under this Convention may modify or withdraw it at any time by a formal notif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depositary. The modification or withdrawal is to take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depositary.

제21조 선언의 절차와 효력

1. 제17조 제4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2항, 3항 및 제4항에 따른 선언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서명시에 이루어진 선언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시 확인되어야 한다.

2. 선언과 그 확인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기탁처에 공식적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3. 선언은 이 협약의 발효와 동시에 관계 국가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이 협약의 발효 이후 기탁처에 공식적으로 통지되니 선언은 그 통지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달의 첫날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이 협약에 규정된 선언을 한 국가는 기탁처에 서면으로 공식적인 통지를 함으로써 어느 때라도 그 선언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수정 또는 철회는 기탁처에 그 통지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달의 첫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23) 유보 (제22조)

Article 22. Reservations

No reservations may be made under this Convention.

제22조 유보

이 협약상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

(24) 발효 (제23조)

Article 23. Entry into force

1.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2. When a State ratifies, accepts, approves or accedes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n respect of that Stat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제23조 발효

1. 이 협약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중의 세 번째 문서가 기탁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달의 첫 날에 발효한다.

2. 어느 국가가 비준서, 가입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중의 세 번째 문서가 기탁된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달의 첫 날에 해당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25) 적용시기 (제24조)

Article 24. Time of application

This Convention and any declaration apply only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that are made after the date when the Convention or the declaration enters into force or takes effect in respect of each Contracting State.

제24조 적용시기

이 협약과 선언은 이 협약 또는 선언의 발효일 또는 각 가입국에 대한 효력 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 전자적 의사표시에 적용된다.

(26) 폐기 (제25조)

Article 25. Denunciations

1. A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by a formal notif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depositary.

2. The denunciation takes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welve months after the notification is received by the depositary. Where a longer period for the denunciation to take effect is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the denunciation takes effect upon the expiration of such longer period after the notification is received by the depositary.

제25조 폐기

1. 가입국은 기탁처에 공식적인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기탁처에 그 통지가 접수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달의 첫날에 발효한다. 통지에 협약의 폐기를 위한 그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탁처에 그 통지가 접수된 이후 그 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27) 서명조항

DONE at New York, this [...] day of [...], 2005, in a single original,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이 협약은 2005년 11월 23일 뉴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아랍어본, 중국어본, 영어본, 프랑스어본, 러시아어본, 스페인어본의 단일한 원본으로 작성되었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자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전권대표들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IV.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비준필요성

1. 전자계약협약의 적정성⁷⁰⁾

(1) 적용범위

전자계약협약은 전자계약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전자계약은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제2조⁷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전자적 통신수단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성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즉, 전자계약이라 함은 여타의 구체화된 목적물 또는 형식요건을 기초로 한 부분이 아니라 전자적 통신수단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 체결되거나 입증되는 것으로 그 개념 및 적용범위를 확립하고 있다.

전자계약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계약의 유형은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기술적 진전에 따른 법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기준의 필요성이 수용된 결과이다. 이는 전자계약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특수성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존재하는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통일적인 기준의 마련이 유용하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을 중심으로 UNCITRAL 모델법의 보완을 통하여 전자계약협약의 법적 취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에 있어서 그 적용

70) 오세창, 「전게서」, 267~278면

71) **【전자상거래모델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a)호】**

"데이터 메시지"란 전자문서교환(EDI), 전자우편, 전신(telegram), 텔렉스(telex) 또는 팩시밀리(telecopy)를 비롯한 전자적, 광학적(optical) 기타 유사한 수단으로 작성(generate), 발신, 수령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범위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적용범위를 대상과 수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국제물품매매협약이 국제적인 매매계약으로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임에 반하여, 전자계약협약은 국제적인 매매계약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 통신수단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입증되는 모든 계약을 포함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전자적 통신수단 또는 전자문서는 그 특성이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만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양한 방편에서 실무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물품의 수령 통지, 계약의 종료와 불이행 및 클레임의 통지, 전자자금의 이체 등에서이다. 그러나 전자계약협약은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과 관련한 것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둘째로,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 계약은 전자문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구두, 텔렉스, 서면문서, 전자우편, 인터넷 등과 혼합되어 체결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계약이 전자문서에 의해서만 체결되는 경우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할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개연성이 크다.⁷²⁾ 따라서 전자계약협약은 전자문서 뿐만 아니라 전자데이터교환, 전자우편, 전보, 전신 및 모사전송 등 전자적 통신수단도 적용수단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자계약협약이 적용되는 범위는 대상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매매계약에만 한정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협약보다는 넓게 전자적 통신수단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입증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나,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과 관련한 것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수단에 있어서는 전자, 자기, 광학적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성립된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구두, 서면방식에 의해 성립된 계약은 그 적용이 배제

72) 오세창, 「전자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무역학자 발표논문집, 2002), 115면

된다.

(2) 주권침해의 우려 가능성

전문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전자계약협약의 제정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면형식과 전자형식간의 기술적 중립성과 기능적 등가성의 원칙을 고려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법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다. 서면과 전자통신의 기술적 중립성과 기능적 등가성의 원칙과 같은 이미 확립된 원칙에 근거하여 기존 국제협약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를 포함하여 전자통신에 따른 법적 장애를 제거하므로 국제무역에 있어 전자통신의 사용권장과 전자통신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데 제정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용범위와 관련이 있는 적용범위 규정인 제1조와 협약의 적용범위의 선언 규정인 제19조, 다른 국제협약상의 의사표시의 교환 규정인 제20조를 통해 볼 때 적용 예외 규정인 제2조를 제외하고는 국제매매협약 제1조 제1항과 같은 기본기준인 국제성 기준외에는 제a호 및 제b호와 같은 추가 기준이 없다.⁷³⁾ 따라서 모든 국제계약과 그 이행과 관련한 전자통신에 두 나라 모두 협약국이 아니라도,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어도, 그리고 국제사법의 원칙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전자계약협약이 제정목적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73) 【국제물품매매협약 제1조 제1항】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 a.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 b.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전자계약협약이 사법의 규정을 두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거래에만 적용되고 국가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 규정들 가운데는 협약을 비준하거나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국가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의무도 발생시키고 있지 아니한다는 점,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에 있는 법정들은 자국의 국제사법의 원칙이 협약국의 법률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을 경우에만 전자계약협약이 외국 국가법률 체계의 일부가 되므로 유엔전자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른 외국법의 적용은 모든 국제사법체계에서 흔한 일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에 있어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기존 국제협약과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국가의 주권침해 우려를 반대하는 주장들도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의 원칙과 유엔전자법의 적용범위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현 규정하에서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선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관할 국가의 국제사법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준거법으로서 당사자들간의 거래에 협약국의 법이 준거법이 될 경우에 전자계약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해석원칙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해석원칙과 함께 다음의 두가지의 적용을 위한 결정과정을 필요로 함이 제시되었다.

첫째, 일방이 비협약국의 법정에 속해 있는 경우 법정은 그가 소재하고 있는 나라의 국제사법을 참고하여 국제사법의 원칙이 협약국의 실체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다면 관할법정의 국가가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관계없이 전자계약협약이 비협약국의 실체법의 일부로서 적용된다.

둘째, 일방이 협약국의 법정에 속해 있는 경우 법정은 그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국제사법원칙을 참고하여 국제사법의 원칙이 협약국 또는 기타 협약국의 실체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경우 협약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해석원칙은 법적 명확성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해석원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법정이 협약국에 위치하고 있다면 동 법정은 자국의 국제사법의 원칙에 관계없이 국제물품매매협약 제1조 제1항 제a호의 요건이 충족된 때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유사하게 국제사법의 원칙이 관할법정의 법 적용 확인 여부 또는 다른 나라의 법 적용의 명령여부에 관계없이 전자계약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제1조를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준거법이 비협약국의 법인 경우에도 협약국이 협약의 적용의무를 피하려고 한다면 "국제사법의 원칙이 협약국의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전자계약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언을 제19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제1조와 관련한 해석 원칙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해석원칙은 전자계약협약의 확대적용에 초점을 둔 해석원칙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견들은 모두 전자계약협약의 적용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염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자계약협약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국가의 주권 침해 가능성 우려에 대한 해석원칙의 지배적인 의견은 협약국의 법이 당해 거래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전자계약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당사자 자치의 한계⁷⁴⁾

74) 오세창, 「전자계약」, 272~273면

국제물품매매협약의 경우 제6조를 통해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제11조를 통해 계약의 서면작성을 요구하는 국내요건의 배제와 제12조를 통한 계약형식에 관한 국내욕요를 유보하려는 협약국의 선언을 제96조를 통해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계약형식에 관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제11조의 규정도 변경하거나 감쇄하거나 할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제12조에 관하여 제96조의 규정을 통해 제11조의 적용을 배제기로 선언을 한 국가에 대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한다는 전제를 제6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계약협약의 경우 제3조를 통해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형식요건에 관한 그 어떠한 배제원칙을 두고 있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의 적용영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9조의 형식요건도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의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아울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전자계약협약규정의 감쇄를 할 경우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의 여부와 전자계약협약과 모순되는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묵시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전자에 대하여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형식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 규정인 제8조와 형식요건규정인 제9조의 경우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감쇄할 수 없다는 주장, 당사자 자치의 원칙 제한은 전자계약협약 전체를 훼손시키게 하므로 결국 당사자들에게 국내 강행법을 감쇄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주장, 당사자 자

치의 원칙은 제10조 내지 제14조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계약협상에 당사자 자치의 원칙은 중요하므로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제3조에 명시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은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에 합의하였으며, 따라서 전자계약협약의 어떤 규정도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의해 배제되거나 변경하거나 감쇄할 수 있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국제물품매매협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지금까지 위원회가 제정한 국제법규들의 경우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묵시적으로도 변경이나 감쇄 등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위원회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영업장소의 인정

UNCITRAL의 국제무역규범은 대개의 경우 국제계약에만 적용된다. 이 경우 국제무역규범하에서 계약의 국제적 특징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양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 국가에서 양당사자의 영업장소나 상거소와 관련한 것에서부터 2개국 이상과 중요한 관련성을 가졌거나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계약의 특성 등 일반적 국제거래 적용범위의 기준은 다양하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는 전자문서가 송신·수신된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때로는 곤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간의 전송 프로토콜은 전자문서가 하나의 정보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인도되는 순간, 즉 수신인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수령되거나 읽혀지는 순간을 통상적으로 등록한다. 이 경우 송신프로토콜은 정보시스템의 지리적 위

치를 항상 표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모델법에서는 전자문서의 발송지 및 수령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영업장소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영업장소의 정의와 관련하여 전자계약협약 제6조 제2항은 "관련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곳이 이 협약상의 영업소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물리적인 국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협약 제10조 (a)호에 규정한 영업장소의 개념이 무국경화를 지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의제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 만약 같은 개념으로 동일시 할 경우 개념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동일 대상에 대하여 새로운 용어로 정의할 경우 법적 혼란이 예상된다.

그리고 전자계약협약 제6조 제2항은 영업장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복수의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거래와 관련이 있는 영업장소의 선정의 규정이다. 따라서 영업장소가 제시되었으나, 제1항에 의해 반증된 경우에 영업장소의 선정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제2항의 규정은 유효한 영업장소이 제시가 없는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다. 따라서 동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태원칙, 즉 불이행이 허용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원칙으로 제6조 제2항의 경우 정확한 영업장소의 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규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영업장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뿐만 아니라 제시가 있었다 해도 제1항에 의해 반증된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국제거래에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도메인 이름이나 전자우편주소에 대하여 제6조 제5항은 영업장소의 인정을 금지하고 있

다. 이는 위원회가 도메인 이름이나 전자우편주소는 현실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일방 당사자의 위치 추정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 국가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연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들이 통신수단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배격할 만한 수준에 있지 아니하는 현재의 전자기술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다.

한편,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5조 (a)호는 당해 계약 및 계약의 이행과 가장 밀접한 영업장소외에 "주된 영업장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자계약협약은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전자계약협약 제6조 제1항은 제10조와 연관된 규정으로, "당사자의 영업소는 당사자가 표시한 장소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영업소 표시를 한 당사자가 그 장소에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대방이 반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신분확인 요건 및 신뢰성 기준⁷⁵⁾

전자계약협약 제9조 제3항 제a호에 규정되어 있는 서명자의 신분확인 요건규정에 의하면 전자적 의사표시에 담겨져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의 의사를 제시하기 위하여 특정 방법이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 법이 전자적 의사표시는 당사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거나 서명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제공을 요구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계약에 있어서 해당 당사자의 승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하게 물품의 수령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75) 오세창, 「전계서」, 274~276면

서명의 경우에도 서명 당사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도 제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전자적 의사표시에 담겨져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의 의사를 제시하기 위한 방법을 전자적 의사표시시 제시하도록 하므로 반드시 승인의 필요를 전제하는 방법의 제시가 아니라, 전자적 의사표시에 담겨져 있는 정보와 관련한 해당 당사자의 의사를 제시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면 서명으로 충분히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그리고 제9조 제3항 제b호는 제a호의 신분적인 요건을 보완하는 전자서명이 되어야 하거나 전자서명이 없는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 제시된 전자서명을 확인하거나 전자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을 갈음할 수 있고 기능적 동질성을 보증하는 유효한 전자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규정의 서명은 믿을만 해야 한다는 신뢰성 기준의 요건은 "제a호에 적시된 기능을 충족하였다는 것이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증거와 함께 사실상 증명된 경우"라는 대안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기준규정만을 두고 볼 때 서명의 진위성을 법원이 사후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융통성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리고 제b호의 "모든 상황"에 대한 평가가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거래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 주어진 점과 신뢰성 요건은 비공개적이고 극도의 규제가 필요한 자금 이체 관련 법률상의 표현을 모방하고 있다는 점 등은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b호의 규정을 따를 경우 서명을 요구한 거래 당사자중 한 사람이 서명자가 서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서명된 서류가 변경되었다는 이유가 아니고, 사용된 서명방법이 상황에 미루어 믿을

만 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서명이나 타방의 서명이 유효함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제a호와 제b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일방 당사자의 실질적인 신분과 의사가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b호상의 신뢰성 기준에 호소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수신시기의 원칙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의 원칙에 관한 규정인 전자계약협약 제 10조 제2항은 수신에 관한 확고한 원칙규정이 아닌, 가정원칙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원칙이 통신의 상실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원칙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기업은 정보와 통신의 보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자통신이 해당 수신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필터나 방화벽과 같은 보완장치의 사용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에 관한 모든 원칙은 특정한 전자주소를 사용하려는 동의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며, 다른 전자주소 앞으로 발신된 송신의 상실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합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그러한 원칙을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게 된다. 따라서 지정의 경우 형식적 요지주의를 지정하지 아니한 통신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요지주의를 채용하므로 지정된 전자주소외의 통신 수신원칙에 관해 형식적 요지주의와 실질적 요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15조의 규정과는 차별화를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적 수신원칙에 따라 통신의 상실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7) 표현의 오류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규정인 제14조 제1항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철회" 대신 "취소"로 표현을 변경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철회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규정에 대한 각국의 입법방향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전자적 의사표시의 특성상 입력은 또 다른 정보시스템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발신자의 입장에서는 서면 통신 때와 같이 도달시간이 필요하므로 검색할 수 있을 때까지를 철회를 위한 통신의 기간으로 본다면 철회가 적절할 수 있다. 취소는 철회와 요건에서 차이가 있을 뿐 통신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8) 기존 국제협약과의 관계⁷⁶⁾

적용범위와 관련한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비록 그 동기는 독자적인 협약과 기존의 다른 국제협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통신에 따를 수 있는 법적 장애 제거라는 두가지 목적 달성에 성공하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 각국이 적용할 때에 선언 등을 통하여 전자계약 협약의 적용을 제한 또는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협약 적용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선언에 따른 변경사실을 사무국이 발생 즉시 각국에 고지하여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76) 오세창, 「전계서」, 278면

그리고 제20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협약 가운데 국제물품매매협약과 전자계약협약의 관계를 신용장통일규칙(UCP)와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 보충(e-UCP)의 관계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e-UCP의 경우 UCP를 보완하기에 독자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계약협약은 국제물품매매협약과 별개로 국제계약에 사용되는 전자통신의 법적효력에 관해 독자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만, 국제물품매매협약과 관련하여 적용될 경우 국제물품매매협약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전자통신의 효력에 관하여는 e-UCP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전자계약협약의 향후 과제

(1) 국제상사규범과의 조화

전자계약협약은 제정시 국제물품매매협약의 토대위에서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및 전자서명모델법을 배경으로 다양한 국제법규범과의 타협을 모색한 통일법적 성격을 가진 국제협약이다. 아울러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계약에 관하여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약자유와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여타의 전통적인 수단에 의하여 체결과 계약과 달리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에서 전자계약협약이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에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무역계약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여야 한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모든 무역계약으로부터 전자계약을 별도로 규정함에 있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을 비롯한 국제규범과의 조화로운 상호보완을 모색하여 그 해결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자계약협약은 전자적 통신수단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또는 입증된 모든 계약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계약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즉 계약의 체결, 용어의 선정·삽입 및 통일, 오류 및 입력착오 등과 같은 분야에서 기존의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저해할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국제상거래에 있어 실질적 계약들이 전통적 수단으로써 구두, 텔레팩스, 서면문서를 기반으로 전자우편 및 인터넷 등의 전자적 통신수단과 혼합하여 체결될 수 있음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해 체결되거나 입증되는 계약체결의 범위에 있어서 전자계약협약이 적용되는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자계약과 관련하여 직면하는 문제는 대개의 경우 당해 계약의 성격이 전자적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의 문제이다. 즉,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통신수단에 의한 전자계약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국제 전자상거래의 특수성 및 발전의 추이를 고려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실적 측면과 이러한 문제 중의 일부는 국제적 계약의 규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법리적 측면이 존재한다. 결국 전자계약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규정함에 있어 매체중립의 원칙에 따른 입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2) 국제상거래의 법적 안정성 보장

당사자의 영업소의 소재와 관련한 전자계약협약의 규정은 전자문서

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금 각자의 영업소가 어디에 소재하는가를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는 것, 일방의 영업소가 당해 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표시된 장소라는 합의 또는 가정을 설정하는 것, 관련 영업소가 유추될 수 있는 장소로부터 제반 상황을 결정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만, 이상의 제반규정은 법적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요구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법리적 대안을 필요로 한다.

첫째, 이러한 규정중의 하나를 일방이 지키지 않은 결과가 고려되어야 하고,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특정 정보제공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 규제가 가능한지, 당해 계약이 무효인지 또는 당해 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그 자체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방의 영업소 표시가 전자계약협약을 회피하거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전자계약협약을 배제할 수 있거나 여타의 적합한 규범을 원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대안의 모색에는 지나치게 복잡한 양당사자의 영업소를 표시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위험 및 일방의 실제 영업소와 관련이 거의 없거나 또는 없을 수 있는 단편적 사항에 기초하여 지나치게 단순한 규정을 마련하는 위험성 등에 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전자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청약과 승낙의 개념이 정의되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제2장 제1절77)에서

77)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제2.1.1조(계약체결방법)】**

계약은 청약의 승낙에 의하거나 합의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당사자들의 행위에 의하여 체결된다.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이 청약과 승낙의 형식 이외의 방법으로 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이와 같은 사실이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함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적 통신수단에 의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체화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국제상거래의 전자화에 따른 실효성 확보

국제상거래의 전자화의 추이를 고려할 때 통일적인 법 적용의 부재 및 상이한 법체제간의 부조화는 전자상거래를 도모하는 거래당사자들에게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초래할 수 있다. 전자계약협약은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계약에 있어 법적 확실성, 예측가능성 및 국제상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적절한 입법취지와 방향에서 제정되었다. 아울러 전자계약협약은 전자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적 확실성의 제고를 취지로 제정되었으므로,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거래당사자들의 이해에도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법과의 통일성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에서 법적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고, 다른 국제상사규범과의 조화적 관점에서 법리적 안정성이 요구된다. 전자계약협약은 모든 국제상거래로부터 전자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상거래에 있어 상인들은 당사자 자치에 따라 자유롭게 합의하고 이행할 수 있는 상관습을 형성하고 있음에 반하여, 전자계약협약은 필요 이상의 법적 규제를 가하게 되거나, 전자계약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성과 일관성이 간과되는 측면도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각국은 전자계약 관련 국내법의 제정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적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주요국의 입장⁷⁸⁾

(1) 독일

독일은 전자계약협약 제3조의 현 표현이 당사자들에게 전자형식에 관하여 제9조에서 부과하고 있는 요건을 회피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며, 특히 제3조는 협약의 적용영역으로부터 특정 문제를 유효하게 제외시킬 수 있음을 허용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독일은 제3조를 "당사자들은 본 협약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제10조에서 제14조 규정들의 효과를 감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자계약협약 규정상의 당사자 자치의 원칙과는 달리 감쇄권 자유 원칙, 협약초안의 대전제원칙, 선언에 의해 제외된 특수문제의 합의에 의해 제외가능원칙을 고수하므로, 협약초안의 확대적용방침에 따라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대하여 융통성을 부여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독일은 제9조 제6항의 규정의 존속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협약적용영역의 차원에서 가능한 보다 광범위한 통일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특정문제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자계약협약은 협약적용의 통일성보다 확대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78) 오세창, 「전계서」, 112~135면

그리고 전자통신의 오류의 규정인 제14조 제1항과 관련하여 동 규정이 각국의 법률체계에 보다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철회(withdrawal)"라는 표현을 "취소(rescind)"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의 입장이다. 이러한 독일의 입장은 중국 등 다른 국가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자통신의 특성상 입력은 바로 다른 정보시스템의 관리하에 있음을 이해할 때 발신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서면통신 때와 같이 도달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검색할 수 있을 때까지를 서면거래 때의 철회를 위한 통신의 기간으로 본다면 철회의 개념을 고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취소나 철회가 취소와 철회의 요건이 다를 뿐 통신 자체의 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같기 때문이다.

(2) 캐나다

전자계약협약 제9조 제3항 제b호에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 방법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데이터 메시지가 상정되거나 통신된 목적에 적합할 정도로 믿을만한 것이라야 한다는 신뢰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캐나다는 이러한 신뢰성의 기준이 법적 명확성을 창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을 낳아 결과적으로 전자계약협약의 목적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1) 원칙적인 문제

전자상거래분야 위원회의 제정핵심원칙은 기술 중립성과 기능적 동질성에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제정의 목적은 새로운 평행선을 달

리는 법률체계를 초래하지 아니하고,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신을 기존의 법률체계에 통합시키는 데 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통합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통합기준에 따른 통신이 각 국의 법률체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이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신에 대하여 상이한 원칙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나다는 전자계약협약 제9조가 이러한 제정원칙을 위반하고, 특히 서명에 대한 이중법 체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미법과 대륙법의 전통에 의하면 서명의 개념은 신뢰성 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서명은 단지 특정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정규적으로 사용하는 표식일 뿐이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뢰성의 기준은 전자수단이 이러한 표식을 첨부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도입되어서는 아니되며, 현 규정은 서명에 대한 이중법의 체계를 초래하여 혼란만을 가중시켜 전자통신의 사용에 따른 또 다른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캐나다의 입장이다.

2) 신뢰성 기준의 융통성의 문제

전자계약협약 제9조 제3항 제b호에는 "서명은 신뢰할 만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나, 서명이 믿을 만한지 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서명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자가서명을 신뢰하기 위해 선정한 사람인가, 아니면 서명이 사용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자계약협약은 국제거래간의 계약으로 그 적용이 제한되므로 소비자와 관련이 없다. 거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무엇을 신뢰할 것임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보다 특히 중요한 결정인 누구와 거래를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자계약협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신뢰성을 결정한다면 특정 서명이 수기든 전자든 관계없이 이를 신뢰하는 당사자는 동 서명이 유효하지 않거나 위조일 수 있다는 위험을 안게 된다.

반면에 서명의 신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명이 어떠한 증빙을 필요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신뢰하는 당사자의 몫이다. 이러한 서명의 신뢰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서명을 신뢰한 당사자의 경우, 그 신뢰성의 증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 서명을 지원하는 증빙으로 특정한 기술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공증인이나 신탁증인의 임석일 수도 있고, 서명이 서명할 예정인 당사자로부터 이루어졌음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입증하는 계약의 내용 그 자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서명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으로 활용되는 모든 경우에 적합한 하나의 요인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계약협약은 "모든 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여건의 평가와 신뢰할 만한 것에 관한 결정은 법정의 몫이지 당사자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들의 합의가 모든 여건의 평가와 신뢰할 만한 것에 관한 결정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전자계약협약은 이렇게 표현하므로 서명의 신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면 법정이 모든 여건에 근거하여 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국제거래에 있어 사용된 방법을 신뢰하는 데 대한 법적 위험과 거래를 잘 평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거래의 당사자들임을 간과하는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3) 신뢰성 기준적용의 현실적용상의 어려움

전자계약협약 제9조 제3항 제b호는 이 규정을 악용하여 서명을 요구한 거래 당사자 중 한사람이 서명자가 서명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명이 된 서류가 변경되었거나 하는 이유가 아닌, 사용된 서명방법이 상황에 비추어 믿을 만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서명이나 타방 당사자의 서명이 유효함을 부인하여 자신의 의무를 피하려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결국 전자계약협약의 표현은 계약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불성실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국제거래는 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의 당사자가 무효로 주장되는 거래에 이해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의 제3의 당사자는 당사자 중 한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일 수도 있고, 파산관재인일 수도 있으며, 정부기관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전자계약협약은 제3의 당사자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에게만 당사자들이 서명행위를 사실의 문제로서 입증한다 해도 서명의 신뢰성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3의 당사자 소송에 대하여 거래를 무효화시킬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캐나다의 입장은 당사자들의 의사와도 독립적이고 서명사실과도 독립적인 제9조 제3항 제b호와 같은 신뢰성 기준의 규정은 전자서명의 유효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 대 기업간의 거래에 있어 신뢰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당사자들만이 거래의 당사자들이다. 따라서 이들만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판단을 맡겨야 한다.

4) 규정 제정의 필요성

당사자들의 신분이나 동의 의사가 믿을만한 가를 보증하기 위하여, 특정 당사자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은 때때로 서명을 필요로 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전자계약협약상의 단순한 신뢰성 기준은 너무 융통성이 크고 건마다의 상황에 너무 좌우되게 되어 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신뢰성이 요구될 경우 그러한 목적을 위한 보다 정교한 신뢰성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자계약협약은 그러하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전자계약협약 제9조 제3항 제b호의 신뢰성 기준은 기업 측면에서는 너무 엄격하며, 규제목적 측면에서는 너무 융통성이 크다. 반면에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기업거래에 대하여 예측불허의 많은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협약초안의 제정목적에 반하며, 협약 승낙에 하나의 장애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캐나다의 입장이다.

5) 전자통신의 발신시기와 관련한 전제 표현사용의 필요성

전자계약협약 제10조 제3항은 통신은 특정장소에서 "수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적절한 입증에 의해 반증될 수 있는 전제 규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간주한다"는 표현은 "전제한다(추정한다: presumed)"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캐나다의 입장이다.

(3) 프랑스

전자계약협약은 전자통신의 개발 전에 체결된 상거래와 관련한 형식 요건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법적 장애 제거를 위해 기본적으로 계획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협약초안은 전자상거래모델법에 의해 개발된 해결방안들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초안이 채용하고 있는 접근방법은 전자서류의 저장과 완전성에 대한 보증을 하므로 전자와 서면 서류간에 기능적 동질성을 인정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약의 기여는 특별히 관계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국가에 대하여 그들의 무역활동에 이러한 협약상의 해결방안을 적용가능토록 함으로써 동 규정이 채용하고 있는 해결방안의 적용을 국제무역에까지 확대할 것이다.

그러나 적용을 위한 규정들이 국내 적용을 위해 국내법으로 전환하는데 충분치 못하다. 즉, 국내법으로서의 협약초안은 국내관할 법정의 특징을 묘사하는 완전하고 동일한 표준을 취하고 있지 않다.

국제전자상거래는 계약당사자들에 특별한 위험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결국 국제법인 전자계약협약은 다양한 형태의 상거래 사기, 자금세탁, 금융테러와 같은 커다란 관심의 현상에 대한 수단으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통신에 있어 확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거래 당사자들의 법적 보완에 중요한 개념인 영업소와 관련하여 채용된 규정들과 정보요건과 관련한 규정들은 기타 법들이 규정하고 있는 유용한 규정에 비해 부분적으로 부족하다. 전자계약협약은 매우 방대한 장소적, 실질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초기에 작업반에게 일임된 과업은 국제무역과 관련한 모든 협약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통신의 사용에 장애를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분야에 결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전자계약협약은 상이한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간에 체결된 국제계약에도 적용될 것인데,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관한 규정들과 연계된 규정들은 전자계약협약을 서명도 비준도 아니하는 그러한 나라에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용범위의 제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프랑스의 입장이다.

1) 전자상거래의 법적 장애 제거

전자상거래의 유효성에 관해 전자통신의 법적 인정에 관한 전자계약협약 제8조는 계약이 전자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유효성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현재의 미국, 캐나다, EU에서 수용되고 있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계약의 형식에 관하여 이러한 계약의 체결은 형식에 관해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 전자계약협약은 의무에 관한 법상의 표준이며, 국제물품매매협약 제11조에서 영향을 받은 합의에 의한 계약의 성립과 형식 자유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무역은 많은 경우에서 서면이면서 매우 상세한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을 통해 전자형식과 서면서류로 교환되는 메시지 간에 그 신뢰성에 있어서 동등함을 보증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형식과 관련한 전자계약협약의 현 규정들은 전자서류와 다양한 형태의 서면 서류간의 기능적 동질성을 인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모델법에 크게 근거하고 있으며, 동 규정들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요건들은 제9조 제2항의 "법이...계약은 서면으로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할 경우", 또는 제9조 제3항의 "법이...계약은 서명이 되어야 함을 요구할 경우"

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전자통신 사용자들이 종종 법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 협약이나 수용되고 있는 관행에 대하여 통신상에 언급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은 동 규정들의 적용범위를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제9조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국제협약, 국제무역 관행이나 법이...요구할 경우"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통신의 오류에 대한 중요한 문제, 즉 특별한 위험을 초래할 오류 거래에 관하여 전자계약협약은 이미 체결된 문제의 계약을 소환할 가능성을 당사자들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류의 규정들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더디게 할 정도로 전자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의 유효성이 부인되는 것은 불가능해야 한다.

입력오류가 있으면 적어도 물품과 서비스의 구입자들은 더블클릭 하므로 승낙의 확인을 시도하기 직전에 입력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선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자들을 상대로 기술적으로 오류정정의 실행을 전혀 가능케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의 신설은 기능적 동질성을 존속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전자계약협약에서 합의한 목적이 나라마다 상이한 의무에 관한 법이 전자상거래를 위한 특별규정 제정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됨을 보증하는데 있음을 상기한다면 이 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프랑스의 입장이다.

3) 전자통신의 신뢰

전자계약협약의 적용범위가 전자통신의 신뢰를 확립하는 중요한 개념인 영업장소에 관하여 불명확하다. 가상주소의 개념은 특정 국제기

업인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제 기업인들은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웹사이트나 서버가 설치된 나라에 관해 무지하도록 하고 영업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정국가에서 절차를 취하도록 계약당사자에게 요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상주소"를 위한 인위적인 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소의 개념에 가상주소를 부정하는 전자계약협약은 부당한 절차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 가운데 즉각적으로 우려를 불러일으킨 상업적 사기의 발생과 급속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엄격하게 무역과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협상의 목적이 되고 있는 자금세탁과 금융테러에 대비한 규정의 제정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영업장소 결정을 위해 특별히 정의 내지 추가하고자 할 경우 영업장소의 개념은 여러 특징의 종합을 통해서만 규정되어야 한다. 영업장소는 장소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며, 그 설비들은 어느 정도 영구적이며, 거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영업장소에서 수행되고, 시설의 영구성 정도는 관계된 활동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성격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고려해야할 영업장소는 관련 계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장소가 될 것이다.

4) 협약의 적용범위

전자계약협약은 제1조에서 자신들의 영업장소가 상이한 나라에 있는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적용된다고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국제협약과 달리 협약 당사자국인 국가에 당사자들이 위

치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 따라서 동 규정은 협약의 협상이나 채용 여부에 관계없이 협약국이 아닌 나라에도 협약의 적용을 가능케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다른 문제점으로 전자계약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채용되느냐에 좌우되는데, 전자계약협약은 세계적인 적용을 도모하면서 3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규정은 국제 규칙을 위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넘고 있다. 국제물품 매매협약의 경우 당사자들이 협약국에 위치하고 있거나, 국제사법의 원칙이 일방 협약국의 법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위원회가 제정한 모든 협약은 적어도 당사자중 일방이 협약국에 속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물품매매협약은 물론 소멸시효에 관한 협약, 독립된 지급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협약, 국제거래에 있어 수취계정 양도에 관한 협약 등도 마찬가지이므로, 전자계약협약의 장소적 적용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4) 중국

1) 개괄

전자계약협약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자계약협약의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

먼저, 전자상거래 당사자들의 영업장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들간의 전자통시에만 적용하므로, 가능한 체약국 당사자의 국내법에 간여와 규제적 성격의 규정 제정을 피하고 있고, 사법상의 당사자 자

치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계약협약은 전자 계약의 실체적인 문제를 취급하지 않고,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있어 전자통신의 사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만 다루고 있으므로, 동일 거래에 있어 계약법의 이중적 적용을 초래하는 위험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먼저 전문상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무역”이나 “국제무역”의 표현이 전자계약협약을 무역의 계약이나 이러한 무역과 관련한 계약에만 적용될 수 있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전자계약 협약 제1조와 제19조상에 규정된 적용영역이 너무 광범위함을 지적하였다. 즉, 기존의 국제협약에 의해 지배되지 아니하는 국제계약과 관련한 전자통신의 사용에 자동적으로 적용되고, 전자계약협약 제19조에 따라 기타 국제협약에 의해 지배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전자통신의 사용에 역시 적용되는 등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지적하고 있는 세부조항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 적용영역

전자계약협약은 전자통신의 사용이 계약 성립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인정하므로 전자통신이 화물의 수령과 관련한 통지, 보상, 계약의 승낙 등과 관련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의 행사와 계약의 이행에도 사용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제1조상의 성립의 용어가 협상에서 청약의 유인에 이르기까지 전 계약의 체결 단계를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1조 제1항에 “계약의 성립이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라는 표현

은 작업반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예컨대 동 표현이 화물수령통지, 보상청구통지, 계약종료통지와 관련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외도 전자통신이 계약의 수정과 양도의 경우에도 사용되는 것처럼 되어있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의 적용영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석이나 논평을 통해 이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3) 형식요건

서명요건의 필요요건 규정인 제9조 제3항은 전자상거래모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채용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국은 전자서명모델법 제56조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데 세련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 명확성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자서명모델법은 최근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제정을 하는 많은 나라에 이미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협약이 전자서명법에 근거하여 채용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4) 청약의 유인

중국은 전자계약협약 제11조의 “대화식 신청”의 의미에 관해 명확성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원회가 예컨대 협약초안에 주석이나 논평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의미를 분명히 할 것을 지적하였다.

5) 전자통신의 오류에 관한 14조

착각과 오류와 관련한 전자계약협약 제14조는 상거래의 실질적인 필요보다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에 더 적합한 규정으로, 계약법에 확립되어 있는 원칙을 방해할 수 있다. 입력오류를 이유로 통신의 철회를 허용하는 규정은 관할하는 법정에 대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국제물품매매협약 제15조와 제16조, 그리고 많은 국가의 국내법에서 “철회”와 “취소”간에는 차이가 있다. 청약의 경우 “철회”의 표현은 바로 그 순간부터 청약의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청약이 피청약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의 취소를 의미한다. 반면에 “취소”의 표현은 청약이 피청약인에게 도착 후 그러나 계약 성립 전에 이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청약을 소급하여 무효화시키기 위한 청약의 취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은 전자계약협약 제14조 제1항의 “철회”를 “취소”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4. 우리나라의 비준 필요성

(1) 서

UNCITRAL은 2001년 전자계약협약의 초안을 마련하여 4년여의 검토기간을 거쳐 2005년 정식 국제협약을 마련하였다. 전자계약협약은 통일적인 전자거래규범으로 세계의 각국에서 이미 마련하였거나, 준비하고 있는 전자거래규범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전자계약협약은 전자상거래모델법이나 전자서명모델법과는 달리 단순한 모델법의 차원을 넘어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으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계약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통일을 촉진하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각국은 대부분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마련에 있어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수용한 국가가 있는 반면, 이 모델법을 수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전자입법을 한 국가들도 있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통일적인 기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모델법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전자계약협약의 비준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제거래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협약과 중재판정에 관한 뉴욕협약을 가입하였고,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전자계약협약의 비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자계약협약의 비준은 동 협약의 역할에 대한 기대, 거래당사자의 필요성과 제도적인 준비정도, 그리고 거래당사자들의 이해 등 다양한 환경과 조건들의 부합이 전제조건이 될 것이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계약협약 비준 필요성을 전자계약협약의 역할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국내 관련 법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전자계약협약의 역할적인 측면

1) 통일적 국제기준으로서의 역할

전자계약협약은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있어 통일적인 전자거래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따라서 UNCITRAL에

서는 전자계약협약이 단순한 모델법의 차원을 넘어서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으로,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관한 각국 법제의 통일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거래에서 체결되는 전자계약에는 우선적으로 전자계약협약이 적용되고, 만약 전자계약협약에 관련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될 것이다.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규범이 마련되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전자거래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가가 많아질 경우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적인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전자상거래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고, 분쟁의 소지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자계약협약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있어 통일적인 기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 국가가 가입국이 되어 국제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2005년 11월 23일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전자계약협약에는 현재 중국, 러시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레바논, 세네갈, 마다가스카르, 파라과이, 싱가포르, 스리랑카, 씨에라리온이 서명하였으며, 2007년 10월중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가 서명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자계약협약 가입국은 10여국에 불과하고, 다수의 가입국들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규모가 크지 않은 점으로 판단할 때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럽과 중미의 다수 국가가 전자계약협약에 가입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전자계약협약의 비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자계약협약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있어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통일적인 기준으로서의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국제무역량이 많은 미국, 일본 및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준시기와 관련하여 다수의 국가가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하여 전자계약협약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통일적인 기준으로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 다른 모델법과의 관계

현재 UNCITRAL에서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법제에는 전자계약협약과 전자상거래모델법 및 전자서명모델법이 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마련된 전자계약협약만이 국제협약으로서 이를 비준한 가입국에 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고,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모델법은 모델법에 머물고 있어 각국에 대해 하나의 기준으로만 제시될 뿐 전혀 구속력이 없다. 물론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당사자들이 모델법을 따르기로 합의하면 모델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자유 원칙이 적용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합의하여 마련하고 있는 대부분의 협약들이 당사자간에 해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적용되기 위한 기준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동일한 국제기구에서 마련한 기준이 국제협약과 모델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이중적인 제도하에서 국제협약과 모델법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구속력이 있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한

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전자계약협약과 전자상거래모델법 및 전자서명모델법을 통일되고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제거래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국제협약과 모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합리적인 전자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거래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계약협약의 비준도 이러한 여건에서 국내의 거래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하여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건이 성숙된 후에 국가경제와 국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가입국 국내법의 정비

전자계약협약은 일반적으로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적인 상거래중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만 적용되는 규범이다. 즉, 국제거래에 있어 전자적 정보통신수단의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의 국제거래관련 협약만으로는 규율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전자계약협약은 국제적인 상거래중에서 계약방식이 특화된 전자계약의 범위에서만 적용되게 된다. 현재 UNCITRAL에서 마련한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으로 전자계약협약외에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모델법이 먼저 마련되었다. 전자상거래모델법은 전자통신에 의한 국제거래의 일반화에 따라 예상되는 법적 장애와 분쟁의 발생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전자서명법은 전통적인 거래에서 서면에 수기로 서명하던 방법을 전자상거래에서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자서명을 규정하기 위

하여 마련되었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은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모델법과는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모델법은 모델법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계 각국이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를 마련함에 있어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모델법을 수용한 국가도 있으나, 이들 모델법들을 수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법제를 마련한 국가도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법제를 마련한 국가의 경우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를 개정하거나,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서명모델법에 따라 자국의 법제를 마련한 국가의 경우에도 전자서명모델법과 전자계약협약의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제를 변경하거나, 국제적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을 별도로 마련해야만 한다.

(3) 전자계약협약의 내용적인 측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있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자계약협약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협약은 앞서 전자계약협약의 적정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내용에 있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전자계약의 적용범위와 주권침해 가능성, 당사자 자치의 한계, 신분확인 요건 및 신뢰성 기준, 수신시기와 영업장소와 관련된 문제 등 많은 조항에 있어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자계약협약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으며, 중요하게 다루어진 내용이 제10조의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시기에 관한 것이다. 국제물품매매협약 제24조⁷⁹⁾는 청약, 승낙 기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

로 통고한 때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상대방 자신, 상대방의 영업소 또는 우편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일상거소에 전달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reaches)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는 전자문서의 수령(receipt)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5조⁸⁰⁾는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 및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전통적인 우편의 교환을 전자문서의 교환에 의하여 반영할 수 있고, 전자적 의사표시(통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반영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융통성이 있는 조항이므로, 이를 협약초안에서

79) **【국제물품매매협약 제24조】**

이 협약 제2편의 적용상, 청약,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된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 본인,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에 전달된 때,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 전달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다.

80)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5조 (데이터 메시지의 발신 및 수령의 시기와 장소)】**

(1)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데이터 메시지의 발신은 그것이 작성자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송신한 자의 감독밖에 있는 정보처리조직에 들어간 때에 이루어진다.

(2)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데이터 메시지의 수령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a) 수신자가 데이터 메시지의 수령을 위하여 정보처리조직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령이 다음에서 정하는 때에 이루어진다.

(i) 데이터 메시지가 지정된 정보처리조직에 도달한 때

(ii) 데이터 메시지가 지정된 정보처리조직이 아닌 수신자의 정보처리조직에 송신된 때에는 그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자가 회수한(retrieve) 때

(b) 수신자가 정보처리조직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자의 정보처리조직에 도달한 때에 수령한 것으로 한다.

(3) 제2항은 정보처리조직이 위치하는 장소가 그 데이터 메시지가 제4항에 의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는 장소와 다른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데이터 메시지는 작성자의 영업소가 있는 장소에서 발신한 것으로 보고, 수신자의 영업소가 있는 장소에서 수령한 것으로 본다. 이 항에서

(a)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수 개의 영업소를 가진 때에는 해당거래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곳 또는 해당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영업소로 한다.

(b)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소(habitual residence)를 영업소로 본다.

(5)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수용하였다. 그러나 협약의 논의과정에서 전자상거래모델법이 나온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전자거래의 환경이 변하였고, 전자상거래모델법의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시기에 관한 규정이 너무 복잡하여 현재의 전자상거래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의 수신시기에 관한 제2항에 대하여 현재의 규정과 같이 추정규정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처럼 전자계약협약은 최근의 전자적 환경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전자상거래모델법과는 달리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수신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를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령가능성, 인식가능성 및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ICC에서 제정한 eTerms2004의 전자메시지의 발송과 수령규정,⁸¹⁾ 그리고 전자상거래모델법을 대부분 수용한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⁸²⁾과도 차이가 있다.

81) **【eTerms2004 제2조 (발송과 수령)】**

- 2.1 전자메시지는 (a)발송자의 관리를 벗어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 발송 또는 발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b)수신인에 의해 지정된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 수신(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 2.2 전자메시지가 수신인에 의해 지정된 정보시스템 이외의 정보시스템 앞으로 발송된 경우 전자메시지는 수신인이 메시지를 알게 된 때 수신(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 2.3 본 계약을 위하여 전자통신은 발송자가 자신의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영업장소에서 발송 또는 발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수신인이 자신의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수신(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82)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 ①전자문서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 ②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 ③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영업소가 2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전자문서의 주된 관리가 이루어지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

□ 수신시기에 관한 규정 비교

구 분	수신시기
전자계약협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적 주소에서 수신자에 의하여 수령할 수 있게 된 때 2. 수신자의 다른 주소로 송신된 경우 : 전자적 의사표시가 그 주소에서 수신자에 의하여 수신될 수 있고, 수신자가 전자적 의사표시가 그 주소로 송신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때 3.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자의 전자적 주소에 도달할 때 전자적 의사표시는 수신자에 의하여 수신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
국제물품매매협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된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 본인,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에 전달된 때 2.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상거소에 전달된 때

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

전자상거래모델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신자가 데이터 메시지의 수령을 위하여 정보처리조직을 지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메시지가 지정된 정보처리조직에 도달한 때 - 데이터 메시지가 지정된 정보처리조직이 아닌 수신자의 정보처리조직에 송신된 때에는 그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자가 회수한(retrieve) 때 2. 수신자가 정보처리조직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자의 정보처리조직에 도달한 때
eTerms200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신인에 의해 지정된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 수신(수령)된 것으로 간주 2. 전자메시지가 수신인에 의해 지정된 정보시스템 이외의 정보시스템 앞으로 발송된 경우 전자메시지는 수신인이 메시지를 알게 된 때 수신(수령)한 것으로 간주
전자거래기본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p>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p> <p>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p>
--	---

비록 전자계약협약이 최근의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를 이처럼 규정하였지만, 동일한 기구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제정한 모델법과 국제협약이 일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관련 규정들이 일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국제적인 전자상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UNCITRAL에서는 전자계약협약을 제정하면서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개정하는 등의 합리적인 병행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이미 전자계약협약을 제정할 당시에 캐나다 등의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전자계약협약의 비준 여부와 비준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4) 국내 관련법들과의 관계

1) 용어의 정비

①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 정의 규정 신설

전자거래기본법은 제2조에서 전자상거래모델법상의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를 수용하여 전자문서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⁸³⁾ 그런데 전자계약협약은 종래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수용한 각국의 입법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전자문서라는 용어 대신에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의 전자상거래분야에서도 "전자적 의사표시"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요소로 하는데, 전자계약의 경우에도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종전의 "전자문서"라는 용어보다는 이와 같이 "전자적 의사표시"라는 용어가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전자적 의사표시는 결국 전자문서라는 수단을 통하여 거래당사자들이 행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전자문서"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이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전자거래 관련 법제에서는 전자계약협약이 비준되면, "전자문서"와 더불어 "전자적 의사표시"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②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Automated Message System) 정의규정 신

83)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설

전자계약협약 제12조는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을 통한 계약체결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전자계약협약 제14조는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과 자연인간에 체결되는 전자계약의 과정에서 생기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협약 제4조는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위를 개시하거나 데이터 메시지 또는 그 실행에 응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화 또는 그 밖의 자동화된 수단으로서, 시스템에 의하여 행위가 개시되거나 응답이 생성될 때 자연인에 의한 검토나 개입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는 전자상거래모델법상의 전자문서의 귀속규정을 수용하여 “전자문서의 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일종의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제2조 정의규정에서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에 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가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에 의한 계약의 유효성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규정과 오류규정을 우리나라의 전자거래법제에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③ 영업소(Place of Business) 정의규정의 신설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 장소에 관한 규정인 제 6조 제3항에서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영업소가 2개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전자문서의 주된 관리가 이루어지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수용한 규정인데,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장소와 관련하여 영업소에 대하여 규정이 있으나, 정의규정에서는 영업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전자계약협약에서 적용범위 등과 관련한 영업소 개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한 입법례로 볼 수 있다.

전자계약협약은 제1조에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성립 또는 이행에 관련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적용된다”고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소의 개념이 전자계약의 국제성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은 제4조에서 영업소를 “당사자가 특정장소 밖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임시적인 제공을 하는 곳이 아닌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상설적인 설비를 가지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국내의 전자거래법제에도 전자계약협약의 영업소의 개념을 반영하는 정의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2) 지적재산권 이용계약에 관한 법제 정비

전자계약협약의 종래의 초안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제한적 이용 허여에 관한 계약을 협약의 적용제외사항으로 규정하였었다. 이 규정은 재화 또는 디지털콘텐츠라는 계약의 목적물 혹은 거래되는 재화의 성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성질, 즉 가상제품(디지털콘텐츠)의 개발자나 제작자가 라이선스의 단계에 따라서 통제권을 행사하는 소위 라이선스계약을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었다.

그러나 전자계약협약의 논의과정에서 전자계약의 형태가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계약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지적재산권이용계약을 전자계약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협약의 적용범위가 너무 축소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계약형태도 협약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등 전자적인 지적재산권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 지적재산권 이용계약에 관한 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3)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의 양도 문제

전자계약협약 제2조는 “환어음, 약속어음, 양도증서, 선하증권, 창고증권, 기타 소지인이나 수익자에게 운송물의 인도 또는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성 증권에 대하여는 전자계약협약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전자화 내지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의 양도문제는 전자식 운송증권, 전자어음, 전자수표 등에 관련된 사항이다.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서는 먼저 UNCITRAL 전자상거래작업부가 향후의 연구주제로 채택한 바 있고, UNCITRAL 운송부작업부에서는

새로운 국제운송법협약을 제정 중에 있으며, 이 운송법협약안에서는 전자식 운송증권을 소위 "양도성 전자기록(Negotiable Electronic Records)"이라는 용어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제정한 전자어음법의 시행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자무역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상법에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적 형태로 선하증권을 발행, 유통할 수 있도록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이와 함께 전자무역촉진법 등에서도 전자운송서류와 더불어 전자선하증권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법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4)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의 검토

전자상거래시 거래당사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허위정보를 제시한 경우 제재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계약협약은 제재규정을 둘 수 없는 이상 의무규정만을 두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순전히 각국의 국내법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 제7조는 “전자계약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에게 그들이 신원, 영업소 또는 다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는 이에 관한 부정확, 불완전 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에 따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당사자의 신원정보 내지 거래정보의 제공 및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책임문제에 대하여 전자계약협약은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각국의 국내법에 맡기고 있

는 것이다. 정보제공의무의 규정취지는 주로 기업간 전자거래 보다는 당사자간의 정보격차가 큰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규정을 둔 것이다. 모두 전자거래 당사자의 일방이 소비자인 경우 소비자 보호와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17조(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의 전자거래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써 일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의무규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의 통신판매업자의 일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의무규정과 동 법 제43조의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들은 대체로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으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규율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이 경우 전자거래사업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가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하는 경우에 관련 법제의 정비방향이 문제 된다. 전자거래의 특성은 비대면 거래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거래의 활성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거래의 비대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 계약뿐만 아니라, 기업간 전자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일정한 신원정보와 거래정보는 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5) 전자문서와 관련된 문제

① 전자문서의 문서성

전자계약협약 제8조는 “의사표시 또는 계약은 그것이 전자적 의사표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 및 집행력이 부인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계약협약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서면 흠결의 효과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가 이후의 참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가능하다면 그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각국의 국내법에서 서면요건 및 흠결시 효과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서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서면문서와의 기능적 등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⁸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계약의 성립에 서면을 요하는 것으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⁸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⁸⁶⁾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⁸⁷⁾ 등이 있다.

84)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자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 ②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8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제1항】**

할부계약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8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고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제2항】**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8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

이에 따라 할부계약, 방문판매,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도 반드시 계약사항을 명기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전자계약협약에서는 차후에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도 서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외에는 전자문서의 일반적인 서면대체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과 서면문서와의 기능적 등가원칙과 상충되는 국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② 전자문서의 원본성

전자계약협약 제9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보의 무결성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의 존재 및 필요시 그 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전자문서의 원본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문서의 원본성에 대하여 입력되기전의 원문서를 원본이라고 하고 전자문서 및 출력문서를 등본이라고 하는 견해, 전자문서가 원본이고 출력문서는 등본이라는 견해, 그리고 출력문서가 원본이라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에서도 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일반적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는 문서성이 인정되는 전자문서를 열거하여 제한하는

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서명법 제3조⁸⁸⁾는 공인전자서명된 전자문서만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문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55조⁸⁹⁾는 법원에 문서 제출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규칙 제120조⁹⁰⁾에서는 출력문서의 원본성 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이 전자문서의 경우 출력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자문서에의 원본성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들은 일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통일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해당사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의 소지가 남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원본성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개별 법률들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③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계약협약 제9조는 당사자의 신원 및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사용되었고, 그 방법이 여러 정황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88)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89) 【민사소송법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제1항】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90) 【민사소송규칙 제120조(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항】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출력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고 진정성립 등이 추정되나,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계약협약은 공인인증서명의 사용뿐만 아니라, 서명방법이 여러 정황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의 기준을 위하여는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6)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수신시기의 개정

전자계약협약 제10조는 종래의 전자상거래모델법과는 달리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수신시기에 관하여 최근의 전자적 환경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를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령가능성, 인식가능성 및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를 위시하여 전자정부법, 기타 전자거래 관련법은 대부분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5조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규정이므로, 전자거래협약을 비준할 경우 전자계약협약 제10조의 규정을 수용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7) 청약의 유인 규정 신설

전자계약협약은 제11조는 웹상의 재화나 용역의 게시는 그 제안을

상대방의 승낙에 기속시키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지 않았다면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거래 기본법이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문제는 해석에 의하여 전자계약협약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웹의 게시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중개사이트에 상품을 게시하거나 특별한 조건을 붙여서 게시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므로 이 문제도 전자계약협약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전자거래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8) 계약체결시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의 이용문제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유효한가의 문제는 특히 전자적 대리인 개념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다. 그러나 전자계약협약 제12조는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과 자연인의 상호작용 또는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연인이 그 시스템에 의한 각 단계나 성립될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 및 집행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할 경우에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체결시에도 전자계약의 유효성과 집행력이 있음을 국내 전자거래 관련 법제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9)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7조⁹¹⁾는 전자거래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조

작실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청약의 내용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자거래사업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적인 효력이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전자계약협약 제14조는 전자적 의사표시상의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범한 당사자는 전자계약협약이 정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오류를 범한 전자적 의사표시 부분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소한 조작실수로 커다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전자거래의 기술적 및 기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계약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업간 전자거래의 경우에도 필요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할 경우 전자계약협약의 규정을 수용하여 전자거래기본법 등에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소결

전자계약협약이 모델법의 차원을 넘어 구속력이 있는 국제계약으로 성립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계약에 관한 전자거래규범의 통일이 촉진됨에 따라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기존의 국제거래 관련 각종 협약이 전자적 환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국제적으로 전자거래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도 자타가 공인하는 IT강국으로서의 지위와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전자계약협약의 비준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

9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7조(조작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⁹²⁾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가입국이 10여국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가입국들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규모가 크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전자계약협약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있어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는 통일된 기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럽과 중미의 다수 국가들이 가입하는 시점까지 전자계약협약의 비준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우리나라와 국제무역이 활발한 미국, 일본 및 유럽 주요국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비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전자계약협약은 전자계약의 적용범위, 주권침해 가능성, 당사자 자치의 한계, 신분확인 요건 및 신뢰성의 기준, 수신시기와 영업장소와 관련된 문제 등 그 내용에 있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자계약협약의 비준에 앞서 이들 문제에 대한 검토와 주요 국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계약협약의 비준과 관련하여 통일적인 법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 국내법의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견해,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없다는 견해 등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계약협약에는 국내 관련법에는 없는 용어가 존재하고,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아울러 법률상의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하고 가입할 경우 국내 전자거래관련 법체제를 결정하고 정비하는 작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 비준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내

92) 정완용, 「UNCITRAL 전자계약협약(초안)의 검토 및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국제법무연구 제9호, 2005), 101~102면

법체제의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법체제의 마련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통일적인 전자거래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탄생한 전자계약협약은 현재 다수 국가의 가입을 유도하지 못하여 역할적인 측면에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하기까지는 자국의 전자거래 관련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전자계약협약의 비준보다는 주요국의 동향을 살피면서 국내 관련법 체제와 내용의 정비를 위한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비준여부와 비준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5. 전자계약협약 비준시 국내법 개정방향

(1) 기본방향

우리나라가 전자계약협약을 비준·가입하는 경우에 국제 전자계약 관련 특별법의 제정 여부와 통합적 전자거래법의 제정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국내의 전자거래 관련 법령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제 전자계약 관련 특별법의 제정여부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국제적 전자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계약에는 전자계약협약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국제적 전자계약과 관련하여 보충적 규정이 필요하거나 국내법에 위임한 사항 등이 있으므로 전자계약협약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전자거래 관련 법령을 정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국제적인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전자계약에는 동 특별법이 적용되고, 국내의 전자거래에는 전자거래관련 국내법이 적용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전자계약의 국경초월적인 특성상 전자거래관련 국내법도 전자계약협약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국내용 전자거래법제와 국제거래용 전자거래법제의 이중 구조의 법제를 갖게 되는 결과가 된다.

둘째,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서 성립하는 전자계약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계약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전자거래법의 제정으로 국내의 전자거래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전자거래 관련 법령은 전자계약협약과 차이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규정과 국내의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에 차이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의 불편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전자계약협약을 비준·가입한 후, 전자계약협약의 내용을 국내의 전자거래 관련 법제에 통합하여 국제적 전자상거래와 국내의 전자상거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인 전자거래법제를 만드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은 국내 전자거래법과 국제 전자거래법을 구별하지 않고 전자거래의 국경 초월적 특성을 반영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방안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주요국의 입법동향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지만, 전자거래의 국경초월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방안 중 어떠한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국내 전자거래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검토와 법제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 전자거래기본법

1) 정의 규정 추가

전자거래기본법은 제2조에서 전자상거래모델법상의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를 수용하여 전자문서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계약협약은 종래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수용한 각국의 입법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전자문서라는 용어 대신에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요소로 하는데, 전자계약의 경우에도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종전의 "전자문서"라는 용어보다는 이와 같이 "전자적 의사표시"라는 용어가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전자적 의사표시는 결국 전자문서라는 수단을 통하여 거래당사자들이 행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전자문서"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이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전자거래 관련 법제에서는 전자계약협약이 비준되면, "전자문서"와 더불어 "전자적 의사표시"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계약협약 제4조는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는 전자상거래모델 법상의 전자문서의 귀속규정을 수용하여 “전자문서의 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일종의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에 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에 의한 계약의 유효성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규정과 오류 규정을 반영해야 할 것이므로,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에 관한 정의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수용한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 장소에 관한 규정인 제6조 제3항에서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장소와 관련하여 영업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2조 정의규정에서는 영업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전자계약협약에서 적용범위 등과 관련한 영업소 개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한 입법례로 볼 수 있다. 전자계약협약은 제1조에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성립 또는 이행에 관련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적용된다”고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소의 개념이 전자계약의 국제성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은 제4조에서 영업소를 “당사자가 특정장소 밖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임시적인 제공을 하는 곳이 아닌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상설적인 설비를 가지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국내의 전자거래법제에도

전자계약협약의 영업소의 개념을 반영하는 정의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2)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

전자계약협약은 제재규정 없이 의무규정만을 두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순전히 각국의 국내법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신원정보 내지 거래정보의 제공 및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책임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각국의 국내법에 맡기고 있다. 정보제공의무의는 기업간 전자거래 보다는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규정을 둔 것이다. 모두 전자거래 당사자의 일방이 소비자인 경우 소비자 보호와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거래기본법 제17조(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는 전자거래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써 일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의무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으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규율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이 경우 전자거래사업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가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하는 경우에 관련 법제의 정비방향이 문제 된다. 전자거래의 특성은 비대면 거래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거래의 활성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거래의 비대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 계약뿐만 아니라, 기업간 전자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일정한 신원정보와 거래정보는 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계약협약 제9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보의 무결성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의 존재 및 필요시 그 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전자문서의 원본성을 인정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에서도 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일반적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는 문서성이 인정되는 전자문서를 열거하여 제한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원본성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4)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

전자계약협약 제10조는 종래의 전자상거래모델법과는 달리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수신시기에 관하여 최근의 전자적 환경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를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령가능성, 인식가능성 및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2항의 수신시기에 관한 규정은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5조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규정이다. 따라서 전자거래협약을 비준할 경우 전자계약협약의 규정을 수용하여 전자상거

래기본법 제4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전자서명법

전자계약협약 제9조는 당사자의 신원 및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사용되었고, 그 방법이 여러 정황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고 진정 성립 등이 추정되나,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계약협약은 공인인증서명의 사용뿐만 아니라, 서명방법이 여러 정황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의 기준을 위하여는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4)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1)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7조⁹³⁾는 전자거래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조작실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청약의 내용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9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7조(조작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자거래사업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적인 효력이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자계약협약 제14조는 전자적 의사표시상의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범한 당사자는 전자계약협약이 정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오류를 범한 전자적 의사표시 부분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소한 조작실수로 커다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전자거래의 기술적 및 기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계약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업간 전자거래의 경우에도 필요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할 경우 전자계약협약의 규정을 수용하여 전자거래기본법 등에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청약의 유인

전자계약협약 제11조는 웹상의 재화나 용역의 게시는 그 제안을 상대방의 승낙에 기속시키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지 않았다면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 문제는 해석에 의하여 전자계약협약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웹의 게시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중개 사이트에 상품을 게시하거나 특별한 조건을 붙여서 게시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거래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전자계약협약의 청약의 유인에 관한 규정을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전자계약협약은 전자계약의 형태가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계약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지적재산권이용계약을 전자계약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협약의 적용범위가 너무 축소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계약형태도 협약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등 전자적인 지적재산권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관한 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6) 전자적 유가증권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전자계약협약 제2조는 “환어음, 약속어음, 양도증서, 선하증권, 창고증권, 기타 소지인이나 수익자에게 운송물의 인도 또는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성 증권에 대하여는 전자계약협약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전자화 내지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의 양도문제는 전자어음, 전자식 운송증권 등에 관련된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제정한 전자어음법의 시행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자무역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상법에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적 형태로 선하증권을 발행, 유통할 수 있도록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이와 함께 전자무역촉진법 등에서도 전자운송서류와 더불어 전자선하증권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법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7) 계약의 성립에 서면을 요하는 법률

현행법상 계약의 성립에 서면을 요하는 것으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할부계약, 방문판매,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도 반드시 계약사항을 명기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전자계약협약에서는 차후에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도 서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외에는 전자문서의 일반적인 서면대체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과 서면문서와의 기능적 동가원칙과 상충되는 국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8)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제355조는 법원에 문서 제출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규칙 제120조에서는 출력문서의 원본성 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이 전자문서의 경우 출력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규칙도 전자문서의 원본성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9)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전자계약협약 제12조는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과 자연인의 상호작용 또는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연인이 그 시스템에 의한 각 단계나 성립될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 및 집행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할 경우에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체결시에도 전자계약의 유효성과 집행력이 있음을 국내 전자거래 관련 법제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10) 기타 사항

전자계약협약은 제19조에서 적용범위에 대한 선언을, 제20조에서는 전자계약협약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기가입 국제협약에 대한 적용제외의 선언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자계약협약 가입시 적용범위와 적용제외 등에 관한 선언내용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V. 관련 국내법 현황

1. 전자거래기본법⁹⁴⁾

(1) 개요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여 그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 및 거래의 공정성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전자거래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 1월에 제정되었다.⁹⁵⁾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고, 전자상거래도 그 질적·양적 변화를 거듭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은 2002년에 전문 개정되었고, 이후 6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 등 전자거래관련 국제기구의 규칙과 각국의 관련 법률을 참조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때 주로 참고된 외국법제는 미국통일상법전, 통일전자거래법 등이다. 그런데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자거래의 확산과 전자거래기술과

94) 백윤철·양만식,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한국학술정보, 2006), 87~100면

95) **【전자거래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이 급속하게 발전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자거래기본법이 전문개정을 포함하여 무려 6회나 개정된 것이다.

(2)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및 변경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⁹⁶⁾ 한편,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본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본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게 본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⁹⁷⁾

전자문서의 송·수신 일시 및 장소, 작성자 송신 의제, 수신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확인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자와 수신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⁹⁸⁾ 즉, 이들 규정은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96) 【전자거래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97) 【전자거래기본법 제40조(상호주의)】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게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98)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간 약정에 의한 변경)】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2) 전자문서

①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⁹⁹⁾ 서면문서와 마찬가지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는 재판 기타의 법적 절차에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전자문서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② 전자서명의 효력¹⁰⁰⁾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다른 법률에 그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그리고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작성자가 서명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그 내용의 변경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반증하여야 한다.

99)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00) 【전자거래기본법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자문서의 보관¹⁰¹⁾

관계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서면문서로 보관함이 원칙이지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로써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즉,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고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문서의 보관을 행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일정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을 전자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송·수신 일시 및 장소¹⁰²⁾

101)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서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전자문서가 언제, 어디에서 송신 또는 수신되었는지의 문제는 거래계약의 성립시기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이들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전자문서의 송·수신 일시 및 장소가 결정되겠지만, 이러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수신 일시 및 장소를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문서는 작성자 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수신에 관하여는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전자문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한 컴퓨터 등이 아닌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 전자문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전자문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102)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①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③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영업소가 2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전자문서의 주된 관리가 이루어지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

한편, 전자문서는 각각 작성자와 수신자의 영업장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영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전자거래와 가장 관련이 많은 영업장 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전자거래와 관련이 있는 영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장 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서 전자문서가 송·수신된 것으로 본다.

⑤ 작성자 송신으로의 의제¹⁰³⁾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직접 전자문서를 송신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신자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전자문서가 송신되었음을 당해 전

103)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 ① 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그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 ③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자문서의 수신과 동시 또는 상당한 시간내에 통지를 받은 경우이거나, 또는 수신자가 소정의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신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⑥ 수신전자문서의 독립성¹⁰⁴⁾

수신한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각 문서마다 그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신자가 소정의 확인절차에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독립된 문서로 보지 아니한다.

⑦ 수신자의 확인¹⁰⁵⁾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수신자에 대하여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수신확인통지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수신자가 수신확인통지를 하여야 하며, 수신확인통지의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신자는 작성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104) 【전자거래기본법 제8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자문서는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5)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수신확인)】

①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법」 제53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한 경우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방법으로 수신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신확인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가 완료되어야 전자문서송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완료시점은 수신확인통지가 작성자에게 도달한 때로 본다. 따라서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가 작성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한편,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효력발생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한 경우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내에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3) 전자거래의 안전

① 개인정보의 보호

전자거래의 당사자, 인증기관 및 정보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의 이용에 관한 역무를 제공하는 자(전자거래당사자 등)는 그 전자거래 또는 역무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본인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거래당사자 등은 전자거래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재화나 역무의 배달을 의뢰하는 자에게 배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명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자거래당사자 등은 처리, 전송 또는 보관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기가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즉, 전자거래당사자 등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그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컴퓨터 등의 안전성

전자거래당사자 등은 전자거래에 사용되는 컴퓨터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컴퓨터 등의 운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수탁자로 하여야 한다. 이때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컴퓨터 등의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자거래당사자 등은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신속하게 장애를 제거하여야 한다.

한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사이버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이버몰에는 그 운영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도 포함)·주소·전화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공인인증기관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인인증기관은 전자문서 작성자의 신원 기타 거래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또한, 정부는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암호제품¹⁰⁶⁾

전자거래당사자 등은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의 목적을 위하여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전자거래의 촉진

① 전자거래의 표준화¹⁰⁷⁾

106) 【전자거래기본법 제14조(암호제품의 사용)】

- ①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07)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전자거래의 표준화)】

- ① 정부는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등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분과위원회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조사·심의 및 의결한다.

정부는 전자거래를 촉진하고 관련기술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및 기타 전자거래의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또한 이러한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둔다. 동 위원회는 전자문서의 표준화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의 수립,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조사·심의한다. 전자문서의 표준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전자거래의 표준화를 위한 각종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③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사항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108)

③ 국제협력의 촉진¹⁰⁹⁾

정부는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¹¹⁰⁾

정부는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전자거래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기타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자거래의

108) 【전자거래기본법 제25조(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09) 【전자거래기본법 제29조(전자거래의 국제화)】

- ①정부는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에 관한 정보·기술·인력의 교류, 공동조사·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표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정부는 국제기구에서의 전자거래에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0) 【전자거래기본법 제33조(분쟁의 조정)】

- ①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 회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동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5) 소비자 보호¹¹¹⁾

정부는 소비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동 소비자보호지침은 관련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시한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전자거래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주요 결정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전자거래당사자 등과 사이버몰 운영자 등은 소비자보호단체의 소비자보호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제공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전자거

111) 【전자거래기본법 제1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등)】

①정부는 「소비자기본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7.5.17>

②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1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①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교육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래에도 이를 적용한다. 한편, 전자거래당사자 등과 사이버몰 운영자 등은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는 적절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전자서명법¹¹²⁾

(1) 개요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1999년에 제정되었다.¹¹³⁾ 그런데 이 법은 전자서명을 위한 기술을 ‘전자서명키’ 등 특정기술로 한정하고 있었으므로, 장래의 전자서명 및 인증기술의 발전추세에 대비하여, 보다 다양한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의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확대되는 국제거래상의 전자서명 인증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에 개정되어 2002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기술로 한정하던 전자서명을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용 가능한 모든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그 개념을 정

112) 백윤철·양만식, 「전게서」, 100~113면

113) **【전자서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하였다.

둘째,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업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의 안전운영 여부의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넷째, 외국정부와 상호인증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의 전자서명과 인증성 대하여 우리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2) 주요 내용

1) 전자서명의 효력¹¹⁴⁾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 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당해 전자문서의 명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그 변경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

114)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 ③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을 부담한다. 또한 이러한 전자서명을 쓰면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할 수도, 거래 상대방이 거래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다.

전자서명은 사이버공간에서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디지털 인감증명’, 인터넷뱅킹, 사이버 주식거래, 온라인쇼핑 등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 내용의 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인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서명은 다음과 같은 응용분야가 있다. 즉 공공분야에서는 민원사무, 인허가 신청, 조세행정, 정부조달EDI, 수출입 통관, 공문서 유통, 전자출원 등,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전자쿠폰 등이 있고, 일반 전자거래분야에서는 기업간 정보유통, 인터넷쇼핑, 각종 예약, 우체국전자상거래, 화물 운송 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분야로 의료차트 처방전, 법원경매, 전자공증, 내용증명, 시점확인, 성적조회, 의료보험금 청구, 단말기 사용 등이 있다.

2) 공인인증기관

① 지정

정부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자연인은 그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¹¹⁵⁾

115) 【전자서명법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 ③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

한편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전자서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법인이나 전자서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¹¹⁶⁾

그리고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증관리체계 운영인력 12인 이상)·재정능력(자본금 80억원 이상)·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

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생략)

116) **【전자서명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임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정받는 경우에는 재정능력에 관한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전자서명이라도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효력과 사용방법이 달라진다.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공인인증서)은 동일한 인증서를 은행이나 증권 거래는 물론 전자민원 서비스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설인증서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기업간 전자거래, 가상 사설망(VPN)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법적 효력면에서도 공인인증서는 오프라인상의 서명 날인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나도 이용자 과실이 없다면 공인인증 기관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사설인증서는 당사자끼리의 약정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손해배상 절차도 까다롭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 주식거래 등 안전한 온라인 금융거래를 위한 필수품이며, 지금도 공인인증서 한 장만 있으면 국내 은행의 웬만한 인터넷뱅킹 업무를 볼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발급 등 정부의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자민원 서비스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 업무와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를 포함해 140여 가지가 있고, 전자화폐를 쓰거나 온라인으로 보험거래를 할 때도 공인인증서를 쓰면 훨씬 안전하다. 공인인증서는 기업간 전자계약이나 인터넷 무역에서도 법적 효력을 갖는 서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의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거래은행의 온라인뱅킹 서비스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받는 것이다. 발급비용은 1년에 1만원, 기업은 10만원이지만 금융기관에서는 고객들을 위해 대신 내준다.

공인인증서는 은행, 우체국 등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찾아 실명 확인을 거친 고객에게만 발급된다. 하지만 PC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미 신원확인을 마쳤다면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쓰려면 자신의 PC에 먼저 설치해야 한다. 등록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 승인코드 등을 입력하면 설치작업을 마칠 수 있다. 이때 인증서를 플로피디스크나 범용직렬버스(USB) 방식 저장매체 등에 저장하면 두 대 이상의 PC에서 인증서를 쓸 수 있다.

② 인증업무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업무의 종류,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인증역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및 기타 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¹¹⁷⁾

117) 【전자서명법 제6조(공인인증업무준칙 등)】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인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종류
2.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3. 공인인증역무(이하 "인증역무"라 한다)의 이용조건
4. 기타 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공인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신고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입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되며,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된다.¹¹⁸⁾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한국정보보호센터로부터 전자서명 검증키를 인증받아야 하며, 이 인증 받은 전자서명 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 생성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인인증기관은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양수하거나 다른 공인인증기관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증업무를 양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합병한 경우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공인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¹¹⁹⁾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6월을 초과할 수 없다)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8) 【전자서명법 제7조(인증역무의 제공 등)】

- ① 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119) 【전자서명법 제9조(인증업무의 양수 등)】

- ① 공인인증기관은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양수하거나 다른 공인인증기관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양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공인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증업무의 폐지를 신고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인증서와 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의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이러한 신고를 받은 때에 한국정보보호센터에 대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 등을 인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¹²⁰⁾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이 부적합하여 전자서명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임원이 제5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

120) 【전자서명법 제10조(인증업무의 양수 등)】

- ①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을 인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⑤ (생략)

업무의 양수나 공인인증기관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업무 폐지 시 가입자인증서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회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서를 폐지하거나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 열람 또는 오류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인증서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증서에는 가입자의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키,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인증성의 일련번호, 인증성의 유효기간,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및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한국정보보호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전자서명 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 생성키를 이용하여 당해 인증서에 전자서명하여야 한다.

한편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¹²¹⁾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역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¹²²⁾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및 한국정보보호센터가 공인인증기관에게 발급한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또한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

121) 【전자서명법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①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이름(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5.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7.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9.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③ 삭제

④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⑥ (생략)

122) 【전자서명법 제28조(요금 부과)】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역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우에는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이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 경우 및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보호센터로 하여금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¹²³⁾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정지된 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서 효력 회복의 신청은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¹²⁴⁾

123) 【전자서명법 제16조(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①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5. 삭제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였거나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모든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4) 【전자서명법 제17조(공인인증서의 효력 정지 등)】

①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정지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효력회복의 신청은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에 관하여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입자의 사망·실종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및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인증관리 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¹²⁵⁾

4) 인증업무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 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키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 생성키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가입자의 승낙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전자서명 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때에는 한국정보보호센터

125) 【전자서명법 제18조(공인인증서의 폐지)】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사망·실종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¹²⁶⁾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이러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기관에게 발급한 인증서를 폐지하고 인증관리 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된 인증서는 폐지된 때부터 그 효력이 소멸된다. 그리고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때에는 한국정보보호센터는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한편,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 생성키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된다.¹²⁷⁾

126) 【전자서명법 제21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 ①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당해 가입자의 동의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호진흥원에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27) 【전자서명법 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 ①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누구든지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가입자인증서 등을 당해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¹²⁸⁾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공인인증기관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인증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리고 인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거나 당해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이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5) 벌칙

가입자의 신청 없이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키를 보관하거나 전자서명 생성키의 보관을 신청한 가입자의 승낙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

된다.

128) 【전자서명법 제22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 ①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당해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한 자, 타인의 전자서명 생성키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및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가입자인증서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수집된 개인정보를 인증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한 자 및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술한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인증업무준칙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인증역무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인증업무의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인증업무의 폐지 또는 지정 취소시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한 자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상술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위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¹²⁹⁾

(1) 의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목적으로 2002년 3월에 제정되었다.¹³⁰⁾ 이 법에서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여,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¹³¹⁾ 다

129) 백운철·양만식, 「전게서」, 116~121면

13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조(정의)】**

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는 제외된다.

(2) 주요내용

1) 적용범위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이 제한된다.¹³²⁾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 3.~6. (생략)

13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조(적용제외)】

- ①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가 사전에 숙지된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
 2.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 ③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의 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의 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

먼저,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은 제외되며,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둘째, 이 법 제13조 제2항(통신판매업자가 교부할 서면)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서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가 사전에 숙지된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 및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외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셋째,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계약에 관한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청약의 철회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넷째,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의 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의 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 법 제12조 내지 제20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계약에 관한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청약의 철회, 손해배상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¹³³⁾

2)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에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정보처리시스템)로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송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및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할 경우 등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자문서의 효력 및 수령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을 강요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도 안된다.¹³⁴⁾

13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13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①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에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로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에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를 보존할 수 있다.¹³⁵⁾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¹³⁶⁾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자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자문서의 효력 및 수령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을 강요(특수한 표준 등의 이용으로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③ (생략)

136)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7조(조작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전자결제수단 발행자·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은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대금지급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고, 언제든지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을 발행한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기타 주의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한편,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 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¹³⁷⁾

137)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 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③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 ⑤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¹³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하며,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¹³⁹⁾

138)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생략)

139)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금지행위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한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 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및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¹⁴⁰⁾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¹⁴¹⁾

14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이하 생략)

②(생략)

(1) 목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¹⁴²⁾

(2) 주요내용

1) 전자문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업무와 전자문서 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전자서명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간주하며, 허가 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¹⁴³⁾

141) 백윤철·양만식, 「전게서」, 130~132면

142) **【정보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43) **【정보보호법 제18조(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전자문서가 기록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¹⁴⁴⁾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며, 전자문서중계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¹⁴⁵⁾ 그리고 전자문서 중계설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¹⁴⁶⁾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 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업무와 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은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4) 【정보보호법 제19조(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①전자문서는 작성자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다만, 지정한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

145) 【정보보호법 제20조(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전자문서중계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146) 【정보보호법 제21조(전자문서 등의 공개 제한)】

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중계설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

2)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¹⁴⁷⁾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이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및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서는 아니된다.

147) 【정보보호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¹⁴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¹⁴⁹⁾

148) 【정보보호법 제24조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49) 【정보보호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또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¹⁵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¹⁵¹⁾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¹⁵²⁾

이용자는 언제든지 전술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이러한 철회 또는 열람 또는 정정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¹⁵³⁾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이용한 때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4.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150) **【정보보호법 제27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이용자 수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략)

151) **【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생략)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152) **【정보보호법 제28조2(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53) **【정보보호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¹⁵⁴⁾

(1) 의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7일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인터넷 이용 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발달하여 있으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적 자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잘 발달된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내세울만한 디지털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통신망 등 인프라는 우리가 건설하고, 이러한 인프라 위에 외국에서 제작한 디지털콘텐츠가 주로 유통될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먼저,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콘텐츠의 소재부족을 들 수 있고, 둘째로는 기존에 존재하는 콘텐츠도 적절하게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대중적인 콘텐츠부터 고급의 문화콘텐츠까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내역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⑦ (생략)

154) 강석호, 「컴퓨터정보거래계약의 위반과 구제법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5~69면

지 수 많은 창작 콘텐츠가 양산되어야 디지털콘텐츠산업도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창작 콘텐츠는 그 개발과 양산은 쉽지 않고, 긴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현재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상품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콘텐츠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당해 디지털콘텐츠가 정보환경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 제품의 시장가치를 위해서 필수적이며, 적지 않은 시간과 자본이 투자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반면에 이것을 복제할 경우 초기 비용이나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불법복제에 대한 유혹이 강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불법복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복제를 막는 유용한 제도적 장치로 먼저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저작권법이다. 실제로 디지털콘텐츠 중에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아보호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창작보호법이므로, 창작적 표현이 아니면 보호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고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디지털 콘텐츠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에 포함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받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 제작자를 경쟁자의 부정한 이용으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육성하는 것이 동 법의 제정목적인 것이다.¹⁵⁵⁾

15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저작권법으로는 곤란하지만 이 법으로는 일차적 보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유명 만화가의 작품을 정식으로 사용허락 받은 회사가 적지 않은 자본을 투입하여 디지털화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아무런 권한이 없는 타사가 무단으로 이를 변형하여 동일하게 서비스함으로써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작자인 만화가는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를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사용허락을 받은 회사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서는 이러한 무단복제가 5년간 금지되므로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구성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은 디지털콘텐츠제작자 보호규정은 물론,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추진체계 및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에 대한 규정을 두어 디지털 콘텐츠사업자를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원방안은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지원,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 촉진, 표준화 추진, 유통 촉진,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등이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은 정책심의조정을 위한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정책의 집행과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VI. 관련 국제규범 및 국제지침

1. ICC eTerms2004와 ICC Guide to electronic contracting¹⁵⁶⁾

(1) 제정동기와 필요성

1) 제정동기

국경 없는 범세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전자계약체결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법적 명확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현실문제로 등장한지 오래되었다.

ICC는 기업의 이러한 현실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자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으며, 수정에 융통성이 용이한 분야를 연구하던 중 청약·승낙의 발신과 수신에 관한 문제가 전자수단의 법적인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당면 문제임을 알고 이들에 대한 규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1년이라는 단 기간에 양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2) 필요성

전자계약체결에 있어 계약체결방법은 거래의 구속시기와 계약 내지

156) 오세창, 「ICC eTerms 2004와 ICC Guide to electronic contracting에 관한 소고」

(경영경제 제38권, 2005), 125~138면

약속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사실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자신의 약속의 표현을 시대의 기술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왔다. 예를 들면 단순한 대화, 약속, 문서상의 서명, 문서의 발송, 전화, Telex, Fax 등은 시대의 기술변화에 따라 상인들이 자신들의 약속의 표현방법이었다. 이러한 시대에 따른 기술변화에 적응하는 표현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살아남았고 번창해왔는바, 전자시대 전자메시지를 통한 약속의 표현도 이들 수단의 사용을 통해 살아남고 번창할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시대의 변화에 대한 기술의 변화에 적합한 상인들간의 표현방법은 바로 상인들간의 약속의 입증방법이라는 문제의 한 해결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약속의 표현방법으로 전자시대에 기업의 적응을 도울 규정일 필요한 바, 이러한 필요에 따라 eTerms2004가 제정되었으며, eTerms2004를 채용키로 당사자들간에 합의하면 전자식에 의한 계약체결을 의도적으로 합의한 꼴이 되고, 이는 바로 계약의 효력에 관한 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즉, 법적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

반면에 Guide는 eTerms2004의 채용에 따라 전자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효력문제외에 신속과 간결함은 있지만, 동시에 기회와 우려가 따른다. 따라서 기업이 안심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반응이 신속하고 실질적이며 융통성이 있는 사전주의 역할을 하는 안내서가 필요한 바, 이러한 일종의 전자계약 체결을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Guide라 할 수 있다.

(2) eTerms2004의 개요

1) 규정

제1조 전자상거래 합의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 1.1 전자메시지의 사용은 당사자들간에 유효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를 창출한다.
- 1.2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 전자메시지는 증거로서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전자메시지는 수신인 앞으로 발송되어야 하고, 수신인에 의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지명된 기호체계가 있다면 기호체계형태도 발송되어야 한다.
- 1.3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 전자수단의 사용이 자연인에 의한 검토여부에 관계없이 전자수단의 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진 모든 통신 또는 합의의 유효성은 거부되지 아니한다.

제2조 발송과 수령

- 2.1 전자메시지는 (a)발송자의 관리를 벗어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 발송 또는 발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b)수신인에 의해 지정된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 수신(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 2.2 전자메시지가 수신인에 의해 지정된 정보시스템 이외의 정보시스템 앞으로 발송된 경우 전자메시지는 수신인이 메시지를 알게 된 때 수신(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 2.3 본 계약을 위하여 전자통신은 발송자가 자신의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영업장소에서 발송 또는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수신인이 자신의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수신(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주요 내용

본 규정은 B2B간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계약협약은 제8조는 전자계약과 관련한 절차문제에 관한 그 유효성에 있어 서면나 데이터 메시지인 전자통신을 구분하지 아니한다는 중요한 무차별원칙을 분명히 하는 목적을 두고 있어 법적 인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eTerms2004는 전자메시지의 법적 명확성 제고를 위해 전자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따르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계약의 효력발생에 관한 규정으로, 준거법이 전자계약을 허용하는 한 eTerms2004가 적용되나, 법이 허용되지 아니하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eTerms2004는 전자거래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 명확성 제고에 초점이 있으며, 지금까지의 UNCITRAL과 ICC가 제정해 온 규정들의 관계를 보면, eTerms2004는 전자계약협약의 보완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동 규정에 상응하는 전자계약협약의 해당 규정보다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보완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Terms2004는 전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전자메시지의 특수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기

업으로 하여금 보다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ICC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중요한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규정을 수정할 수 있는 차원의 규정 제정작업원칙에 입각하여 제정되었다.

제2.3조와 관련하여 전자계약협약에 의하면 "작성자(Originato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eTerms2004는 "발송자(Sender)"를 사용하고 있다. 전자는 법적 책임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표현이고, 후자는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표현이다. 책임문제에서도 현실적으로 대리인적인 입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가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고 있어 법적 책임문제는 궁극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다. 법적인 문제가 궁극적으로 같을 경우 실질적이고 실용적이며 기업인들에게 친숙한 용어인 "발송자(Sender)"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자계약협약은 동일한 의미의 상이한 표현으로 평범하면서도 법적 표현으로 형식적인 표현이 필요할 때는 "Electronic Communication"을, 기술적인 표현이 필요할 때는 "Data Message"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eTerms2004는 "Electronic Message"와 "Electronic Means"를 사용하고 있어 동일한 의미의 상이한 표현이긴 하나, 전자계약협약보다 실용적인 표현을 선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계약협약과 eTerms2004의 관계에 대하여는 "ICC eTerms2004 and ICC Guide to electronic contracting"에 대한 무역법 위원회 소속 작업반의 다음과 같은 논평에서도 알 수 있다.

"전자계약협약은 법적 성격을 가졌는데 비하여 ICC규정들은 당사자들간에 계약적 조건형태를 지니고 있어 양자간에는 그 효력면에서나 법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계약협약과 ICC규정간에는 저축보다

는 보완적 성격이 있다. 전자계약협약 제10조와 관련하여 eTerms2004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전자계약협약상의 용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 이들 규정들 간에는 실질적인 모순이 없다."

eTerms2004도 자율규정이기에 Incoterms와 같이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규정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간에 채용을 사전에 합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자메시지의 정정에 관한 규정이 당초 제정예정에서 실현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Guide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ICC Guide to electronic contracting의 개요

1) eTerms2004의 기능과 관례

국제무역의 기본원리, 전자토인의 필요성, 전자통신의 사용에 따른 문제 확인과 해결에 기여, 당사자 자치의 원칙, 기존 협약과의 조화 등의 인식에서 출발한 전자계약협약과는 달리 eTerms2004는 전자계약 체결절차에 따른 법적 명확성 제고 기능, 당사자들이 전자계약에 구속됨을 합의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계약상에 쉽게 인용할 수 있는 규정의 단순화 기능, 전자계약 체결을 위한 전자수단의 상용과 전자계약 체결절차의 촉진 기능, 일체의 전자거래에 사용가능 기능, 일체의 전자수단에 사용가능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eTerms2004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그 적용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eTerms2004는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실체법이 아

니므로, 전자메시지의 전달과정에서의 오류는 계약의 내용과 준거법의 뜻이 된다. 이러한 위험 등에 대비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은 eTerms2004가 계약을 촉진시키되 대신할 수 없음을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eTerms2004는 전자수단을 통한 거래를 촉진할 뿐이므로 당사자들의 거래를 위한 계약조건은 당사자들의 책임으로 정의해야 한다.

2) eTerms2004의 채용방법과 법적 유효성

대부분의 나라는 당사자들이 계약체결방법에 관해 상호 합의하고, 합의에 따라 전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준거법에 의한 중재인이나 법관에 의해 그 유효성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다. 특수한 나라의 경우 전자계약에 대하여 그 유효성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자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당사자들이 합의 하면 전자로 구속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eTerms2004의 주요한 원칙규정인 제1.1조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분쟁의 경우 중재인이나 법관들에게 전자메시지를 사용하여 구속적인 계약을 창출하기로 하는 eTerms2004 제1.1조의 중요한 원칙에 합의한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하는 바, 이러한 통지는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eTerms2004 채용에 합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a) e-mail이나 전자통신을 통해 합의한 계약서상에 ICC eTerms 2004를 삽입하는 방법
- b) 계약기간과 계약형태가 명시되고 eTerms2004가 명시된 문서를

교환하여 서명하는 방법

c) eTerms2004에 합의한다는 전자문서를 교환하고, 그 다음 거래과정에서 eTerms2004에 의해 거래함을 주지시키면서 계약을 진행시키는 방법

그리고 eTerms2004 채용방법의 선택기준은 다음과 같다.

타방이 전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습관이 있는 경우 준거법이 전자계약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A)의 방법이 바람직하며, 준거법에 따라 특정 당사자와 전자계약 체결에 우려가 될 경우에는 b)의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c)는 a)와 유사하나, a)보다는 논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당해 거래에 eTerms2004가 적용된다는 명문의 성격이 a)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기준은 거래의 상황에 따라 고려하여 선택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eTerms2004의 채용 합의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전자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유효한 전자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법관이나 중재인들은 알아야 함을 강조하여 계약의 존재를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Terms2004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 전자계약 체결의 장점을 들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자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고, 거래상대방의 국내법이 전자계약을 허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 적용되는 준거법으로 전자계약을 인정하는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도록 상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 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형식요건에 관한 한 무시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전자계약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계약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전자계약 체결상의 유의점

전자계약의 체결이 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인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마음의 준비가 되기도 전에 계약에 구속됨을 발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전자계약에 익숙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회사들에게는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전자계약의 신속성과 사용 편리성이 초래할 수 있는 준비없는 계약 체결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 a) 전자계약 체결권자는 누구인가?
- b) 전자시스템이 구속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c) 오류의 경우 그 결과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대개 모든 회사들은 계약체결권에 대해 내부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부규정에 의해 실질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지 아니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보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들의 행위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전자계약의 경우 완전 자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 행동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이 있다. 물론 서면거래에서도 이러한 위험은 있으나, 전자계약의 경우 부당한 사용이 쉽고 이로 인한 회사의 손실은 상대적으로 커질 확률이 높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회사는 서명권을 가진 고용인에게 자신들이 서명권을 주지시키고, 누가 어느 정도의 체결권이 있는가를 주지시켜

야 한다. 그리고 서명권자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경우 e-mail 발송전에 내부조언을 받도록 당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호간에 인간의 개입이 없거나 개입해도 개입한계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대화식 수단으로 즉시 협상이 가능한 자동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 따라서 전자계약 체결(특히 자동전자계약 체결)은 일반계약 체결보다 위험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충분히 고도의 책임성과 권위,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취급할 수 있는 사전 주의와 전문성을 가진 소프트 디자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서면거래보다 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계약은 상호간의 철저한 사전 주의 외에는 달리 교정수단이 없으므로, 오류로 인한 전자계약 체결을 대비하기 위하여 위임받지 못한 자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에 따른 회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조치들도 강조되어야 한다.

4) 전자계약 체결 당사자에 대한 유의점

전자상거래에 있어 전자계약 체결권한에 대한 문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이다. 상이한 재판관할과 시차가 있는 지역에서 체결되는 전자계약의 경우 상대방의 신분확인이 용이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서면거래시에 편지지상의 두 서류를 보고 상대를 확인하듯이 가상공간에도 공간상에 나타나는 서식을 통해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속하고 편리함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보증되지 아니한 보안검색을 하고 만족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분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전 주의조치가 필요하다.

a) e-mail 진정성 확인을 위한 기본기준, 즉 기본절차인 다른 대안 수단을 통해 상대방과 계약체결 시도, 다른 매체상의 상대방의 계약명세 확인, 전자서명 확인 등을 통하여 전자계약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일

b) 진정성 확인 절차를 위해 인정된 공간에 들어가 사용하는 e-mail 주소, 암호, 전자서명 등을 확인하는 일

그러나 주의를 요하는 것은 특히 b)와 관련한 사항에 관해 이를 위해 인정된 장소에 들어가는 형태와 범위는 이용가능한 정보와 기술숙련의 정도, 당사자들의 위험 노출, 체결된 거래형태와 거래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5) 전자계약 체결 정보상의 유의점

eTerms2004는 거래조건 제시가 아닌, 전자거래 촉진에 제정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전자거래를 하려고 할 경우 거래형태와 거래조건을 사전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서면거래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서면거래의 경우도 거래하는 방식에 불구하고 거래조건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 계약서나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상에 명시조항을 두고 있다.

전자계약체결의 경우에도 일상 사용하는 조건, 계약에 특유한 조건 등 전자계약 체결과 중요한 조건들을 성공적으로 제시 내지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보와 거래형태, 거래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전자메시지와 website를 통해 잘 준비된 전자계약 해결을 위한 정보 가운데 전자수

단 상에 예시되는 정보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a) 설명과 영업장소 위치
- b) 등록번호와 확인번호
- c) 대표자와의 접속 가능한 아내
- d) 교환되는 통신언어와 관련있는 정보와 사용하는 언어
- e) 통신비의 분담 산정방법
- f) 청약과 가격의 유효기간
- g) 제품이나 서비스의 계약 유효기간
- h) 물품이나 서비스의 주요 특징
- i)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가격
- j) 인도조건과 비용에 관한 조건으로 예컨대 Incoterms의 표시
- k) 조건, 보증, A/S, 구제와 배상방법 등을 명시한 이행관련 내용
- l) 구매조건, 구제 적용지역과 기간, 사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
- m) 정보유지와 위반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내용
- n) 협력기구 내지 자율기구의 입증방법
- o) 분쟁 해결방법
- p) 대리점 접속가능 내용

그리고 서면계약과 전자계약간에서는 실질적인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매우 현실적인 방법으로 website와 같은 전자수단이 메시지고, 마케팅 도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전자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정보인 hardware, 예를 들면 website상의 상기 정보의 디자인과 배치는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적이고 분명하며 사용상의 편의가 따라야 한다.

효과적인 전자계약 체결을 전자수단으로 설계할 때 유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가상회사를 상대로 사용자들이 정보를 찾아 헤매도록 하지 말고 중요한 법적 내용의 발견을 쉽도록 구축하는 일

b)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 곳에서 논리적으로 구성되도록 구축하는 일

c) 계약의 체결을 위해 특정한 분야에 설치되어 있는 특정 조건의 참고를 하기 위하여 손쉽게 찾아 갈 수 있는 hyperlink와 같은 쉬운 절차방법을 제시하도록 구축하는 일

그리고 website 등 software구축시 주의해야 할 기술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a) 전달과 보관을 위해 파일크기를 생각해야 한다.

b) 프로그램의 버전에 따라 형식을 변경하거나 변화될 수 있고, 서류영상에 있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류영상에 관해서는 서식과 외형에서 안정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c) 법적 예산상 또는 상업상의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전자계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website 구축시 서식의 안전성, 서류와 서류작성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법, 이를 복사할 수 있는 보증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website 구축시 이러한 정보는 힘이라 할 정도로 전자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개인신분정보는 사어업적으로 매우 민감하며, 법적으로도 매우 엄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신분정보가 쉽게 자유로이 이동되고 있음이 현재 전자계약의 관습이다. website와 같은 software 작성시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첫째로, 디자인 단계에서 기술수준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해 다음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i) 어떤 정보가 website상에 제시되어야 하는가
- ii) 어떤 정보를 상대방에게 요구해야 하는가
- iii) 이러한 정보가 website상에서 자유로이 입수가 가능한지의 여부 또는 제한된 접속장소에서만 전시가 가능한지의 여부

이러한 결정들은 계약이 처음으로 체결될 때 주고 받은 정보뿐만 아니라, 계약기간동안 주고 받은 정보에도 역시 적용된다.

둘째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유출시킬 경우 자국의 계약법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지 모르므로 정보유출에 주의해야 함을 관계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취득되거나 전시될 정보의 공유에 대한 내부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서상에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문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하나의 표준약관으로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할 길이 없다. 따라서 정보에 관한 약관은 당사자들이 활동하는 법적 제도에서 정보의 성격과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야 하므로, 기밀유지 약관초안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i) 계약에 의해 지배되는 정보형태의 표시
- ii) 정보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보완요건과 계약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등한 의무를 규정할 것
- iii) 정보가 제3의 당사자로부터 취득된 경우 의무의 존재 여부
- iv) 지적재산권이나 거래기밀 권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
- v) 정보에 관한 특별법상의 요건이나 어느 일방의 재판관할에 정보양도에 관한 제한요건을 충족시킬 것

6) 전자계약 체결에 수반한 위험관리의 유의점

기업은 오래전부터 기술변화에 따른 도전과 도전에 따른 기회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해 다양한 평가, 위험의 경감,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감수위험범위의 결정 등 나름대로 위험관리를 하여 영업을 해오고 있듯이, 비록 새로운 전자기술시대에 당면하여서도 전자기술에 특유한 위험을 인식하고, 지난날과 같은 자체내의 위기관리과정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영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자기술시대에 기업이 직면하게 될 위험에 대한 관리는 고위층에서 결정하되, 위험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위험분석을 통해 취급되어야 한다.

위험분석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a) 특수한 기술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이며, 이러한 위험이 분실 또는 손상되거나 공개된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한 책임에 있어 타사로부터의 동일 형태 기술에 따른 역공적인 측면에서 생길 수 있는 일

b)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인가

c) 불가피한 위험이 무엇인가

d) 기술적, 절차적, 계약적 방법 또는 보험을 통한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

e) 위험감소에 소요되는 경비의 형태는 어떤가

f) 위험발생빈도와 그 결과 손해액은 어느 정도인가

위의 질문에 해답이 이루어져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층에 제출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해답의 도출자는 전자기술시대에 잘 무장되고 훈련된 그러면서 위험관리에 능통한 직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는 기록되어, 정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¹⁵⁷⁾

(1) 서

eUCP는 전자문서를 통한 무서류 거래에 확대적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UCP를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전자신용장 자체의 형식에 관한 내용보다는 기존의 신용장 거래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통일규칙이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전자서류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기반한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미 UCP에서는 신용장의 전자적 개설이나 통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혀 새로운 eUCP를 제정하기 보다는, UCP의 적용을 보충하는 수준의 eUCP를 제정이 서면서류에서 전자서류로 변화되어가는 과도기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 적용범위

eUCP는 전자서류 또는 서면서류와 전자서류를 동시에 제시할 경우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UCP를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전자신용장 자체의 형식에 관한 내용보다는 기존의 신용장거래에서 전자방식으로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eUCP는 신용장에 eUCP가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UCP를 보완하여

157) 이제현, 「전자무역서류 활성화를 위한 eUCP에 관한 연구」 (국제통상론집 제5권, 2003), 98~112면

적용된다.

전자신용장거래의 당사자인 수출상과 수입상이 전자신용장에 eUCP가 적용된다고 합의하여 동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전자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은 신용장에 eUCP규칙과 더불어 적용한 eUCP의 버전을 기재해야 되고, eUCP 버전은 신용장이 발행된 시기에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eUCP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에 효력이 있는 eUCP 버전이 적용된다. 따라서 전자신용장거래 당사자들은 전자신용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발행된 신용장에 eUCP의 준거문언과 eUCP의 적용가능한 판을 기재해야만 된다.

(3) UCP와의 관계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은 신용장에 UCP가 적용된다고 기재할 하지 않아도 UCP가 적용되며, eUCP와 UCP가 적용된 결과가 다른 경우에 eUCP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UCP가 전자서류 제시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고 있지만 불충분하기 때문에 eUCP를 통해 불충분한 서류를 보완하고 그 적용결과가 상충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eUCP신용장이 수익자가 서면서류와 전자서류를 선택하여 제시하도록 허용하고 수익자가 서면서류만을 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UCP만이 서류제시에 적용되며, eUCP신용장에서 단지 서면서류의 제시만 허용되는 경우에는 UCP만 적용된다.

(4) eUCP의 주요내용

1) 용어정의

전자신용장거래의 혼돈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UCP에서 적용된 용어와 eUCP에서 적용한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eUCP신용장 거래에서 제시된 전자서류에 eUCP를 적용하기 위하여 UCP에서 사용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문면상으로 보이는(appears on its face)"의 용어는 전자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심사할 때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동 용어는 전자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을 읽어보고 전자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행된 전자서류에 "The vessel is blow 15years of age."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이 기재된 내용이 전자신용장에서 요구한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지 그 선박의 연령이 실제로 15년 이하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서류(documents)"는 전자서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자서류를 제시하기 위한 장소(place for presentation)는 전자주소(electronic address)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서명(sign)은 전자서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류상의 "부기된(super imposed)", "표기(notation)" 또는 "소인이 찍힌(Stamped)"의 용어는 보완적인 특성이 전자서류에서 명백한 자료 내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CP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자서류(electronic record)"는 전자수단에 의해서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발송되고, 전송되고, 수취되거나 저장된 자료를 의미하며 발송자의 정확한 신원확인과 전자서류에 포함된 자료의 분명한 출처, 그리

고 전자서류가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지 등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eUCP신용장의 제조조건과 일치하는지 심사할 수 있어야 만이 유효한 전자서류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다.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은 전자서류에 첨부되거나 이와 논리적으로 관련되고 어떠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자서류에 어떤 사람의 확인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에 의하여 실행되거나 채택된 자료처리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서식(format)"은 전자서류가 표시되거나 전자서류가 언급된 자료의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서면서류(paper document)"는 기존의 서면서식으로 된 서류를 의미하며 "수취된(received)"은 전자서류가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서식으로 적용가능한 수취인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어떤 수신확인도 eUCP신용장에 의거하여 전자서류의 수리나 거절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전자서류의 제시와 심사

전자신용장은 전자서류가 제시되는 전자서식을 명시해야 하며 전자서류에 전자서식이 그렇게 명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서류는 어떤 전자서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각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서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은행에서는 사용 가능한 전자서류의 서식이라 할지라도 다른 은행에서는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UCP에서는 서면서류(paper document)로 제출하는 경우와 전자서

류(electronic records)로 제시하는 경우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제시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면서류의 경우에는 UCP에서 명시된 것처럼 물리적인 장소를 명시하면 되고 전자서류의 경우에는 eUCP 제3조 제a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전자주소를 표기하면 된다.

전자서류는 한꺼번에 제시될 필요는 없고 여러번에 걸쳐 나누어 제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한꺼번에 제시하도록 하지 않고 수회에 걸쳐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입장에서는 언제 전자서류의 제시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자서류의 제시완료를 서류를 제시하는 당사자, 즉 수익자가 은행에 서류제시의 완료통지(the notice of completeness)를 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서류제시의 완료통지는 서면 혹은 전자서류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은 UCP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UCP하에서는 수익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는 즉시 서류제시가 완료되고 은행은 이렇게 제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서류인수 혹은 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즉, UCP하에서 수익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한꺼번에 제시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자사항이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서면문서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 즉, 서류제시의 완료통지를 하지 않으면 서류제시 만료일전에는 언제라도 은행으로부터 서류인수거절통보를 받지 않고 서류를 보완 혹은 추가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수익자가 서류제시의 완료통지를 하지 않으면 서류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도

사유가 된다.

전자신용장거래에서 전자서류와 서면서류가 각각 제시될 경우 전자 신용장이 확인되어야 하고 전자신용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서류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eUCP에서는 전자서류가 제시되었다하더라도 제시된 전자서류를 확인(identification)할 수 없으면 비록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서면서류와는 달리 전자신용장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조작만을 통해서 전자서류를 위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자서류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전자서류는 아예 수령되지 않은 서류로 간주하여 사실상 은행으로 하여금 검사의 의무를 면제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UCP 제 15조에서는 은행에 대해 제시된 서류의 유효성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은행은 제시된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또는 법적 효력 등에 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서류 자체에 대한 효력의 문제이지 은행이 이러한 서류를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서류의 진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의심이 가지 않는 이상 제시된 서류를 검사할 의무를 진다. 즉 서면서류의 경우에는 제시된 서류의 진위성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고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과 일치하면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전자신용장의 경우에는 전자서류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예 서류가 수령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설령 은행이 이러한 서류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고 서류인수를 거절한다고 해도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은행에 항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일 전자서류가 제시될 때에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은행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전자서류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

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은행이 전자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날의 첫 영업일까지 유효기일이나 서류제시기일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이 조항은 UCP 제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조항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제17조에서는 불가항력의 조항에 은행내의 파업이나 직장폐쇄 등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은행의 면책을 허용하고 이 기간 동안에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만료된 경우에는 신용장의 조건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유효기일이 자동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신용장이 만료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의 전산시스템의 장애는 은행내의 문제로 은행의 불가항력조항으로 포함하여 신용장의 유효기일의 자동연장을 허용하는 eUCP 제5조 제e항은 UCP 제17조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UCP 제17조는 은행의 파업이 비록 은행내의 문제이긴 하지만, 은행의 파업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며, 은행이 아닌 제3자도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은행의 파업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동 은행을 이용하겠다는 신용장 당사자의 결정에 대해서 은행에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는 당연히 동 은행을 이용하겠다는 신용장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는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파업이 아니라 은행은 영업을 하고 있지만 내부의 전산시스템의 오류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산시스템의 오류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불가항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은행을 면책시켜 주는 것, 즉 신용장의 유효기일의 연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수익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UCP조항을 잘 살펴보면 eUCP 제5조 제e항의 내용은 UCP의 내용과

도 논리적으로 모순되지는 않는다. UCP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사유로 인해 은행의 휴업일이 된 경우에는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은행의 첫 영업개시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고려해보면 eUCP 제5조 제e항은 UCP 제44조와 모순되지 않는다. 즉, eUCP 제5조 제e항에서는 "은행이 비록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은행의 전산시스템이 오류를 보인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즉 휴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Bank will be deemed to be closed)"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UCP 제44조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사유로 인한 은행의 휴업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은행의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신용장의 제시기일이나 유효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UCP 제44조와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서류의 제시가 모두 이루어지고 서류제시의 완료통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전산시스템이 오류를 보인 경우에는 서류제시의 완료통지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eUCP상에서 전자서류의 제시에 대한 완료의 통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이 만든 규정으로 볼 수 있다.

eUCP 제5조 제f항은 제시된 전자문서의 진위확인이 않된 경우 전자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서류의 진위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에(cannot be authenticated)는 서류의 제시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UCP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면책과 상반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3) 서류의 검토

eUCP에서 서류검사 의무는 전자서류와 연관된 외부의 hyperlink의

내용까지 검사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전자서류가 외부시스템에 대한 hyperlink를 포함하거나 전자서류가 외부시스템에 대한 참조에 의해서 검사될 수 있다는 것을 표기한 경우 hyperlink나 참조된 시스템에서의 전자서류는 검사되어야 하는 전자서류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표기된 시스템이 검사시에 요구된 전자서류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전자서류의 불일치로 간주한다.

지정은행의 전자서류 제시는 전자서류의 명백한 진정성을 검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은행은 전자서류를 검사하는데 있어서 전자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hyperlink까지도 검사해야 한다. UCP에서는 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해야 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는가를 검사하는 것과는 달리, 전자서류의 경우 전자서류 자체뿐만 아니라 전자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외부의 hyperlink의 내용까지도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었다. 즉, 이것은 전자서류뿐만 아니라 전자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hyperlink의 내용까지도 신용장의 제 서류에 포함되게 되어 이와 같은 hyperlink의 내용이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hyperlink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서류상의 하자로 인정하여 서류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제시되어야 하는 전자서류의 서식을 명시해야 한다.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전자신용장에서 명시된 전자서식에 따라 발행된 전자서류를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 전자서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제시된 전자서류의 서식대로 서류를 검사해야 하며 제시된 서식으로는 검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서류인수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서류검토를 위한 기간은 수익자로부터 서류제시 완료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다음 은행영업일에 시작되고 서류제시 또는 완료통지를 위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서류검토기간은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은행이 서류제시 완료통지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은행영업일에 시작된다.

서류인수를 거절한 은행은 서류인수의 거절을 통보 받은 당사자로부터 서류인수의 거절을 통보한지 30일(30 calenda days)이 지난 후에도 당해 서류의 처분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 은행은 아무런 책임 없이 당해 전자서류를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UCP와 매우 다른 것으로 UCP 제14조 제d항에서는 은행이 서류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에 이를 서류 제시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당사자로부터 당해 서류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한 기간을 정한 후에 이러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은행이 아무런 책임 없이 서류를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은행의 전자시스템에서 일정량의 요량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전자신용장과 전자서류를 취급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과도한 전자서류를 자신의 전산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과부하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동 조항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eUCP에서는 전자신용장에 원본과 사본을 모두 복본으로 제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전자서류원본만을 제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서류로 신용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본서류와 사본서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원본 또는 사본을 복본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게 원본 또는 사본의 통수를 제시해야 한다. UCP 제20조 제C항에서 복본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원본 1부와 나머지를 사본으로 제시함으로써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규정된 수만큼의 복본을 제시해야 신용장의 조건을

충족되지만 eUCP 하에서는 비록 복본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통의 전자서류원본만을 제시하면 신용장의 제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eUCP상에서 전자서류로 서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원본과 사본의 구별을 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UCP 제20조 제b항과 제c항에서는 원본서류와 사본서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없음을 볼 때 원본 전자서류가 사본 전자서류의 역할까지도 겸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이는 전자서류의 특성상 전자서류의 복사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본이 사본까지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처럼 보인다.

전자서류에 있어서 전자서류에 당해 서류의 발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서류의 발송일을 전자서류의 발행일로 간주하며 수취일자는 다른 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서류의 발송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송을 입증하는 전자운송서류에 선적 또는 적송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전자서류의 발행일을 선적 또는 적송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서류에 별도의 선적 또는 적송일자를 증명하는 부기일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부기일자가 선적 또는 적송일로 간주하며 부기일자에 추가 기재된 내용은 별도로 서명이나 확인이 필요없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부기된 일자는 수취식 선하증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재된 날짜를 부기하고 이렇게 부기된 일자를 선적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전자운송서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eUCP에 따라 전자서류제시를 위한 책임의 추가적인 면책

전자서류의 외견상 진정성을 검사함으로써 은행은 전자서류의 수취, 진정성, 그리고 확인을 위해 상업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료처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취한 전자서류에 명확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송자의 신원, 정보의 출처, 그 완전성과 무변조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전자서류의 훼손

이 조항은 UCP에서는 없는 조항으로 제시된 전자서류가 훼손된 경우에 은행이 취할 조치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이다.

eUCP 제12조는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 또는 다른 지정된 은행이 제시된 전자서류가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은행은 서류제시자에게 당해 전자서류의 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UCP 제12조 제a항에 의해 은행이 재제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서류검사기일의 시작일이 서류가 다시 제시된 일자가 된다. 이러한 경우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는 서류의 재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당해 서류가 30일이 지나도 재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재 마감일 등은 연장되지 않는다.

UCP 제13조에서는 은행의 서류검사기일을 7영업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 기일내에 은행은 서류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7영업일 이내에 서류인수 혹은 서류인수 거절의 통지를 완료해야 한다. 그런데 UCP상에서는 수익자가 제시된 서류가 은행에 접수된 다음날로부터 서류검사일

자가 시작되며 서류의 훼손의 사유로 은행의 서류검사를 중지하고 다시 제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서류상의 하자로 인정하여 은행은 당해 서류의 제시자에게 서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eUCP 제11조에 의하면 만일 제시된 전자서류가 훼손된 경우에는 은행은 당해 전자서류를 다시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만일 재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은행의 서류검사는 중지되고 다시 완료된 시점에서부터 서류검사는 다시 시작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신용장과 관련된 서류의 제시가 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5) eUCP의 문제점

1) 서류문서의 전자화에 따른 문제

신용장거래는 상품이나 용역 또는 의무이행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상의 거래이다. 다시 말해서 신용장거래의 당사자인 수출상, 수입상, 개설은행, 확인은행(있을 경우)등은 서류만을 근거로 수출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거래상품이나 용역 또는 의무이행을 확인하고 수출대금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신용장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류는 국제적으로 정형화되거나 신용장거래에 참여한 은행이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출상과 수입상이 수출입매매계약에서 합의함으로써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서류를 전자화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용장거래에서 필수서류에 속하는 환어음,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은 전자화가 가능하지만 수출입상의 합의와 제품별, 지역별 상관습이 상이함으로써 발생하는 선박회사의 증명서, 선적증명서, 선장이 발행한 증명서, 수출상의 증명서 등은 전자화가 불가능하다. 전자신용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업종별, 지역별 상관습에 맞게 전자서류를 정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류를 전자식으로 구성하여 수출입상이 이러한 전자식서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은 상당한 기간(reasonable)내에 제시된 서류를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UCP에서는 상당한 기간이 7은행영업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매입은행,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기간은 서류를 접수한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7은행영업일 이내에 서류인수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7은행영업일에 은행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eUCP 제11조에 의하면 제시된 전자서류가 훼손된 경우에는 은행은 당해 전자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만일 재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은행의 서류검토일은 중지되고 서류제출이 다시 완료된 시점에서부터 서류검토일은 다시 시작된다고 규정하였다. 전자서류가 다시 제출되면 이전의 서류검토기간은 다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는 기간에 포함되어 재제출된 서류의 검토기일은 이전의 서류검토기간이 제외된 기간이 서류검토기일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서류검토기일이 시작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와 같이 본 eUCP에서는 서류검토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UCP 제13조 제b항이 전자신용장 거래에서의 서류검토기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때 서류검토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출입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전자신용장 및 전자서류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신용장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업무를 단축시켜 수출입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함에 있다. 따라서 전자신용장거래에서 전자신용장거래의 당사자인 매입은행, 개설은행, 확인은행, 개설의뢰인이 수익자가 전자방식으로 제시한 전자문서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동 전자문서의 인수여부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정하게 함으로서 전자무역거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신용장에서 명시한 제반서류가 전자식으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서류심사작업의 자동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제반 서류가 전자식으로 제시됨으로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그리고 제시된 서류상호간에 일치되는지에 대한 검사를 자동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서류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전자문서 검토기간은 서류문서 검토기간인 7은행영업일 보다 단축된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eUCP 제6조에서는 전자문서가 외부 시스템에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포함하거나 외부시스템을 참조하여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 하이퍼링크와 연결된 전자문서나 관련된 시스템은 검토될 전자문서로 간주되고 검토 당시에 요구된 전자문서에 접속을 제공하는 지적된 시스템의 작동불능은 불일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정에 의거한 지정은행의 전자문서발송은 은행이 전자기록의 분명한 출처의 정확성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전자신용장에 요구된 체제에 있는 전자문서의 검토, 또는 체제

가 요구되지 않을 경우 제시된 체제에 있는 전자문서의 검토불능은 거절의 근거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은행은 전자서류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전자서류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하이퍼링크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UCP에서는 은행은 수익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갖고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는가를 검토하는 것과는 달리 전자서류의 경우 전자서류자체뿐만 아니라 전자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의무가 추가되었다. 즉 이것은 전자서류뿐만 아니라 전자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하이퍼링크의 내용까지도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에 포함되어 이와 같은 하이퍼링크의 내용이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하이퍼링크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서류상의 하자로 인정하여 서류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동 규정은 UCP에는 없는 조항으로 전자서류의 제출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면서 새로이 생겨난 조항이다.

신용장거래는 상품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상의 거래이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는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 제 조건과 일치하는지 심사기준에는 엄격일치(strict compliance)와 실질적일치(substantial compliance)가 있는데 엄격일치는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서 명시된 내용과 자구 하나까지도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고 반면에 실질적 일치는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한 내용과 표기는 다르지만 제시된 서류 상호간에 모순이 없고 기재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신용장의 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면 일단 정당한 서류로 보고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은 서류를 인수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사은행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호한 점을 해소

하기 위하여 UCP에서는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을 서류심사기준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엄격일치에 입각하여 제출된 서류가 개별적으로 신용장 내용과 일치하나 서류상호간에 모순이 있으면 이것은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이 이러한 서류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서류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자신용장 거래에서는 모든 문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송부되기 때문에 정호가한 서류작성이 가능하고 심사은행의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전자 메시지를 통해 서류상의 차이와 부적절한 서류를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UCP에 구현되어 있는 엄격일치주의를 적용하여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2) 전자선하증권의 문제

신용장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과 상품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출상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 아래 선적서류를 담보로 하여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제3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상) 또는 어음수취인(어음 매입은행)에 대해서 약정하는 증서이다.

이러한 신용장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중의 하나가 선하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선주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에 의해 선주가 발행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서 선주가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사실과 화물

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이를 선하증권의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다. 이와 같이 선하증권은 화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거래에서 필수운송서류로 사용되고 있다.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증권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출상은 신용장에서 명시된 제반 서류를 매입은행에게 매입을 의뢰하고 매입은행은 제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수출상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출상이 선하증권을 배서함으로써 매입은행에게 이전되고 매입은행이 동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고 개설은행이 송부된 서류를 검토한 후 수출대금을 매입은행에게 송금하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은 개설은행에게 이전된다. 또한 개설은행이 동 서류를 수입상에게 송부하고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개설은행에게 지급하고 동 서류를 인수하면 화물의 소유권은 수입상에게 양도된다.

선하증권은 통상 3통의 원본이 발행되어 3통 전부 개설은행에게 송부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의 당사자인 매입은행, 개설은행, 확인은행, 개설의뢰인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인수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동 서류를 송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즉 서류인수를 하지 않을 경우 화물의 소유권은 송부인에게 있다. 개설의뢰인이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인수를 거부하면 동 선적서류는 반드시 수출상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동 선적서류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개설의뢰인은 수출대금지급에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상징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서류거래방식을 전자식으로 전환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시키는 데는 유통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선하증권이 갖고 있는 유통증권의 특성이 전자신용장거래에서는 발

회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선하증권이 전자식으로 발행됨에 따른 유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국제해사위원회는 개인키(private key)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송하인 또는 개인키의 유효한 소지인이 운송인에게 지시하여 상품에 대한 인도청구권과 운송상태에 있는 상품에 대한 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통가능한 선하증권의 기능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키에 의한 전자선하증권의 이전은 반드시 운송인을 통하여 이행된다는 측면에서 발행된 후에는 운송인의 개입 없이 유통되는 서류선하증권과는 상이하게 다르다. 수출입매매계약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수출상과 수입상보다 제3자인 운송인이 수출입매매계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키로 전자선하증권의 이전을 이행하면 운송인이 매매계약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로 되어 수출입매매계약의 이행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전자 신용장거래에서의 관련 은행이 개인키 방식을 수용하면 개인키의 취득으로 상품에 대한 담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은행이 전자선하증권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개인키의 보안문제, 안정성 확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은행은 이러한 개인키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3) 규정상의 문제

① 전자신용장의 형식

eUCP은 UCP를 보충하는 규정으로써 신용장거래에 있어 서류제출

등에 관해 전자서류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신용장거래에서 전자서류를 이용하여 전자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동 eUCP는 주로 전자서류의 제시와 검토, 전자서류인수의 거절사유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의 형식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양식으로 만들어진 신용장이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신용장은 신용장의 개설은행의 거래관습에 따라 다양하게 발행되었으나 전자신용장거래에서는 전자신용장을 국제적으로 규격화됨에 따라 전자신용장의 내용을 자동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검토프로그램의 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eUCP에서는 신용장 자체가 국제적으로 규격화된 전자서류의 형식을 이용하여 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eUCP 제4조

eUCP 제4조는 "전자신용장은 전자문서가 제시된 형식을 명시해야 한다.(must specify)"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must specify"는 강제규정으로써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형식이 명시되지 않으면 어떠한 형태로도 제시될 수 있다.(may be presented)"라고 규정되어 있어 선택사항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must specify"와 "may be presented"는 문장상 상호 모순되는 내용으로 표시되어 실무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겠다.

③ eUCP 제11조 제a항

eUCP 제11조 제a항은 "개설은행, 확인은행 또는 다른 지정은행이 접수한 전자문서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 해당은행은 서류제출자에게 전자문서의 훼손을 알릴 수 있고 전자문서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ay inform, may request"는 은행의 강제규정이 아니라 은행의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서류가 훼손되었다면 은행은 반드시 재제출을 요구해야 된다. (must inform, must request)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만약 제시된 서류가 훼손되고 은행이 재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서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관련은행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전자서류상의 하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서류의 훼손을 수출상에게 통지하게 함으로써 전자수출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자서류 훼손의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④ eUCP 제11조 제b항

eUCP 제11조 제b항은 "전자문서가 훼손된 경우 동 서류가 30일 이내에 동일한 전자문서가 재제출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전자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어떠한 최종기일도 연장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에 의하면 은행의 서류검토기간은 서류제시가 다시 완료된 기일에 시작되지만 어떠한 최종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은행의 서류검토기간을 산정하는 기산일을 명시하였다.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서류 제시 기일내에 재제출되어야 되며 동 기일내에 제시된 서류를 은행이 검토할 경우 은행의 서류검토기간은 재제출

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서류검토기간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즉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서류제시 기일내에 훼손된 서류가 전자신용장에 명시된 제시장소에 재 제출되어야만 은행의 서류검토기일이 연장된다. 이러한 동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서류의 재 제출기간을 30일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이 경과한 후에 제시된 서류는 은행은 검토할 의무가 없으며 동 기일을 경과하여 제시된 서류는 신용장거래에서 무효로 간주한다. 즉 은행은 신용장유효기일과 서류제시 기일 내에 제시된 서류에 대해서 검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30일로 규정된 서류의 재 제출기간을 신용장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CITA)¹⁵⁸⁾

(1) 개요

정보산업과 정보에 기초한 상거래는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의 거래대상과 계약구조는 전통적인 상품의 거래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곧 정보거래(information transactions)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실시허락(licensing)’을 포함하는 거래이며, 배포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관여하며, 디지털 기술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 정보거래의 주된 특징은 거래에 의하여 이전되고 획득되는 가치가 CD나 플로피 디스켓과 같은 유형의 재산이 아니라 유형의 매개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정보나 권리라는 것과 정보에 대한 거래가 조건적이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58) 백윤철·양만식,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한국학술정보, 2006), 270~314면

곧 정보를 담고 있는 유형의 매개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무체물인 정보가 거래의 주된 목적이며,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지적재산과 마찬가지로 복제가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거래하는 계약이 가지는 문제점은 그 기본적인 계약유형이 매매(sale)나 리스(lease)가 아닌 실시허락이라는데 있다. 실시허락은 한 당사자(실시허락자)가 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당사자(실시권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곧 실시허락은, 정보를 포함시키고 있는 유형의 매개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정보에 대한 권리를 이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조건이나 제한을 과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실시허락에는 물품의 매매나 리스에 바탕을 둔 기존의 법체제가 적용될 수 없고 새로운 법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정보거래는 정보 자체의 판매가 아니라 정보의 사용허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정보를 담고 있는 유형의 매개체 자체의 이전은 거래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디지털정보의 거래에 대한 규율은 이 같은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고, 디지털정보거래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립,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보증, 이행 및 구제수단 등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다.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의 제정이 추진될 당시 미국은 통일상법전(UCC)에 의하여 매매 및 리스에 관한 입법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컴퓨터정보 또는 디지털정보의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은 전미 통일주법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 NCCUSL)가 "컴퓨터정보거래"에서 주법의 통일을 기하고자, 1999년 7월 30일에 연차총회에서 채택한 모델법이다.

(2) 성립과정

컴퓨터정보를 거래하기 위한 입법은 미국 통일상법전 Art. 2B로 추진되었다. 정보거래의 진정한 목적은 디스켓이나 CD와 같은 유형의 매개체가 아니라 이에 포함되어 있는 무체물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들은 동산매매(sale of goods)에 관한 통일상법전의 규정을 종종 적용해 왔다. 따라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NCCUSL에 의하여 Art. 2B에 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Art. 2B는 디지털정보거래를 세계 최초로 규율하고자 한 입법으로서, 1991년 매사추세츠 변호사협회의 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1992년 NCCUSL(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은 이를 위하여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보거래를 규율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법체제를 구축하려는 Art. 2B도 다른 분야의 상사법의 법령화와 마찬가지로 컴퓨터정보거래에 관한 상업적인 관행을 반영하고 이 분야의 판례법을 법령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Art. 2B는 1994년 초안이 기초된 후 1995년 ‘무체물의 실시허락’에 대하여 Art. 2B 기초위원회가 새로이 선임되었으며, 1996년 2월 첫 초안을 발간한 이래 10여 차례 이상의 초안이 기초되었다. 또한 Art. 2B의 체정도 NCCUSL뿐만 아니라 미국법률가협회(American Law Institute : ALI) 양자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그러나 초안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체적인 정보에 대한 거래는 유체물품에 대한 거래와 상당히 다르고 물품에 대한 거래를 강조하고 있는 Art. 2와 Art. 2A(리스, lease)에 포함시키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컴퓨터정보거래를 법령화하는 프로젝트를

UCC로부터 분리하여 통일법으로 입법하는 것이 고려되었고, 마침내 1999년 4월 8일 ALI와 NCCUSL은 이를 UCC로부터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NCCUSL은 더 이상 ALI와 협력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컴퓨터정보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UCITA)로 명명하였으며, 1999년 7월의 NCCUSL의 연례회의에서 이를 채택되었다.

(3) UCITA의 구성

UCITA는 제1장의 총론을 비롯한 9개의 장(Part)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론(Sec. 101 ~ 114)은 UCITA의 적용범위,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 표준계약 및 shrink wrap license 사용의 제한, 전자상거래의 인정, 법과 법정지의 선택 등 총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장(Sec. 201 ~ 210)은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전자적인 환경에서의 계약체결 및 계약조건의 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Sec. 301 ~ 309)은 계약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계약문언의 증시에 관한 규칙(parole evidence rule), 계약조건의 수정,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장(Sec. 401 ~ 409)은 보증에 관한 규정으로서 컴퓨터정보거래에 적합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장(Sec. 501 ~ 511)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 관한 규정으로서, 소유권 및 실시계약하에서의 권리 및 의무의 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장(Sec. 601 ~ 618)은 이행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행에 관한 전통적인 규칙을 컴퓨터정보거래의 측면

에서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7장(Sec. 701 ~ 710)은 계약의 위반에 관한 규정으로서, 컴퓨터정보가 유형의 매개체에 고정된 경우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UCC 제2장의 규칙을 옮겨다 놓았으며, 포기나 예견된 계약위반 등에 관한 판례법 및 UCC 제2장의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8장(801 ~ 816)은 구제수단에 관한 것으로서, UCC 제2장에 기초하고 있으나 컴퓨터정보거래에서 적절하도록 UCC 제2장의 규칙을 다소 변경시켜 놓고 있다. 제9장(901 ~ 904)은 기타의 규정이다.

(4) UCITA의 적용범위

UCITA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디지털정보를 비롯한 기타의 정보이다. UCITA의 전신인 Art. 2B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멀티미디어 등의 창조와 배포, 컴퓨터 데이터, 인터넷,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배포하는 거래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인쇄, 영화, 방송, 음향저작물(sound recording, 실연자의 저작물) 등과 같이 정보산업에 대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8년 8월 1일의 Art. 2B의 초안은 실시계약과 소프트웨어 계약, 그리고 소프트웨어 계약에 관계되는 소프트웨어를 지원·유지 및 수정하기 위한 합의에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9년 2월 1일의 초안과 UCITA 최종초안은 “컴퓨터정보거래(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에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1) 컴퓨터정보거래

Art. 2B의 초안은 컴퓨터정보를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전자정보(electronic information)로서, 컴퓨터에 의하여 직접 처리·이용될 수

있거나 획득될 수 있는 형태의 전자정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였었다. UCITA에 의하면 컴퓨터정보는 ‘컴퓨터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컴퓨터에 의하여 접속할 수 있거나 컴퓨터에 이용될 수 있는 전자적인 (electronic) 형태의 정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정보의 복제물(정보를 포함하는 디스켓 등)과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자적인’이라는 것은 디지털(digital)이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형태의 정보를 포함한다고 하여 아날로그나 기타 미래의 컴퓨터 기술을 포함하는 형태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디지털기술에 한정함으로써 UCITA를 현재의 기술에 한정되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컴퓨터정보는 그것이 컴퓨터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여 컴퓨터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될 수 있는 형태의 전자적인 정보에 한정된다. 또한 컴퓨터정보는 인쇄된 정보(printed information)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컴퓨터에서 직접 이용될 수 없는 비디지털형태(nondigital form)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정보 거래는 서적과 같은 인쇄물의 형태로 된 정보를 배포하거나 이를 배포하기 위하여 창조하기로 하는 계약을 포함하지 않으며,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목적으로 정보를 창조하기로 하는 계약의 경우 그 정보가 전자적인 형태로 전달될지라도 그러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UCITA는 ‘컴퓨터정보 거래(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에 대하여 컴퓨터정보나 컴퓨터정보권(computer informational rights)을 제작, 수정, 이전 또는 실시허락하기 위한 합의나 합의를 이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거래에 대한 통신을 컴퓨터정보의 형식에 의할 것이라고 당사자들이 합의한다고 해서 컴퓨터정보거래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거래의 대상이 컴퓨터정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것이며, 당사

자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컴퓨터정보를 사용한다고 해서 컴퓨터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컴퓨터정보거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전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포함한다.

요컨대 UCITA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컴퓨터 정보를 개발하기 위한 계약에 적용되며, 영화, 음향저작물, 방송프로그램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UCITA가 적용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 사용허락하는 것을 포함하는 계약에 적용되며, 거래가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사용허락이거나 판매이거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복제물의 사용허락과 판매는 서로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UCITA는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접속이나 컴퓨터시스템의 정보를 포함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UCITA는 디지털방식의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개발 및 배포를 위한 계약에 적용된다. 그리고 UCITA는 컴퓨터정보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분석하기 위한 계약에 적용된다.

2) 혼합거래

제103조 (b)항은 혼합된 거래(mixed transactions), 곧 컴퓨터정보와 컴퓨터정보권이 포함되는 거래이지만 그것이 거래의 주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컴퓨터정보와 컴퓨터정보권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쟁점을 포함하는 거래의 부분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어떠한 거래가 컴퓨터정보와 물품(goods)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컴퓨터정보, 컴퓨터정보에 대한 정보권, 그리고 컴퓨터정보를 개발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래의 부분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이 상품에 포함되거나 상품의 일부로서 판매·대여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이 컴퓨터이거나 컴퓨터 주변기기인 경우 또는

그 상품의 매수인 등에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그 상품을 거래하는 주된 목적인 경우에 UCITA가 적용된다.

3) UCITA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UCITA 제103조 (c)항은 UCITA와 UCC 제9장이 충돌하는 한도에서는 제9장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3조 (d)항은 UCITA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서, (i) 금융서비스에 관한 계약, (ii) 방송프로그램, 영화, 음향저작물, 음악저작물 및 음반 제조, 획득, 이용, 배포, 수정 등에 관한 계약, (iii) 법정허락 (강제적인 것이므로 계약과 상관 없는 것), (iv) 고용계약, (v) 컴퓨터정보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vi) 대상이 통일상법전 제3장부터 제8장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4)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한 적용배제

UCITA는 디지털정보거래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UCITA는 당사자가 UCITA가 적용될 것을 합의하거나 UCITA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것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 같은 합의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첫째 UCITA가 적용된다고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시킬 수 없거나 그 법이나 절차가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법칙이나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둘째, UCITA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사자의 합의는 전자적인 착오

(electronic error)의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제214조와 전자적인 자구행위(electronic self-help)에 관한 규정인 제816조의 규정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대량시장계약의 경우 UCITA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사자의 합의는 UCITA의 합리성에 관한 원칙(doctrine of unconscionability), 기본적인 공공질서 또는 선의의 의무(obligation of good faith)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대량시장계약의 경우, UCITA가 적용되는 정도를 변경시키는 조건은 눈에 띄는 명확한(conspicuous) 것이어야 한다.

(5) 대량실시계약 (Mass Market License)

1) 대량실시계약의 의의

대량실시계약은 대량시장거래에서 사용되는 표준적인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대량시장거래는 소매시장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유사한 조건에 따라 정보가 미리 포장된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의 주된 참여자는 소비자이며, 대부분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조건에 대하여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판매를 하는 자와의 거래가 아닌 최종 이용자와의 거래를 그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실시권자(구매자)와 실시허락자(판매자)간에 계약조건을 일일이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높은 거래비용이 수반되는 것에 기인한다.

대량실시계약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이 없이 체결된 계약의 조건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구

속력이 있겠느냐이다.

2) Shrink Wrap License의 의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컴퓨터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소프트웨어는 대량시장에 의하여 대규모적으로 배포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을 밀접하게 통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협상을 하기 위한 거래비용에 비하여 실시허락을 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시허락을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생산업자들은 실시허락을 위한 표준적인 계약을 점차 이용하고자 하였고, 결국 비닐로 포장된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표준적인 실시계약의 조건을 포함시키기에 이르렀는데, 'shrinkwrap license'라 불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생산업자들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나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을 금지하기 위하여, 또는 소프트웨어가 다시 이전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하여 shrinkwrap license를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데 사용되는 대량실시계약에서 계약의 조건을 소프트웨어의 포장지 자체 또는 포장지 내부에 인쇄되도록 하고, 소비자는 이를 검토할 기회를 가지며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이를 반환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에 대한 통지 및 계약의 조건에 소비자가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포장의 외부에 나타나 있는 형태의 대량실시계약의 방법을 "shrinkwrap license"라고 한다.

shrinkwrap license의 경우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패키지를 열어볼 때까지 실시허락에 관한 조건을 알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서 한 발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 생산업자들은 소프트웨어 자체에 실시허락에 관한 조건을 포함시키기 시작하였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하기 전에 실시허락에 관한 조건이 화면상에 나타나며, 소비자가 이러한 조건에 동의한다면 마우스로 눌러서 동의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 설치작업을 계속 진행시키게 한다. ‘clickwrap license’(또는 click-here license)라 불리는 이러한 형태의 실시허락도 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소프트웨어의 매매라는 상거래가 이루어 질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인터넷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웹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web-wrap license라고 불린다.

3) Mass-Market License의 유효성

① ProCD, Inc. v. Zeidenberg

대량실시계약 또는 shrink-wrap license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는 ProCD, Inc. v. Zeidenberg 케이스이다. ProCD 케이스가 나오기 전에는 어느 법원도 Mass-Market License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지 않았으나, ProCD 케이스는 shrink-wrap license에 의한 표준적인 형태의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ProCD 케이스에서 원고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1000만명을 수록하는 전화번호부를 제작하였고 이를 CD의 형태로 판매하였다. CD에는 방대한 정보를 효과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탐색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었는데, 물론 이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CD를 포장하고 있는 상자에 의하면 소프트웨어가 동봉되어 있는 실시허락에 열거된 제한에 따른다고 언급되어 있었다. 실시허락은 CD에 내장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설명서에도 인쇄되어 있었으며, 소프트웨어가 운용될 때마다 화면에 나타났다. 이 실시허락에 의하면, 최서면용자(CD의 구매자)는 탐색 소프트웨어와 전화목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네트워크상의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게 하거나 각각 다른 이용자가 시간을 달리 하여(time-shared)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목록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이외의 컴퓨터에 목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전원일치의 연방대법원 판결인 Feist 케이스에 의하면 전화목록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인의 공유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 CD의 모든 목록을 복제한 다음 피고의 탐색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킨 다음 인터넷상의 웹 페이지에 모든 목록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와 경쟁하였다. Feist 케이스로 인하여 전화목록을 복제한 것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계약위반과 부당이용(misappropriation)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먼저 제작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shrinkwrap license가 계약법상 구속력있는 합의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 곧 위스콘신주가 채택한 UCC, 곧 주법의 해석에 관한 쟁점과 관계된다. 만약 구속력이 있다면, 계약이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규율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연방법 우선적용의 원리와 관련되는 연방법상의 쟁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제1심판의 Crabb 판사는 모두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에 의한 권리주장은 저작권법 제301조에 의하여 그 적용

이 배척된다고 하였다. 만약 이와 달리 판시한다면 저작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세한 균형을 변경할 것이고, 특히 사실상 Feist 케이스에 위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7연방 항소법원의 Easterbrook 판사는 계약상의 쟁점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② UCITA

UCITA 제208조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표준적인 형태를 비롯한 기록의 조건을 계약의 조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행 또는 사용이 시작된 후에도 기록의 조건이 당사자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Mass-Market License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합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후의 기록에 나타날 것을 당사자가 알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이행이나 사용이 시작되기 전에 그 기록을 검토할 기회가 없었어야 한다.

UCITA는 표준적인 형식의 기록으로 되어 있는 대량실시계약의 조건이 당사자간의 계약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행의 초기 또는 이행 중에 당사자가 실시계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의를 하기 전에 기록을 검토할 기회를 가졌어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이행하기 시작한 이후에 기록의 조건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고 그러한 조건이 제안될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UCITA는 두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불합리적이며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이다. 곧 당사자들이 기록의 조건을 수용하였을지라도 비합리적이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조건은 무효일 수 있다. 특이하거나 숨겨져 있거나 일방적인 조건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당사자들이 합의된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곧 대량 실시계약의 조건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량 실시계약의 조건은 계약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흥정을 대량 실시계약하에서의 조건에 의하여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UCITA는 실시권자(곧 컴퓨터정보제품의 구입자)가 처음으로 실시계약에 동의를 할 때까지 조건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 제품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return right)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실시권자에게 실시계약의 조건을 검토하고 이를 수용하거나 거절할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최종적인 이용자가 실시계약을 거부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합의를 할 때 최종적인 소비자가 실시계약을 검토하고 이를 거부하였다면 있었을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는 실시권자가 실시계약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동의하였던 합의를 당사자들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아니다.

반환을 하는 당사자는 컴퓨터정보를 반환하거나 제거하도록 하는 실시허락자의 지시에 따라 야기된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또한 컴퓨터정보를 실시권자가 설치한 이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기 이전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이고 예견가능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3. 통일전자거래법 (UETA)¹⁵⁹⁾

(1) 입법의 필요성 및 UETA의 목적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UETA)는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s)과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을 일반적인 서면(document)과 수기에 의한 서명과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들이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통일적인 표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이다. 어떠한 계약이나 합의가 서면 및 서명에 의할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미국에서 기망방지법(statute of fraud)이나 서류에 의한 거래기록을 요구하는 기록보관법(record retention statute)에 기인한다. 이러한 법적 요건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장애가 될 것이며, 따라서 UETA는 정보의 전자적인 기록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였다.

UETA의 목적은 전자기록이나 서명을 유효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지,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계약법이 아니다. 따라서 UETA에 의하여 미국 계약법의 실제적인 규범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또한 UETA는 일반적인 서명에 관한 법도 아니며, 서명에 관한 한 각주의 디지털서명법 및 연방의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UETA는 다만 이러한 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뿐이다.

(2) 주요내용

1) 개념의 정의

159) 연기영, 「컴퓨터정보거래계약의 위반과 구제법리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43~53면

UETA는 제2조는 UETA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주된 용어에는 자동화된 거래(automated transaction), 전자적인(electronic), 전자대리인(electronic agent),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정보, 기록(record), 보안절차(security procedure) 등이다.

UETA는 ‘전자적인(electronic)’에 대하여 전기, 디지털, 자석, 무선, 광학, 전자기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술과 관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기록은 전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창조·발생·송부·통신·수령·저장된 기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자서명은 어떠한 기록에 부착되어 있거나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그 기록에 서명할 의도가 있는 자가 실행하거나 채택한 음향·상징(symbol)·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록은 유형의 매개체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또는 전자적 기타 매체에 저장되고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거래(transaction)에 대하여 UETA는 영업·상업·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계되는 2인 이상간에 행하여지는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적용범위

UETA는 거래와 관련되는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에 적용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적용되지 않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예컨대 유언이나 유언 변경 또는 신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일상법전의 일부(Sec. 1-107, 1-206, 제2장, 제2A장을 제외한 UCC), 컴퓨터정보거래법(UCITA) 기타 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UETA는 기본적으로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모든 서면 및 서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와 관련되는 전자기록 및 서명에만 적용된다. 통일상법전의 일부가 적용에서 배제된 것은 UCC의 각 해당조항들이 이미 전자적인 거래를 반영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3) 전자기록과 서명의 인정 및 전자계약

UETA는 기본적으로 그 매체나 수단에 따라 기록, 서명,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UETA는 기록이나 서명이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그 법적 효력이나 집행력이 부인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전자기록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계약의 법적 효과나 집행력이 부인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이 서면으로 행하여질 것이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전자기록에 의하여 이 요건은 충족되며, 서명이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역시 전자서명에 의하여 이 요건은 충족된다.

제7조는 UETA의 기본적인 전제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록이나 서명 또는 계약이 창조, 제시, 유지되는 매체가 그 법적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4)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의 귀속 및 효과

UETA는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이 어떠한 사람의 행위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여 발생한 효력의 귀속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

이 귀속될 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어떠한 보안절차에 의하여서도 입증될 수 있다. 이것은 귀속(attribution)에 관하여 존재하는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고 있는 규칙이 전자적인 환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자우편에 의하여 주문을 하는 경우 특정인이나 그의 피고용자가 그 특정인의 성명을 주문의 일부로서 타이프치거나, 상품을 주문하도록 프로그램된 특정인의 컴퓨터가 주문의 일부로서 그 특정인의 성명 기타 그 특정인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주문을 하는 경우,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은 그 특정인에게 귀속된다. 어떠한 기록을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는 주된 방법은 서명이지만 서명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팩시밀리에 나타나 있는 정보(인쇄된 서면에 나타나 있는 정보)도 정보에 의하여 귀속을 결정할 수 있다.

일단 기록이나 서명의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정해진 경우, 그 특정인에게 귀속된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의 효과는 기록을 행하거나 전자서명을 하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5) 전자기록의 변경이나 오류

거래당사자간에 전송되는 과정에서 전자기록이 변경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전자기록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우선 당사자들이 변경이나 오류를 검색하기 위한 보안절차를 사용할 것을 합의하였는데 한 당사자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다른 당사자는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도 절차를 준수하였더라면 변경이나 오류를 찾아낼 수 있었다면 준수한 당사자는 변경되거나 오류가 있는 전자기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자동화된 거래에 있어서 어느 개인이 전자대리인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경우 UETA는 일정한 요건하에 그 개인이 오류로 인한 전자기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째, 전자대리인이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어야 한다. 둘째, 그 개인이 오류를 인지하게 된 때에 그 개인이 상대방에게 오류를 즉시 통지하고 상대방이 수령한 전자기록에 의하여 그 개인이 구속될 것을 의도하지 않아야 하며, 그 개인이 오류가 있는 전자기록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consideration)를, 상대방의 합리적인 지시에 의하여, 반환하거나 제거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로부터 이익이나 가치를 사용·수령하지 않았어야 한다.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변경이나 오류는 다른 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0조 2항과 3항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6) 전자기록의 보관

법에 의하여 기록이 보관될 것이 요구되는 경우, 그 기록에 있는 정보의 전자적인 기록이 보관되면 된다. 다만 이 전자적인 기록은 전자적인 기록으로 처음으로 작성된 후 기록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며 후에 참조하기 위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기록이 원본 그대로 제출되거나 보관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7) 증거로서의 채택

기록이나 서명이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증거로서 배제될 수 없다.

8) 자동화된 거래

‘자동화된 거래(automated transaction)’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전자적인 수단이나 전자적인 기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한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의 행위나 기록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거래상의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사람에 의하여 검토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동화된 거래에 있어서 계약은 당사자들의 전자대리인의 상호행위에 의하여 체결될 수 있으며 어느 개인이 전자대리인의 행위나 이에 따른 계약조건이나 합의를 알지 못하거나 검토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로 함으로써, 전자대리인에 의한 자동화된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은 사람과 전자대리인간의 상호행위에 의하여 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인간의 의사(intent)가 결여됨으로써 계약이 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곧 거래에 기계가 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의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기계를 이용하는 것에서 생긴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전자대리인(electronic agent)은 사람이 검토하거나 사람에 의한 행위가 없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전자기록이나 이행을 독립적으로 시작하거나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의 수단을 의미한다. 전자대리인은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타 자동화된 수단과 같은 기계로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도구이다. 도구는 독립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도구를 사용하는 자는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대리인은, 프로그램의 파라미터(parameter)의 한도에서, 일단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작동되었다면, 그 당사자가 다시 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당사자 또는 전자대리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4. 연방전자서명법 (E-Sign Act)

(1) 의의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6월 30일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이하 연방 전자서명법 또는 E-Sign Act)에 서명함으로써 연방서명법은 2000년 10월 1일에 발효하게 되었다. E-Sign Act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획기적인 입법으로서, 이 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거래에 관련되는 서명, 계약, 기록이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법적 효력 및 집행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전자서명법이 제정되기 전 각 주들은 주 내에서 이러한 효과를 가지는 입법을 해 왔으나, 이러한 입법을 한 주는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고 제정된 입법도 상당히 달랐다. 미국에서 디지털서명의 집행력과 진정성(authenticity)에 관한 쟁점은 연방법이 아니라 대부분 주에 의하여 규율되었다. 주 중에서도 유타주는 공개키 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에 기초한 디지털서명법을 처음으로 입법하였으며, 유타주의 디지털서명법은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디지털서명에 관한 가이드라인(Digital Signature Guidelines) 모범으로 하였다. 2001년 현재 미국에서는 약 41개주에서 디지털서명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거나 주의회에 의한 입법작업중에 있다. 주들에 의한 디지털서명의 규율이 통일되지 않음으

로써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처가 지연되고 디지털서명에 관한 법이 통일되지 않는 위험이 있게 되었다. 곧 각 주간의 상이한 입법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주간의 효율적인 온라인 거래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여러 주가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불확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자서명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표준을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자서명법은 각 주의 입법이 연방법의 표준에 합치한다면 각 주가 주 자체의 입법을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2) 유타주의 디지털서명법

미국 주 중에서의 최초의 디지털서명법인 유타주의 디지털서명법은 ABA의 디지털서명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것이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전자상거래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인데, ABA의 가이드라인을 기초하였던 위원회의 몇몇 위원들은 가이드라인이 완성되기 전에 유타주를 위하여 디지털서명을 위한 샘플법령을 기초하였고, 이에 따라 유타주 디지털서명법(Utah Digital Signature Act)이 제정되었다. 유타주의 입법 후 여러 주들이 유타주의 법과 유사한 입법을 하였으며, 유타주의 입법은 한국의 전자서명법을 비롯한 외국의 입법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유타주의 디지털서명법에 의하면,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다면, 서면에 서명된 것과 같이 디지털서명은 유효하고 집행력이 있다. 첫 요건은 메시지가 디지털서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디지털서명은 인증서에 기재된 공개키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타주의 법을 충족하는 디지털서명은 자서(自書)에 의한 서명을 요구하는 유타주의 법을 충족한다고 함으로써, 자서에 의한 서

명을 요구하는 유타주의 법령을 수정할 필요성을 제거시켜 주었다. 또한 주 자체가 주된 인증기관(CA)이 될 뿐만 아니라 유타주의 상무부를 통하여 인증기관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E-Sign Act의 제정배경 : UETA와의 관계

미국에서 E-Sign Act가 제정되기 전 많은 주 및 연방법들은 자서에 의한 서명 및 서류에 의한 기록을 요구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주들이 전자서명 및 전자기록에 부분적인 효력을 부여하였으나 어떠한 경우에 전자서명이나 기록이 유효하고 집행력이 있는가에 대한 법이 통일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7년 NCCUSL은 모든 주가 공통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및 기록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모범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UETA가 탄생하게 되었고 NCCUSL은 1999년 7월 UETA 최종초안을 승인하였다.

UETA는 다른 종류의 통일법과 마찬가지로 각주의 의회가 이를 채택하여야 채택한 주의 법으로 성립한다. 사실상 UETA는 E-Sign Act가 기초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E-Sign Act와 마찬가지로 전자서명 및 기록이 서면과 서명을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UETA는 전자적인 환경에서 당사자간의 합의, 정보의 교환, 정보의 보관, 의무의 이행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전자적인 기록을 사용하려는 당사자에 대하여 확실성과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규범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을 특정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기술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E-Sign Act가 제정될 당시 약 18개의 주가 UETA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NCCUSL의 통일법을 모든 주가 채택하는데에는 약 4년 내지 7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연방의회는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에 대해서는 보다 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국경을 전제로 하는 매개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규율이 비효율적인 것이 된다면 미국 각 주의 법이 통일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E-Sign Act의 제정을 서두르게 했던 또 다른 사유는, 캘리포니아 주에 의한 UETA의 입법과 같이, 몇몇 주가 NCCUSL이 기초한 통일법의 법안과 상당히 다르게 입법한다는 사실이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UETA의 적용으로부터 상당한 수의 소비자거래 및 금융거래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연방 의회는 이러한 방식의 UETA 입법으로 인하여 주들에 의한 UETA의 채택에 의하여 법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따라서 상당 분야의 상거래가 UETA에 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E-Sign Act는 UETA와 마찬가지로 이미 존재하는 주법 및 연방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존의 법에 추가하여 전자서명 및 전자서류에 법집행력과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E-Sign Act는 UETA의 주요 특징 및 기본적인 정책목표를 채택하고 있다. 곧 E-Sign Act는, UETA와 마찬가지로, 첫째, 기록이나 서명은 그것이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법적 효력과 집행력이 부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둘째, 법에 의하여 기록이 서면에 의할 것으로 요구되는 경우, 전자기록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 셋째, 법에 의하여 서명이 요구되는 경우, 전자서명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 등 세 가지의 일반적인 규칙에 기초하고 있다.

(4) E-Sign Act의 주요내용

1) 일반원리

전자서명법은 전통적인 법적 요건인 서면(writing) 또는 서명(signature)이 전자적인 환경에서 야기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곧 계약이 서명되거나 서류는 서면이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은 전자적으로 서명된 계약이나 전자적인 서류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곧 전자매체(electronic medium)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된 매체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동일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법은 서명, 계약 또는 거래에 관한 기타의 기록은,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법적 효과, 유효성, 이행가능성이 부인되어서는 안되며, 거래에 관한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전자서명이나 기타 전자기록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법적 효과, 유효성, 이행가능성이 부인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내용은 UCITA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적인(electronic)’에 대하여 전기, 디지털, 마그네틱, 무선, 광학적, 전자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술과 관련되는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은 전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생성, 송신, 통신, 수령, 저장되는 계약 또는 기타 서류, ‘전자서명’은 계약이나 기타 기록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되며 기록에 대하여 서명하려는 자가 실행하거나 채택하는 전자적인 음향, 상징,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은 UETA와 마찬가지로

로 특별한 전자서명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서명은 일정한 과정에 의하여 단순히 클릭하는 것(예컨대 “I Agre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는 것), 사람의 동공, 지문, 음성 등을 이용한 생물학적인 방법에 따라 확인하는 것(biometric identification), 수기된 서명을 디지털화하는 것 기타 이들을 결합한 것이 될 수 있다.

2) 적용범위

첫째, E-Sign Act는 서면이나 서명을 요구하는 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E-Sign Act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실체적인 보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령 등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거나 이용될 것으로 요구되는 서류의 내용 및 공시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E-Sign Act는 특정한 거래 및 통신에 대하여 전자서명법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은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곧 103(a)는 전자서명법 제101조가 규정하고 있는 원리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유언·유언변경, 신탁·입양·이혼·기타 가족법 관련사항, 1-107·1-206·매매 및 리스에 관한 2편 및 2A편을 제외한 통일상법전 등이 규율하는 한도에서 계약이나 기타의 기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03(b)는 법원의 명령·통지 또는 공식적인 법원서류, 공공서비스의 취소나 종료 등의 통지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비자보호

전자서명법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쟁점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것이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UETA를 주법으로 입법하는데 있어서 상당수의 소비자거래를 UETA로부터 제외시켰는데, E-Sign Act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도 광범위한 제외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같은 주장은 배척되었다. 소비자 옹호자들의 주된 근심사항은 소비자들이 전자적인 통신을 통하여 계약조건에 의하여 구속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통제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될 수 있으나, 기술적인 발전이나 변화로 인하여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스템의 변경이나 전자우편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중요한 통지사항을 역시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상 체결한 계약의 조건을 통지받고 인식하며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E-Sign Act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거래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거나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등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이러한 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기록을 사용하는 것이 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소비자가 그러한 전자적인 기록의 사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러한 동의를 철회하지 않았어야 하며, 소비자가 서류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받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가지며 동의를 철회

회할 수 있는 권리를 알리고, 소비자의 동의는 의무를 야기시키는 특정 거래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정해진 유형의 기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동의를 철회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소비자가 동의를 한 이후에 어떻게 전자적인 서류의 복제본을 획득하는지 소비자에게 알리는 등의 명확하고 눈에 띄는(conspicuous) 서면이 소비자가 동의하기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동의의 대상이 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전자적으로 동의하거나 자신의 동의를 전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곧 소비자는 전자적인 기록에 접속하고 이를 보유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요건에 대한 언급(statement)을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동의한 후 전자기록에 접속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요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그 이후의 전자기록에 접속하거나 이를 보유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 야기되는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정된 요건에 대한 언급을 제공받아야 한다.

소비자의 동의에 관한 요건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법적 효과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의 법적 효과, 유효성, 이행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에 관한 실체법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서명을 하기 전에 온라인상으로 계약의 조건을 볼 수 있었던 경우, 비록 소비자가 전자적인 형태의 정보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이행가능한 계약이 존

재하게 된다.

4) 정부와의 거래

전자서명법을 제정하면서 제기되었던 쟁점 중의 하나는 정부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전자서명법상의 거래(transaction)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법은 정부와 관련되는 특정한 행위를 전자서명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개념으로부터 제외하였다. 따라서 주로 정부의 목적을 위한 개인당사자의 행위와 정부의 행위는 전자서명법상의 거래가 되지 않는다.

5) 기록의 보존

전자서명법은 법령에 의하여 계약이나 거래와 관계되는 서류가 보존될 것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에 관한 정보의 전자적인 기록이나 기타 기록을 보존하면 되는데, 이러한 기록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곧 첫째, 전자기록 등은 계약이나 기타 기록에 규정된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둘째, 법령에 의하여 이에 접속할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이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6) 전자대리인의 인정

전자서명법은 UCITA와 마찬가지로 전자대리인(electronic agent)을 인정하고 있다. 곧 계약이나 기타 기록은, 그 성립, 작성 또는 인도가 하나 이상의 전자대리인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법적 효력,

유효성, 이행가능성이 부인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자대리인의 사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자대리인의 행위가 이에 구속될 자에게 법적으로 귀속될 수 있어야 한다. ‘전자대리인(electronic agent)’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전자적 또는 기타 자동화된 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나 반응을 하는 시점에 개인이 이를 검토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고서 독립적으로 행위를 야기하거나 전자적인 기록에 반응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7)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대한 적용 배제

전자서명법 제104조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기관이 일정한 경우에는 서명이나 기록이 계속하여 서면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곧 연방정부 및 주정부기관은 서면으로 된 서류나 기록의 작성을 요구하는 등 서류의 작성을 위한 표준이나 방식을 규정할 수 있으며, 101(c)가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8) 연방법의 우선적용 및 UETA

전자서명법의 매우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주법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전자서명법은 주간의 통상 및 외국과의 통상에서 또는 이러한 통상에 영향을 주는 거래에 적용된다. 그런데 전자서명법은, 각 주들이 1999년 7월에 승인된 UETA를 각 주가 채택한다면, 각 주들은 전자서명법을 수정 또는 제한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UETA는 전자서명법과 유사하게 기능을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법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손상하는 UETA의 두 가지 규정을 무효화하고 있다. 첫째, UETA 제3(b)(4)는 각 주들이 특정한 주의 법을 UETA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을 이용하여 주의 법을 제외시킨 대표적인 주가 캘리포니아 주인데, 캘리포니아 주는 약 65개의 소비자보호관련 법률을 UETA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있다. 요컨대 UETA가 주로 하여금 일정한 법을 UETA가 적용되는 것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전자서명법은 1999년의 UETA를 채택한 주에게 전자서명법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양 법의 이러한 조항에 의하여 1999년의 UETA를 채택한 국가는 결국 전자서명법과 달리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전자서명법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손상된다. 따라서 전자서명법은 UETA 3(b)(4)에 따라 주가 정해놓은 예외는, 그러한 예외가 전자서명법과 일치하지 않는 한도에서, 전자서명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UETA 8(b)(2)는 주가 기록을 전달하는 방법을 특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은, 주가 이 규정에 따라 비전자적인 전달방법을 부과함으로써 전자적인 기록의 유효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UETA 8(b)(2)를 무효화하고 있다.

VII. 결론

【참고문헌】

□ 단행본

- 이상윤, 영미법, 박영사, 2007
- 백운철·양만식,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한국학술정보, 2006
- 오세창, 유엔전자협약의 제정과정과 이해,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6
- 서헌제, 국제거래법, 법문사, 2006
- 박정기·윤광운, 미국통일상법전, 법문사, 2006
-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5
- 박대위, 무역실무, 법문사, 2005
- 이상진, 전자무역, 두남, 2005
- 이영수·권순국, 전자무역실무, 문영사, 2005
- 법률제도연구회, UNCITRAL 전자계약협약(안)의 검토와 대응방안,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4
- 채진익, 최신 전자무역, 두남, 2004
- 한국전산원, e-비즈니스 관련 이슈의 국제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한국전산원, 2002
- 전자무역연구회, 전자무역의 이해와 전개, 브레인코리아, 2002
- 왕상한,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 박영사, 2001
- 심종석외 3인, 전자상거래 법률과 제도, 청림출판, 2001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박영사, 2001

□ 국내논문

- 구재균, 전자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적 검토,
단국대학교 법학논집 제25권, 2001
- 김영훈, UN 전자계약협약 초안에 관한 소고, 정보화정책 제10권
제3호, 2003
- 남 광, UNCITRAL과 전자상거래, 법무부 통상법률 제16권, 1997
- 박종삼, 전자거래 계약 적용상 몇 가지 논점, 국제무역연구 제10권
제2호, 2004
- 박종석·이정민·정재우, UNCITRAL 전자계약협약 초안의 주요내용과
개정방향, e-biz Expo 발표자료, 2003
- 오병철, UNCITRAL 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전자거래
기본법에의 영향, 비교사법 제13권 제4호, 2006
- 오세창, 전자계약 성립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2002
- 오세창, 유엔 전자계약 예비협약 초안의 적용범위와 총칙규정의
심의내용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8권 제4호, 2003
- 오세창, 2차 전자계약 예비협약 초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4호, 2003
- 오세창, 전자계약에 관한 예비협약 초안상의 문제점과 대안,
무역학회지 제28권 제1호, 2003
- 오세창, 전자계약 예비협약초안에 대한 개정방향의 문제점과 대안,
국제상학 제18권 제2호, 2003
- 오세창, 국제 전자계약에 관한 유엔 예비협약초안의 제정현황과 과제,
국제상학 제19권 제3호, 2004

- 오세창, 개정 전자계약 예비협약초안의 심의내용과 문제점 및 대안, 계명대학교 경영경제 제37권 제1호, 2004
- 오세창, 유엔 예비협약초안상 적용범위의 최종규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국제학논총 제9집, 2004
- 오세창, 개정 전자계약 예비협약초안의 심의내용과 문제점 및 대안, 계명대학교 경영경제 제37권, 2004
- 오세창, ICC eTerms 2004와 ICC Guide to electronic contracting에 관한 소고, 계명대학교 경영경제 제38권 제1호, 2005
- 오원석, UN 전자계약예비초안에 관한 소고, 국제상학 제17권 제2호, 2002
- 오원석, 국제전자계약 준비초안의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4권 제2호, 2002
- 이강빈, 국제계약에서 전자통신의 이용에 관한 협약의 채택과 중재 합의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6권 제1호, 2006
- 이용근·박종석, 전자계약에 체결에 따른 법리적인 문제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국제무역물류연구논집 제9권, 2002
- 이제현, 전자무역서류 활성화를 위한 eUCP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1호, 2003
- 정완용, UNCITRAL 전자계약 협약(초안)의 검토 및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국제법무연구 제9호, 2006
- 정완용, 제43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전자상거래 작업부 회의 참가보고서, 한국해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2004
- 정완용, 개정 전자서명의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제10권 제4호, 2003

- 정완용,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의 검토, 한국해법학회지 제24권 제1호, 2002
- 정완용,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의 법적 고찰, 제3회 법률가대회, 2002
- 정재우,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상의 계약법리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4권 제2호, 2003
- 정재환, 전자무역계약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인터넷비즈니스연구 제5권 제1호, 2004
- 최민식, 인터넷 전자거래에서의 전자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연구 제7호, 2003
- 최석범,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예비초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계간 중재 제308호, 2003
- 최석범·박종석,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예비초안의 논점과 특징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5권 제1호, 2003
- 최석범·박종석·정재우,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0권, 2003

□ 학위논문

- 심종석,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김영재, 전자서명의 법률적 정당성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강석호, 컴퓨터정보거래계약의 위반과 구제법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윤영림, 전자계약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송수련, 전자적 방식에 의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정활수, 전자거래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외국논문

- Connolly, C. & Ravindra, P., *UN Releases Ne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lectronic Contracting*, Galexia Consulting, 2005
- Esslinger, A., *Contracting in the Global Marketplace: the UN Conventions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merican Law Institute, 2005
- Gabriel, H. D., *The Fear of the Unknown : The Need to Provide Special Procedural Protections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Loyola Law Review, 2004
- Gregory, J. D., *The Proposed UNCITRAL Convention on Electronic Contracts*, The Business Lawyer, 2003
- Hill, J. E., *The Future of Electronic Contracts in International Sales : Gaps and Natural Remedi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3
- Smedinghoff, T. J., *The Legal Requirement for Creating Secure and Enforceable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Practising Law Institute, 2004

【부록 1】

국내 관련법

1. 전자거래기본법
2. 전자서명법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시행일 2007.11.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라 함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거래이용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8. "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 함은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제2장 전자문서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①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31>

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 ①전자문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서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③제2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5.17>

④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제6조 (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①전자문서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③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영업소가 2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전자문서의 주된 관리가 이루어지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①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②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③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영업소가 2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전자문서의 주된 관리가 이루어지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그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②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제8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자문서는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수신확인) ①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법 제53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한 경우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 (수신확인) ①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법」 제53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②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한 경우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작성자와 수신자간 약정에 의한 변경)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17>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

제12조 (개인정보보호)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13조 (영업비밀보호)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자거래사업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밀의 범위,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암호제품의 사용) ①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등) ①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등) ①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7.5.17>

②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①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교육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용역·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2. 소비자가 쉽게 접근·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
3.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4. 청약의 철회, 교환 및 반품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5.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
6. 거래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존

제18조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

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19조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 규제 최소화, 전자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국제협력의 강화 등의 원칙에 따라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정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거래촉진계획의 기본방향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전자거래당사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9.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전자거래촉진계획과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5.3.31>

제20조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정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거래촉진계획의 기본방향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전자거래당사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9.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전자거래촉진계획과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제21조 (전자거래정책위원회) ①전자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자거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전자거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자거래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전자거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전자거래관련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자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2.29>

⑤전자거래정책위원회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31]

제22조 (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전자거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5.3.31>

1. 국내외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진흥사업
2. 제도의 연구 및 환경조성사업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업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운영지원
5.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업무를 하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지원
6.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연구개발·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의 지원사업
8.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9.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업무에 대한 지원
10. 제3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업무에 대한 지원

11. 제31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전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지원

1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진흥원은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사업자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다.

⑦ 진흥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이 개발한 표준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⑧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전자거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1. 국내외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진흥사업

2. 제도의 연구 및 환경조성사업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업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운영지원
 5.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업무를 하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지원
 6.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연구개발·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의 지원사업
 8.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
업
 9.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업무에 대한
지원
 10. 제3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업무에
대한 지원
 11. 제31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전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지원
 - 11의2.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기점검
 - 11의3.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 인수업무
 1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
는 사업
- ④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⑥진흥원은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사업자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다.

⑦ 진흥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이 개발한 표준을 사용하는 자료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⑧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7>

제5장 전자거래의 촉진 및 기반조성

제23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①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보관에 필요한 요건·방법·절차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제23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개정 2007.5.17>) ①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보관에 필요한 요건·방법·절차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④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기준·절차 및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시설 또는 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시설 또는 장비가 인증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3.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4조 (전자거래의 표준화)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등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분과위원회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조사·심의 및 의결한다. <개정 2005.3.31>

③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민간교육기관 그밖의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민간교육기관 그밖의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조달이나 기관의 사업을 전자거래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거래촉진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거래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 전자거래사업자 또는 전자거래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 전자거래사업자 또는 전자거래관련 법인·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거래촉진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거래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27, 2007.5.17>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 전자거래사업자 또는 전자거래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 전자거래사업자 또는 전자거래관련 법인·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전자거래의 국제화) ①정부는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에 관한 정보·기술·인력의 교류, 공동조사·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표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제기구에서의 전자거래에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거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사업추진실적보고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과 금융상의 지원, 그 밖의 필요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거래촉진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과 금융상의 지원, 그 밖의 필요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5.17>

②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거래촉진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신설 2005.3.31>

제31조의2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문

서보관등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에 한한다.

③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보관등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재정능력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을 확보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인력·기술능력·재정능력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과 지정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3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

지된 자

바. 제3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의 임원등이었던 자(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2. 제3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4 (시정명령)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임원등이 제31조의3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31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31조의8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31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때

6. 제31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때

7. 제31조의9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8.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업무수행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의 보관·송신 또는 수신에 안전성이나 전자문서에 관한 증명

의 정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4 (시정명령)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제3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임원등이 제31조의3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31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31조의8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31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때
6. 제31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때
7. 제31조의9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8.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업무수행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의 보관·송신 또는 수신에 안전성이나 전자문서에 관한 증거의 정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
9. 제31조의16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5 (지정취소 및 과징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1조의2의 규

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때
3.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6 (전자문서 보관대행의 효력)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6 (전자문서 보관대행의 효력)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7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 중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당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8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준칙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종류
2. 업무의 수행방법 및 수행절차
3.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업무준칙의 내용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의 안전성 및 정확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게 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8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종류
2. 업무의 수행방법 및 수행절차
3.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업무준칙의 내용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의 안전성 및 정확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게 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9 (준수사항)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당해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의 작성자·수신자 및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공개등을 하여서

는 아니된다.

⑤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보관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9 (준수사항)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당해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의 작성자·수신자 및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공개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보관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

⑥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10 (보고 및 검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장비·서류 그 밖의 관련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10 (정기점검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진흥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거나 제31조의14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가 있는 때에는 진흥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시기·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중전 제31조의10은 제31조의11로 이동 <2007.5.17>]

제31조의11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①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11 (보고 및 검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장비·서류 그 밖의 관련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의11은 제31조의12로 이동 <2007.5.17>]

제31조의12 (이용자의 정보보호)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제36조 제1항 및 제54조의 규정, 제62조·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 중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정보통신서비스"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은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으로, "정보통신부령"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12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①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의12는 제31조의13으로 이동 <2007.5.17>]

제31조의13 (배상책임)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
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고
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13 (이용자의 정보보호)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
관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제36조
제1항 및 제54조의 규정, 제62조·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 중 개인정
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로, "정보통신서비스"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은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으로, "정보통신부령"은 "산업자
원부령"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의13은 제31조의16으로 이동
<2007.5.17>]

제31조의14 (수수료 등)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
하는 자 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14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영업의 양도·양수 등) ①공인전자문
서보관소는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하거나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합병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종전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31조의15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을 폐지)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영업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기록(이하 "보관문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흥원으로 하여금 해당 보관문서등을 인수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2. 제31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지 신고 및 보관문서등의 인계·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31조의16 (배상책임)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②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13에서 이동 <2007.5.17>]

제31조의17 (수수료 등)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14에서 이동 <2007.5.17>]

제6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32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3.31>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2.2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전자거래와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⑥위원의 자격 및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3.31>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2.29, 2007.5.17>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전자거래와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⑥위원의 자격 및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분쟁의 조정) ①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

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 회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자료요청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5조 (조정 성립) ①조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성립한다.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권고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에 자체적인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는 당사자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6조 (조정 불성립)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분쟁당사자 일방이 분쟁의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3.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4.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 (조정비용 등)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33조 내지 제3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조정부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 (상호주의)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

응하게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 (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3.31]

제42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3.31]

제8장 벌칙 <신설 2005.3.31>

제43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2. 제31조의11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

3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43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1. 제3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2. 제3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의11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2. 제31조의11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본조신설 2005.3.31]

제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1. 제3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2. 제3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본조신설 2005.3.31]

제4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46조 (과태료) ①제31조의9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공개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1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8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5. 제31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6. 제31조의9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46조 (과태료) ①제31조의9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공개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5.17>

1. 제31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8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1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5. 제31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6. 제31조의9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제31조의11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3.31]

부칙 <제6614호,2002.1.19>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440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자거래정책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전자거래정책협의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전자거래정책위원회로 본다.

③(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는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되는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본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3>내지 <68>생략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36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제17조"를 "제29조"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9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31>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통계법)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생략

⑨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⑩부터 ⑭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461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35>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1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 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개정 2001.12.31>)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개정 2001.12.31>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1.12.31>

제2장 공인인증기관

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③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

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⑤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1. 임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제6조 (공인인증업무준칙 등<개정 2001.12.31>)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인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0>

1. 인증업무의 종류
2.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3. 공인인증역무(이하 "인증역무"라 한다)의 이용조건
4. 기타 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③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12.30>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공인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30>

⑤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12.30>

제7조 (인증역무의 제공등) ①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

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12.30>

1. 공인인증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인인증기관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업무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1.12.31]

제9조 (인증업무의 양수등) ①공인인증기관은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양수하거나 다른 공인인증기관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양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공인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0조 (인증업무의 휴지·폐지등) ①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을 인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1.12.31, 2005.12.3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제11조 (시정명령)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30>

1. 삭제 <2005.12.30>
2.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임원이 제5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5의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의 양수나 공인인증기관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업무폐지시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신원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회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의2. 제18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

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징금의 부과)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가입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4조 (검사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30>

1.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의 적정 여부

2. 제18조의3, 제19조 내지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여부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3장 공인인증서<개정 2001.12.31>

제15조 (공인인증서의 발급<개정 2001.12.31>)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1. 가입자의 이름(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5.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7.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 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9.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③삭제 <2001.12.31>

④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⑤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⑥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31>

제16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개정 2001.12.31>) ①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개정 2001.1.16, 2001.12.31>

1.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5. 삭제 <2001.12.31>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였거나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모든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제17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개정 2001.12.31>) ①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정지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효력회복의 신청은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공인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18조 (공인인증서의 폐지<개정 2001.12.31>)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경우
3.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정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정한 경우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18조의2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4장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개정 2001.12.31>

제18조의3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9조 (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①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유효한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등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0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당해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공인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30>

제21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①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당해 가입자의 동의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호진흥원에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2조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①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당해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22조의2 (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①공인인증기관 및 가입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공인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가입자가 당해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실
3. 공인인증서의 발행 전에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효한 사실

③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의 사용목적이나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
3. 공인인증기관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또는 정도

[본조신설 2001.12.31]

제22조의3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장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장애를 신고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전파
2. 장애복구에 관한 기술지원과 협력

[본조신설 2005.12.30]

제23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개정 2001.12.31>) ①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

②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

③누구든지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31>

④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30>

⑤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30>

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 제36조제1항, 제54조, 제

55조, 제62조, 제66조 및 제67조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이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개정 2005.12.30>

[전문개정 2001.12.31]

제25조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①보호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사 지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검사 지원

3.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및 기술 지원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

5.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관리 등 인증업무

6.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보급 및 표준화 연구

7.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8.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6조, 제7조,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보호진흥원의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보호진흥원"으로,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5.12.30>

③보호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술지원·점검 및 공인인증서 발급 등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5조의2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공인인증서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공인전자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공인인증서의 유효 여부의 확인

나.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의 확인

다. 제15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사항의 확인

[본조신설 2001.12.31]

제25조의3 (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 (배상책임)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30]

제5장 전자서명인증정책의 추진 등<신설 2001.12.31>

제26조의2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1.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한 정책 및 기술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4.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 관련 단체의 지원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7. 인증업무와 관련된 가입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전자서명관련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0.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1. 전자서명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통계·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2.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암호사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의3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2.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보급
3.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전자서명 및 인증정책의 조정
4. 그 밖에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의4 (전자서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전자서명 관련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 관련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실태조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사항
5. 그 밖에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의5 (전자서명 시범사업의 추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의6 (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서명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거래에 수반하는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서명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의7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①공인인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

4. 공인인증업무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서명 인증정책의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심의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이 법이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6장 보칙<개정 2001.12.31>

제27조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 ①정부는 가입자 및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31][중전 제27조는 제27조의2로 이동 <2001.12.31>]

제27조의2 (상호인정) ①정부는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인증기

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 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와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정이 체결된 경우 외국의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31>

[제27조에서 이동<2001.12.31>]

제28조 (요금 부과)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역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제29조 (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개정 2001.12.31>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의 신청없이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거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관을 신청한 가입자의 승낙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

제3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05.12.30>

3.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4. 제2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

[전문개정 2001.12.31]

제3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4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0>

1.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

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한 자

9. 제2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자

10.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792호,1999.2.5>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60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자서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부터"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중 "보호센터"를 각각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보호센터가"를 "보호진흥원이"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21조제5항중 "보호센터는"을 각각 "보호진흥원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보호센터는"을 "보호진흥원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585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의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8>생략

<99>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가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813호,200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시행일 2009.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6.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제외) ①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소비자가 사전에 숙지된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
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

2.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③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
업자에 의한 증권외의 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
품의 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5조 (전자문서의 활용) ①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
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에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
하여 지정한 주소(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말
한다)로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자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자문서의 효력 및 수령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방법의 이용을 강요(특수한 표준 등의 이용으로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조작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비자의 진정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⑤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을 행하는 사업자는 배송 과정의 사고·장애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당해 사이버몰에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2.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4.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 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에 한하며,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방법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광고 및 고지의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청약확인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

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제15조 (재화등의 공급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②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③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삭제 <2005.3.31>

제17조 (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⑥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③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통신판매업자중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 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당해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7>

⑧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⑪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①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①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③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신판매의 중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

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2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③제2항의 규정은 소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3.31>

1.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3.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⑤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이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전단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⑨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3.31>

⑩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제34조제1항제3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 동조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본다. <신설 2005.3.31>

제24조의2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①공정거래위

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 행위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등록된 소비자단체
2. 그 밖에 제3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등록된 사업자단체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25조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26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

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제27조 (공개정보 검색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확립 및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②사업자 또는 관련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검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출이나 자료의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된 정보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 그 밖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 ①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인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행한 노력과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운용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보고 및 감독) ①시·도지사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하여금 조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3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의 시정조치에 앞서 당해 행위

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를 행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2조 (시정조치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내지 제9항, 제24조의2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4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요청)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을 행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 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갈음하여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내지 제5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과징금의 징수·채납·환급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제6장 보칙

제35조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36조 (전속관할)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의 관할은 제소 당시의 소비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①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기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단체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조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40조 (벌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벌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31>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자

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제4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

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과한다.

제4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개정 2005.3.31>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6.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자

7.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

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9.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3.31>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기록보존 및 열람의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05.3.31>

6.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부과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687호,2002.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업후의 영업재개 등에 관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휴업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청약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청약의 철회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영업의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7344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748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제10호,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7조제6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거나,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통신판매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재화등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통신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 및 환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통신판매업자의 공급서의 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재화등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최초로 체결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관련사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의 관련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거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 가운데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구매권유광고 송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가 최초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38호,2007.7.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으로 한다.

<47>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5.25 법률 제8486호]

시행일 2008.5.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8. "정보보호산업"이라 함은 정보보호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9. "게시판"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26>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12.30>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이용의 활성화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기술등에관한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술등에관한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등에관한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기술등에관한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등에관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그 사용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7.1.26, 2007.5.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6, 2007.5.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

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을 수거·반품하게 하거나 인증을 받아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방법·절차와 인증 표시,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수거·반품이나 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정보내용물의 개발지원)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①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의 지원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지원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설립·지원
5. 정보통신망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지원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①정부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간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

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지역·산업·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인터넷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인터넷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 (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터넷서비스품질의 측정·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

으로 인터넷서비스의 품질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줄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04.1.29>

제17조 삭제 <2004.1.29>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제18조 (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업무와 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은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①전자문서는 작성자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다만, 지정한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

제20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전자문서중계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제21조 (전자문서 등의 공개제한) 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중계설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 <개정 2007.1.26>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

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6]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6>

제2절 삭제 <2007.1.26>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6]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26]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개정 2007.1.26>)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과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1.26>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6>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수탁자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7.1.26>

⑤수탁자가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손해

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개정 2004.1.29, 2007.1.26>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개정 2007.1.26>)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이전사실을 이미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③영업양수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6>

제26조의2 (동의획득방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 단서·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제25조제1항·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얻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2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신설 2007.1.26>

제27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이용자 수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6.10.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된다. <신설 2006.10.4>

③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그 밖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4>

제27조의2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제2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 및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 내용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6]

제28조의2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26]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또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이용한 때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4.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6]

제3절 이용자의 권리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내역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7.1.26>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영업양수자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법정대리인은 당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③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33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2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⑥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제46조의2·제47조·제47조의2·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제49조의2에서 "보호진흥원"이라 한다)내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4.1.29, 2005.12.30>

제33조의2 (조정부) ①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부 분쟁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일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4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3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6조 (분쟁의 조정) ①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자료요청 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8조 (조정 효력)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9조 (조정 거부 및 중지)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조정절차 등) 제36조 내지 제39조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개정 2007.1.26>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1.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44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4.12.30]

제42조의3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당해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중에서 지정한다.

③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0]

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자가 당해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이용자는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6]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

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그 내용·절차 등을 포함하여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제2항 후단·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44조의4 (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

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제44조의5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를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제44조의6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①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그 밖의 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는 제44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44조의9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본조신설 2007.1.26]

제44조의8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④윤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 관련 업계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단체에 종사하는 자와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

다.

⑧상임위원은 윤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⑨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윤리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본조신설 2007.1.26]

제44조의9 (윤리위원회의 직무 등) ①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불법정보에 관한 심의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불건전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6.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의 운영
7.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8. 건전한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②윤리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1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윤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을 성실히 준수하는 자를 모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제44조의10 (명예훼손분쟁조정부) ①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

④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7.1.26>

③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4.1.29, 2007.1.26>

1. 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정보통신망에의 접근과 침입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5. 삭제 <2007.1.26>

④삭제 <2007.1.26>

제45조의2 삭제 <2007.1.26>

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보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③삭제 <2004.1.29>

제46조의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긴급대응) ①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시설이용자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

②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발생일시·기간·내용 등을 명시하여 시설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46조의3 (정보보호 안전진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인 이상의 정보보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자(이하 "안전진단수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6>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액·이용자 수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사업자는 관련정보의 제공 및 시설·장소에의 출입허용 등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에 협력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07.1.2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거나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분석·평가를 받거나 인증을 받은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6>

④안전진단수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에게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2007.1.26>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수행기관이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한 때에는 그 권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내용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에게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절차, 정보보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및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⑧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련 자료보유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본조신설 2004.1.29]

제47조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①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보호진흥원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정보보호관리 기준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제47조의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당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을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을 행하지 아니한 때

4.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5.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종전 제47조의2는 제47조의3으로 이동 <2007.1.26>]

제47조의3 (이용자의 정보보호)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이를 권고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 보완프로그램을 제작한 때에는 이를 보호진흥원에 통지하고, 당해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는 제작한 날부터 1월 이내에 2회 이상 이를 알려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요청 등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47조의2에서 이동 <2007.1.26>]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의2 (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침해사고 대응조치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당해 정보통신망의 소통량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보호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분석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는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제48조의3 (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개정 2007.1.26>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3. 삭제 <2007.1.26>

②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제48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정

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확산방지·사고대응·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당해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침해사고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26>

⑤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분석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침해사고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의2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본조신설 2005.12.30]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③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를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30>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조치

⑦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30]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0>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본조신설 2002.12.18]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12.18]

제50조의4 (정보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12.30>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의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용계약을 통하여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의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의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의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통지한다. <개정 2005.12.30>

[본조신설 2002.12.18]

제50조의5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본조신설 2002.12.18]

제50조의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 <개정 2007.1.26>)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자가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차단·신고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수신자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보급의 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본조신설 2004.1.29]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0]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채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51조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제한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요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6>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취급하는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급 중 알게 된 중요정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제52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①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보호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보호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4.1.29, 2004.12.30, 2007.1.26>

1.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정보화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3. 정보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4. 정보보호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5.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 제정 및 표준화 지원
- 5의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지원
6.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기술 개발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의 지원
8.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 8의2. 불법전송광고와 관련된 고충의 상담·처리
- 9.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처리 및 대응체계 운영
- 9의2.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지원
- 10.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 인증관리
-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④정부는 보호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 ⑤보호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 ⑥보호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⑦보호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국제협력

제53조 (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1. 삭제 <2004.1.29>
2.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
3.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
4.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5.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제54조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개정 2004.1.29>)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9>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9>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제8장 보칙

제55조 (자료제출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1.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2.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⑥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

시, 제출 또는 열람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⑦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0, 2007.1.26>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26>

⑨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⑩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보호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7.1.26>

⑪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요구·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6>

제55조의2 (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 또는 수집된 서류·자료 등에 대한 보호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중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 또는 수집된 서류·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또한 같다.

1.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출입검사·시정명령 등의 목적이 달성된 때

2.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송절차가 완료된 때

3.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때

4.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완료된 때

[본조신설 2007.1.26]

제56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기

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7.1.26>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④제55조제6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진흥원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18, 2005.12.30>

제57조 (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0, 2007.1.26>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업무
3. 제5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
5.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제58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①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②제22조 내지 제24조의2 및 제2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6>

제59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④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①정보보호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산업전반의 정보보호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인가절차·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본조신설 2004.1.29]

제6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제5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및 보호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2.12.18, 2006.10.4, 2007.1.26>

제9장 벌칙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18, 2007.1.26>

1. 제24조·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삭제 <2007.1.26>

3. 제28조의2(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4.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5.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6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한 자

3.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②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04.1.29>

제6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4.12.30, 2005.12.30, 2007.1.26>

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3. 제44조의6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전문개정 2002.12.18]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007.1.26>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

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의2 삭제 <2005.12.30>

제6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2.12.18, 2007.1.26>

제6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를 하게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1.29, 2004.12.30, 2005.12.30, 2007.1.26>

1. 제44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명시한 자

4. 삭제 <2004.12.30>

5. 제50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6. 제50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7. 제5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4.1.29, 2004.12.30, 2005.12.30, 2006.10.4, 2007.1.26>

1.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3. 제22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 제23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 제23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6. 제25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한 자

6의2. 제25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27조의2제1항(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9. 제29조 본문(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0.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제31조제3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제31조제3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자

11. 제31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11의2.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2.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3의2.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13의3.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의4. 제46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의5. 제4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3의6. 제4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의7. 제48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3의8. 제4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내용 또는 처리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14. 삭제 <2004.1.29>

15. 삭제 <2004.1.29>

15의2. 삭제 <2004.1.29>

15의3. 삭제 <2004.1.29>

15의4. 삭제 <2004.1.29>

15의5. 삭제 <2004.1.29>

16. 제5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7.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8.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9.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삭제 <2007.1.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1.29, 2007.1.26>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4.1.29>

부칙 <제6360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설립근거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보호센터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를 보호진흥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정보보호센터의 명칭은 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를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전자서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부터"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중 "보호센터"를 각각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보호센터가"를 "보호진흥원이"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21조제5항중 "보호센터는"을 각각 "보호진흥원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보호센터는"을 "보호진흥원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⑤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3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서명법) <제6585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의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6797호,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제5항, 제56조제3항·제4항, 제60조 및 제67조제1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5의 규정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139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5조제4항·제46조의3·제47조의2제4항 및 제4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7142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7조 및 제53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7262호,2004.12.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6>내지 <68>생략

부칙 <제7812호,2005.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7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보호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제4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8030호,2006.10.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8031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0조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289호, 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전기통신취급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은 이를 이 법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법 제44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는 이 법 제44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로 본다.

제4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23조·제24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22조·제23조·제24조·제24조의2 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행위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8호중 "제53조제2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으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798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이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수집·가공·제작·저장·검색·송신 등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자"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과 관

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디지털형태의 원정보를 가공하거나 디지털형태외의 원정보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이들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7. "복제"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전자적 매체 등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송"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표시"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전자적 형태로 부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술적보호조치"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제2장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추진체계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이하 "온라인콘텐츠산업"이라 한다)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온라인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콘텐츠산업 부문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4. 온라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온라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온라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온라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①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계획 등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이하 "온라인콘텐츠사업자"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3. 온라인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온라인콘텐츠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

2. 온라인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안건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자

④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재원의 확보) ①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등으로 제3장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제3장 온라인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

제7조 (창업의 활성화) ①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사업의 창업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이하 "온라인콘텐츠"라 한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콘텐츠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기술개발의 촉진) 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에 관한 사항
2.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표준화의 추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라인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온라인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온라인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콘텐츠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유통의 촉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 등 필요한 사업(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관리업 또는 대리 중개업은 제외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온라인콘텐츠에 식별표지를 부착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식별표지와 관련된 표준체계를 개발·권장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별표지에 관한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기간통신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온라인콘텐츠사업자 또는 타인의 온라인콘텐츠를 전송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의 국

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국제표준화 활동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 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온라인콘텐츠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온라인콘텐츠기술산업의 유통촉진에 필요한 사항
4. 온라인콘텐츠기술산업의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5. 문화원형·학술자료·역사자료의 온라인콘텐츠산업 개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온라인콘텐츠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세제지원 등) ①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금융 기타 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때에는 온라인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정보를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조건·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비자 보호)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콘텐츠의 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제16조의2 (청약철회 등)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이하 "온라인콘텐츠제작자"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온라인콘텐츠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에 포함시키거나 시용상품의 제공,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16조의3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이하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제작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온라인콘텐츠사업자는 온라인콘텐츠 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오금의 환불, 콘텐츠이용계약의 해지·해제의 권리, 콘텐츠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콘텐츠이용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콘텐츠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을 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제16조의4 (준용)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 및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23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 중 청약철회 및 소비자보호지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또는 "온라인콘텐츠사업자"로, "소비자보호지침"은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30]

제17조 (표시) ①온라인콘텐츠제작자는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온라인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조건 등을 온라인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

제18조 (금지행위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제1항 본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손해배상청구 등) ①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규정

을 위반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로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인 제작자)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온라인콘텐츠제작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5장 벌칙

제22조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①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6603호,2002.1.1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1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7265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7818호,200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록 2】

국제 관련법규

1. UNICITRAL 전자계약협약
2. UNI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3. UNICITRAL 전자서명모델법
4. eTerms 2004
5. ICC Guide to electronic contracting
6. 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affirming their belief that international trade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mutual benefit is an important element in promotion friendly relations among States,

Noting that the increased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mproves the efficiency of commercial activities and enhances trade connections and allows new access opportunities for previously remote parties and markets, thus playing a fundamental role in promotion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Considering that problems created by uncertainty as to the legal value of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constitute an obstacle to international trade,

Convinced that the adoption of uniform rules to remove obstacles to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including obstacles that might result from the operation of existing international trade law instruments, would enhance legal certainty and commercial predictability for international contracts and help States gain access to modern trade routes,

Being of the opinion that uniform rules should respect the freedom of parties to choose appropriate media and technologies, taking account of the principles of technological neutrality and functional equivalence, to the extent that the means chosen by the parties comply with the purpose of the relevant rules of law,

Desiring to provide a common solution to remove legal obstacles to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a manner acceptable to States with different legal, social and economic systems,

Have agreed as follows;

CHAPTER I. Sphere of Appli—cation

Article 1. Scope of application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2. The fact that the parties have their places of business in different States is to be disregarded whenever this fact does not appear either from the contract or from any dealings between the parties or from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3. Neither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nor the civil or commercial character of the parties or of the contract i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rticle 2. Exclusions

1.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relating to any of the following:

(a) Contracts concluded for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purposes;

(b) (i) Transactions on a regulated exchange; (ii)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iii) inter-bank payment systems, inter-bank payment agreements or clearance and settlement systems relating to securities or other financial assets or instruments; (iv) the transfer of security rights in, sale, loan or holding of or agreement to repurchase securities or other financial assets or instruments held with an intermediary.

2.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bills of exchange, promissory notes, consignment notes, bills of lading, warehouse receipts or any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that entitles the bearer or beneficiary to claim the delivery of goods or the payment of a sum of money.

Article 3. Party autonomy

The parties ma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derogate from or vary the effect of any of its provisions.

CHAPTER II. General Provisions

Article 4.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Communication" means any statement, declaration, demand, notice or request, including an offer and the acceptance of an offer, that the parties are required to make or choose to make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b)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any communication that the parties make by means of data messages;

(c) "Data message" means information generated, sent,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magnetic, optical or similar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lectronic mail, telegram, telex or telecopy;

(d) "Originator"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a party by whom, or on whose behal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has been sent or generated prior to storage, if any, but it does not include a party acting as an intermediary with respect to that electronic communication;

(e) "Addressee"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a party who is intended by the originator to receive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but does not include a party acting as an intermediary with respect to that electronic communication;

(f) "Information system" means a system for generating, sending, receiving, storing or otherwise processing data messages;

(g) "Automated message system" means a computer program or an electronic or other automated means used to initiate an action or respond to data messages or performances in whole or in part, without review or intervention by a natural person each time an action is initiated or a response is generated by the system;

(h) "Place of business" means any place where a party maintains a nontransitory establishment to pursue an economic activity other

than the temporary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out of a specific location.

Article 5. Interpretation

1.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2.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or,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6. Location of the parties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party's place of business is presumed to be the location indicated by that party, unless another party demonstrates that the party making the indication does not have a place of business at that location.

2. If a party has not indicated a place of business and has more than one place of business, then the place of busin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is that which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to the relevant contract,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known to or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3. If a natural person does not have a place of business, reference is to be made to the person's habitual residence.

4. A location is not a place of business merely because that is: (a) where equipment and technology supporting an information system used by a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f a contract are located; or (b) where the information system may be accessed by other parties.

5. The sole fact that a party makes use of a domain name or electronic mail address connected to a specific country does not create a presumption that its place of business is located in that country.

Article 7. Information requirements

Nothing in this Convention affects the application of any rule of law that may require the parties to disclose their identities, places of business or other information, or relieves a party from the legal consequences of making inaccurate, incomplete or false statements in that regard.

CHAPTER III.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Article 8. 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1.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shall not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it is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2. Nothing in this Convention requires a party to use or accept electronic communications, but a party's agreement to do so may be inferred from the party's conduct.

Article 9. Form requirements

1. Nothing in this Convention requires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to be made or evidenced in any particular form.

2.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should be in writing,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writing, that requirement is met by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f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

3.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should be signed by a party,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signature, that requirement is met in relation to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f:

(a) A method is used to identify the party and to indicate that party's intention in respect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b) The method used is either:

(i) As reliable 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was generated or communicated, in the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any relevant agreement; or

(ii) Proven in fact to have fulfilled the func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above, by itself or together with further evidence.

4.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should be made available or retained in its original form,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n original, that requirement is met in relation to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f:

(a) There exists a reliable assurance as to the integrity of the information it contains from the time when it was first generated in its final form, as an electronic communication or otherwise; and

(b) Where it is required that the information it contains be made available, that information is capable of being displayed to the person to whom it is to be made available.

5.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4 (a):

(a) The criteria for assessing integrity shall be whether the information has remained complete and unaltered, apart from the addition of any endorsement and any change that arises in the normal course of communication, storage and display; and

(b) The standard of reliability required shall be assessed in the light of the purpose for which the information was generated and in the ligh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Article 10.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1. The time of dispatch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s the time when it leaves an information system under the control of the originator or of the party who sent it on behalf of the originator or, i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has not left an information system under the control of the originator or of the party who sent it on behalf of the originator, the time whe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is received.

2. The time of receipt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s the time when it becomes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at an electronic address designated by the addressee. The time of receipt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at another electronic address of the addressee is the time when it becomes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at that address and the addressee becomes aware that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has been sent to that address.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s presumed to be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when it reaches the addressee's electronic address.

3.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s deemed to be dispatched at the place where the originator has its place of business and is deemed to be received at the place where the addressee has its place of business,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4.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pplies notwithstanding that the place where the information system supporting an electronic address is located may be different from the place where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is deemed to be received under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rticle 11. Invitations to make offers

A proposal to conclude a contract made through one or more electronic communications which is not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arties, but is generally accessible to parties making use of information systems, including proposals that make use of interactive applications for the placement of orders through such information systems, is to be considered as an invitation to make offers, unless it clearly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e party making the proposal to be bound in case of acceptance.

Article 12. Use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for contract formation

A contract formed by the interaction of an automated message system and a natural person, or by the interaction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shall not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no natural person reviewed or intervened in each of the individual actions carried out by the automated

message systems or the resulting contract.

Article 13. Availability of contract terms

Nothing in this Convention affects the application of any rule of law that may require a party that negotiates some or all of the terms of a contract through the exchang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to make available to the other party those electronic communications which contain the contractual terms in a particular manner, or relieves a party from the legal consequences of its failure to do so.

Article 14. Error in electronic communications

1. Where a natural person makes an input error in an electronic communication exchanged with the automated message system of another party and the automated message system does not provide the person with an opportunity to correct the error, that person, or the party on whose behalf that person was acting, has the right to withdraw the portion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in which the input error was made if:

(a) The person, or the party on whose behalf that person was acting, notifies the other party of the error as soon as possible after having learned of the error and indicates that he or she made an error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b) The person, or the party on whose behalf that person was acting, has not used or received any material benefit or value from the goods or services, if any,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2. Nothing in this article affects the application of any rule of law that may govern the consequences of any error other than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CHAPTER IV. Final Provisions

Article 15. Depositar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s hereby designated as the depositary for this Convention.

Article 16.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1. This Convention is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from 16 January 2006 to 16 January 2008.

2. This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the signatory States.

3. This Convention is open for accession by all States that are not signatory States as from the date it is open for signature.

4.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nd accession are to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7.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Participation by regional

1.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is constituted by sovereign States and has competence over certain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may similarly sign, ratify, accept, approve or accede to this Convention.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in that case hav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 Contracting State, to the extent that that organization has competence over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Where the number of Contracting States is relevant in this Convention,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not count as a Contracting State in addition to its member States that are Contracting States.

2.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make a declaration to the depositary specifying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which competence has been transferred to that organization by its member States.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promptly notify the depositary of any changes to the distribution of competence, including new transfers of competence, specified in the declaration under this paragraph.

3. Any reference to a "Contracting State" or "Contracting States" in this Convention applies equally to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where the context so requires.

4. This Convention shall not prevail over any conflicting rules of an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as applicable to parties whose respective places of business are located in States members of any such organization, as set out by declar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Article 18. Effect in domestic territorial units

1. If a Contracting State has two or more territorial units in which different systems of law are applicable in relation to the matters dealt with in this Convention, it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declare that this Convention is to extend to all its territorial units or only to one or more of them, and may amend its declaration by submitting another declaration at any time.

2. These declarations are to be notified to the depositary and are to state expressly the territorial units to which the Convention extends.

3. If, by virtue of a declaration under this article, this Convention extends to one or more but not all of the territorial units of a Contracting State, and if the place of business of a party is located in that State, this place of busin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is considered not to be in a Contracting State, unless it is in a territorial unit to which the Convention extends.

4. If a Contracting State makes no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Convention is to extend to all territorial units of that State.

Article 19. Declarations on the scope of application

1. Any Contracting State may declar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that it will apply this Convention only:

(a) When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1, paragraph 1, are Contracting States to this Convention; or

(b) When the parties have agreed that it applies.

2. Any Contracting State may exclude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e matters it specifies in a declar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Article 20. Communications exchanged under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s

1.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pply to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to which any of the follow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which a Contracting State to this Convention is or may become a Contracting State, apply: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0 June 1958);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New York, 14 June 1974) and Protocol thereto (Vienna, 11 April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1 April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iability of Operators of Transport Terminals in International Trade (Vienna, 19 April 199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New York, 11 December 1995);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New York, 12 December 2001).

2.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pply further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to which an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 treaty or agreement not specifically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to which a Contracting State to this Convention is or may become a Contracting State, applies, unless the State has decl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that it will not be bound by this paragraph.

3. A State that makes a declaration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may also declare that it will nevertheless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o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r performance of any contract to which a specified international convention, treaty or agreement applies to which the State is or may become a Contracting State.

4. Any State may declare that it will not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o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to which any international convention, treaty or agreement specified in that State's declaration, to which the State is or may become a Contracting State, applies, including any of the conven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even if such State has not excluded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by a declar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Article 21. Procedure and effects of declarations

1. Declarations under article 17, paragraph 4, article 19, paragraphs 1 and 2, and article 20, paragraphs 2, 3 and 4, may be made at any time. Declarations made at the time of signature are subject to confirmation upon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2. Declarations and their confirmations are to be in writing and to be formally notified to the depositary.

3. A declaration takes effect simultaneously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State concerned. However, a declaration of which the depositary receives formal

notification after such entry into force takes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by the depositary.

4. Any State that makes a declaration under this Convention may modify or withdraw it at any time by a formal notif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depositary. The modification or withdrawal is to take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depositary.

Article 22. Reservations

No reservations may be made under this Convention.

Article 23. Entry into force

1.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2. When a State ratifies, accepts, approves or accedes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n respect of that Stat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Article 24. Time of application

This Convention and any declaration apply only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that are made after the date when the Convention or the declaration enters into force or takes effect in respect of each Contracting State.

Article 25. Denunciations

1. A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by a formal notif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depositary.

2. The denunciation takes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welve months after the notification is received by the depositary. Where a longer period for the denunciation to take effect is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the denunciation takes effect upon the expiration of such longer period after the notification is received by the depositary.

DONE at New York, this [...] day of [...], 2005, in a single original,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국제계약에서 전자통신의 사용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데 있어서 평등과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한 국제무역이 중요한 요소라는 믿음을 재확인하고,

증가하고 있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이 상업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무역연계를 강화하며 이전의 원거리 당사자와 시장에 새로운 접근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무역과 경제발전을 증진시키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며,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의 법적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이 국제무역에 장애를 형성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현존하는 국제무역법의 시행에서 기인하는 장애를 비롯한 국제 계약상의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통일적 규정의 채택이 국제계약의 법적 확실성과 상업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당사국으로 하여금 현대 무역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

며,

기술적 중립성과 기능적 등가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통일적 규정은 당사국이 관련 법률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매체와 기술을 선택할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여기고,

각각 상이한 법률·사회·경제 제도를 가진 제 당사국이 수용가능한 방식으로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의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일반적 해결책을 제공하기를 희망하여,

다음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장 협약의 적용영역

제1조 적용범위

1. 이 협약은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성립 또는 이행에 관련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적용된다.
2.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이나 당사자간의 거래로부터 또는 계약체결전 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 당사자가 공개한 정보로부터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국적이나 당사자 또는 계약서의 민사적 또는 상사적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

제2조 예외

1. 이 협약은 다음의 사항에 관련된 전자적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정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b) (i)등록된 거래소에서의 거래, (ii)외국환 거래, (iii)은행간 지급시스템, 은행간 지급약정 또는 담보나 기타 금융자산·증권에 관련된 결산시스템 (iv)매매, 대부 또는 점유에 관련된 담보권의 이전, 또는 담보성환매약정이나 기타 중개자를 통하여 간접 보유한 금융자산·증권

2. 이 협약은 환어음, 약속어음, 양도증서, 선하증권, 창고증권 기타 소지인이나 수익자에게 운송물의 인도 또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성 증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당사자 자치권

계약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각 협약 조항의 효력을 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일반규정

제4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a) “의사표시”라 함은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청야과 청약의 승낙을 비롯한 당사자에게 요구되거나 ekdw사자의 선택에 따른 모든 진술, 발표, 요구, 통지 또는 요청을 의미한다.

(b) “전자적 의사표시”라 함은 당사자가 데이터 메시지의 방법으로 행한 모든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c) “데이터 메시지”라 함은 전자, 자기, 광학적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작성, 전송,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의미하며, 이는 전자데이터교환, 전자우편, 전보, 전신 또는 모사전송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d)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자”라 함은 전자적 의사표시의 저장 이전에 이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작성한 당사자를 의미하나, 당해 전자적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e)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자”라 함은 송신자가 전자적 의사표시를 수신하도록 의도한 당사자를 의미하나, 당해 전자적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f)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데이터 메시지의 작성, 전송, 수신, 저장 기타 그 밖의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g)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이라 함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위를 개시하거나 데이터 메시지 또는 그 실행에 응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화 또는 그 밖의 자동화된 수단으로서, 시스템에 의하여 행위가 개시되거나 응답이 생성될 때 자연인에 의한 검토나 개입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h) “영업소”라 함은 당사자가 특정장소 밖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임시적인 제공을 하는 곳이 아닌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상설적인 설비를 가지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제5조 해석

1.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협약의 국제적 특성 및 국제거래의 통일적 적용의 촉진과 국제거래에 있어 신뢰의 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적용을 받으나, 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된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해결하여야 하며, 그러한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하여 적용가능한 법률과 조화되게 해결되어야 한다.

제6조 당사자의 위치

1. 이 협약의 목적상, 당사자의 영업소는 당사자가 표시한 장소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 영업소 표시를 한 당사자가 그 장소에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대방이 반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영업소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알려진 상황이나 계약 체결전 또는 체결시 당사자가 고려한 상황을 참조하여 관련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곳이 이 협약상의 영업소가 된다.

3. 자연인이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를 영업소로 본다.

4. 어느 장소가 단순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소가 되지 아니한다.

(a) 당사자가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장비 또는 기술이 위치한 곳

(b) 타방 당사자가 그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곳

5. 당사자가 단지 특정 국가와 연관된 도메인 이름이나 전자우편 주소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그 국가에 있다는 추정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제7조 정보요건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에게 그들의 신원, 영업소 또는 다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는 이에 관한 부정확, 불완전 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에 따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국제계약에서의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

제8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

1. 의사표시 또는 계약은 그것이 전자적 의사표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 및 집행력이 부인되어서는 아니된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로 하여금 전자적 의사표시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승낙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행위로부터 그 사용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유추할 수 있다.

제9조 형식요건

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어떠한 특별한 형식으로 작성되거나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2.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서면 흠결의 효과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가 이후의 참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다면 그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충족된 것으로 본다.
3.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명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서명 흠결의 효과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충족된 것으로 본다

(a) 당사자의 신원 확인 및 그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에 관한 당해 당사자의 의도를 표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사용된 경우, 그리고

(b) 그 사용된 수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 (i) 관련 합의내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비추어 전자적 의사표시가 생성 또는 유통되는 목적에 적합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
- (ii) 위 (a)호에 적시된 기능을 충족하였다는 것이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증거와 함께 사실상 증명된 경우

4.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원본의 형태로 활용 가능하거나 보존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원본 흠결의 효과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충족된 것으로 본다.

(a)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그 밖의 것으로 최종적인 형태로 처음 생성된 때부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무결성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b) 전자적 의사표시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활용 가능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활용한 사람에게 현출될 수 있는 경우

5. 제4항 (a)호의 목적상,

(a) 무결성의 판단 기준은 의사표시, 저장 및 현출 등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적 기재나 변경을 제외하고 그 정보가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지 여부이다.

(b) 요구되는 신뢰성의 표준은 그 정보가 생성된 목적 및 모든 관련 상황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제10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수신시기 및 장소

1.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기는 그 전자적 의사표시가 송신또는 송신자를 대리하여 송신하는 당사자의 통제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난 때이다.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가 송신자나 송신자를 대리하는 당사자의 통제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나지 않았다면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된 때이다.
2.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미리 지정한 전자주소에서 그 전자적 의사표시를 검색할 수 있게 된 때이다. 수신자의 다른 전자주소로 송신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그 주소에서 전자적 의사표시를 검색할 수 있고, 전자적 의사표시가 그 주소로 송신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때이다.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자의 전자주소에 도달한 때에 수신자는 그 전자적 의사표시를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전자적 의사표시는 제6조에 따라 송신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가 있는 것으로 결정된 장소에서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2항은 전자주소가 운용되는 정보시스템이 소재한 장소가 이조 제3항에 의하여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된 것으로 보는 장소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1조 청약의 유인

정보시스템을 통한 주문신청을 위하여 상호작용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한 제안을 포함하여,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특정 당사자에 대한 제안이 아니라 그 정보시스템 사용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안은 그 제안을 승낙에 기속시키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

백히 표시되지 않았다면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제12조 계약체결시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의 이용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과 자연인의 상호작용 또는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연인이 그시스템에 의한 각 단계나 성립될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 및 집행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13조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전자적 의사표시의 교환을 통하여 계약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상하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의 계약조건이 포함된 전자적 의사표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는 위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지 못한 데에 따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

1. 당사자가 상대방의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과 교환되는 전자적 의사표시에서 입력 오류를 범하였고, 그 시스템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오류를 범한 전자적 의사표시 부분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a)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오류 사실을 안 직후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자신이 전자적 의사표시에서 오류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한 경우, 그리고

(b)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이익 또는 가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1항에 규정된 오류 이외의 오류에 대한 효과를 정하는 법률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장 최종조항

제15조 기탁처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기탁처로 지정된다.

제16조 서명, 비준, 수락 또는 승인

1. 이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해 2006년 1월 16일부터 2008년 1월 16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된다.

3. 이 협약은 서명 개방일로부터 모든 미서명국의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4.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및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7조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참여

1. 주권국가로 구성되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특정 사안들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유사하게 이 협약에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 범위까지 가입국으로서

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 협약상 가입국의 수와 관련하여,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이 협약의 가입국인 그 구성국에 추가하여 가입국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 그 구성국에 의하여 당해 기구로 이전된 권한중 이 협약을 적용받는 사항을 명시하여 기탁처에 선언하여야 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권한의 이전을 포함하여, 위 선언에 명시된 사항에 관련된 권한분배에 관한 변경사항을 즉시 기탁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의 '가입국' 또는 '가입국들'에 관한 사항은 문맥상 요구되는 경우 지역경제통합기구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4. 이 협약은 제21조에 따른 선언이 있을 경우 당사자들의 영업소가 어떤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구성국에 소재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그 기구의 준거법칙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국내영역단위에서의 효력

1. 가입국이 이 협약에서 다루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체계가 적용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영역단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이 당해 영역단위 전체 또는 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선언을 제출하여 그 선언을 수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선언은 기탁처에 통지되어야 하며, 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해당 영역단위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3. 이 조에 의한 선언에 따라 이 협약이 가입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단위에 그 효력이 미칠 뿐 모든 영역단위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영업소가 그 가입국에 있다면, 이 협약의 목적상 그

영업소는 가입국 내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영업소가 협약이 적용되는 영역단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입국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선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모든 영역단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19조 적용범위의 선언

1. 가입국은 제21조에 따라서 이 협약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a)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가 이 협약의 가입국인 경우, 또는

(b) 당사자가 이 협약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2. 가입국은 제21조에 따른 선언에 특정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이를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0조 다른 국제협약상의 의사표시의 교환

1. 이 협약의 가입국이 다음 국제협약의 가입국이거나 가입국이 될 경우, 그 국제협약상의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에 관련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1958년 6월 10일, 뉴욕)

◇ 국제동산매매에서의 제한기간에 관한 협약(1974년 6월 14일, 뉴욕) 및 그 의정서(1980년 4월 11일, 비엔나)

◇ 국제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1980년 4월 11일, 비엔나)

◇ 국제거래에서의 터미널 운송업자의 책임에 관한 국제연합협약(1991년 4월 19일, 비엔나)

◇ 독립 보증장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협약(1995년

12월 11일, 뉴욕)

◇ 국제거래에서의 수취계정채무의 양도에 관한 국제연합협약(2001년 12월 12일, 뉴욕)

2. 이 협약의 규정은 이조 제1항에서 특정하여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협약 가입국이 가입국이거나 가입국이 될 다른 국제협약, 조약 또는 협정이 적용되는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과 관련된 전자적 의사표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그 국가가 제21조에 따라 이 항에 기속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조의 제2항에 따른 선언을 한 국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가 가입국이거나 가입국이 될 특정한 국제협약, 조약 또는 협정이 적용되는 계약이 성립이나 이행에 관련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또한 선언할 수 있다.

4. 제21조에 따른 선언으로 이 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 국가도,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협약들을 포함하여 그 국가가 가입국이거나 가입국이 될 국제협약, 조약 또는 협정이 적용되는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에 관련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21조 선언의 절차와 효력

1. 제17조 제4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2항, 3항 및제4항에 따른 선언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서명시에 이루어진 선언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시 확인되어야 한다.

2. 선언과 그 확인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기탁처에 공식적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3. 선언은 이 협약의 발효와 동시에 관계 국가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

만, 이 협약의 발효 이후 기탁처에 공식적으로 통지도니 선언은 그 통지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달의 첫날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이 협약에 규정된 선언을 한 국가는 기탁처에 서면으로 공식적인 통지를 함으로써 어느 때라도 그 선언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수정 또는 철회는 기탁처에 그 통지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달의 첫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유보

이 협약상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23조 발효

1. 이 협약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중의 세 번째 문서가 기탁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달의 첫 날에 발효한다.

2. 어느 국가가 비준서, 가입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중의 세 번째 문서가 기탁된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달의 첫 날에 해당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24조 적용시기

이 협약과 선언은 이 협약 또는 선언의 발효일 또는 각 가입국에 대한 효력 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 전자적 의사표시에 적용된다.

제25조 폐기

1. 가입국은 기탁처에 공식적인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

할 수 있다.

2. 폐기는 기탁처에 그 통지가 접수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달의 첫날에 발효한다. 통지에 협약의 폐기를 위한 그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탁처에 그 통지가 접수된 이후 그 정한 기간이 경과 함으로써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약은 2005년 11월 23일 뉴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아랍어본, 중국어본, 영어본, 프랑스어본, 러시아어본, 스페인어본의 단일한 원본으로 작성되었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자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전권 대표들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Part one. Electronic commerce in general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Sphere of application

This Law applies to any kind of information in the form of a data message used in the context of commercial activities.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Law:

(a) "Data message" means information generated, sent,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optical or similar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electronic mail, telegram, telex or telecopy;

(b)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means the electronic transfer from computer to computer of information using an agreed

standard to structure the information;

(c) "Originator" of a data message means a person by whom, or on whose behalf, the data message purports to have been sent or generated prior to storage, if any, but it does not include a person acting as an intermediary with respect to that data message;

(d) "Addressee" of a data message means a person who is intended by the originator to receive the data message, but does not include a person acting as an intermediary with respect to that data message;

(e) "Intermediary",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data message, means a person who, on behalf of another person, sends, receives or stores that data message or provides other services with respect to that data message;

(f) "Information system" means a system for generating, sending, receiving, storing or otherwise processing data messages.

Article 3. Interpretation

(1)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Law,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ternational origin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2)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Law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this Law is based.

Article 4. Variation by agreement

(1) As between parties involved in generating, sending, receiving, storing or otherwise processing data messages, and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the provisions of chapter III may be varied by agreement.

(2) Paragraph (1) does not affect any right that may exist to modify by agreement any rule of law referred to in chapter II.

CHAPTER II. APPLICATION OF LEGAL REQUIREMENTS TO DATA MESSAGES

Article 5. Legal recognition of data messages

Information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or enforceability solely on the grounds that it is in the form of a data message.

Article 6. Writing

(1) Where the law requires information to be in writing, that requirement is met by a data message if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

(2) Paragraph (1) applies whether the requirement therein is in the form of an obligation or whether the law simply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information not being in writing.

(3)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do not apply to the following:
[...].

Article 7. Signature

(1) Where the law requires a signature of a person, that requirement is met in relation to a data message if:

(a) a method is used to identify that person and to indicate that person's approval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ata message; and

(b) that method is as reliable as w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data message was generated or communicated, in the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any relevant agreement.

(2) Paragraph (1) applies whether the requirement therein is in the form of an obligation or whether the law simply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signature.

(3)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do not apply to the following:
[...].

Article 8. Original

(1) Where the law requires information to be presented or retained in its original form, that requirement is met by a data

message if:

(a) there exists a reliable assurance as to the integrity of the information from the time when it was first generated in its final form, as a data message or otherwise; and

(b) where it is required that information be presented, that information is capable of being displayed to the person to whom it is to be presented.

(2) Paragraph (1) applies whether the requirement therein is in the form of an obligation or whether the law simply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information not being presented or retained in its original form.

(3)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1):

(a) the criteria for assessing integrity shall be whether the information has remained complete and unaltered, apart from the addition of any endorsement and any change which arises in the normal course of communication, storage and display; and

(b) the standard of reliability required shall be assessed in the light of the purpose for which the information was generated and in the ligh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4)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do not apply to the following:
[...].

Article 9. Admissibility and evidential weight of data messages

(1) In any legal proceedings, nothing in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shall apply so as to deny the admissibility of a data message in evidence:

- (a) on the sole ground that it is a data message; or,
- (b) if it is the best evidence that the person adducing it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obtain, on the grounds that it is not in its original form.

(2) Information in the form of a data message shall be given due evidential weight. In assessing the evidential weight of a data message, regard shall be had to the reliability of the manner in which the data message was generated, stored or communicated, to the reliability of the manner in which the integrity of the information was maintained, to the manner in which its originator was identified, and to any other relevant factor.

Article 10. Retention of data messages

(1) Where the law requires that certain documents, records or information be retained, that requirement is met by retaining data messages,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satisfied:

- (a)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 and
- (b) the data message is retained in the format in which it was generated, sent or received, or in a format which can be demonstrated to represent accurately the information generated, sent or received; and

(c) such information, if any, is retained as enables the identification of the origin and destination of a data message and the date and time when it was sent or received.

(2) An obligation to retain documents, records or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does not extend to any information the sole purpose of which is to enable the message to be sent or received.

(3) A person may satisfy the requir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by using the services of any other person, provided that the conditions set forth in subparagraphs (a), (b) and (c) of paragraph (1) are met.

CHAPTER III. COMMUNICATION OF DATA MESSAGES

Article 11. Formation and validity of contracts

(1) In the context of contract form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n offer and the acceptance of an offer may be expressed by means of data messages. Where a data message is used in the formation of a contract, that contract shall not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a data message was used for that purpose.

(2)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do not apply to the following:
[...].

Article 12. Recognition by parties of data messages

(1) As between the originator and the addressee of a data message, a declaration of will or other statement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or enforceability solely on the grounds that it is in the form of a data message.

(2)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do not apply to the following:
[...].

Article 13. Attribution of data messages

(1) A data message is that of the originator if it was sent by the originator itself.

(2) As between the originator and the addressee, a data message is deemed to be that of the originator if it was sent:

(a) by a person who had the authority to act on behalf of the originator in respect of that data message; or

(b) by an information system programmed by, or on behalf of, the originator to operate automatically.

(3) As between the originator and the addressee, an addressee is entitled to regard a data message as being that of the originator, and to act on that assumption, if:

(a) in order to ascertain whether the data message was that of the originator, the addressee properly applied a procedure previously agreed to by the originator for that purpose; or

(b) the data message as received by the addressee resulted from the actions of a person whose relationship with the originator or with any agent of the originator enabled that person to gain access to a method used by the originator to identify data messages as its own.

(4) Paragraph (3) does not apply:

(a) as of the time when the addressee has both received notice from the originator that the data message is not that of the originator, and had reasonable time to act accordingly; or

(b) in a case within paragraph (3)(b), at any time when the addressee knew or should have known, had it exercised reasonable care or used any agreed procedure, that the data message was not that of the originator.

(5) Where a data message is that of the originator or is deemed to be that of the originator, or the addressee is entitled to act on that assumption, then, as between the originator and the addressee, the addressee is entitled to regard the data message as received as being what the originator intended to send, and to act on that assumption. The addressee is not so entitled when it knew or should have known, had it exercised reasonable care or used any agreed procedure, that the transmission resulted in any error in the data message as received.

(6) The addressee is entitled to regard each data message received as a separate data message and to act on that assumption, except to the extent that it duplicates another data

message and the addressee knew or should have known, had it exercised reasonable care or used any agreed procedure, that the data message was a duplicate.

Article 14. Acknowledgement of receipt

(1) Paragraphs (2) to (4) of this article apply where, on or before sending a data message, or by means of that data message, the originator has requested or has agreed with the addressee that receipt of the data message be acknowledged.

(2) Where the originator has not agreed with the addressee that the acknowledgement be given in a particular form or by a particular method, an acknowledgement may be given by

(a) any communication by the addressee, automated or otherwise,
or

(b) any conduct of the addressee sufficient to indicate to the originator that the data message has been received.

(3) Where the originator has stated that the data message is conditional on receipt of the acknowledgement, the data message is treated as though it has never been sent, until the acknowledgement is received.

(4) Where the originator has not stated that the data message is conditional on receipt of the acknowledgement, and the acknowledgement has not been received by the originator within the time specified or agreed or, if no time has been specified or

agreed,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originator:

(a) may give notice to the addressee stating that no acknowledgement has been received and specifying a reasonable time by which the acknowledgement must be received; and

(b) if the acknowledgement is not received within the time specified in subparagraph (a), may, upon notice to the addressee, treat the data message as though it had never been sent, or exercise any other rights it may have.

(5) Where the originator receives the addressee's acknowledgement of receipt, it is presumed that the related data message was received by the addressee. That presumption does not imply that the data message corresponds to the message received.

(6) Where the received acknowledgement states that the related data message met technical requirements, either agreed upon or set forth in applicable standards, it is presumed that those requirements have been met.

(7) Except in so far as it relates to the sending or receipt of the data message,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to deal with the legal consequences that may flow either from that data message or from the acknowledgement of its receipt.

Article 15.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data messages

(1)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originator and the addressee, the dispatch of a data message occurs when it enters an information system outside the control of the originator or of the person who sent the data message on behalf of the originator.

(2)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originator and the addressee, the time of receipt of a data message is determined as follows:

(a) if the addressee has designated an informa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data messages, receipt occurs:

(i) at the time when the data message enters the designated information system; or

(ii) if the data message is sent to an information system of the addressee that is not the designated information system, at the time when the data message is retrieved by the addressee;

(b) if the addressee has not designated an information system, receipt occurs when the data message enters an information system of the addressee.

(3) Paragraph (2) applies notwithstanding that the place where the information system is located may be different from the place where the data message is deemed to be received under paragraph (4).

(4)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originator and the addressee, a data message is deemed to be dispatched at the place where the originator has its place of business, and is deemed to be received at the place where the addressee has its

place of business.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a) if the originator or the addressee has more than one place of business, the place of business is that which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to the underlying transaction or, where there is no underlying transaction,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b) if the originator or the addressee does not have a place of business, reference is to be made to its habitual residence.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do not apply to the following: [...].

Part two. Electronic commerce in specific areas

CHAPTER I. CARRIAGE OF GOODS

Article 16. Actions related to contracts of carriage of goods

Without derogating from the provisions of part one of this Law, this chapter applies to any action in connection with, or in pursuance of, a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a) (i) furnishing the marks, number, quantity or weight of goods;
- (ii) stating or declaring the nature or value of goods;
- (iii) issuing a receipt for goods;
- (iv) confirming that goods have been loaded;
- (b) (i) notifying a pers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 (ii) giving instructions to a carrier;
- (c) (i) claiming delivery of goods;
- (ii) authorizing release of goods;
- (iii) giving notice of loss of, or damage to, goods;
- (d) giving any other notice or statement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 (e) undertaking to deliver goods to a named person or a person authorized to claim delivery;
- (f) granting, acquiring, renouncing, surrendering, transferring or negotiating rights in goods;
- (g) acquiring or transferring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Article 17. Transport documents

(1) Subject to paragraph (3),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ny action referred to in article 16 be carried out in writing or by using a paper document, that requirement is met if the action is carried out by using one or more data messages.

(2) Paragraph (1) applies whether the requirement therein is in the form of an obligation or whether the law simply provides consequences for failing either to carry out the action in writing or to use a paper document.

(3) If a right is to be granted to, or an obligation is to be acquired by, one person and no other person, and if the law

requires that, in order to effect this, the right or obligation must be conveyed to that person by the transfer, or use of, a paper document, that requirement is met if the right or obligation is conveyed by using one or more data messages, provided that a reliable method is used to render such data message or messages unique.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the standard of reliability required shall be assessed in the light of the purpose for which the right or obligation was conveyed and in the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any relevant agreement.

(5) Where one or more data messages are used to effect any action in subparagraphs (f) and (g) of article 16, no paper document used to effect any such action is valid unless the use of data messages has been terminated and replaced by the use of paper documents. A paper document issued in these circumstances shall contain a statement of such termination. The replacement of data messages by paper documents shall not affect the rights or obligations of the parties involved.

(6) If a rule of law is compulsorily applicable to a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which is in, or is evidenced by, a paper document, that rule shall not be inapplicable to such a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which is evidenced by one or more data messages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 contract is evidenced by such data message or messages instead of by a paper document.

(7)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do not apply to the following: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2001

*(The text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was adopted on 5 July 2001)*

Article 1. Sphere of application

This Law applies where electronic signatures are used in the context* of commercial** activities. It does not override any rule of law intended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 The Commission suggests the following text for States that might wish to extend the applicability of this Law:

"This Law applies where electronic signatures are used, except in the following situations: [...]."

** The term "commercial" should be given a wide interpretation so as to cover matters arising from all relationships of a commercial nature, whether contractual or not. Relationships of a commercial natur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transactions: any trade transaction for the supply or exchange of goods or

services; distribution agreement; commercial representation or agency; factoring; leasing; construction of works; consulting; engineering; licensing; investment; financing; banking; insurance; exploitation agreement or concession; joint venture and other forms of industrial or business cooperation; carriage of goods or passengers by air, sea, rail or road.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Law:

(a) "Electronic signature" means data in electronic form in, affixed to or logically associated with, a data message, which may be used to identify the signatory in relation to the data message and to indicate the signatory's approval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ata message;

(b) "Certificate" means a data message or other record confirming the link between a signatory and signature creation data;

(c) "Data message" means information generated, sent,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optical or similar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electronic mail, telegram, telex or telecopy;

(d) "Signatory" means a person that holds signature creation data and acts either on its own behalf or on behalf of the person it represents;

(e)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means a person that issues

certificates and may provide other services related to electronic signatures;

(f) "Relying party" means a person that may act on the basis of a certificate or or an electronic signature.

Article 3. Equal treatment of signature technologies

Nothing in this Law, except article 5, shall be applied so as to exclude, restrict or deprive of legal effect any method of creating an electronic signature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6, paragraph 1, or otherwise meets the requirements of applicable law.

Article 4. Interpretation

(1)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Law,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ternational origin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2)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Law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this Law is based.

Article 5. Variation by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Law may be derogated from or their effect

may be varied by agreement, unless that agreement would not be valid or effective under applicable law.

Article 6. Compliance with a requirement for a signature

(1) Where the law requires a signature of a person, that requirement is met in relation to a data message if an electronic signature is used that is as reliable as w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data message was generated or communicated, in the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any relevant agreement.

(2) Paragraph 1 applies whether the requirement referred to therein is in the form of an obligation or whether the law simply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signature.

(3) An electronic signature is considered to be reliable for the purpose of satisfying the requir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if:

(a) The signature creation data are, within the context in which they are used, linked to the signatory and to no other person;

(b) The signature creation data were, at the time of signing, under the control of the signatory and of no other person;

(c) Any alteration to the electronic signature, made after the time of signing, is detectable; and

(d) Where a purpose of the legal requirement for a signature is to provide assurance as to the integrity of the information to which it relates, any alteration made to that information after the

time of signing is detectable.

(4) Paragraph 3 does not limit the ability of any person:

(a) To establish in any other way, for the purpose of satisfying the requir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reliability of an electronic signature; or

(b) To adduce evidence of the non-reliability of an electronic signature.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do not apply to the following:
[...]

Article 7. Satisfaction of article 6

(1) *[Any person, organ or authority, whether public or private, specified by the enacting State as competent]* may determine which electronic signatures satisfy the provisions of article 6 of this Law.

(2) Any determination made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nsistent with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s.

(3) Nothing in this article affects the operation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8. Conduct of the signatory

(1) Where signature creation data can be used to create a signature that has legal effect, each signatory shall:

(a) Exercise reasonable care to avoid unauthorized use of its signature creation data;

(b) Without undue delay, utilize means made available by the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pursuant to article 9 of this Law, or otherwise use reasonable efforts, to notify any person that may reasonably be expected by the signatory to rely on or to provide services in support of the electronic signature if:

(i) The signatory knows that the signature creation data have been compromised; or

(ii) The circumstances known to the signatory give rise to a substantial risk

that the signature creation data may have been compromised;

(c) where a certificate is used to support the electronic signature, exercise reasonable care to ensure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all material representations made by the signatory that are relevant to the certificate throughout its life cycle or that are to be included in the certificate.

(2) A signatory shall bear the legal consequences of its failure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Article 9. Conduct of the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1) Where a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provides services to support an electronic signature that may be used for legal effect as a signature, that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shall:

(a) Act in accordance with representations made by it with respect to its policies and practices;

(b) Exercise reasonable care to ensure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all material representations made by it that are relevant to the certificate throughout its life cycle or that are included in the certificate;

(c) Provide reasonably accessible means that enable a relying party to ascertain from the certificate:

(i) The identity of the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ii) That the signatory that is identified in the certificate had control of the signature creation data at the time when the certificate was issued;

(iii) That signature creation data were valid at or before the time when the certificate was issued;

(d) Provide reasonably accessible means that enable a relying party to ascertain, where relevant, from the certificate or otherwise:

(i) The method used to identify the signatory;

(ii) Any limitation on the purpose or value for which the signature creation data or the certificate may be used;

(iii) That the signature creation data are valid and have not been compromised;

(iv) Any limitation on the scope or extent of liability stipulated by the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v) Whether means exist for the signatory to give notice

pursuant to article 8, paragraph 1 (b), of this Law;

(vi) whether a timely revocation service is offered;

(e) where services under subparagraph (d) (v) are offered, provide a means for a signatory to give notice pursuant to article 8, paragraph 1 (b), of this Law and, where services under subparagraph (d) (vi) are offered, ensure the availability of a timely revocation service;

(f) utilize trustworthy systems, procedures and human resources in performing its services.

(2) A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shall bear the legal consequences of its failure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Article 10. Trustworthiness

For the purposes of article 9, paragraph 1 (f), of this Law in determining whether, or to what extent, any systems, procedures and human resources utilized by a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are trustworthy, regard may be had to the following factors:

(a)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including existence of assets;

(b) Quality of hardware and software systems;

(c) Procedures for processing of certificates and applications for certificates and retention of records;

(d) Availability of information to signatories identified in certificates and to potential relying parties;

- (e) Regularity and extent of audit by an independent body;
- (f) The existence of a declaration by the State, an accreditation body or the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regarding compliance with or existence of the foregoing; or
- (g) Any other relevant factor.

Article 11. Conduct of the relying party

A relying party shall bear the legal consequences of its failure:

- (a) To take reasonable steps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an electronic signature; or
- (b) Where an electronic signature is supported by a certificate, take reasonable steps to:
 - (i) To verify the validity, suspension or revocation of the certificate; and
 - (ii) To observe any limitation with respect to the certificate.

Article 12. Recognition of foreign certificates and electronic signatures

(1) In determining whether, or to what extent, a certificate or an electronic signature is legally effective, no regard shall be had:

- (a) To the geographic location where the certificate is issued or the electronic signature created or used; or
- (b) To the geographic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issuer or signatory.

(2) A certificate issued outside [*the enacting State*] shall have the same legal effect in [*the enacting State*] as a certificate issued in [*the enacting State*] if it offers a substantially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

(3) An electronic signature created or used outside [*the enacting State*] shall have the same legal effect in [*the enacting State*] as an electronic signature created or used in [*the enacting State*] if it offers a substantially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

(4) In determining whether a certificate or an electronic signature offers a substantially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2 or 3, regard shall be had to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o any other relevant factors.

(5) Where, notwithstanding paragraphs 2, 3 and 4, parties agree, as between themselves, to the use of certain types of electronic signatures or certificates, that agreement shall be recognized as sufficient for the purposes of cross-border recognition, unless that agreement would not be valid or effective under applicable law.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1996)

제1편 전자상거래 일반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이 법은 상거래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데이터 메시지 형태의 정보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데이터 메시지"란 전자문서교환(EDI), 전자우편, 전신(telegram), 텔렉스(telex) 또는 팩시밀리(telecopy)를 비롯한 전자적, 광학적(optical) 기타 유사한 수단으로 작성(generate), 발신, 수령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b) "전자문서교환(EDI)"이란 합의된 정보구성표준을 사용하여 하는 컴퓨터간의 정보의 전자적 이전을 말한다.

(c) 데이터 메시지의 "작성자(originator)"란 데이터 메시지를 직접 발신하였거나 저장전에 생성시킨 자 또는 대리의 경우 그 본인을 말한다. 다만, 이 데이터 메시지와 관련하여 매개자로 활동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d) 데이터 메시지의 "수신자"란 작성자가 데이터 메시지를 수령하기 바라는 자로서, 이 데이터 메시지와 관련하여 매개자로 활동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e) "매개자(intermediary)"란 특정한 데이터 메시지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그 데이터 메시지를 발신, 수령 또는 저장하거나 그 데이터 메시지와 관련하여 다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f) "정보처리조직(information system)"이란 데이터 메시지를 생성, 발신, 수령, 저장 또는 다르게 처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해석원칙

(1) 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국제적 기원과 적용상의 통일성을 제고할 필요성 및 신의성실원칙의 준수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이 법이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문제로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이 법이 기초하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4조 합의에 의한 변경

(1) 데이터 메시지를 생성, 발신, 수령, 저장 또는 다르게 처리하는데 참여한 당사자들간에 있어서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제3장의 규정을 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2) 제2항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법률을 함의로써 변경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장 데이터 메시지의 법률요건의 적용

제5조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 승인

정보는 그것이 데이터 메시지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률효과, 적법성 및 이행가능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제6조 서면

(1) 법에서 정보가 서면으로 된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데이터 메시지 안의 정보가 계속적인 열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가능한 때에는 데이터 메시지는 그 요건을 충족한다.

(2) 제1항은 그 요건이 의무의 형식을 취하는지 또는 법에서 단지 서면으로 되어있지 않은 정보의 효과를 규정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3)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7조 서명

(1) 법에서 사람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데이터 메시지와 관련하여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한

다.

(a)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그 사람의 승인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사용되고,

(b) 그 방법이 관련 합의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비추어 데이터 메시지를 생성 또는 수수한 목적에 적합하였다고 믿을 수 있을 것

(2) 제1항은 그 요건이 의무의 형식을 취하는지 또는 법에서 단지 서명함결의 효과를 규정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3)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8조 원본

(1) 법에서 정보를 원본의 형태로 제출되거나 보존(retain)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데이터 메시지와 관련하여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한다.

(a) 정보가 최종적인 형태로 처음 생성된 때로부터 데이터 메시지 또는 기타로서 정보의 완전성(integrity)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이 있고,

(b) 정보가 제출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정보가 제출받아야 할 자에게 보여질 수 있을 것

(2) 제1항은 그 요건이 의무의 형식을 취하는지 또는 법에서 단지 그 정보가 원본형태로 제출 또는 보관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규정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3) 제1항 제a호에서

(a) 완전성의 평가기준은 그 정보가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았는지 여부

이다. 다만, 통상적인 통신, 저장 및 화상출력(display)과정에서 발생하는 승인(endorsement) 및 수정의 추가는 제외한다.

(b) 요구되는 신뢰기준은 정보를 작성한 목적 및 모든 관련상황에 비추어 평가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9조 데이터 메시지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1) 재판에서 증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데이터 메시지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부정하지 못한다.

(a) 그것이 데이터 메시지라는 것만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b) 그것이 이를 인용한(adduce) 자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증거인 때에는 그것이 원형 그대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2) 데이터 메시지 형태의 정보는 적당한 증거력이 인정된다. 데이터 메시지의 증거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데이터 메시지의 작성방법의 신뢰성, 작성자의 확인방법 및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데이터 메시지의 보존

(1) 법에서 일정한 문서, 기록 또는 정보의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데이터 메시지의 보존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a) 그 내용인 정보가 계속적인 검색(reference)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이 가능할 것

(b) 데이터 메시지가 작성, 발신 또는 수령된 형식(format)으로 또는 작성, 발신 또는 수령된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보존될 것

(c) 그 정보가 데이터 메시지의 출처와 목적지 그리고 발신 또는 수령된 일시의 확인을 가능하도록 보존될 것

(2) 제1항에 따른 문서, 기록 또는 정보의 보존의무는 메시지의 발신 또는 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3) 제3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a, b, c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3장 데이터 메시지의 송수신

제11조 계약의 성립과 효력

(1)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청약과 승낙은 데이터 메시지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데이터 메시지가 계약의 성립에 이용된 경우에 당해 계약은 데이터 메시지가 그러한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 및 이행가능성이 불인되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12조 당사자들에 의한 데이터 메시지의 승인

(1) 데이터 메시지의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있어서는 의사표시 기타 표현(statement)은 그것이 데이터 메시지의 형태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법률효과, 유효성 및 이행가능성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13조 데이터 메시지의 귀속

(1) 데이터 메시지가 작성자에 의해 직접 송신된 때에는 작성자의 데이터 메시지이다.

(2)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있어서는 데이터 메시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의해 송신된 때에는 작성자의 데이터 메시지로 본다.

(a) 당해 데이터 메시지와 관련하여 작성자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

(b) 자동 작동되도록 작성자에 의해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여 프로그램된 정보처리조직

(3)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신자는 데이터 메시지가 작성자의 데이터 메시지로 볼 수 있다.

(a) 데이터 메시지가 작성자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이를 위해 작성자가 사전에 동의한 방식을 적절하게 적용한 경우

(b) 수신자가 수령한 데이터 메시지가 작성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과의 관계로 인해 데이터 메시지가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자가 사용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행위 얻어진 경우

(4) 제3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데이터 메시지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적절히(accordingly) 행위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때

(b) 제3항 제b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신자가 데이터 메시지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정해진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던 때

(5) 데이터 메시지가 작성자의 것이거나 작성자의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혹은 수신자가 그러한 추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있어서 수신자는 데이터 메시지가 작성자가 송신하려고 한 상태로 수령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추정을 주장할 수 있다. 수신자가 과실로 수령한 데이터 메시지가 전송(transmission)되었음을 알았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정해진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수신자는 수령한 각 데이터 메시지를 별개의 데이터 메시지로 보고 그러한 추정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가 다른 데이터 메시지를 복사하여(duplicate) 데이터 메시지가 복사본임을 알았거나 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정해진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수령사실의 인정

(1) 이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데이터 메시지를 송신할 때 혹은 그 전에 또는 당해 데이터 메시지를 이용하여 작성자가 데이터 메시지의 수령사실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거나 수신자와 합의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작성자가 수신자와 그 인정을 특별한 방식 또는 방법으로 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데이터 메시지가 수령되었음을 작성자에게 알리기에 충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a) 자동적이거나 아니거나 수신자에 의한 통신

(b) 수신자의 행위

(3) 작성자가 데이터 메시지가 인정의 수령을 조건으로 밝힌 경우에 데이터 메시지는 인정을 수령하기 전에는 이르르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작성자가 데이터 메시지가 인정의 수령을 조건으로 함을 밝히지 아니하고 일정한 또는 약정한 기간내에 작성자가 인정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 또는 그 기간이 정해지거나 약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수신자에게 인정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히고 인정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b) 인정이 제a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수령하지 못한 때에는 수신자에게 통지하고 데이터 메시지를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거나 자신이 가지는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작성자가 수신자의 수령인정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자가 수령한 것으로 본다. 이는 그 데이터 메시지가 수령한 메시지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6) 수령한 인정에서 당해 데이터 메시지가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경우에 적용기준에 대해 약정이 있거나 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들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7) 데이터 메시지의 송수신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는 당해 데이터 메시지에서부터 또는 이의 수령인정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법적효

과를 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데이터 메시지의 발신 및 수령의 시기와 장소

(1)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데이터 메시지의 발신은 그것이 작성자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송신한 자의 감독밖에 있는 정보처리조직에 들어간 때에 이루어진다.

(2)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데이터 메시지의 수령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a) 수신자가 데이터 메시지의 수령을 위하여 정보처리조직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령이 다음에서 정하는 때에 이루어진다.

(i) 데이터 메시지가 지정된 정보처리조직에 도달한 때

(ii) 데이터 메시지가 지정된 정보처리조직이 아닌 수신자의 정보처리조직에 송신된 때에는 그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자가 회수한(retrieve) 때

(b) 수신자가 정보처리조직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자의 정보처리조직에 도달한 때에 수령한 것으로 한다.

(3) 제2항은 정보처리조직이 위치하는 장소가 그 데이터 메시지가 제4항에 의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는 장소와 다른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데이터 메시지는 작성자의 영업소가 있는 장소에서 발신한 것으로 보고, 수신자의 영업소가 있는 장소에서 수령한 것으로 본다. 이 항에서

(a)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수 개의 영업소를 가진 때에는 해당거래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곳 또는 해당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영업소로 한다.

(b)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소 (habitual residence)를 영업소로 본다.

(5)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2편 특정 분야의 전자상거래

제1장 물품운송

제16조 물품운송계약과 관련한 행위

이 법 제1편의 규정을 훼손하지(derogate) 않는 한,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물품운송계약과 관련되거나 이행하는 행위에 적용한다.

- (a) (i) 물품의 표(mark), 수, 수량 또는 중량의 표기
- (ii) 물품의 성질 또는 가치에 대한 표현
- (iii) 물품수령증의 발행
- (iv) 물품선적의 확인
- (b) (i) 계약내용 및 조건의 통지
- (ii) 운송인에 대한 지시
- (c) (i) 물품의 인도의 청구
- (ii) 물품 방출(release)의 승인
- (iii)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통지
- (d)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타의 통지 또는 표현
- (e) 명의인 또는 인도청구권한을 가지는 자에 대한 물품인도의 약속

(f) 물품에 대한 권리의 인정, 취득, 포기, 양도, 이전 또는 협상

(g) 계약상 권리의무의 취득 또는 이전

제17조 운송서류

(1) 제3항에 의하여 법에서 제16조에 규정한 행위가 서면 또는 서면 문서를 이용하여 이행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행위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한다.

(2) 제1항 당해 요건이 의무의 형식인지 또는 법에서 단지 그 행위를 서면으로 하거나 서면문서를 이용하지 않는데 대한 효과를 규정하는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3) 권리가 특정한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인정되지 않거나 의무의 취득이 특정한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에서 이를 위해 권리 또는 의무가 이전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리 또는 의무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전된 때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당해 데이터 메시지를 유일한(unique) 것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있어서 요구되는 신뢰의 기준은 권리 또는 의무의 이전목적 및 관련 합의를 포함한 모든 사정을 비추어 평가한다.

(5) 제16조 제f호 및 제g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행위르 하기 위하여 사용된 서면문서는 데이터 메시지의 사용이 서면문서의 사용으로 종료 및 대체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 발행된 서면문서는 그러한 종료사실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 서면문서에 의한 데이터 메시지의

대체는 관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어느 법규정이 서면문서에 있거나 이로써 증명되는 물품운송계약에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때에는 그 규정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 메시지로서 증명되는 물품운송계약에 대해 그 계약이 서면문서 대신 데이터 메시지에 의해 증명된다는 사실을 이유로 적용하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7)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2001)

제1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전자서명이 당사* 활동 관계**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법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 "상사(commercial)"라는 용어는 계약관계 혹은 비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상업적 성격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상업적 성격의 관계는 다음 거래를 포함하며 또 이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무역거래; 배급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당사 대표 또는 당사대리; 팩토링(factoring); 리스(leasing); 공장건설 (construction of works); 컨설팅(consulting); 엔지니어링 (engineering); 라이선스(licensing); 투자; 파이낸스(financing); 은행; 보험; 개발계약(exploitation agreement) 혹은 양허(concession); 합작 투자(joint venture) 기타 형태의 공업 또는 상업협력; 항공, 해상, 철도 또는 도로를 이용한 물품 또는 여객의 운송.

** 위원회(Commission)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제안한다 :

"이 법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서명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제2조 용어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이라 함은 데이터메시지와 관련하여 서명자를 확인하고 당해 데이터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서명자의 승인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데이터메시지에 포함, 첨부 혹은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를 말한다.

(b) "인증서(certificate)"라 함은 서명자와 서명생성데이터 간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데이터메시지 기타 기록을 말한다.

(c) "데이터메시지(data message)"라 함은 전자문서교환(EDI), 전자우편, 전신, 텔렉스 또는 팩스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광학적 기타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생성, 전송, 수신 혹은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d) "서명자(signatory)"라 함은 서명생성데이터를 소유하고 직접 혹은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e) "인증서비스제공자(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라 함은 인증서를 발행하는 자를 말하며, 전자서명과 관련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f) "신뢰하는 자(Relying party)"라 함은 인증서 혹은 전자서명에 의거하여 행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서명기술의 동등한 취급

제5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어느 조항도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혹은 적용가능한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 생성방법의 법률효과를 배제, 제한 혹은 박탈하기 위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해석

(1) 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국제적 기원과 이 법의 적용에서 통일 촉진의 필요성 및 신의성실 원칙의 준수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이 법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명시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문제는 이 법이 기초하는 일반원칙에 좇아 해결하여야 한다.

제5조 합의에 의한 변경

이 법의 규정은 합의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가 적용가능한 법에 의할 때 유효하지(valid or effective)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서명요건의 준수

(1) 법이 당사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관련 합의를 포함하여 모든 상황에 비추어 보아 데이터메시지가 생성 혹은 송수신된 목적에 알맞다고 믿을 수 있는 전자서명이 사용된 때에는 당해 데이터메시지와

관련하여 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은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이 의무의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법이 단순히 서명의 흠결에 대한 효과만을 규정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3) 전자서명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충족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a) 서명생성데이터가 그것이 사용되는 관계 내에서 서명자에게만 연결되고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지 않을 것;

(b) 서명생성데이터가 서명 당시 서명자의 지배하에 있고 다른 사람의 지배하에 있지 않을 것;

(c) 서명이 있는 후에 이루어진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을 확인할 수 있을 것;

(d) 서명에 대한 법률요건의 목적이 서명이 관련되는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 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정보에 대해 이루어진 변경을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제3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a)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충족과 관련하여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달리 정하는 것, 혹은

(b)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

(5) 이 조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제6조의 충족

(1) [입법국이 정하는 담당 공사의 개인, 기관 혹은 기구] 가 어떠한

전자서명이 이 법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준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규정은 국제사법 규칙의 적용(operation)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서명자가 취하여야 할 행위(conduct)

(1) 서명생성데이터가 법률효과를 가지는 서명을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경우 각 서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그 서명생성데이터의 권한없는 사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

(b)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자서명을 신뢰하거나 전자서명의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서명자에 의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수단을 이용하거나 그밖의 다른 상당한 노력을 할 것:

(i) 서명자가 당해 서명생성데이터가 훼손되었음을 안 경우; 혹은

(ii) 서명자가 알고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서명생성데이터가 훼손될 수도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

(c) 인증서가 전자서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내용연수 기간 동안 인증서와 관련되거나 혹은 인증서에 포함되게 되는 것으로 서명자가 한 모든 사실표현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

(2) 서명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법적효과를

부담한다.

제9조 인증서비스 제공자가 취하여야 할 행위

(1) 인증서비스 제공자는 서명의 법률효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정책 및 관습과 관련하여 자신이 한 표시에 좇아 행위할 것;

(b) 내용연수 기간동안 인증서와 관련되거나 혹은 인증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증서비스 제공자가 한 모든 사실표현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

(c) 신뢰하는 자가 인증서로부터 다음 각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당히 접근하기 쉬운 수단을 제공할 것:

(i) 인증서비스 제공자의 신원

(ii) 인증서에 신원이 표시된 서명자가 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서명생성데이터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

(iii) 인증서가 발행된 때에 혹은 그전에 서명생성데이터가 유효한 사실

(d) 신뢰하는 자가 관련이 있는 경우 인증서 등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히 접근하기 쉬운 수단을 제공할 것:

(i)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ii) 서명생성데이터 혹은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는 목적 혹은 금액에 대한 제한사항

(iii) 서명생성데이터가 유효하고 훼손되지 아니한 사실

(iv) 인증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혹은 내용에 대

한 제한사항

(v) 서명자가 이 법 제8조제1항 (b)의 규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 지 여부

(vi) 적시의 폐지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

(e) (d)(v)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서명자가 이 법 제8조제1항 (b)의 규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적시 폐지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것;

(f)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방법(절차) 및 인력을 사용할 것.

(2) 인증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법적효과를 부담한다.

제10조 신뢰성

이 법 제9조제1항 (f)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증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는 시스템, 방법(절차) 및 인력이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할 수 있다.

(a) 자산의 존재를 포함한 재정능력 및 인력

(b)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성능

(c) 인증서 처리, 인증서 신청 및 기록보존의 방법

(d) 인증서에 기재된 서명자 및 신뢰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정보의 획득가능성

(e) 독립한 기구에 의한 감사의 규칙성 및 정도

(f) 위 사항의 준수와 관련한 국가, 인정기구 혹은 인증서비스 제공자의 선언의 존재 혹은 위 사항의 존재

(e) 기타 관련있는 사항

제11조 신뢰하는 자가 취하여야 할 행위

신뢰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효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a)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의 이행

(b) 전자서명이 인증서에 의해 지원되는 경우에 다음의 각목의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의 이행

(i) 인증서의 유효성, 정지 혹은 폐지의 검증

(ii) 인증서와 관련한 제한사항의 준수

제12조 외국 인증서 및 전자서명의 승인

(1) 인증서 또는 전자서명이 법률상 유효한지 여부 혹은 그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a) 당해 인증서가 발행되거나 또는 당해 전자서명이 생성 또는 사용된 지리적 위치

(b) 발행자 혹은 서명자의 영업소의 지리적 위치

(2) [입법국] 밖에서 발행된 인증서도 실질적으로 동등 이상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입법국]에서 [당해 국가에서] 발행된 인증서와 동등한 법률효과를 가진다.

(3) [입법국] 밖에서 생성 혹은 사용되는 전자서명이라도 실질적으로 동등 이상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입법국]에서 [당해 국가에서] 생성 혹은 사용되는 전자서명과 동등한 법률효과를 가진다.

(4) 인증서 혹은 전자서명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동등 이상의 신뢰성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준 기타 관련있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특정한 종류의 전자서명 혹은 인증서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약정은 국외승인(cross-border recognition)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약정이 적용가능한 법에 의할 때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CC eTerms 2004

A. Article 1 - E-commerce agreement

The parties agree:

1.1 that the use of electronic messages shall create valid and enforceabl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m; and

1.2 that to the extent permitted under the applicable law, electronic messages shall be admissible as evidence, provided that such electronic messages are sent to addresses and in formats, if any, designated either expressly or implicitly by the addressee; and

1.3 not to challenge the validity of any communication or agreement between them solely on the ground of the use of electronic means, whether or not such use was reviewed by any natural person.

A. Article 2 - Dispatch and Receipt

2.1 An electronic message is deemed to be:

(a) dispatched or sent when it enters an information system outside the control of the sender; and

(b) received at the time when it enters an information system

designated by the addressee.

2.2 When an electronic message is sent to an information system other than that designated by the addressee, the electronic message is deemed to be received at the time when the addressee becomes aware of the message.

2.3 For the purpose of this contract, an electronic message is deemed to be dispatched or sent at the place where the sender has its place of business and is deemed to be received at the place where the addressee has its place of business.

1 See Guide to Electronic Contracting - Paragraph B.3

ICC eTerms 2004

제1조 전자상거래 합의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1.1 전자메시지의 사용은 당사자들간에 유효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를 창출한다.

1.2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 전자메시지는 증거로서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전자메시지는 수신인 앞으로 발송되어야 하고, 수신인에 의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지명된 기호체계가 있다면 기호체계 형태도 발송되어야 한다.

1.3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 전자수단의 사용이 자연인에 의한 검토여부에 관계없이 전자수단의 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진 모든 통신 또는 합의의 유효성은 거부되지 아니한다.

제2조 발송과 수령

2.1 전자메시지는 (a)발송자의 관리를 벗어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 발송 또는 발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b)수신인에 의해 지정된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 수신(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2.2 전자메시지가 수신인에 의해 지정된 정보시스템 이외의 정

보시시스템 앞으로 발송된 경우 전자메시지는 수신인이 메시지를 알게 된 때 수신(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2.3 본 계약을 위하여 전자통신은 발송자가 자신의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영업장소에서 발송 또는 발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수신인이 자신의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수신(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ICC Guide for eContracting

Contents

- B.1 How to apply ICC eTerms 2004
- B.2 The legal validity of ICC eTerms 2004
- B.3 The limits of ICC E-Terms 2004
- B.4 Who contracts on your behalf?
- B.5 With whom are you contracting?
- B.6 Constructing an electronic contract

- B.7 Technical Specifications
- B.8 Protecting Confidentiality
- B.9 Technical Breakdown and Risk Management

B.1 How to apply ICC eTerms 2004

As we shall see presently at paragraph B.2 below when discussing the validity of ICC eTerms 2004, there may well be some instances where mandatory legal rules within a particular jurisdiction create barriers to contracting electronically. In most instances, however, a clear expression of intention by

contracting parties that they intend to be bound through an exchange of electronic messages will effectively indicate to arbitrators or judges deciding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that they willingly and freely entered into a contract through that medium. In most cases,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why the applicable law should set aside a contract simply because it was concluded electronically.

This is why ICC eTerms 2004 starts from the proposition that the parties agree that the use of electronic messages shall create a binding contract: see article 1.1. Arbitrators and judges need to be put on clear notice that the parties have agreed to that fundamental principle in ICC eTerms 2004 and it is very much up to the parties to make that intention clear.

There are three ways in which contracting parties can signify their intention to agree to ICC eTerms 2004:

[a] parties can, within the limits allowed by any mandatory rules of the applicable law (as to which see paragraph B.2 below), simply incorporate ICC eTerms 2004 by reference into any contract they agree through electronic means, e.g. by e-mail, or communication through a web application;

[b] parties can sign and exchange a paper version of ICC eTerms 2004, indicating the types of contract during which and the periods to which it will apply (e.g. all sale of goods contracts between the parties concluded between them over the next two years);

[c] parties can simply exchange electronic messages indicating that they agree to ICC eTerms 2004 and then proceed to contract through electronic means, raising a presumption through

course of dealing that that is the way they wish to conduct their business.

Where parties feel comfortable that they are contracting with a counterparty used to contracting electronically and under an applicable law which easily accommodates e-contracting, then option [a] is recommended.

Where parties are particularly anxious about the validity of contracting electronically with certain counterparties under certain applicable laws, then option [b] is recommended.

Option [c] will have the same effect as option [a] in most jurisdictions, but presents more opportunity for argument than does option [a]. The applicable option should be selected by the parties in view of all of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It should be emphasised that, even without the incorporation of ICC eTerms 2004, if the parties start performing a contract which they concluded through electronic means, most arbitrators and judges in most jurisdictions would usually find that a contract exists.

B.2 The legal validity of ICC eTerms 2004

Despite the general legal validity of electronic contracts, there are situations in which the applicable law requires contracts to be recorded on paper and signed in a certain format. Will ICC eTerms 2004 be effective when the law of such a jurisdiction is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It is easy to overestimate this concern. For one thing, the ever-increasing use of electronic contracting, with the cost savings it brings in its wake, shows that most jurisdictions either actively endorse or at least passively permit contracting through electronic means. Even where there are local laws which seem to assume the exchange of paper document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they may not be mandatory and the effect of ICC eTerms 2004, when agreed to by the parties, is safeguarded by the basic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Nevertheless, in some legal systems mandatory rules, i.e. rules which cannot be avoided through simple contractual agreement, positively exclude electronic contracting by making the validity of a contract depend on the exchange of signed paper documents.

Where you are contracting in these circumstances, do not simply assume that you cannot contract electronically: persuade your counterparty of the economic advantages of electronic contracting and seek local legal advice not only as to whether the law permits e-contracting, but whether it actively prohibits it. If it does prohibit e-contracting, then that may be a good reason for agreeing with your counterparty on having your contract governed by a more accommodating legal system.

B.3 The limits of ICC E-Terms 2004

While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ICC eTerms 2004, it is equally important to realise their limits. First and most obviously, they are not themselves the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setting out the substantiv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m under an arrangement, for example, for the sale of goods or for the provision of a service. Thus, for example, the risk of malfunction in the transmission of messages will depend on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of the applicable law. Those terms will be contained in the contract itself, which ICC eTerms 2004 facilitate but does not replace.

Secondly, ICC eTerms 2004 do not resolve all the possible issues which may arise regarding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us, for example, if the parties each have their own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STCs), with each party intending to contract under its own STCs rather than under those of its counterparty, the issue as to which of the two STCs applies will be answered not by ICC eTerms 2004 but by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The central point here is that the purpose of ICC eTerms 2004 is to provide uniform terms that allow the parties to contract electronically without running the risk of one or other of them later raising the electronic nature of their contract as a ground for its invalidity.

B.4 Who contracts on your behalf?

Although the nature of e-contracting presents fewer legal problems than might at first be imagined, there are some risks which necessarily go with the benefits of the new technologies, namely speed and ease of use. If electronic contracting is easy

and quick, may it perhaps be too easy for a company to find itself bound by a contract before it is really ready to commit itself? This may be especially relevant for SMEs and companies not accustomed to electronic contracting.

This issue raises three related matters, namely (1) who within your company can contract electronically; (2) can an electronic system bind your company to a contract; and (3) what happens when the wrong button is keyed (i.e. when one party commits an error during the contracting process).

Authority to contract electronically

A company cannot bind itself to a contract without the assistance of a physical person who speaks for it and every company will have its own internal rules as to who among its officers or employees has, as between them, the power to bind the company towards third parties.

It is important, however, to realize

[i] that in many legal systems, a company can be bound towards a counterparty if an officer or employee acting on its behalf appears to that counterparty to have the authority to so act, even if he does not actually have that authority under the company's internal rules; and that

[ii] whether or not that is the position, i.e. whether or not apparent authority is enough to bind the company, depends on the applicable law of agency.

As a result, the ease with which physical persons can contract electronically may increase the risk of a company finding itself bound to a contract through the actions of an officer or employee acting outside the confines of his authority. In a

sense some of these risks are no different in the paper world: an employee can also make unauthorised use of company letterhead and exceed his authority in contracting on behalf of his company. However, a keyboard may be more vulnerable to unauthorised use, and a company would be well-advised therefore to take the following precautionary steps:

[a] employees need to be reminded regularly of their signing privileges and internal policies and procedures should clearly explain who can contract electronically and for what amount;

[b] employees need to be reminded regularly that their electronic communications can create rights and obligations for the company, and that they should therefore exercise caution and take internal advice before sending e-mails which might be interpreted as indicating the commitment of the company to a particular contract.

Automated e-contracting

The technology exists to allow companie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electronically with minimal or no human intervention in each transaction, a means of interaction sometimes referred to as "automated contracting". We have long been used to contracting using machines (for example, transactions using vending machines). "Automated contracting" goes one step further in that it involves both counterparties acting through machines, for instance in "just-in-time" arrangements.

Again, the perception that electronic contracting is riskier than contracting in the physical world may be worse than the reality, since computers can be secured against unprogrammed (or "unauthorised") transactions through careful and professional

software design, which can be approved and modified only by officers and employees of sufficiently high responsibility, authority and expertise.

Inadvertent e-contracting

The steps described above should guard as much against unauthorised e-contracting as against inadvertent e-contracting, i.e. against a human being (or even a machine) keying a confirm button in error. A dose of caution is always a useful antidote to the risk of being too trigger-happy on the keyboard or click-happy with the mouse.

The importance of careful web site design cannot be over-estimated in this regard. Web sites that are ambiguous or unclear are traps for the unwary, and companies wishing to make use of the benefits of e-contracting need to design their web sites such that the terms they contain are clear to the user when he or she is about to enter into a contract. Using unambiguous language with a "legal" ring to it (such as "offer" and "acceptance") helps to alert users that they are entering a "commitment" zone and that they should therefore consider carefully whether they truly intend to bind themselves by contract. Consider, for example, building into your website a final step alerting your counterparty that he is about to commit himself, such as requiring that he click a button marked "I agree" before concluding the contract.

B.5 With whom are you contracting?

If it is important to alert officers and employees in-house about

issues of authority to contract electronically, it is even more important to alert them to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the counterparty with whom they appear to be communicating. In electronic contracting, which frequently operates in different jurisdictions and across different time-zones, employees may be less familiar with the means of identifying the counterparty: moreover, websites can be spoofed and e-mail addresses can be impersonated.

Again, it is important not to exaggerate the risks, since common sense is also required in the paper world in identifying the party from whom a sheet of letterhead appears to originate. It is true, however, that the ease and speed of e-contracting may lull your employees into an unwarranted sense of security. Thus, it is often useful to take precautionary steps such as the following:

[a] Brief employees authorised to contract electronically in the basic skills of checking on the authenticity of e-mails, e.g. contacting the party through alternative means, checking contact details on other media, verifying a electronic signature, etc.

[b] Putting in place recognised authentication procedures, such as specified formats, identifying phrases, specific-use e-mail addresses, encryption and electronic signatures.

Clearly, the type and extent of the procedures to be put in place in this regard will differ based on the resources and technical expertise available, the parties' exposure to risk, and the volume and types of transactions concluded.

B.6 Constructing an electronic contract

When looking at the limits of ICC eTerms 2004 at para B.3 above, we saw that eTerms do not themselves provide the parties with the contractual terms for the transaction which they wish to conclude: they simply facilitate the conclusion of that transaction through electronic means. Having agreed to contract electronically, the parties must then consider what business they actually wish to transact and under what terms. In a real sense, this is no different to what parties do in the paper world: having decided to do business, say, through a series of face-to-face meetings and eventually through the exchange of signed paper documents, the parties will draft a contract recording the terms, the rights and the obligations, to which they want to commit themselves. Those terms will on occasion be contained in a one-off, tailor-made contract and on other occasions in a standard form contract intended for frequent use. Likewise in the electronic world, business will need to give thought as to how to anticipate terms which they are likely to use in a routine fashion, how to draft terms which will differ from contract to contract, and how to "construct" an electronic vehicle or web site which allows for both. How precisely this is done will differ from business to business, depending obviously on the resources available but also on whether the company's transactions are more frequently routine or one-off. The speed and savings which the new technologies promise are more likely to be realised if care and attention are invested at the early stages of designing websites, software, and business processes which impact on the conclusion of electronic

contracts.

The following are a number of terms which one would normally expect to find in most well-drafted electronic contracts, whether on a web site or through a series of electronic messages:

the identity (legal name) and applicable geographic location of the business,

relevant registration or identification numbers, etc.

contact details for a designated representative of the business (including mail, e-mail, telephone and fax details),

similar contact details for any agents used,

language or languages of the agreement and of associated information, and language or languages in which communications regarding the contract are to be exchanged,

the allocation of costs of communication and whether they are calculated at other than the basic rate,

the period for which the offer or the price remains valid,

where appropriate, the minimum duration of the contract in the case of contracts for the supply of products or services to be performed permanently or recurrently,

description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or services to be provided,

the price of the goods or services including all taxes,

delivery terms and costs, where appropriate, for example a selected Incoterm,

the terms of payment, terms relating to conditions, warranties, guarantees, after-sales service, remedies and redress, e.g. return and/or refund policy, options for withdrawal or termination, return, exchange, damages etc.

terms relating to restrictions, limitations or conditions of purchase, geographic or time restrictions, product or service use instructions including safety and health-care warnings, terms relating to the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transmitted between the parties and liability for its breach, technical/security parameters of communications/exchanges, ways to verify representations concerning membership in any associations or self-regulatory schemes, applicable law and jurisdic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ne of the practical differences between contracting through paper and e-contracting is that in a very real way the electronic medium is the message: for example, a web site is as much a marketing tool as it is a means of contracting. The design and lay-out of the above information therefore need to be professional, clear and easy to use. In designing your web site or other mechanisms for electronic contracting it is useful to bear the following in mind:

[a] make sure that information is easy to find: users of a web site or an e-service should be able easily to find and navigate through significant legal terms without having to travel through the whole contract on every search;

[b] make sure that related terms are gathered together in one electronic place and logically structured: it will be noted, for example, that the terms described above have been clustered into separate and cognate families, making it easier for the user to gain an overall picture of hi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different areas of the contract;

[c] make sure that the web site contains early on an easy-to-use flow for the contract and the contract process: the entry page of the website, or a page as close as possible to the entry page, should contain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contract with easy hyper-links to particular areas for ready reference to specific terms.

B.7 Technical Specifications

In designing a web site or other mechanisms for electronic contracting, it is useful to bear in mind a number of technical issues relating to document format, e.g. file size, stability, integrity and replicability.

[a] File size is important in both transmission and archive. If the file format adds significant memory overhead then consideration needs to be given to the impact which this may have on both transmission (broadband) and archiving. This may be true where picture files are used to capture images of documents.

[b] Document images provide stability in terms of document format and appearance. Other document types (word-processing files) may change or alter formats as a result of different versions of the programme being used to create and retrieve or view the document. Issues of backwards compatibility are most important here as well as whether the program and media format continue to be supported.

[c] It is possible that for legal, fiscal or commercial reasons, you may need to preserve e-contracts for a certain period. With

this in mind,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the stability of the format, how to prove the integrity of the document and its formatting and how to assure the ability to replicate both. New XML style/format sheets and other technological advances may help address these issues, but again parties must consider their applicability to any particular situation and the ability of the parties to utilize and support the technology. Because of the greater technology complexity, a number of third parties are developing hosting and storage/archiving solutions to assist businesses with these requirements. Imaging of documents and digital signing of documents or document images are also being used.

B.8 Protecting Confidentiality

The old adage that information is power acquires particular significance in the world of e-contracting. Information is frequently commercially sensitive or legally restricted, for exampl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requiring confidential treatment, yet its electronic habitat is freely available and possibly more than usually vulnerable. In designing an application for e-contracting, such as a web site, it is consequently important to consider carefully issues of confidentiality.

First, the following decisions need to be made at a senior level at design stage:

- [a] what information is to be posted on the web site,
- [b] what information is to be required of counterparties,

[c] whether that information is to be freely accessible on the web site or whether it will appear only on restricted access and, if so, how access will be restricted and monitored.

These decisions need to be applied not only to information transmitted and received at the moment the contract is first made, but also to information transmitted and received during the life of the contract.

Secondly, it is important to alert officers and employees within the company of the potential liability which the company, its partners and customers might face if information is disseminated in an unauthorised way. Moreover, that liability may in certain circumstances be governed (and quantified) not by the law of the contract but by the law of another country. It is prudent, therefore, for companies to have in place clear internal procedures restricting the sharing of information posted and acquired through an e-contracting application.

Thirdly, the contract itself needs to deal with matters of confidentiality and liability for its breach. There is no one-size-fits-all clause that appropriately protects information: confidentiality clauses must be tailored to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the information as well as to the legal framework in which the parties are operating. However, in drafting an appropriate confidentiality clause, it may be helpful to consider the following matters:

[a] What type of information is covered by the contract: sensitive, confidential, personally identifiable, mission critical?

[b] What security requirements would you require for this information and does the contract create equivalent obligations

to protect the information?

[c] Did the information originate from a third party and, if so, are there obligations owed towards that third party?

[d] To the extent that intellectual property or trade secret rights are involved, are there appropriate protections in place?

[e] Are there specific legal requirements relating to this information or any restrictions on its transfer in either party's jurisdiction; if so, have you met those requirements?

B.9 Technical Breakdown and Risk Management

Business has long managed risk, through a judicious blend of assessing it, mitigating it where possible, hedging against it through indemnity or insurance, and making determinations of acceptable risk – a sophisticated process of risk management which far pre-dates electronic technology. While it is important therefore to recognise the risks particular to the new technologies, it is important not to exaggerate the dangers or to think that they cannot be handled through the same process of risk management which has long allowed commerce to thrive on earlier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general, decisions relating to risk and its mitigation should involve senior management and ICT-related risks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overall corporate risk assessment in order to ensure that appropriate priority is given to them. In assessing such risks, it would be helpful to give detailed attention to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risks to the company arising out of the use of a

particular type of technology? Thus, for example, what would happen if certain information was lost, damaged, or revealed, both in terms of liability to counterparties and in terms of adverse publicity?

Which of such risks may be acceptable?

Which of such risks may be unavoidable?

What steps can be taken to minimize risk through technical, procedural or contractual means, or through insurance cover?

Thought should be given to relatively simple steps which might be taken: for example, can transmission failure be guarded against simply through requiring confirmation of receipt?

What are the costs involved in such steps?

Is the potential for certain risks sufficiently small, or is the harm that could result so attenuated, that the risks do not justify the costs of countermeasures?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should be sought and given by senior management, with such assistance as they require from staff well-equipped and trained not only in electronic technology but also in the assessment of risk. Moreover, such decisions and the reasons for them need to be recorded and periodically reviewed.

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Article e1 : Scope of the 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a. The 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supplements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UCP") in order to accommodate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paper documents.

b. The eUCP shall apply as a supplement to the UCP where the Credit indicates that it is subject to eUCP.

c. This version is Version 1.0. A Credit must indicate the applicable version of the eUCP. If it does not do so, it is subject to the version in effect on the date the Credit is issued, or, if made subject to eUCP by an amendment, on the date of that amendment.

Article e2: Relationship of the eUCP to the UCP

a. A Credit subject to the eUCP ("eUCP Credit") is also subject to the UCP without express incorporation of the UCP.

b. Where the eUCP applies, its provisions shall prevail to the extent that it would produce a result different from the application of the UCP

c. If a eUCP Credit allows the Beneficiary to choose between presentation of paper documents or electronic records and it chooses to present only paper documents, the UCP alone shall apply to that presentation. If only paper documents are permitted under a eUCP Credit the UCP alone shall apply.

Article e3: Definitions

a. Where the following terms are used in the UCP,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e UCP to an electronic record presented under an eUCP Credit, the term:

i. "appears on its face" and the like shall apply to examination of the data content of an electronic record.

ii. "**document**" shall include an electronic record.

iii. "**place for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means an electronic address.

iv. "**sign**" and the like shall include an electronic signature.

v. "**superimposed**", "**notation**" or "**stamped**" means data content whose supplementary character is apparent in an electronic record.

b. The following terms used in the eUCP shall have the following meanings:

i. **"electronic record"** means:

a. data created, generated, sent, communicated,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means;

b. that is capable of being authenticated as to the apparent identity of a sender and the apparent source of the data contained in it, and as to whether it has remained complete and unaltered; and

c. is able to be examined for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ii. **"electronic signature"** means a data process attached to or logically associated with an electronic record and executed or adopted by a person in order to identify that person and to indicate that person's authentication of the electronic record.

iii. **"format"** means the data organisation in which the electronic record is expressed or to which it refers.

iv. **"paper document"** means a document in a traditional paper form.

v. **"received"** means the time when an electronic record enters the information system of the recipient designated in the eUCP Credit in a form capable of being accepted by that system. Any acknowledgement of receipt does not imply acceptance or refusal of the electronic record under the eUCP Credit.

Article e4: Format

The eUCP Credit must specify the formats in which electronic records are to be presented. If the format of the electronic record is not so specified, it may be presented in any format.

Article e5: Presentation

a.

i. A eUCP Credit allowing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must state a place for presentation of the electronic records.

ii. A eUCP Credit allowing presentation of both electronic records and paper documents must state places for presentation of the electronic records and of the paper documents.

b. Electronic records may be presented separately and need not be presented at the same time.

c. If a eUCP Credit allows for presentation of one or more electronic records, the Beneficiary must provide a notice to the bank to which presentation is made signifying when the presentation is complete. Presentation is deemed not to have been made if the Beneficiary's notice is not received.

d.

i. Each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must identify the eUCP Credit under which the electronic records are presented. In a presentation consisting of both electronic records and paper

documents the presentation of paper documents must also identify the eUCP Credit under which they are presented.

ii. A presentation not so identified may be treated as not received.

e. If the bank to which presentation is to be made is open but is unable to receive an electronic record on the stipulated expiry date and/or the last day of the period of time after the date of shipment for presentation, as the case may be, the bank will be deemed to be closed and the date for presentation and/or the expiry date shall be extended to the first following banking day on which such bank is able to receive an electronic record.

f. An electronic record that cannot be authenticated is deemed not to have been presented.

Article e6: Examination

a. If presentation of an electronic record contains a hyperlink to an external system or a presentation indicates that the electronic record may be examined by reference to an external system, the bank examining the electronic record should examine it in the manner indicated. The failure of the indicated system to provide access to the required electronic record shall constitute a discrepancy.

b. The forwarding of electronic records by a nominated bank pursuant to its nomination signifies that it has checked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electronic records.

c. The inability of the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if any, to examine an electronic record in a format required by the eUCP Credit or, if no format is required, to examine it in the format presented is not a basis for refusal.

Article e7: Notice of Refusal

a.

i. The time period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commences on the banking day following the banking day on which the Beneficiary's notice that the presentation is complete is received.

ii. If the bank to which presentation is to be made is open but is unable to receive the Beneficiary's notice that presentation is complete, the time period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commences on the first following banking day on which such bank is able to receive the Beneficiary's notice.

b. Where presentation is made by electronic records only to the Issuing Bank or the Confirming Bank, if any, the reasonable time for examination of electronic records, and if applicable, giving notice of refusal of electronic records, shall be a reasonable time not to exceed five banking days following the banking day when

the Beneficiary's notice that the presentation is complete is received.

c. If an Issuing Bank, the Confirming Bank, if any, or a Nominated Bank acting on their behalf, provides a notice of refusal of a presentation which includes electronic records and does not receive instructions from the party to which notice of refusal is given within 30 calendar days from the date the notice of refusal is given for the disposition of the electronic records, the Bank may dispose of the electronic records without any responsibility.

Article e8: Originals and Copies

Any requirement of the UCP or eUCP Credit for presentation of one or more originals or copies of an electronic record is satisfied by the presentation of one electronic record.

Article e9: Date of Issuance

Unless an electronic record contains a specific date of issuance, the date on which it appears to have been sent by the issuer is deemed to be the date of issuance.

Article e10: Transport

If an electronic record evidencing transport does not indicate a date of shipment, the date of issuance of the electronic record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However, if the electronic record bears an addendum or notation that does not evidence the date of shipment or dispatch, the date of the addendum or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or dispatch. An addendum or notation showing additional data content need not be separately signed or otherwise authenticated.

Article e11: Corruption of an Electronic Record

a. If there is data corruption of an electronic record that has been received by the Issuing Bank or a Nominated Bank, the bank may inform the presenter and request that the electronic record be re-presented.

b. If the bank requests that an electronic record be re-presented:

i. the time for examination is suspended and resumes when the presenter re-presents the same electronic record in readable form; and

ii. if the Nominated Bank is not the Issuing Bank, it must provide the Issuing Bank and any Confirming Bank with notice of the request for re-presentation and inform it of the suspension; but

iii. if the same electronic record is not re-presented within thirty (30) calendar days, the bank may treat the electronic record as not presented.

Article e12: Additional Disclaimer of Liability for eUCP Presentations

By checking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an electronic record, banks assume no liability for the identity of the sender, source of the information, or its complete and unaltered character other than that which is apparent in the electronic record received by the use of a commercially acceptable data process for the receipt and identification of electronic records.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보충 (eUCP)

제1조.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보충판의 범위

a.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 보충판(eUCP)는 전자기록 단독 또는 서면서류와의 결합에 의한 제시를 수용하기 위하여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신용장 통일규칙"(1993년판 국제상업회의소 발간번호 500, UCP)를 보충한다.

b. 신용장이 eUCP의 준수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 eUCP는 UCP의 보충판으로 적용된다.

c. 이번 버전은 1.0버전이다. 신용장은 eUCP의 적용가능한 버전을 표시해야 한다. 만일 버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용장이 발행된 날짜에 유효한 버전의 적용을 받거나, 조건변경에 의해 eUCP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조건변경일자에 유효한 버전이 적용된다.

제2조. eUCP와 UCP의 관계

a. eUCP를 준수하는 신용장(eUCP신용장)은 UCP적용의 표시가 없어도 UCP를 준수한다.

b. eUCP를 적용하는 경우, UCP적용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와도 eUCP조항이 적용된다..

c. 만일 eUCP신용장이 수익자에게 전자기록과 서면서류의 제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자가 서면서류의 제시만을 선택한 경우 그 제시에 대해서는 UCP만 적용된다. eUCP신용장이 서면서류만을 허용한 경우 UCP만 적용된다..

제3조. 정의

a. eUCP신용장 하에서 제시된 전자기록에 UCP를 적용시킬 목적으로 다음의 조건들이 UCP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용어는:

i. "문면에 나타난" 및 그와 유사한 용어는 전자기록의 데이터 내용 심사에 적용한다.

ii. "서류"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iii. 전자기록의 "제시장소"는 전자주소를 의미한다.

iv. "서명" 및 유사조건은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v. "첨부", "표기", "스탬프"는 전자기록내에 보충적 성격이 명백한 데이터 내용을 의미한다.

b. eUCP에 사용되는 다음의 조건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i. "전자기록"은:

a. 전자수단에 의해 데이터가 생성, 발생, 송신, 전달, 수신 또는 저장되고

b. 송신자의 신분, 전자기록에 포함된 데이터의 분명한 출처, 또한 완전하고 변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확인하는 인증이 가능해야 하고

c.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함을 심사 받을 수 있어야 한다.

ii. "전자서명"은 전자기록을 인증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한 사람이 실행하거나 채택하여 전자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기록과 논리적으로 연관된 데이터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iii. "형식"은 전자기록을 표현하거나 참고하는 데이터 구조를 의미한다.

iv. "서면서류"는 전통적인 서면형태의 서류를 의미한다.

v. "수신된"은 전자적 기록이 eUCP 신용장에 지정된 수신인 정보시스템에 의해 접수가 가능한 형태로 입력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어떠한 수신확인도 eUCP 신용장 하의 전자기록의 인수 혹은 거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4조. 형식

eUCP 신용장은 제시되어야 할 전자적 기록의 형식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자기록의 형식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전자기록은 어떤 형식으로든 제시되어질 수 있다.

제5조. 제시

a.

i. 전자기록의 제시를 허용하는 eUCP 신용장은 전자기록의 제시장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ii. 전자기록과 서면서류 양자의 제시를 허용하는 eUCP 신용장은 서면서류와 전자기록의 제시장소를 각각 명기해야 한다.

b. 전자기록은 분리되어 제시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제시될 필요는 없다.

c. eUCP신용장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전자기록의 제시를 허용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시가 완료된 때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수익자의 통지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시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d.

i. 모든 전자기록의 제시는 전자기록이 eUCP신용장 하에 제시되었음을 밝혀야 한다. 전자기록과 서면서류 양자로 구성된 제시에 있어 그 서면서류의 제시 근거가 되는 eUCP신용장을 역시 밝혀야 한다.

ii. 그렇게 밝히지 않은 제시는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e. 제시가 이루어질 은행이 개점을 하였으나 지정된 유효기일 및 /또는 선적일 이후 제시기간 최종일에 전자기록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은행은 폐점한 것으로 간주되고, 제시일자 및/또는 유효기일은 그 은행이 전자기록을 접수 할 수 있는 익영업일까지 연장된다.

f. 인증받을 수 없는 전자기록은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심사

a. 전자기록의 제시가 외부 시스템과의 하이퍼링크를 포함하고 있거나 전자적 기록이 외부시스템에 대한 참조에 의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은행의 전자기록 심사는 지정된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심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시스템에서 요청된 전자기록의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하자를 구성한다.

b. 지정에 근거하여 지정은행이 전자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지정은행이 전자기록의 인증이 확인되었음을 의미한다.

c.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은행이 있을 경우)의, eUCP신용장에 의해 요구된 형식의 전자기록 심사, 형식이 요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형식대로의 전자기록 심사불능은 거절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제7조. 거절통지

a.

i. 서류의 심사기간은 서류의 제시가 완료되었다는 수익자의 통지를 접수한 날의 익영업일로부터 기산한다.

ii. 만일 제시가 이루어질 은행이 개점하였으나 제시가 완료되었다는 수익자의 통지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 서류심사기간은 그 은행이 그 수익자의 통지를 접수할 수 있는 날의 익영업일로부터 기산한다.

b.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은행이 있을 경우)에 전자기록만으로 제시가 이루어진 경우 전자기록의 심사, 적용 가능하다면, 거절통지를 위한 합리적인 시간은 수익자의 제시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 다음의 5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c.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또는 그들의 임무를 대행하는 지정은행이 전자기록을 포함한 제시에 대한 거절통지를 하고 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거절통지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전자기록의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지 못하면 은행은 책임없이 그 전자기록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원본 및 사본

한통 또는 수통의 원본 또는 사본의 전자기록 제시를 위한 UCP나 eUCP 신용장의 어떠한 요구도 한통의 전자기록 제시로 만족된다.

제9조. 발행일

전자기록이 특정 발행일을 포함하지 않는 한 발행자로부터 송부되어진 날짜가 발행일로 간주된다.

제10조. 운송

운송을 증거하는 전자기록에 선적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전자기록의 발행일이 선적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전자기록이 선적일 또는 발행일을 증명하지 않는 부기나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부기일이나 표시일이 선적일 혹은 발송일로 간주된다. 부가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부기나 표시는 별도의 서명이나 혹은 달리 인증되어질 필요가 없다.

제11조. 전자기록의 오염

a.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이 접수한 전자기록의 데이터 오염이 있는 경우 은행은 제시자에게 통지하고 전자기록의 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b. 은행이 전자기록의 재제시를 요구한 경우

i. 심사기간은 일시 정지되며 제시인이 판독가능한 형태로 동일한 전자기록을 재제시된 때에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ii.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이 아닌경우 은행은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에 재 제시 및 심사연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iii. 만일 동일한 전자기록이 30일내에 재제시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전자기록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제12조. EUCP제시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면책

전자기록의 명백한 인증을 점검함으로써, 은행은 전자기록의 수취와 확인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수용된 데이터 프로세스의 사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송신자의 신원, 정보의 출처, 혹은 완전하고 변조되지 않았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Bearing in mind the broad objectives in the resolutions adopted by the sixth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Considering that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mutual benefit is an important element in promoting friendly relations among States,

Being of the opinion that the adoption of uniform rules which gover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t social, economic and legal systems would contribute to the removal of legal barriers in international trade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Sphere of application and general provisions

CHAPTER 1. SPHERE OF APPLICATION

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a)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or

(b)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2) The fact that the parties have their places of business in different States is to be disregarded whenever this fact does not appear either from the contract or from any dealings between, or from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3) Neither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nor the civil or commercial character of the parties or of the contract i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rticle 2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sales:

- (a) of goods bought for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use, unless the seller,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neither knew nor ought to have known that the goods were bought for any such use;
- (b) by auction;
- (c) on execution or otherwise by authority of law;
- (d) of stocks, shares, investment securities, negotiable instruments or money;
- (e) of ships, vessels, hovercraft or aircraft;
- (f) of electricity.

Article 3

(1) Contracts for the supply of goods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are to be considered sales unless the party who orders the goods undertakes to supply a substantial part of the materials necessary for such manufacture or production.

(2)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contracts in which the preponderant part of the obligations of the party who furnishes the goods consists in the supply of labour or other services.

Article 4

This Convention governs only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of sale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the buyer arising from such a contract. In particular,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is Convention, it is not concerned with:

(a)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or of any of its provisions or of any usage;

(b) the effect which the contract may have on the property in the goods sold.

Article 5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the liability of the seller for death or personal injury caused by the goods to any person.

Article 6

The parties ma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subject to article 12, derogate from or vary the effect of any of its provisions.

CHAPTER II. GENERAL PROVISIONS

Article 7

(1)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2)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or,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8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his intent where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what that intent was.

(2) If the preceding paragraph is not applicable,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understanding that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as the other party would have had in the same circumstances.

(3) In determining the intent of a party or the understanding 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had, due consideration is to be given to all relevant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the negotiations, any practices which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usages and any subsequent conduct of the parties.

Article 9

(1) The parties are bound by any usage to which they have agreed and by any practices which they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2) The parties are considered, unless otherwise agreed, to have impliedly made applicable to their contract or its formation a usage of which the parties knew or ought to have known and which in international trade is widely known to, and regularly observed by, parties to contracts of the type involved in the particular trade concerned.

Article 10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if a party has more than one place of business, the place of business is that which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to the contract and its performance,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known to or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b) if a party does not have a place of business, reference is to be made to his habitual residence.

Article 11

A contract of sale need not be concluded in or evidenced by writing and is not subject to any other requirement as to form. It may be proved by any means, including witnesses.

Article 12

Any provision of article 11, article 29 or Part II of this Convention that allows a contract of sale or its modification or termination by agreement or any offer, acceptance or other indication of intention to be made in any form other than in writing does not apply where any party has his place of business in a Contracting State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96 of this Convention. The parties may not derogate from or vary the effect of this article.

Article 13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writing" includes telegram and telex.

Part II. Formation of the contract

Article 14

(1) A proposal for concluding a contract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s constitutes an offer if it is sufficiently definite and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e offeror to be bound in case of acceptance. A proposal is sufficiently definite if it indicates the goods and expressly or implicitly fixes or makes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quantity and the price.

(2) A proposal other than one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s is to be considered merely as an invitation to make offers, unless the contrary is clearly indicated by the person making the proposal.

Article 15

(1) An offer becomes effective when it reaches the offeree.

(2) An offer, even if it is irrevocable, may be withdrawn if the withdrawal reaches the offeree before or at the same time as the offer.

Article 16

(1) Until a contract is concluded an offer may be revoked if the revocation reaches the offeree before he has dispatched an acceptance.

(2) However, an offer cannot be revoked:

- (a) if it indicates, whether by stating a fixed time for acceptance or otherwise, that it is irrevocable; or
- (b) if it was reasonable for the offeree to rely on the offer as being irrevocable and the offeree has acted in reliance on the offer.

Article 17

An offer, even if it is irrevocable, is terminated when a rejection reaches the offeror.

Article 18

(1) A statement made by or other conduct of the offeree indicating assent to an offer is an acceptance. Silence or inactivity does not in itself amount to acceptance.

(2) An acceptance of an offer becomes effective at the moment the indication of assent reaches the offeror. An acceptance is not effective if the indication of assent does not reach the offeror within the time he has fixed or, if no time is fixed, within a reasonable time, due account being taken of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including the rapidity of the means of communication employed by the offeror. An oral offer must be accepted immediately unless the circumstances indicate otherwise.

(3) However, if, by virtue of the offer or as a result of practices

which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or of usage, the offeree may indicate assent by performing an act, such as one relating to the dispatch of the goods or payment of the price, without notice to the offeror, the acceptance is effective at the moment the act is performed, provided that the act is performed within the period of time laid down in the preceding paragraph.

Article 19

(1)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s, limit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is a rejection of the offer and constitutes a counteroffer.

(2) However,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which do not materially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constitutes an acceptance, unless the offeror, without undue delay, objects orally to the discrepancy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If he does not so object, the terms of the contract are the terms of the offer with the modifications contained in the acceptance.

(3)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relating, among other things, to the price, payment, quality and quantity of the goods, place and time of delivery, extent of one party's liability to the other 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e considered to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materially.

Article 20

(1) A period of time of acceptance fixed by the offeror in a telegram or a letter begins to run from the moment the telegram is handed in for dispatch or from the date shown on the letter or, if no such date is shown, from the date shown on the envelope. A period of time for acceptance fixed by the offeror by telephone, telex or other means of instantaneous communication, begins to run from the moment that the offer reaches the offeree.

(2) Official holidays or non-business days occurring during the period for acceptance are included in calculating the period. However, if a notice of acceptance cannot be delivered at the address of the offeror on the last day of the period because that day falls on an official holiday or a non-business day at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offeror, the period is extended until the first business day which follows.

Article 21

(1) A late acceptance is nevertheless effective as an acceptance if without delay the offeror orally so informs the offeree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2) If a letter or other writing containing a late acceptance shows that it has been sent in such circumstances that if its transmission

had been normal it would have reached the offeror in due time, the late acceptance is effective as an acceptance unless, without delay, the offeror orally informs the offeree that he considers his offer as having lapsed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Article 22

An acceptance may be withdrawn if the withdrawal reaches the offeror before or at the same time as the acceptance would have become effective.

Article 23

A contract is concluded at the moment when an acceptance of an offer becomes effectiv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24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of the Convention, an offer, declaration of acceptance or any other indication of intention "reaches" the addressee when it is made orally to him or delivered by any other means to him personally, to his place of business or mailing address or, if he does not have a place of business or mailing address, to his habitual residence.

Part III. Sale of goods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25

A breach of contract committed by one of the parties is fundamental if it results in such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as substantially to deprive him of what he is entitled to expect under the contract, unless the party in breach did not foresee and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in the same circumstances would not have foreseen such a result.

Article 26

A declaration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is effective only if made by notice to the other party.

Article 27

Unles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is Part of the Convention, if any notice, request or other communication is given

or made by a party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and by mean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 delay or error in the transmission of the communication or its failure to arrive does not deprive that party of the right to rely on the communication.

Article 28

If,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ne party is entitled to require performance of any obligation by the other party, a court is not bound to enter a judgement for specific performance unless the court would do so under its own law in respect of similar contracts of sale not governed by this Convention.

Article 29

(1) A contract may be modified or terminated by the mere agreement of the parties.

(2) A contract in writing which contains a provision requiring any modification or termination by agreement to be in writing may not be otherwise modified or terminated by agreement. However, a party may be precluded by his conduct from asserting such a provision to the extent that the other party has relied on that conduct.

CHAPTER II. OBLIGATIONS OF THE SELLER

Article 30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hand over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m and transfer the property in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Section I. Delivery of the goods and handing over of documents

Article 31

If the seller is not bound to deliver the goods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his obligation to deliver consists:

(a) if the contract of sale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in handing the goods over to the first carrier for transmission to the buyer;

(b) if, in cases not within the preceding subparagraph, the contract relates to specific goods, or unidentified goods to be drawn from a specific stock or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an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parties knew that the goods

were at, or were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at, a particular place--in placing the goods at the buyer's disposal at that place;
(c) in other cases--in placing the goods at the buyer's disposal at the place where the seller had his place of busines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rticle 32

(1) If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hands the goods over to a carrier and if the goods are not clearly identified to the contract by markings on the goods, by shipping documents or otherwise,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notice of the consignment specifying the goods.

(2) If the seller is bound to arrange for carriage of the goods, he must make such contracts as are necessary for carriage to the place fixed by means of transportation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nd according to the usual terms for such transportation.

(3) If the seller is not bound to effect insurance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the goods, he must, at the buyer's request, provide him with all available information necessary to enable him to effect such insurance.

Article 33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a) if a date is fixed by 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on that date;

(b) if a period of time is fixed by 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at any time within that period unless circumstances indicate that the buyer is to choose a date; or

(c) in any other case,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rticle 34

If the seller is bound to h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he must hand them over at the time and place and in the form required by the contract. If the seller has handed over documents before that time, he may, up to that time, cure any lack of conformity in the documents, if the exercise of this right does not cause the buyer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reasonable expense. However, the buyer retains any right to claim damages a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Section II. Conformity of the goods and third party claims

Article 35

(1)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2)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a) are fit for the purposes for which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b) ar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expressly or impliedly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ement;

(c) possess the qualities of goods which the seller has held out to the buyer as a sample or model;

(d)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usual for such goods or, where there is no such manner, in a manner adequate to preserve and protect the goods.

(3) The seller is not liable under subparagraphs (a) to (d) of the preceding paragraph for any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buy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such lack of conformity.

Article 36

(1) The seller is liabl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for any lack of conformity which exists at the time when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even though the lack of conformity becomes apparent only after that time.

(2) The seller is also liable for any lack of conformity which occurs after the time indicat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nd which is due to a breach of any of his obligations, including a breach of any guarantee that for a period of time the goods will remain fit for their ordinary purpose or for some particular purpose or will retain specified qualities or characteristics.

Article 37

If the seller has delivered goods before the date for delivery, he may, up to that date, deliver any missing part or make up any deficiency in the quantity of the goods delivered, or deliver goods in replacement of any non-conforming goods delivered or remedy any lack of conformity in the goods delivered, provided that the exercise of this right does not cause the buyer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reasonable expense. However, the buyer retains any right to claim damages a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Article 38

(1) The buyer must examine the goods, or cause them to be

examined, within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2) If the contract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examination may be deferred until after the goods have arrived at their destination.

(3) If the goods are redirected in transit or redispached by the buyer without a reasonable opportunity for examination by him an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seller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the possibility of such redirection or redispach, examination may be deferred until after the goods have arrived at the new destination.

Article 39

(1)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a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he does not give notice to the seller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lack of conformi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discovered it or ought to have discovered it.

(2) In any event,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a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he does not give the seller notice thereof at the latest within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goods were actually handed over to the buyer, unless this time-limit is inconsistent with a contractual period of guarantee.

Article 40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 provisions of articles 38 and 39 if the lack of conformity relates to facts of which he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and which he did not disclose to the buyer.

Article 41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free from any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unless the buyer agreed to take the goods subject to that right or claim. However, if such right or claim is based on industrial property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the seller's obligation is governed by article 42.

Article 42

(1)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free from any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based on industrial property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of which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sell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provided that the right or claim is based on industrial property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 under the law of the State where the goods will be resold or otherwise used, if it was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at the goods would be resold

or otherwise used in that State; or

(b) in any other case, under the law of the State where the buyer has his place of business.

(2)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does not extend to cases where:

(a)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buy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the right or claim; or

(b) the right or claim results from the seller's compliance with technical drawings, designs, formulae or other such specifications furnished by the buyer.

Article 43

(1)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41 or article 42 if he does not give notice to the seller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right or claim of the third par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become aware or ought to have become aware of the right or claim.

(2)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if he knew of the right or claim of the third party and the nature of it.

Article 4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39 and

paragraph (1) of article 43, the buyer may reduce the pr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0 or claim damages, except for loss of profit, if he has a reasonable excuse for his failure to give the required notice.

Section III.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Article 45

(1) If the seller fails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the buyer may:

- (a) exercise the rights provided in articles 46 to 52;
- (b) claim damages as provided in articles 74 to 77.

(2) The buyer is not deprived of any right he may have to claim damages by exercising his right to other remedies.

(3) No period of grace may be granted to the seller by a court or arbitral tribunal when the buyer resorts to a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Article 46

(1) The buyer may require performance by the seller of his obligations unless the buyer has resorted to a remedy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is requirement.

(2) If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the buyer may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only if the lack of conformity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nd a request for substitute goods is made either in conjunction with notice given under article 39 or within a reasonable time thereafter.

(3) If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the buyer may require the seller to remedy the lack of conformity by repair, unless this is unreasonable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A request for repair must be made either in conjunction with notice given under article 39 or within a reasonable time thereafter.

Article 47

(1) The buyer may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of reasonable length for performance by the seller of his obligations.

(2) Unless the buyer has received notice from the seller that he will not perform within the period so fixed, the buyer may not, during that period, resort to any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However, the buyer is not deprived thereby of any right he may have to claim damages for delay in performance.

Article 48

(1) Subject to article 49, the seller may, even after the date for

delivery, remedy at his own expense any failure to perform his obligations, if he can do so without unreasonable delay and without causing the buyer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certainty of reimbursement by the seller of expenses advanced by the buyer. However, the buyer retains any right to claim damages a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2) If the seller requests the buyer to make known whether he will accept performance and the buyer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est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seller may perform within the time indicated in his request. The buyer may not, during that period of time, resort to any remedy which is inconsistent with performance by the seller.

(3) A notice by the seller that he will perform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is assumed to include a reques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that the buyer make known his decision.

(4) A request or notice by the seller under paragraph (2) or (3) of this article is not effective unless received by the buyer.

Article 49

(1) The buy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a) if the failure by the sell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b) in case of non-delivery, if the seller does not deliver the

goods within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buy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47 or declares that he will not deliver within the period so fixed.

(2) However, in cases where the seller has delivered the goods,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unless he does so:

(a) in respect of late deliver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become aware that delivery has been made;

(b) in respect of any breach other than late delivery, within a reasonable time:

(i) after he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the breach;

(ii) after the expiration of any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buy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47, or after the seller has declared that he will not perform his obligations within such an additional period; or

(iii) after the expiration of any additional period of time indicated by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48, or after the buyer has declared that he will not accept performances.

Article 50

If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and whether or not the price has already been paid, the buyer may reduce the price in the same proportion as the value that the goods actually delivered had at the time of the delivery bears to the value that conforming

goods would have had at that time. However, if the seller remedies any failure to perform hi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or article 48 or if the buyer refuses to accept performance by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those articles, the buyer may not reduce the price.

Article 51

(1) If the seller delivers only a part of the goods or if only a part of the goods delivered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rticles 46 to 50 apply in respect of the part which is missing or which does not conform.

(2) The buy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n its entirety only if the failure to make delivery completely or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the contract.

Article 52

(1) If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before the date fixed, the buyer may take delivery or refuse to take delivery.

(2) If the seller delivers a quantity of goods greater than that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the buyer may take delivery or refuse to take delivery of the excess quantity. If the buyer takes delivery of all or part of the excess quantity, he must pay for it at the contract rate.

CHAPTER III. OBLIGATIONS OF THE BUYER

Article 53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for the goods and take delivery of them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Section I. Payment of the price

Article 54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includes taking such steps and complying with such formalities as may be required under the contract or any laws and regulations to enable payment to be made.

Article 55

Where a contract has been validly concluded but does not expressly or implicitly fix or make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price, the parties are considered, in the absence of any indication

to the contrary, to have impliedly made reference to the price generally charge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for such goods sold under comparable circumstances in the trade concerned.

Article 56

If the price is fixed according to the weight of the goods, in case of doubt it is to be determined by the net weight.

Article 57

(1) If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he must pay it to the seller:

(a) at the seller's place of business; or

(b) if the payment is to be made against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or of documents, at the place where the handing over takes place.

(2) The seller must bear any increase in the expenses incidental to payment which is caused by a change in his place of business subsequent to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rticle 58

(1) If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at any other

specific time he must pay it when the seller places either the goods or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at the buyer's disposal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The seller may make such payment a condition for handing over the goods or documents.

(2) If the contract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the seller may dispatch the goods on terms whereby the goods, or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will not be handed over to the buyer except against payment of the price.

(3)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until he has had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goods, unless the procedures for delivery or payment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e inconsistent with his having such an opportunity.

Article 59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n the date fixed by 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without the need for any request or compliance with any formality on the part of the seller.

Section II. Taking delivery

Article 60

The buyer's obligation to take delivery consists:

- (a) in doing all the acts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of him in order to enable the seller to make delivery; and
- (b) in taking over the goods.

Section III.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Article 61

(1) If the buyer fails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the seller may:

- (a) exercise the rights provided in articles 62 to 65;
- (b) claim damages as provided in articles 74 to 77.

(2) The seller is not deprived of any right he may have to claim damages by exercising his right to other remedies.

(3) No period of grace may be granted to the buyer by a court or arbitral tribunal when the seller resorts to a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Article 62

The seller may require the buyer to pay the price, take delivery

or perform his other obligations, unless the seller has resorted to a remedy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is requirement.

Article 63

(1) The seller may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of reasonable length for performance by the buyer of his obligations.

(2) Unless the seller has received notice from the buyer that he will not perform within the period so fixed, the seller may not, during that period, resort to any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However, the seller is not deprived thereby of any right he may have to claim damages for delay in performance.

Article 64

(1) The sell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a) if the failure by the buy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b) if the buyer does not, within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63, perform hi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or take delivery of the goods, or if he declares that he will not do so within the period so fixed;

(2) However, in cases where the buyer has paid the price, the

seller loses the right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unless he does so:

(a) in respect of late performance by the buyer, before the seller has become aware that performance has been rendered; or

(b) in respect of any breach other than late performance by the buyer, within a reasonable time:

(i) after the seller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the breach; or

(ii) after the expiration of any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63, or after the buyer has declared that he will not perform his obligations within such an additional period.

Article 65

(1) If under the contract the buyer is to specify the form, measurement or other features of the goods and he fails to make such specification either on the date agreed upon or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receipt of a request from the seller, the seller may,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he may have, make the specification himself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buyer that may be known to him.

(2) If the seller makes the specification himself, he must inform the buyer of the details thereof and must fix a reasonable time within which the buyer may make a different specification. If, after receipt of such a communication, the buyer fails to do so

within the time so fixed, the specification made by the seller is binding.

CHAPTER IV. PASSING OF RISK

Article 66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fter the risk has passed to the buyer does not discharge him from hi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unless the loss or damage is due to an act or omission of the seller.

Article 67

(1) If the contract of sale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and the seller is not bound to hand them over at a particular place,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when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first carrier for transmission to the buyer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f sale. If the seller is bound to hand the goods over to a carrier at a particular place, the risk does not pass to the buyer until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at that place. The fact that the seller is authorized to retain documents controlling the disposition of the goods does not affect the passage of the

risk.

(2) Nevertheless, the risk does not pass to the buyer until the goods are clearly identified to the contract, whether by markings on the goods, by shipping documents, by notice given to the buyer or otherwise.

Article 68

The risk in respect of goods sold in transit passes to the buyer from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However, if the circumstances so indicate, the risk is assumed by the buyer from the time the goods we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who issued the documents embodying the contract of carriage. Nevertheless, if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f sale the seller knew or ought to have known that the goods had been lost or damaged and did not disclose this to the buyer, the loss or damage is at the risk of the seller.

Article 69

(1) In cases not within articles 67 and 68,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when he takes over the goods or, if he does not do so in due time, from the time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his disposal and he commits a breach of contract by failing to take delivery.

(2) However, if the buyer is bound to take over the goods at a

place other than a place of business of the seller, the risk passes when delivery is due and the buyer is aware of the fact that the goods are placed at his disposal at that place.

(3) If the contract relates to goods not then identified, the goods are considered not to b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until they are clearly identified to the contract.

Article 70

If the seller has committed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rticles 67, 68 and 69 do not impair the remedies available to the buyer on account of the breach.

CHAPTER V. PROVISIONS COMMON TO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OF THE BUYER

Section I. Anticipatory breach and instalment contracts

Article 71

(1) A party may suspend th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if,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as

a result of:

(a) a serious deficiency in his ability to perform or in his creditworthiness; or

(b) his conduct in preparing to perform or in performing the contract.

(2) If the seller has already dispatched the goods before the grounds d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become evident, he may prevent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to the buyer even though the buyer holds a document which entitles him to obtain them. The present paragraph relates only to the rights in the goods as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3) A party suspending performance, whether before or after dispatch of the goods, must immediately give notice of the suspension to the other party and must continue with performance if the other party provides adequate assurance of his performance.

Article 72

(1) If prior to the date for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t is clear that one of the parties will commi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other party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2) If time allows, the party intending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must give reasonable notice to the other party in order to permit him to provide adequate assurance of his performance.

(3) The requirements of the preceding paragraph do not apply if

the other party has declared that he will not perform his obligations.

Article 73

(1) In the case of a contract for delivery of goods by instalments, if the failure of one party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in respect of any instalment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with respect to that instalment, the other party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with respect to that instalment.

(2) If one party's failure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in respect of any instalment gives the other party good grounds to conclude tha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will occur with respect to future installments, he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for the future, provided that he does so within a reasonable time.

(3) A buyer who declares the contract avoided in respect of any delivery may, at the same time, declare it avoided in respect of deliveries already made or of future deliveries if, by reason of their interdependence, those deliveries could not be used for the purpose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Section II. Damages

Article 74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by one party consist of a sum equal to the loss, including loss of profit, suffered by the other party as a consequence of the breach. Such damages may not exceed the loss which the party in breach foresaw or ought to have foreseen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n the light of the facts and matters of which he then knew or ought to have known, as a possible consequence of the breach of contract.

Article 75

If the contract is avoided and if, in a reasonable manner and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avoidance, the buyer has bought goods in replacement or the seller has resold the goods, the party claiming damages may reco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tract price and the price in the substitute transaction as well as any further damages recoverable under article 74.

Article 76

(1) If the contract is avoided and there is a current price for the goods, the party claiming damages may, if he has not made a purchase or resale under article 75, reco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ce fixed by the contract and the current price at the time of avoidance as well as any further damages recoverable under article 74. If, however, the party claiming damages has avoided the contract after taking over the goods, the current price at the time of such taking over shall be applied instead of the current price at the time of avoidance.

(2)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current price is the price prevailing at the place where delivery of the goods should have been made or, if there is no current price at that place, the price at such other place as serves as a reasonable substitute, making due allowance for differences in the cost of transporting the goods.

Article 77

A party who relies on a breach of contract must take such measure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mitigate the loss, including loss of profit, resulting from the breach. If he fails to take such measures, the party in breach may claim a reduction in the damages in the amount by which the loss should have been mitigated.

Section III. Interest

Article 78

If a party fails to pay the price or any other sum that is in arrears, the other party is entitled to interest on it, without prejudice to any claim for damages recoverable under article 74.

Section IV. Exemption

Article 79

(1) A party is not liable for a failure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if he proves that the failure was due to an impediment beyond his control and that he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taken the impediment into account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r to have avoided or overcome it or its consequences.

(2) If the party's failure is due to the failure by a third person whom he has engaged to perform the whole or a part of the contract, that party is exempt from liability only if:

- (a) he is exemp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and
- (b) the person whom he has so engaged would be so exempt if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were applied to him.

(3) The exemption provided by this article has effect for the period during which the impediment exists.

(4) The party who fails to perform must give notice to the other party of the impediment and its effect on his ability to perform. If the notice is not received by the other par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party who fails to perform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the impediment, he is liable for damages resulting from such nonreceipt.

(5) Nothing in this article prevents either party from exercising any right other than to claim damages under this Convention.

Article 80

A party may not rely on a failure of the other party to perform, to the extent that such failure was caused by the first party's act or omission.

Section V. Effects of avoidance

Article 81

(1) Avoidance of the contract releases both parties from their obligations under it, subject to any damages which may be due. Avoidance does not affect any provision of the contract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or any other provision of the contract gover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consequent upon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2) A party who has performed the contract either wholly or in part may claim restitution from the other party of whatever the first party has supplied or paid under the contract. If both parties are bound to make restitution, they must do so concurrently.

Article 82

(1)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or to require the seller to deliver substitute goods if it is impossible for him to make restitution of the goods substantially in the condition in which he received them.

(2) The preceding paragraph does not apply:

(a) if the impossibility of making restitution of the goods or of making restitution of the goods substantially in the condition in which the buyer received them is not due to his act or omission;

(b) the goods or part of the goods have perished or deteriorated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38; or

(c) if the goods or part of the goods have been sold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or have been consumed or transformed by the buyer in the course of normal use before he discovered or ought to have discovered the lack of conformity.

Article 83

A buyer who has lost the right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or to require the seller to deliver substitut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retains all other remedies under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Article 84

(1) If the seller is bound to refund the price, he must also pay interest on it, from the date on which the price was paid.

(2) The buyer must account to the seller for all benefits which he has derived from the goods or part of them:

- (a) if he must make restitution of the goods or part of them; or
- (b) if it is impossible for him to make restitution of all or part of the goods or to make restitution of all or part of the goods substantially in the condition in which he received them, but he has nevertheless declared the contract avoided or required the seller to deliver substitute goods.

Section VI. Preservation of the goods

Article 85

If the buyer is in delay in taking delivery of the goods or, where payment of the price and delivery of the goods are to be made concurrently, if he fails to pay the price, and the seller is either in possession of the goods or otherwise able to control their disposition, the seller must take such step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preserve them. He is entitled to retain them until he has been reimbursed his reasonable expenses by the buyer.

Article 86

(1) If the buyer has received the goods and intends to exercise any right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to reject them, he must take such steps to preserve them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He is entitled to retain them until he has been reimbursed his reasonable expenses by the seller.

(2) If goods dispatched to the buyer have been placed at his disposal at their destination and he exercises the right to reject them, he must take possession of them on behalf of the seller, provided that this can be done without payment of the price and without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reasonable expense.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if the seller or a person authorized to take charge of the goods on his behalf is present at the destination. If the buyer takes possession of the goods under this

paragraph, his rights and obligations are governed by the preceding paragraph.

Article 87

A party who is bound to take steps to preserve the goods may deposit them in a warehouse of a third person at the expense of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the expense incurred is not unreasonable.

Article 88

(1) A party who is bound to preserve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5 or 86 may sell them by any appropriate means if there has been an unreasonable delay by the other party in taking possession of the goods or in taking them back or in paying the price or the cost of preservation, provided that reasonable notice of the intention to sell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2) If the goods are subject to rapid deterioration or their preservation would involve unreasonable expense, a party who is bound to preserve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5 or 86 must take reasonable measures to sell them. To the extent possible he must give notice to the other party of his intention to sell.

(3) A party selling the goods has the right to retain out of the

proceeds of sale an amount equal to the reasonable expenses of preserving the goods and of selling them. He must account to the other party for the balance.

Part IV. Final provisions

Article 89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s hereby designated as the depositary for this Convention.

Article 90

This Convention does not prevail over any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has already been or may be entered into and which contains provisions concerning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provided that the parties have their places of business in States parties, to such agreement.

Article 91

(1) This Convention is open for signature at the concluding meeting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will remain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until 30 September 1981.

(2) This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the signatory States.

(3) This Convention is open for accession by all States which are not signatory States as from the date it is open for signature.

(4)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nd accession are to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92

(1) A Contracting State may declare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hat it will not be bound by Part II of this Convention or that it will not be bound by Part III of this Convention.

(2) A Contracting State which makes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paragraph in respect of Part II or Part III of this Convention is not to be considered a Contracting State within paragraph (1) of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matters governed by the Part to which the declaration applies.

Article 93

(1) If a Contracting State has two or more territorial units in which, according to its constitution, different systems of law are applicable in relation to the matters dealt with in this Convention, it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declare that this Convention is to extend to all its territorial units or only to one or more of them, and may amend its declaration by submitting another declaration at any time.

(2) These declarations are to be notified to the depositary and are to state expressly the territorial units to which the Convention extends.

(3) If, by virtue of a declaration under this article, this Convention extends to one or more but not all of the territorial units of a Contracting State, and if the place of business of a party is located in that State, this place of busin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is considered not to be in a Contracting State, unless it is in a territorial unit to which the Convention extends.

(4) If a Contracting State makes no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Convention is to extend to all territorial units of that State.

Article 94

(1)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which have the same or closely related legal rules on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may at any time declare that the Convention is not to apply to contracts of sale or to their formation where the parties have their places of business in those States. Such declarations may be made jointly or by reciprocal unilateral declarations.

(2) A Contracting State which has the same or closely related legal rules on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as one or more non-Contracting States may at any time declare that the Convention is not to apply to contracts of sale or to their formation where the parties have their places of business in those States.

(3) If a State which is the object of a declaration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subsequently becomes a Contracting State, the declaration made will, a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n respect of the new Contracting State, have the effect of a declaration made under paragraph (1), provided that the new Contracting State joins in such declaration or makes a reciprocal unilateral declaration.

Article 95

Any State may declare at the tim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hat it will not be bound by subparagraph (1) (b) of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Article 96

A Contracting State whose legislation requires contracts of sale to be concluded in or evidenced by writing may at any time make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that any provision of article 11, article 29, or Part II of this Convention, that allows a contract of sale or its modification or termination by agreement or any offer, acceptance, or other indication of intention to be made in any form other than in writing, does not apply where any party has his place of business in that State.

Article 97

(1) Declarations made under this Convention at the time of signature are subject to confirmation upon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2) Declarations and confirmations of declarations are to be in writing and be formally notified to the depositary.

(3) A declaration takes effect simultaneously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State concerned. However, a declaration of which the depositary receives formal notification after such entry into force takes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by the depositary. Reciprocal unilateral declarations under article 94 take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six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latest declaration by the depositary.

(4) Any State which makes a declaration under this Convention may withdraw it at any time by a formal notif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depositary. Such withdrawal is to take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depositary.

(5) A withdrawal of a declaration made under article 94 renders inoperative, as from the date on which the withdrawal takes effect, any reciprocal declaration made by another State under that article.

Article 98

No reservations are permitted except those expressly authorized in this Convention.

Article 99

(1)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of this articl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including an instrument which contains a declaration made under article 92.

(2) When a State ratifies, accepts, approves or accedes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his Convention, with the exception of the Part excluded, enters into force in respect of that Stat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of this articl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3) A State which ratifies, accepts, approves or accedes to this Convention and is a party to either or both the 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one at The Hague on 1 July 1964 (1964 Hague Formation Convention) and the 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one at The Hague on 1 July 1964 (1964 Hague Sales Convention) shall at the same time denounce, as the case may be, either or both the 1964 Hague Sales Convention and the 1964 Hague Formation Convention by notifying th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to that effect.

(4) A State party to the 1964 Hague Sales Convention which ratifies, accepts, approves or accedes to the present Convention and declares or has declared under article 92 that it will not be bound by Part II of this Convention shall at the time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denounce the 1964 Hague Sales Convention by notifying th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to that effect.

(5) A State party to the 1964 Hague Formation Convention which ratifies, accepts, approves or accedes to the present Convention

and declares or has declared under article 92 that it will not be bound by Part III of this Convention shall at the time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denounce the 1964 Hague Formation Convention by notifying th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to that effect.

(6)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ratifications, acceptances, approvals and accessions in respect of this Convention by States parties to the 1964 Hague Formation Convention or to the 1964 Hague Sales Convention shall not be effective until such denunciations as may be required on the part of those States in respect of the latter two Conventions have themselves become effective. The depositary of this Convention shall consult with th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as the depositary of the 1964 Conventions, so as to ensure necessary co-ordination in this respect.

Article 100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the formation of a contract only when the proposal for concluding the contract is made on or after the date when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n respect of the Contracting Stat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a) or the Contracting Stat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b) of article 1.

(2) This Convention applies only to contracts concluded on or after the date when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n respect of

the Contracting Stat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a) or the Contracting Stat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b) of article 1.

Article 101

(1) A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or Part II or Part III of the Convention, by a formal notif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depositary.

(2) The denunciation takes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welve months after the notification is received by the depositary. Where a longer period for the denunciation to take effect is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the denunciation takes effect upon the expiration of such longer period after the notification is received by the depositary.

DONE at Vienna, this day of eleventh day of April,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 in a single original,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에 관하여 국제연합총회의 제6차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의 광범한 목적에 유념하고,

평등과 상호이익을 기초로 한 국제거래의 발전이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며,

국제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고 상이한 사회적·경제적 및 법적 제도를 고려한 통일규칙을 채택하는 것이 국제거래상의 법적 장애를 제거하는데 기여하고 국제거래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라는 견해하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제1장 적용범위

제1조

(1)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가) 해당 국가가 모두 계약국인 경우, 또는

(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계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3) 당사자의 국적 또는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상사적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2조

이 협약은 다음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

다만, 매도인이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물품이 그와 같은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야 했던 것도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경매에 의한 매매

(다) 강제집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라)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마) 선박, 소선(小船), 부선(浮船), 또는 항공기의 매매

(바) 전기의 매매

제3조

(1)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본다. 다만,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

이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만을 규율한다. 이 협약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특히 다음과 관련이 없다.

(가) 계약이나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

(나)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

제5조

이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총 칙

제7조

(1) 이 협약의 해석에는 그 국제적 성격 및 적용상의 통일과 국제거래상의 신의 준수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제8조

(1) 이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교섭,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 행위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 (1) 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과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된다.
- (2)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관행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당해 거래와 동종의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의 계약 또는 그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이 협약의 적용상,

(가) 당사자 일방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에 알려지거나 예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영업소로 된다.

(나) 당사자 일방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를 영업소로 본다.

제11조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가 없고, 방식에 관

한 그 밖의 어떠한 요건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입증될 수 있다.

제12조

매매계약,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의 변경이나 종료, 청약·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협약 제11조, 제29조 또는 제2편은 당사자가 이 협약 제96조에 따라 유보선언을 한 계약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이 조를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

이 협약의 적용상 『서면』에는 전보와 텔렉스가 포함된다.

제2편 계약의 성립

제14조

(1)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된다. 제안이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

(2)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안은 제안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

하지 아니하는 한,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제15조

- (1)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2)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회수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회수될 수 있다.

제16조

- (1)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철회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 (2)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은 철회될 수 없다.
 - (가) 승낙기간의 지정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 (나) 상대방이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대방이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제17조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8조

(1)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된다.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

(2)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意的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동意的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기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 등 거래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승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두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3) 청약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나 관행의 결과로 상대방이 청약자에 대한 통지없이,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지급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행위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9조

(1)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또한 새로운 청약이 된다.

(2) 승낙을 의도하고 있고,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승낙이 된다. 다만,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없이 그 상위(相違)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낙에 포함

된 변경이 가하여진 청약 조건이 계약 조건이 된다.

(3) 특히 대금, 대금지급,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의 장소와 시기,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 또는 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

(1) 청약자가 전보 또는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전보가 발송을 위하여 교부된 시점 또는 서신에 표시되어 있는 일자, 서신에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청약자가 전화, 텔렉스 그 밖의 同時的 통신수단에 의하여 지정한 승낙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2) 승낙기간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에게 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제21조

(1)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 연착된 승낙이 포함된 서신 그 밖의 서면에 의하여, 전달이 정상적이었다면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되었을 상황에서 승낙이 발송되

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락된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다만,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청약이 실효되었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회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회수될 수 있다.

제23조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된다.

제24조

이 협약 제2편의 적용상, 청약,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된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 본인,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로 전달된 때,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 전달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다.

제3편 물품의 매매

제1장 총 칙

제25조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 본질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위반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제27조

이 협약 제3편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이 협약 제3편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청구 그 밖의 통신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통신의 전달 중에 지연이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 통신이 도달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통신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8조

당사자 일방이 이 협약에 따라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자국법에 따라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의무가 없다.

제29조

- (1)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다.
- (2) 서면에 의한 계약에 합의에 의한 변경 또는 종료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 변경 또는 합의 종료될 수 없다. 다만,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신뢰한 한도까지는 그러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30조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제31조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제1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

(나) (가)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물에 관련되거나 또는 특정한 재고품에서 인출되는 불특정물이나 제조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고,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시에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

(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에 매도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

제32조

(1)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 경우에, 물품이 하인(荷印), 선적서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통지를 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송수단 및 그 운송에서의 통상의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부보(附保)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수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

매도인은 다음의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가)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

(나)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 다만,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후 합리적인 기간 내.

제34조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시기 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제35조

(1)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의 경우에 계

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가)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 체결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상황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라)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매수인이 계약 체결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하여 제2항의 (가)호 내지 (라)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6조

(1)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그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된 경우라도,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매도인은 제1항에서 정한 때보다 후에 발생한 부적합이라도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의무위반에는 물품이 일정기간 통상의 목적이나 특별한 목적에 맞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증 또는 특정한 품질이나 특성을 유지한다는 보증에 위반한 경우도 포함된다.

제37조

매도인이 인도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그 기일까지 누락분을 인도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에 갈음하여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물품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38조

(1)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3) 매수인이 검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운송중에 물품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물품을 전송(轉送)하고, 매도인이 계약 체결시에 그 변경 또는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제39조

(1)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

한다.

(2) 매수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로 교부된 날부터 늦어도 2년 내에 매도인에게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이 기간제한이 계약상의 보증기간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물품의 부적합이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38조와 제39조를 원용할 수 없다.

제41조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된 물품을 수령하는 데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이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의무는 제42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2조

(1) 매도인은, 계약 체결시에 자신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이 다음

국가의 법에 의한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경우에 한한다.

(가)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시에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였던 경우에는, 물품이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국가의 법

(나) 그 밖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영업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

(2) 제1항의 매도인의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매수인이 계약 체결시에 그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

(나) 그 권리나 권리주장이 매수인에 의하여 제공된 기술설계, 디자인, 방식 그 밖의 지정에 매도인이 따른 결과로 발생한 경우

제43조

(1)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제41조 또는 제42조를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2)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 및 그 성질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제1항을 원용할 수 없다.

제44조

제39조 제1항과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정하여진 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대

금을 감액하거나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제45조

(1)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제46조 내지 제52조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

(나) 제74조 내지 제77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청구

(2)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

(3)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

제46조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그 청구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고, 그 청구가 제39조의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 한한다.

(3)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에게 수리에 의한 부적합의 치유를 청구할 수 있다. 수리 청구는 제39조의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제47조

(1)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매도인으로부터 그 부가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그 기간중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다. 다만, 매수인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8조

(1) 제49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은 인도기일 후에도 불합리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매수인의 선급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상환받는 데 대한 불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의 수령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요구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할 수 있다. 매수인은 그 기간중에는 매도인의 이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할 수 없다.

(3) 특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이 그 결정을 알려야 한다는 제2항의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매도인의 요구 또는 통지는 매수인에 의하여 수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9조

(1)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나) 인도 불이행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2)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가) 인도지체의 경우, 매수인이 인도가 이루어진 것을 안 후 합리적인 기간 내

(나) 인도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 다음의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1) 매수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

(2) 매수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도인이 그 부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3) 매도인이 제48조 제2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이행을 수령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제50조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현실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그때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제37조나 제48조에 따라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하거나 매수인이 동 조항에 따라 매도인의 이행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제51조

(1)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에, 제46조 내지 제50조는 부족 또는 부적합한 부분에 적용된다.

(2) 매수인은 인도가 완전하게 또는 계약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2조

(1) 매도인이 이행기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2)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다량의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하거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초과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는 계약대금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매수인의 의무

제53조

매수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제1절 대금의 지급

제54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포함된다.

제55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계약 체결시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매도되는 그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56조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에,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순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7조

(1)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에서 매도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나)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가 이루어지는 장소

(2) 매도인은 계약 체결후에 자신의 영업소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금지급에 대한 부수비용의 증가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

(1)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그 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를 위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2)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상환하여서만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의

무가 없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된 인도 또는 지급절차가 매수인이
검사 기회를 가지는 것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59조

매수인은 계약 또는 이 협약에서 지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제2절 인도의 수령

제60조

매수인의 수령의무는 다음과 같다.

- (가) 매도인의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 및
- (나) 물품을 수령하는 것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제61조

- (1) 매수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매도인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제62조 내지 제65조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

(나) 제74조 내지 제77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청구

(2)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

(3) 매도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

제62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그 청구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1)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가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그 기간중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다. 다만, 매도인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64조

(1) 매도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나) 매수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2)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가) 매수인의 이행지체의 경우, 매도인이 이행이 이루어진 것을 알기 전

(나) 매수인의 이행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 다음의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1) 매도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

(2) 매도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그 부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제65조

(1)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형태, 규격 그 밖의 특징을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합의된 기일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수령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신이 보유하는 다른 권리를 해함이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지정할 수 있다.

(2) 매도인은 스스로 지정하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그 상세한 사정을 통고하고, 매수인이 그와 다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그 통지를 수령한 후 정하여진 기간 내에 다

른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지정이 구속력을 가진다.

제4장 위험의 이전

제66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

(1)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위험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이 제1운송인에게 교부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그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물품이 하인(荷印),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제68조

운송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 체결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은 운송계약을 표창하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교부된 때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시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고,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은 매도인의 위험으로 한다.

제69조

(1) 제67조와 제6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험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 매수인이 적시에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여지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위반하는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인도기일이 도래하고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여진 것을 매수인이 안 때에 이전한다.

(3)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물품은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0조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한 경우에는, 제67조, 제68조 및 제69조는 매수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구할 수 있는 구제를 방해하지 아니한

다.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제71조

(1) 당사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의 사유로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가) 상대방의 이행능력 또는 신용도의 중대한 결함

(나) 계약의 이행 준비 또는 이행에 관한 상대방의 행위

(2) 제1항의 사유가 명백하게 되기 전에 매도인이 물품을 발송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교부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이 항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물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3)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물품의 발송 전후에 관계없이 즉시 상대방에게 그 정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72조

(1)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요건은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3조

(1)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해제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어느 인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매수인은, 이미 행하여진 인도 또는 장래의 인도가 그 인도와의 상호 의존관계로 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이 예상했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인도 또는 장래의 인도에 대하여도 동시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절 손해배상액

제74조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그 손해배상액은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75조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물을 매수하거나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과의 차액 및 그 외에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제76조

(1) 계약이 해제되고 물품에 시가가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제75조에 따라 구입 또는 재매각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대금과 계약해제시의 시가와와의 차액 및 그 외에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시의 시가에 갈음하여 물품수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2) 제1항의 적용상, 시가는 물품이 인도되었어야 했던 장소에서의 지배적인 가격, 그 장소에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 운송비용의 차액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제77조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이 자

제78조

당사자가 대금 그 밖의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제7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해함이 없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절 면 책

제79조

(1) 당사자는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 체결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 당사자의 불이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제3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가)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되고, 또한

(나) 당사자가 사용한 제3자도 그에게 제1항이 적용된다면 면책되는 경우

(3) 이 조에 규정된 면책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효력을 가진다.

(4) 불이행 당사자는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장애가 자신의 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이행 당사자가 장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는 불수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5) 이 조는 어느 당사자가 이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0조

당사자는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는 한, 상대방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절 해제의 효력

제81조

(1)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을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한다.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 또는 해제의 결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계약상 공급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2조

(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그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도인에게 대체물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다.

(2)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물품을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것이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8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어야 했던 시점 전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매각되거나 통상의 용법에 따라 소비 또는 변형된 경우

제83조

매수인은, 제82조에 따라 계약해제권 또는 대체물인도청구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계약과 이 협약에 따른 그 밖의 모든 구제권을 보유한다.

제84조

(1) 매도인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금이 지급된 날부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도인에게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제6절 물품의 보관

제85조

매수인이 물품 인도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또는 대금지급과 물품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처분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 받을 때까지 그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

제86조

(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

(2) 매수인에게 발송된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지고, 매수인이 그 물품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을 위하여 그 물품을 점유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지급 및 불합리한 불편이나 경비소요없이 점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항은 매도인이나 그를 위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자가 목적지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이 항에 따라 물품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는 제1항이 적용된다.

제87조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상대방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할 수 있다.

제88조

(1)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상

대방이 물품을 점유하거나 반환받거나 또는 대금이나 보관비용을 지급하는 데 불합리하게 지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매각의사를 합리적으로 통지하는 한,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2) 물품이 급속히 훼손되기 쉽거나 그 보관에 불합리한 경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물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가능한 한도에서 상대방에게 매각의사가 통지되어야 한다.

(3) 물품을 매각한 당사자는 매각대금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매각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그 차액은 상대방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제4편 최종규정

제89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가 된다.

제90조

이미 발효하였거나 또는 앞으로 발효하게 될 국제협정이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은 그러한 국제협정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그 협정의 당사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1조

(1) 이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의 최종일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1981년 9월 30일까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3) 이 협약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날부터 서명하지 아니한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92조

(1) 체약국은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 제2편 또는 제3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협약 제2편 또는 제3편에 관하여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은, 그 선언이 적용되는 편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협약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체약국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3조

(1) 체약국이 그 헌법상 이 협약이 다루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각 영역마다 다른 법체계가 적용되는 2개 이상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국가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을 전체 영역 또는 일부영역에만 적용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새로운 선언을 함으로써 전의 선언을 수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선언은 수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영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선언에 의하여 이 협약이 체약국의 전체영역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영역에만 적용되며 또한 당사자의 영업소가 그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는 이 협약의 적용상 체약국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영업소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체약국이 제1항의 선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협약은 그 국가의 전체영역에 적용된다.

제94조

(1)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법규를 가지는 둘 이상의 체약국은, 양당사자의 영업소가 그러한 국가에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을 매매계약과 그 성립에 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공동으로 또는 상호간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비체약국과 동일하거나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법규를 가지는 체약국은 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그러한 국가에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을 매매계약과 그 성립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선언의 대상이 된 국가가 그 후 체약국이 된 경우에, 그 선언은 이 협약이 새로운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제1항의 선언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새로운 체약국이 그 선

언에 가담하거나 또는 상호간에 단독으로 선언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5조

어떤 국가든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이 협약 제1조 제1항 (나)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행할 수 있다.

제96조

그 국가의 법률상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입증에 서면을 요구하는 체약국은 제12조에 따라 매매계약,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의 변경이나 종료, 청약, 승낙 기타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 협약 제11조, 제29조 또는 제2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 일방이 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제97조

(1) 서명시에 이 협약에 따라 행한 선언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 다시 확인되어야 한다.

(2) 선언 및 선언의 확인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정식으로 수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3) 선언은 이를 행한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함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협약의 발효 후 수탁자가 정식으로 통고를 수령한 선

언은 수탁자가 이를 수령한 날부터 6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94조에 따른 상호간의 단독선언은 수탁자가 최후의 선언을 수령한 후 6월이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이 협약에 따라 선언을 행한 국가는 수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정식의 통고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수탁자가 통고를 수령한 날부터 6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5) 제94조에 따라 선언이 철회된 경우에는 그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제94조에 따라 다른 국가가 행한 상호간의 선언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98조

이 협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99조

(1) 이 협약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92조의 선언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포함하여 1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12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2) 1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어느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경우에, 이 협약은 적용이 배제된 편을 제외하고 제6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국가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12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3) 1964년 7월 1일 헤이그에서 작성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1964년 헤이그성립협약)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통일법』(1964년 헤이그매매협약)중의 하나 또는 모두의 당사국이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이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네덜란드 정부에 통고함으로써 1964년 헤이그매매협약 및/또는 1964년 헤이그성립협약을 동시에 폐기하여야 한다.

(4) 1964년 헤이그매매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가 제92조에 따라 이 협약 제2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선언하거나 또는 선언한 경우에, 그 국가는 이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네덜란드 정부에 통고함으로써 1964년 헤이그매매협약을 폐기하여야 한다.

(5) 1964년 헤이그성립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가 제92조에 따라 이 협약 제3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선언하거나 또는 선언한 경우에, 그 국가는 이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 네덜란드정부에 통고함으로써 1964년 헤이그성립협약을 폐기하여야 한다.

(6) 이 조의 적용상, 1964년 헤이그성립협약 또는 1964년 헤이그매매협약의 당사국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이들 두 협약에 관하여 당사국에게 요구되는 폐기의 통고가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수탁자는 이에 관한 필요한 상호조정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1964년 협약들의 수탁자인 네덜란드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0조

(1) 이 협약은 제1조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의 체약국에게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약은 제1조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의 체약국에게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제101조

(1) 체약국은 수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정식의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약 또는 이 협약 제2편 또는 제3편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수탁자가 통고를 수령한 후 12월이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통고에 폐기의 발효에 대하여 보다 장기간이 명시된 경우에 폐기는 수탁자가 통고를 수령한 후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980년 4월 11일에 비엔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각 1부가 작성되었다.

그 증거로서 각국의 전권대표들은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